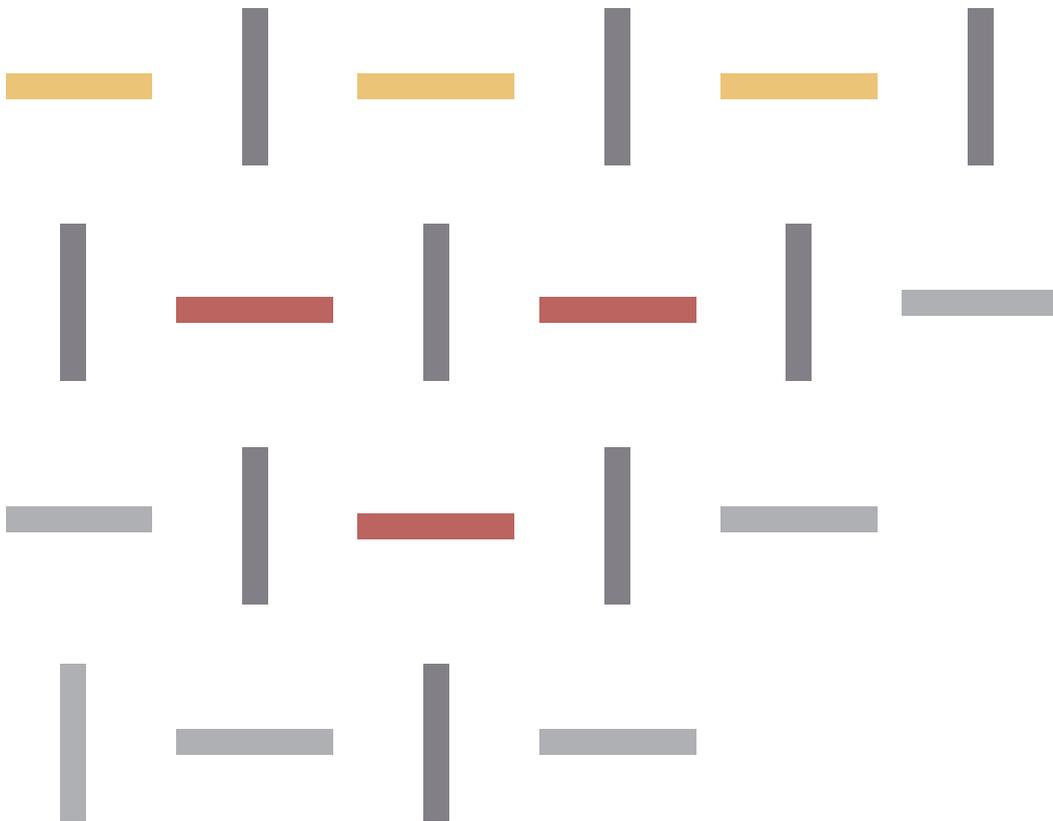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evention of Gender Violence in Ulsan Metropolitan City

배미란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evention of Gender Violence in Ulsan Metropolitan City

배미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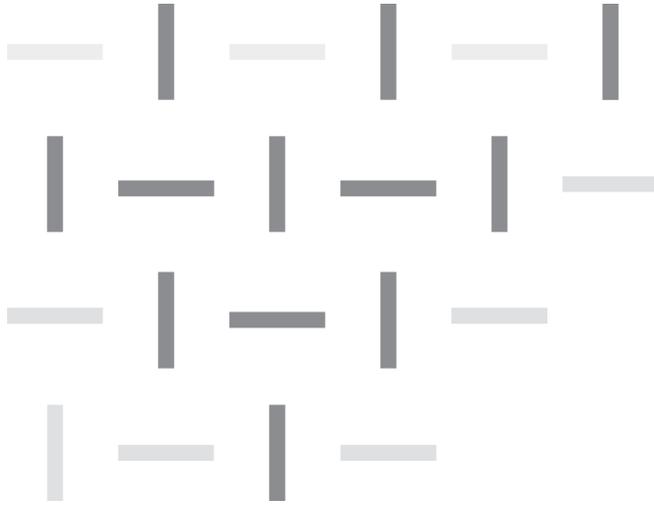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evention of Gender Violence
in Ulsan Metropolitan City

■ ■ ■

책임연구 : 배미란(울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위원)

연구보조 : 김슬기(울산여성가족개발원 위촉연구원)



연구개요

1. 서론	iii
2. 젠더폭력에 관한 기본 검토	v
3. 지역전문가 자문 결과 분석	xi
4. 울산시민의 젠더폭력 인식조사 결과 분석	xvii
5. 결론 및 정책제언	xxxix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최근 몇 년간, 미투(#MeToo) 운동 등을 비롯한 다양한 여성 운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젠더폭력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음.
- 여성가족부의 제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대부분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느끼고 있으며, 실제로 여성의 상당수가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참고로,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82.0%(여성 88.8%, 남성 75.3%), 여성의 15.1%가 성추행이나 폭력 또는 위협적 상황을 경험하였다고 답하였음.¹⁾
-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는 최근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젠더폭력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욱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젠더폭력 종합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음.
- 다만, 젠더폭력은 아직까지도 그 개념이 반드시 명확하지 않다는 점, 최근에는 젠더폭력의 범주 안에 포섭할 수 있는 새로운 범죄 유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우리 사회에 매우 오래 자리 잡아온 성적 불평등이나 편견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한 대처나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음.
- 특히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여겨져 온 성폭력이나 성매매 이외에도 스토킹, 데이트 폭력,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 등 이른바 젠더폭력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으나, 이는 각 유형별로 불법의 수위가 다른 만큼 젠더폭력에 대한 처벌 일변도의 정책은 더 이상 젠더폭력의 대처 방안으로써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음.

1) 여성가족부, 제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 2017.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 나아가 성별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 차별 등을 바탕으로 한 범죄에 있어서는 개별 결과에 대한 엄벌보다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젠더에 대한 제대로 된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젠더폭력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각 지역별로 젠더폭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이나 감수성, 젠더폭력 발생현황이나 피해자 현황, 관련 정책 및 유관기관 현황 등에 관한 검토를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의의가 있음.
-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젠더폭력에 대한 울산시민의 감수성을 제고하고,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울산을 구현하기 위해, 젠더폭력의 정의 및 유형에 관한 검토,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발생현황 및 관련 유관기관 상담현황 제시, 젠더폭력 관련 울산시민 인식 조사,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울산지역 젠더폭력 현황 및 특성에 맞는 예방대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연구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는 크게 젠더폭력 관련 문헌 및 제도의 검토,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발생 실태 및 유관기관 현황 분석, 관련 전문가 자문 및 분석을 연구의 범위로 하여,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함.
- 이상의 연구를 위해 문헌연구, 기통계 정리, 전문가자문,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함.

3) 기대효과

- 젠더폭력의 정의 및 유형, 성립범위 등을 둘러싼 논의를 정리하고, 특히 젠더폭력 예방정책 마련 시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이끌어내어, 젠더폭력 예방정책 마련의 토대를 제시하고자 함.

- 젠더폭력에 관한 울산시민의 인식조사 및 이에 관한 유관기관 전문가 자문을 동시에 진행한 자료로서, 이를 통해 젠더폭력과 관련한 울산광역시 및 울산시민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특성에 맞는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그 밖에 본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협력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향후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함.

II. 젠더폭력에 관한 기본 검토

1) 정의와 유형

(1) 젠더폭력의 정의

- 본 연구를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젠더폭력의 개념 및 유형을 명확히 하는 것임. 젠더폭력의 개념은 아직 연구자들 사이에서 일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그 유형도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
- 또한 젠더폭력은 단일 범죄유형으로 처벌되는 폭행과도 달라,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젠더폭력의 개념 및 유형, 그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젠더폭력의 개념에 관해서는 더욱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라는 의미보다는 “성적 차별”을 바탕으로 한 폭력행위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하고자 함.
- 최근의 논의에서 젠더기반폭력은 가정폭력, 친밀한 관계 또는 그 외의 남성에 의한 성폭력,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폭력, 강제결혼(특히 아동의 조혼), 여성할례 등 공적·사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음.²⁾

2) 발라즈 호르바트, 젠더기반폭력(Gender-based violence) 근절 및 예방에 관한 UNDP 서울정책센터의 개발경험 공유 파트너십-2017년 서울 담화(Seoul Debates)의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젠더리뷰 제45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44면.

○ 따라서, 정리하자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젠더폭력의 개념은 성적차별을 바탕으로 한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하며,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을 주로 다루게 될 것이나, 성적인 폭력행위라면 그 대상을 여성에 한정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2) 젠더폭력의 유형

○ 젠더폭력의 범위와 유형은 관련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범죄유형과 제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에서 새로운 젠더폭력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는 온라인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성희롱 등을 바탕으로 제시함. 구체적으로는 성폭력, 가정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불법촬영, 스토킹, 성희롱, 데이트폭력에 관한 개념 및 관련 법령 소개를 담고 있음.

2) 발생현황 및 상담현황

(1) 전국 성폭력 범죄 발생현황

- 2017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6년 성폭력범죄는 29,357건, 인구 10만명당 56.8건 발생하였음. 성폭력범죄의 발생비는 2007년 29.1건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60.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가 2016년 소폭 감소하였으나, 성폭력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95.1% 증가하였음.³⁾
- 성폭력범죄를 10개의 하위유형으로 세분하여 발생건수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강간은 2007년 18.5%를 보였고, 이후 증가하여 2009년에는 22.6%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그 이후 감소하여 2016년에는 18.4%를 보였음. 이에 비해 강제추행범죄의 구성비는 2007년 37.3%에서 증감을 반복 해오다 2016년에는 48.8%로 최고치를 기록함으로써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강간등 상해/치상범죄는 2007년 11.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에는 2.5%에 불과하였음.
- 성폭력범죄 중 지난 10년간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범죄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임.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2007년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9%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고, 특히 2012년 이후 증가폭이 커져 2015년에는 24.9%로 최고

3) 이하의 내용은, 대검찰청, 2017 범죄분석 참조.

치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이후 감소하여 2016년에는 17.9%를 보였음.

- 이상의 통계는 우리 사회의 젠더폭력 발생 현황의 일부에 지나지 않음. 그러나 단적으로 주요 성폭력범죄 유형의 발생건수나 구성비만을 놓고 볼 때에도 젠더폭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특히,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성범죄 내지 젠더폭력에 대한 개인적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성별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폭력유형에 대한 대처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2) 울산지역 젠더폭력 발생 및 검거 현황

- 다음으로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관련 발생현황 및 검거 현황에 관해 알아보하고자 함. 이하의 내용은 경찰청범죄통계 중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울산청의 현황이며, 울산지역 젠더폭력 발생현황에 관한 기초자료로써 제시하는 바임.⁴⁾ 먼저 강간범죄의 발생현황은 4개년 간 120건 내외의 발생건수를 보이고 있고, 유사강간범죄의 경우 대략 10건 이내의 발생건수를 보여 왔으나, 2016년에는 총 16건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다음으로 강제추행의 발생현황은 4개년 간 280~300건 정도 인지되었으며,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의 비율이 높으나, 청소년이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추행도 매년마다 10%를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위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강간·강제추행 관련 범죄의 발생현황은 2013년 이후 많이 감소하여, 2016년 현재 대략 10건 이내의 발생건수를 보이고 있음.
- 한편 성폭속범죄는 2013년 360건 정도의 발생 건수를 보이던 것이 2016년에는 176건으로 그 건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실제 성폭속범죄가 감소된 것이라기 보다는 간통죄의 폐지로 인한 것이 여겨짐. 그리고 가정폭력처벌법, 성매매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 젠더폭력 관련 특별법 위반 범죄의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연도별로 발생건수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당해 발생현황에서 특이할 점은 발생건수의 다수를 성매매처벌과 관련된 범죄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건수는 매우 저조하다는 점임.

4) 이하의 자료는 경찰청범죄통계 중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울산청)'을 참조한 자료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N219&conn_path=13).

(3) 울산지역 젠더폭력 유관기관 이용현황

1) 상담건수 및 피해자지원 현황

- 울산통계연보에 따르면,⁵⁾ 최근 4개년(2013년 ~ 2016년) 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 상담소를 통해 이루어진 상담건수는 다음과 같음. 먼저 여성폭력상담소의 상담건수는 2013년 8000건을 상회하였으나, 2016년 현재 10,000건을 상회하고 있음.
- 그리고 여성폭력상담소를 이용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심리·정서적 지원, 수사·법적 지원, 의료 지원, 시설 입소 연계 등이 지원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심리·정서적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 지원 건수가 5,681건이었던 것이 2016년 현재 7,303건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심리·정서적 지원이 1,929건에서 2016년 4,195건까지 늘어났음. 그리고 여성복지시설 이용 울산통계연보에 따라, 최근 4개년(2013년 ~ 2016년) 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등 여성복지시설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각 여성복지시설의 시설 수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용현황 역시도 큰 변동은 없으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3) 소결

- 이상에서는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젠더폭력의 정의 및 유형을 정리하였으며, 젠더폭력의 발생현황과 관련 상담 및 지원 현황 등은 울산지역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제시하였음.
- 이상의 내용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바는 먼저, 젠더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젠더폭력에 대한 울산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하고, 이러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젠더폭력의 정의 및 유형 등이 좀 더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임.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젠더폭력의 정의를 “성적차별을 바탕으로 한 모든 폭력행위”라고 폭넓게 제시하고 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젠더폭력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덧붙이자면 젠더폭력의 근저에는 성적 차별 외에도 평등의식의 결여나 낮은 인권

5) 울산통계연보는 울산광역시청 홈페이지(<http://www.ulsan.go.kr/stat/gnrlstatsanlrpt>)를 참조함.

감수성 등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음. 이른바 젠더폭력은 다양한 관계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권력이나 권위를 바탕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기본적인 인권이나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평등의식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면 대부분의 젠더폭력은 해소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젠더폭력의 예방은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나 교육에서부터가 아니라 사람이나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 평등의식과 같은 기본적인 의식 변화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함.

- 그리고 젠더폭력에 대한 감수성의 제고나 의식의 변화는 일반시민뿐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는 제도나 정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젠더폭력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우리 사회에서 젠더폭력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졌고, 젠더폭력의 유형이 더욱 세분화되었으며, 그에 대한 처벌 등 대처를 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고, 유익한 것이라 여겨짐.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대처가 젠더폭력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현황 등을 바탕으로 한 단편적인 대처이거나 개별사례에 대한 제재 정도로 치우치고 있는 것은 아쉬움이 있음.
- 예를 들어, 성희롱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인식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과 같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과는 다르며, 그러한 인식의 차이는 간단하게는 범죄의 성립 내지 형사처벌의 유무라고 여겨짐. 그런데 성희롱에 대한 관련 법규는 이러한 차이를 담고 있지 못하다고 여겨짐. 즉,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서는 성희롱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사회통념상 성희롱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형사법 등을 통한 처벌에 이르지 않는 수위의 행위부터 성희롱에 해당함은 물론 강제추행 등과 같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수위의 행위까지를 함께 제시하고 있음으로써 오히려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낮출 우려가 있음.
-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도입되었으나,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판례는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노출의 정도,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동죄의 성립을 판단하고 있음. 이에 따라 판례는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신체 부위를 집중해서 촬영한 경우에는 대체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고 있으나,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는 전신 모습을 촬영한 경우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는 아니라고 하여 처벌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음.⁶⁾

6) 서울중앙지법 2013. 11. 22. 선고 2013고합885 판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현재와 같이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촬영물의 경우, 편집을 통하여 얼마든지 특정 신체를 부각시킬 수 있고, 촬영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특정부위가 찍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 성적 욕망을 품고 촬영을 진행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될 수 있음. 즉, 촬영을 당한 피해자의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본인의 성적 욕망을 위해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점이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피해자 본인의 신체가 타인에 의해 촬영이 되었다는 사실로 수치심을 느낀다면, 동죄는 인정되어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해석 방식은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의 원인이 있다는 편견을 낳을 우려가 있고, 동죄의 입법목적이나 보호법익을 고려할 때에도 합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적용은 성적 평등이나 젠더폭력에 대한 감수성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라 여겨짐.

- 이상의 상황을 고려할 때에도 단지 젠더폭력의 유형을 세분화한다거나, 그에 따른 개별적인 접근방식을 고려하는 것만으로는 젠더폭력의 예방이나 방지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젠더의 식이나 성평등, 인권교육 등과 같이 젠더폭력에 대한 울산시민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기초 교육과 젠더폭력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명확한 제시를 할 수 있는 젠더폭력 예방 교육 등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교육은 일반시민은 물론 젠더폭력 관련 정책 담당자나 실무 담당자의 평등의식 및 폭력에 대한 감수성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함.
- 그리고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발생현황 및 상담현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울산지역에서도 꾸준히 젠더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젠더폭력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비해 젠더폭력으로 인지되는 건수는 매우 소수임. 이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젠더폭력 중에는 형사처벌을 정하지 않고 있는 유형도 있다는 점과 젠더폭력에 대한 형사적 제재나 처벌은 최후의 수단일 뿐이라는 점에 비추어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음.
- 다른 한편으로는 그 만큼 형사처벌만으로는 젠더폭력의 예방이나 제재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고, 나아가 이는 젠더폭력이 어떠한 범죄피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이후에만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의 일반예방 수준의 효과 이외에 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따라서 젠더폭력에 대한 처벌과는 달리 예방대책은 매우 근본적인 수준의 정책으로부터 시작하여,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임.
- 이상의 점을 염두에 두고, 이하에서는 젠더폭력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울산지역 젠더폭력 관련 전문가의 자문의견에 대한 검토·분석을 진행하고자 함.

Ⅲ. 지역전문가 자문 결과 분석

1) 조사 개요

- 본 조사는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발생현황 및 제반여건의 특성에 맞는 예방대책 마련과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되었음.
- 이를 위하여, 주로 울산지역 내에서 젠더폭력 예방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전문가로 하여, 지역사회 내의 젠더폭력 관련 인식 및 정책 현황, 관련 사업 현황 등을 비롯한 현황 파악과 정책수요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음.

〈표〉 조사설계 및 항목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폭력 예방사업 수행기관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행정 분야 - 예방교육 분야 · 울산시 상담소·시설협의회 소속 기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상담소 2개소 - 전화상담기관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통합상담소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 성폭력 상담소 - 피해자지원담당기관 등
조사방법	· 서면에 의한 의견 청취(서면조사)
조사기간	· 2018. 10. 8. ~ 2018. 10. 26.
항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기관 및 작성자 소개 · 지역사회 내 젠더폭력 관련 인식 및 정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지역 젠더폭력 발생 체감도 - 젠더폭력 발생현황에 있어서 울산지역 특성 · 관련 서비스 및 교육 추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폭력 예방 사업 현황 - 젠더폭력 예방 교육 현황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현황 및 필요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협력체계 구축 필요여부 - 지역 협력체계의 역할 · 울산지역 젠더폭력 예방 정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지역 젠더폭력 예방 정책 현황 - 울산지역에 필요한 젠더폭력 예방 정책 - 울산 또는 중앙정부의 젠더폭력 예방 정책에 관한 의견

2) 조사 결과

○ 울산지역 내 젠더폭력 발생 현황 및 특성

- 울산지역 내 젠더폭력 발생 체감도

- 최근 2년(2017년~2018년) 사이,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경향 및 체감도를 묻는 설문에 대해,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과거보다 매우 증가하고 있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3명임. 즉, 응답자의 대부분이 최근 들어 울산 지역에서 젠더폭력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젠더폭력 발생현황에 있어서 지역적 특성

- 울산지역에서 젠더폭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울산지역의 특징이나 특성을 묻는 설문문에 대해, 가장 큰 특징으로는 울산지역이 남성중심의 공업지역이라는 점이 제시되었음. 그리고 그러한 특성에 따라 형성된 가부장적 가족문화나 이주 부부가족 등의 가족 형태, 성평등 인식에 대한 남녀 간의 견해 차 등이 울산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젠더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젠더폭력 관련 사업 및 교육 추진 현황

- 젠더폭력 예방사업 현황

- 울산 상담소·시설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젠더폭력 예방사업이 있는가 라는 설문문에 대하여, “있음”이라고 답한 기관은 7곳이고, “없음”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곳임.
- 먼저, “없음”이라고 응답한 기관의 사유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라는 특성에 따른 것임. 다음으로 “있음”이라고 응답한 기관에서는 크게 젠더폭력 예방 캠페인과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구체적으로는 각 기관의 사업목적에 따라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음.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현황 및 필요여부

- 유관기관 협력체계 필요여부

7) 본 항목은 울산시 상담소·시설협의회 소속 기관장 8명에 대해 요청 드린 항목이며, 젠더폭력 예방사업 수행기관 전문가에 대한 항목은 아님. 이에 아래의 조사에서 단답식 응답의 경우에는 총원 8명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혀둠.

- 젠더폭력 예방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내에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필요함”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명, “필요함”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명, “전혀 필요하지 않음”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1명 순으로 나타났다.
- 반면에, 울산지역의 유관기관 협력체계는 “전혀 필요하지 않음”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는 젠더폭력 예방사업의 필요성에는 동조하나, 이러한 사업추진이 협력체계가 없어서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이미 협력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된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음.

- 유관기관 협력체계의 역할

- 젠더폭력 예방 등에 관한 지역 협력체계는 주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 라는 유관기관 협력체계의 역할을 묻는 설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총 7개의 역할 예시를 제시하였음.
 - ① 각 참여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교환, ②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③ 각 참여기관에 대한 업무협조 요청, ④ 관련 예방·홍보·대민교육 전략 협의, ⑤ 여성폭력 감소를 위한 연계 대응방안 협의, ⑥ 각 참여기관의 역할분담, ⑦ 기타 등임.

〈설문〉

2. 젠더폭력 예방 등에 관한 지역 협력체계는 주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 중, 우선순위 별로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내용	1순위	2순위
(1) 각 참여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교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1명
(3) 각 참여기관에 대한 업무협조 요청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2명
(4) 관련 예방·홍보·대민교육 전략 협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7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1명
(5) 여성폭력 감소를 위한 연계 대응방안 협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1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2명
(6) 각 참여기관의 역할분담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2명
(7)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울산지역 젠더폭력 예방 관련정책 활성화

- 울산지역 젠더폭력 예방정책 현황

-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예방정책 현황과 관련하여 아래의 설문을 제시한 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음.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설문〉

1. 울산지역에서 젠더폭력 예방과 관련한 아래의 정책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① ~ ④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렇게 선택한 이유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예방 대책	매우 부족하다	부족 하다	적정 하다	많다	매우 많다
① 젠더폭력 관련 대시민 인식개선 제고 및 신고체계 확립	① 5명	② 3명	③	④	⑤
② 지역사회 중심의 젠더폭력 예방 교육 활성화	① 5명	② 2명	③ 1명	④	⑤
③ 인터넷, 알코올, 약물 등 유해 환경 개선과 연계한 통합정책	① 4명	② 3명	③ 1명	④	⑤
④ 실효성 있는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① 1명	② 5명	③ 2명	④	⑤

- 울산지역에 필요한 젠더폭력 예방정책

- 울산지역의 젠더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도입 또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묻는 문항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차원의 여성폭력 예방관련 조례 제정”과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울산광역시의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2순위로 든 의견 중에서는 “여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에 대한 시비확대”를 선택한 응답자가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순위로 선택한 의견 중에서는 “일반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설문〉

2. 울산지역에서 젠더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이 도입 또는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에 따라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내용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울산광역시 차원의 여성폭력 예방관련 조례 제정	3	1	
②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울산광역시의 중·장기적 계획 수립	3	1	
③ 여성폭력관련 관계 부처 간의 협력체계 구축		1	
④ 지방정부 차원의 서비스 연계·조정·통합을 위한 조정체계 구축			
⑤ 통합적인 정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1
⑥ 서비스 연계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평가			
⑦ 여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에 대한 시비지원 확대	1	4	1
⑧ 현재 구축되어 있는 관련 협력체계의 활성화 지원			
⑨ 여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예산 지원 확대		1	2
⑩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⑪ 여성폭력 예방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인력 POOL 형성			
⑫ 각 분야 관련 종사자에 대한 전문적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실시			
⑬ 일반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캠페인	1		4
⑭ 기타()			

- 정부 및 지자체의 젠더폭력 예방정책에 관한 의견 청취

- 울산광역시 또는 중앙정부의 젠더폭력 예방정책에 관한 자유 의견을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강력한 접근금지 정책 마련, 생애 주기상 이른 시기부터의 교육 필요, 젠더폭력예방 위한 예산 확보 및 홍보 필요, 젠더폭력 교육 시 명확한 개념이나 범위에 관한 제시 필요, 젠더폭력 예방정책을 담당할 통합지원 부서 마련, 젠더폭력 예방에서부터 피해 처리까지의 과정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필요 등이 제시되었음.

3) 소결

- 이상의 전문가 자문의견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음.
- 울산지역 젠더폭력 발생 체감도에 대해서 모든 응답자가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다’(5명) 또는 ‘과거보다 매우 증가하고 있다’(3명)를 선택하였음.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이유로는 단적으로 이전보다 상담건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제시하였음. 실제로 이는 앞선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유관 기관 상담건수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13년 여성폭력상담소 상담건수가 8,152건이었던 것이 2014년부터는 10,000건을 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 다음으로 지역적 특성으로는 대표적으로 ‘남성중심의 공업지역, 산업도시’라는 울산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젠더폭력의 특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었음.
- 다음으로 젠더폭력 예방사업 진행 현황과 관련해서는 크게 젠더폭력 예방 캠페인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학교폭력 등에 대한 예방교육이며, 사업 진행 시의 어려움으로는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홍보의 어려움, 관련 예산 부족 등이 지적되었음.
- 다음으로 유관기관 협력체계 필요여부에 대해서는 대체로 매우 필요하다는 입장(5명)이 많았으며, 필요함(2명)이 다음으로 많았으며, 전혀 필요하지 않음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1명 있었음. 참고로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에서는 협력체계가 이미 존재하며, 협력체계의 부재가 문제가 아니라 인력 부족 등 현실적 여건의 어려움에 따라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활동 시, 이러한 협력체계는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가장 우선순위로 제시된 것은 ‘관련 예방·홍보·대민교육 전략협의’로 나타났음.
- 다음으로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예방정책 현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젠더폭력 관련 대시민 인식개선 제고 및 신고체계’나 ‘지역사회 중심의 젠더폭력 예방교육’ 등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그리고 울산지역에서 젠더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도입 또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차원의 여성폭력 예방관련 조례 제정”과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울산광역시의 중·장기 계획 수립”를 1순위로 드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밖에 2순위와 3순위로는 “여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에 대한 시비확대” 및 “일반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마지막으로 젠더폭력 예방정책에 관한 자유의견을 묻는 문항에 대해,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금지 강화방안 모색, 젠더폭력 감소를 위한 생애주기별 성평등 교육 실시, 관련 조례제정 및 홍보 강화, 젠더폭력의 개념 및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는 교육 필요, 예방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 젠더폭력 예방정책을 총괄하는 통합지원 부서 마련, 젠더폭력 예방 관련 인프라 및 거버넌스 구축 등이 제시되었음.
- 이상의 전문가 의견을 염두에 두고, 다음으로는 젠더폭력에 관한 울산시민의 인식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그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고자 함.

IV. 울산시민의 젠더폭력 인식조사 결과 분석

1)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울산광역시 시민의 젠더폭력 관련 경험 및 인식, 유관기관 및 정책에 대한 인지도 등을 파악하여, 향후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2) 조사 설계

구 분	조사설계
조사 대상	만 19세 이상 울산광역시 거주 시민
유효 표본	500표본
조사 방법	일대일 개별면접조사
조사 기간	2018년 11월 3일 ~ 11월 16일

(3) 조사 내용

구분	조사 내용
젠더폭력 발생현황	젠더폭력 인지 여부
	최근 젠더폭력 경향 체감도
	젠더폭력 경험 여부
	경험한 젠더폭력
	젠더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젠더폭력 목격 여부
	목격한 젠더폭력
	젠더폭력 목격 시 대처방법
	젠더폭력 발생 시 대처방안
젠더폭력에 관한 인식	젠더폭력에 관한 인식
	젠더폭력 처벌 수위에 대한 인식
	젠더폭력의 범위에 대한 인식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구분	조사 내용
젠더폭력 예방교육	젠더폭력 예방교육 참여 경험
	참여한 젠더폭력 예방교육 주제
	젠더폭력 예방교육 수강 경로
	젠더폭력 예방교육 후 인식 전환 여부
	향후 젠더폭력 예방교육 수강 의향
	젠더폭력 예방교육 시행 필요 주제
	젠더폭력 예방교육의 젠더폭력 예방 도움정도
젠더폭력 예방교육 적절 시기	
젠더폭력 관련 유관기관 인지도 및 정책욕구	울산지역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인지도부
	울산지역 젠더폭력 사업 인지도부
	젠더폭력 예방위해 중요한 정책

(4)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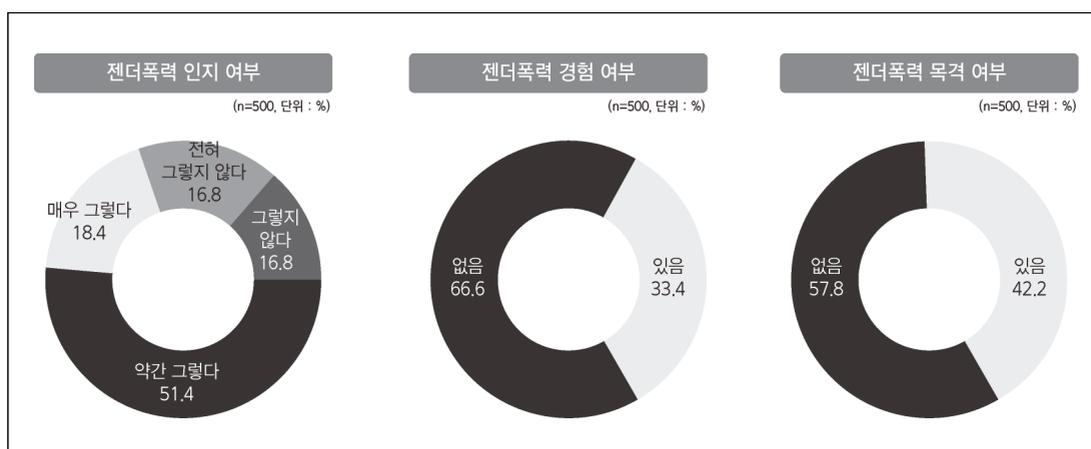
		사례수	비율(%)
전 체		(500)	100.0
성별	여성	(243)	48.6
	남성	(257)	51.4
연령	20대	(89)	17.8
	30대	(94)	18.8
	40대	(109)	21.8
	50대	(121)	24.2
	60세 이상	(87)	17.4
거주지	중구	(102)	20.4
	남구	(145)	29.0
	동구	(70)	14.0
	북구	(87)	17.4
	울주군	(96)	19.2
혼인상태	미혼	(135)	27.0
	기혼	(355)	71.0
	이혼/별거/사별	(10)	2.0

최종학력	고졸 이하	(287)	57.4
	대학교 재학	(41)	8.2
	대학교 졸업	(172)	34.4
직업	관리직	(3)	0.6
	전문직	(5)	1.0
	사무직	(84)	16.8
	영업직	(20)	4.0
	생산/기술직	(61)	12.2
	판매/서비스직	(113)	22.6
	기능직	(38)	7.6
	자영업	(76)	15.2
	공무원/교원	(4)	0.8
	농/임/축산/어업	(2)	0.4
	비영리단체/기관	(1)	0.2
	학생	(39)	7.8
	무직	(29)	5.8
	가정주부	(25)	5.0

2)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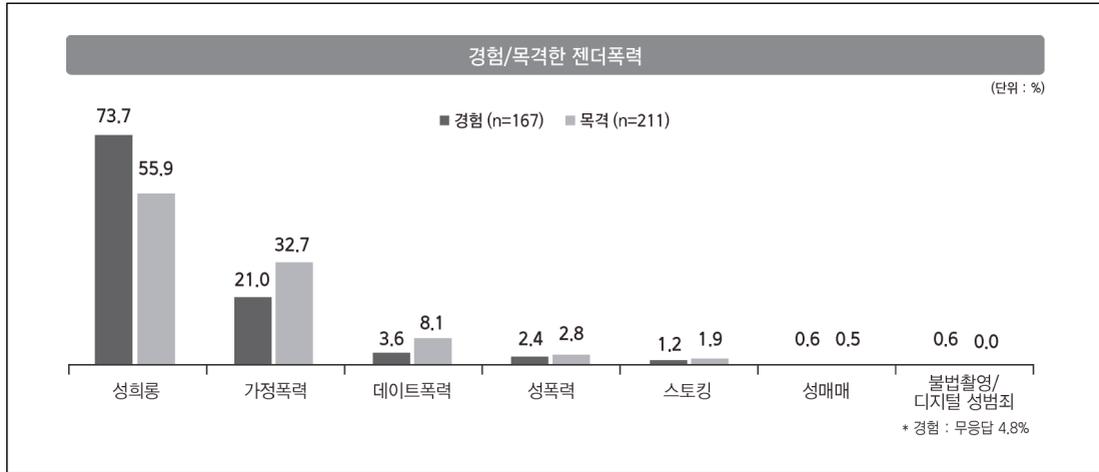
○ 젠더폭력 발생현황

〈그림 1〉 젠더폭력 인지 및 경험, 목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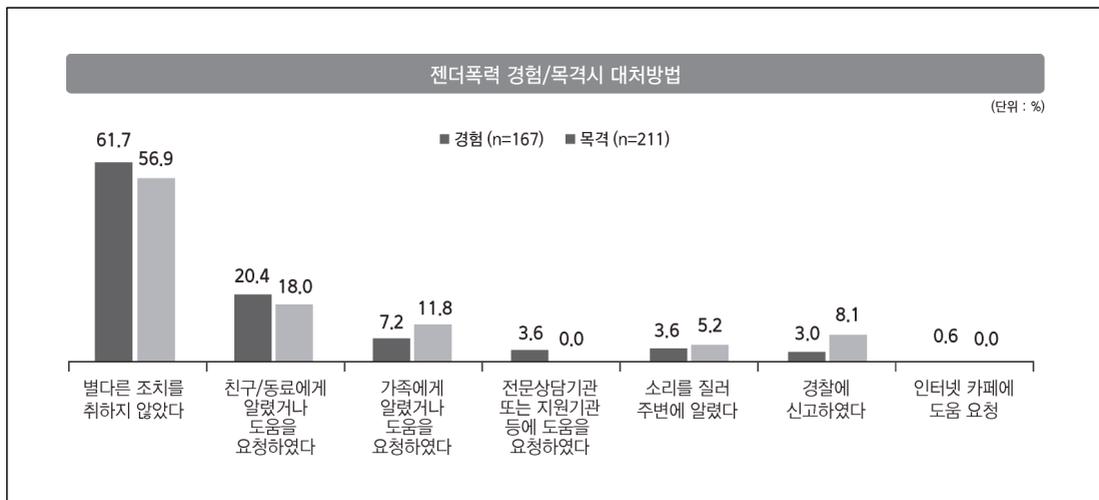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그림 2〉 경험/목격한 젠더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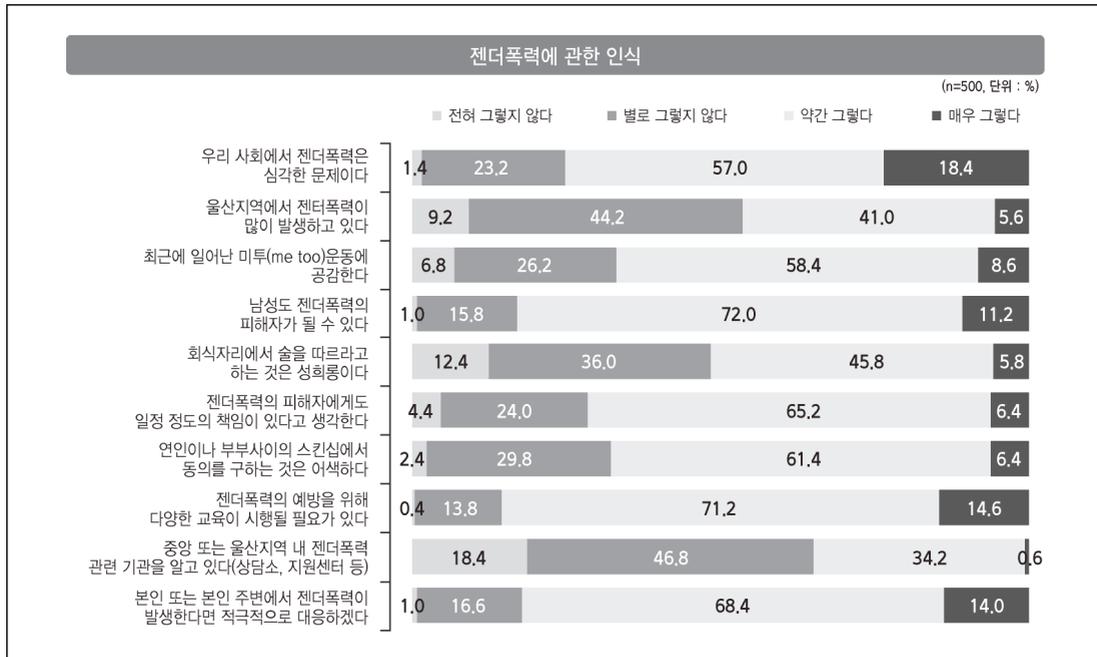


〈그림 3〉 젠더폭력 경험/목격 시 대처방법



○ 젠더폭력에 관한 인식

〈그림 4〉 젠더폭력에 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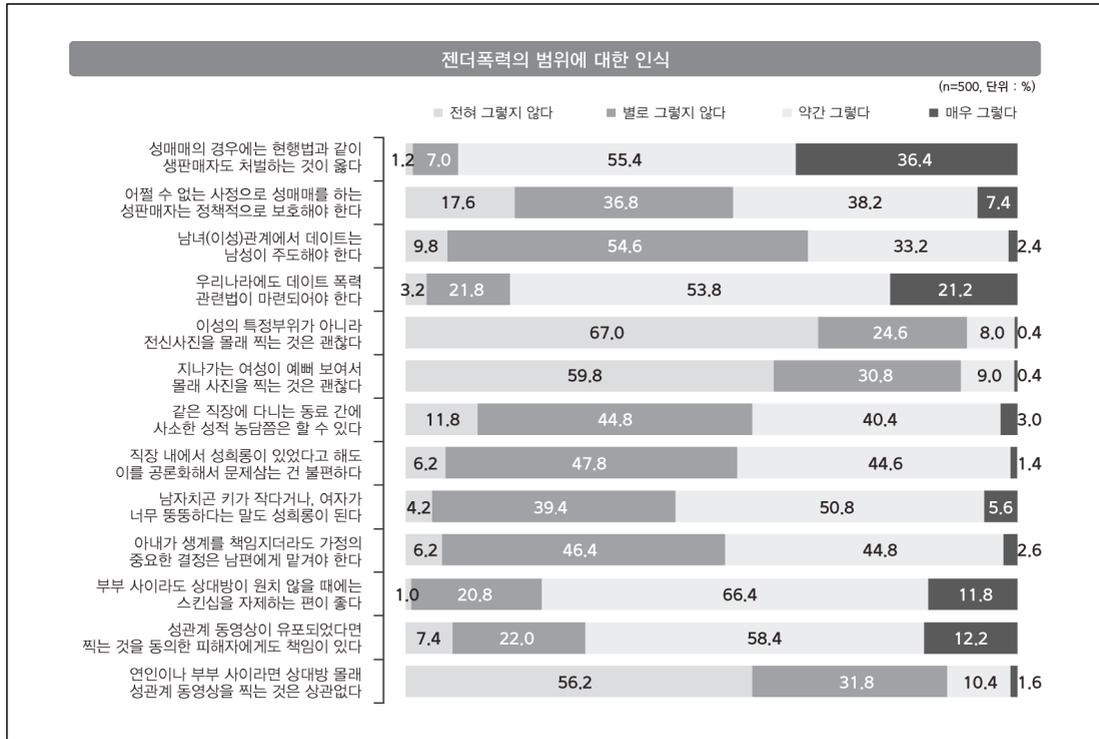


〈그림 5〉 젠더폭력 처벌 수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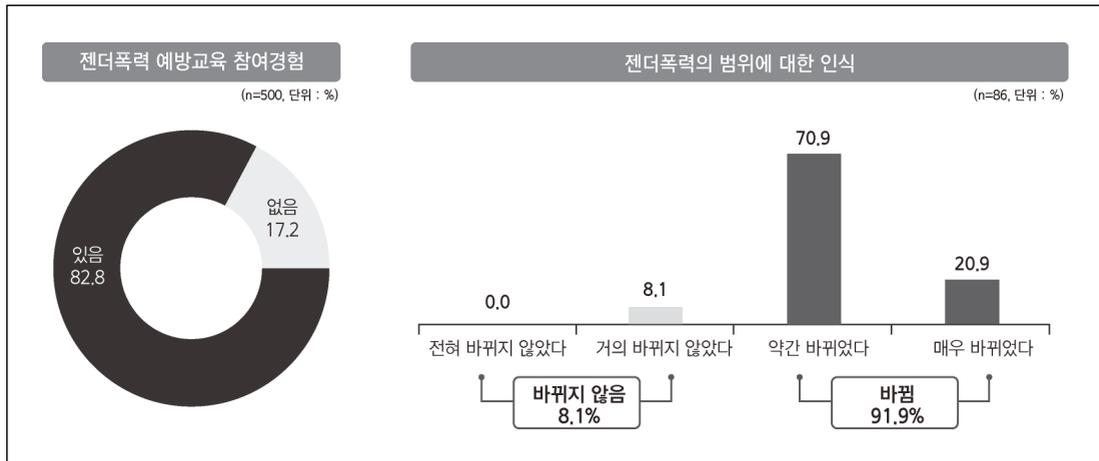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그림 6〉 젠더폭력의 범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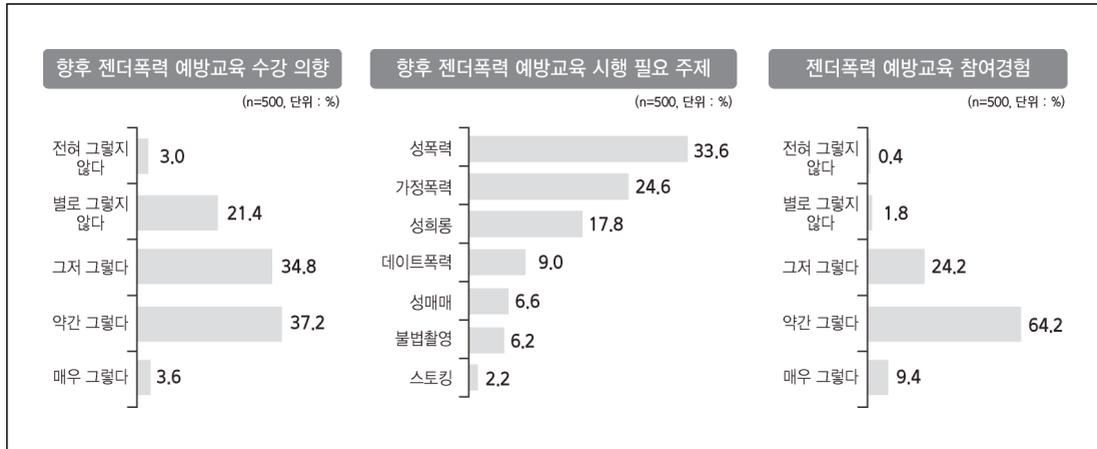


○ 젠더폭력 예방교육

〈그림 7〉 젠더폭력 예방교육 참여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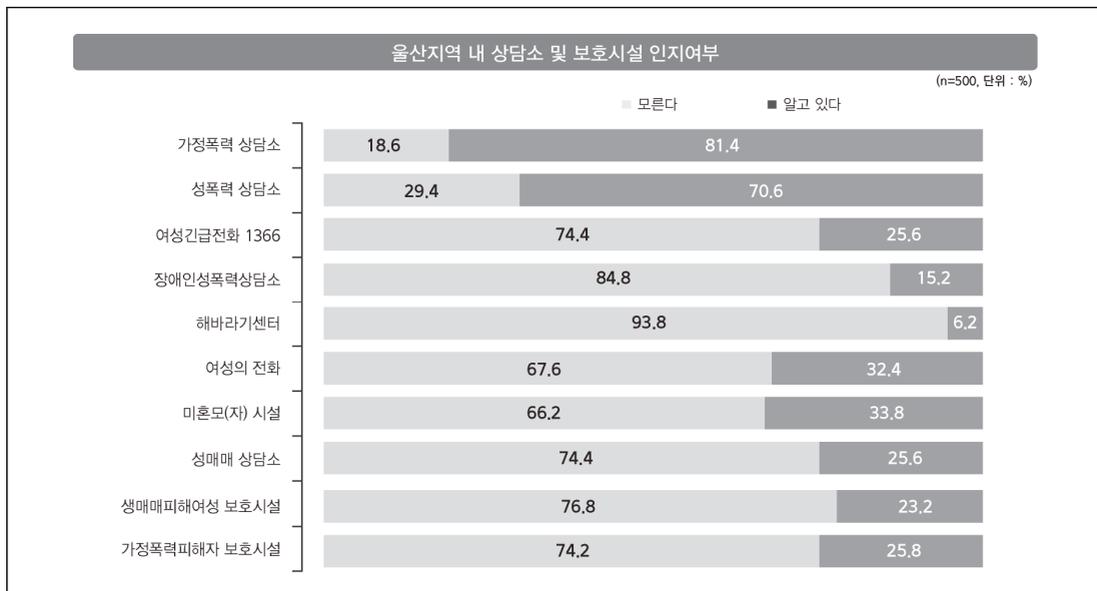


〈그림 8〉 젠더폭력 예방교육 수강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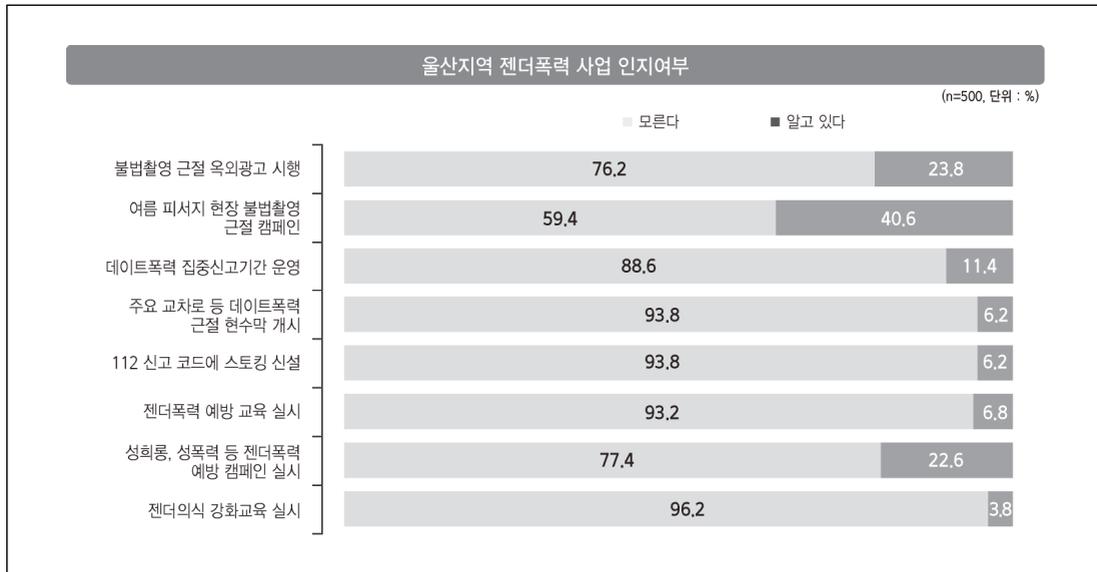


○ 젠더폭력 관련 유관기관 인지도 및 정책욕구

〈그림 9〉 울산지역의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인지여부



〈그림 10〉 울산지역 젠더폭력 사업 인지여부



3) 소결

- 이상의 설문 결과를 정리·분석하자면 다음과 같음. 먼저 젠더폭력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64.8%였으며, 특히 20대 및 미혼의 인지율이 높았음. 이는 젊은 층의 젠더폭력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리고 최근 젠더폭력 경향 체감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다’(35.2%)라는 응답이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다’(18.0%)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나, ‘과거와 비교하여 특별한 변화는 없다’(46.8%)고 느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음. 이러한 응답을 통하여 울산시민의 젠더폭력에 대한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젠더폭력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3.4%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여성의 경험율은 44.0%로 남성(23.3%)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응답자가 경험한 젠더폭력의 경험율은 ‘성희롱’이 7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희롱과 가정폭력(21.0%)을 경험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90% 이상을 차지하였음. 특히 성희롱에 대한 응답은 20대가 84.4%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는 성희롱의 실제 경험 유무와도 관계가 있겠으나, 연령이 낮을수록 성희롱에 대한 감수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음. 한편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가정폭력'을 경험한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음. 특히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가정폭력'을 경험하였다고 답한 응답자가 64.0%에 이르러 상당히 높은 비율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 밖에도 응답자 중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90.9%가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여, 당해 직종의 성희롱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젠더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7%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하였고, 특히 여성(57.0%)에 비해 남성(70.0%)의 비율이 더 높았음. 대신 남성의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응답이 6.7%로 여성(0.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남성이나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 여겨짐. 즉, 여성과 남성이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을 고려할 때, 남성은 이러한 문제에 크게 대응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큰 일이 아닌 한 참고 넘겨야 한다거나, 여성이 젠더폭력을 겪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므로 경찰 등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된다는 식의 편견이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임.
- 그리고 타인의 젠더폭력 상황을 목격한 경우가 있는가라는 설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경험하였다는 응답(33.4%)보다 높은 42.2%로 나타났음. 이 경우에도 여성의 목격 비율(46.1%)이 남성(38.5%)보다 높았으며, 20대가 52.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목격 경험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본인의 경험에 대한 응답과 동일하게 '성희롱'(55.9%)이었으나, 그 비율은 본인의 경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오히려 목격한 젠더폭력 중에는 가정폭력도 32.7%로 상당히 높았으며, 데이트폭력도 8.1%에 달했음. 특히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률은 50대 51.3%, 60대 63.6%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였음. 이는 상술한 젠더폭력 경험 비율과 함께 고려할 때, 울산지역의 가정폭력 발생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수치라 할 수 있음. 또한 대학교 재학 중의 학생 중 '데이트 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26.7%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냈음. 이는 젊은 층의 성의식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언론 등을 통해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도 높고, 성인지 감수성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으나 제대로 된 성평등 의식이 자리 잡지 않아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지는 데이트 폭력 등은 여전히 상당한 수치를 보이는 것이라 여겨짐.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 주변에서 젠더폭력을 목격했을 때의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본인이 젠더폭력을 경험했을 때보다 비율이 낮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56.9%)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만약 본인 또는 주변에 젠더폭력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설문에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응답이 53.2%로 가장 높았음. 젠더폭력의 대처방안에 대한 세 가지 설문을 두고 다음과 같은 분석도 가능함. 즉, 이러한 응답의 차이는 이전 상황에서의 본인의 대처방식에 대한 반성이나 후회에 따른 것이거나, 이전 경험에 의해 젠더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더욱 느끼게 된 경우, 또는 가상으로는 젠더폭력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 옳다고는 느끼나, 실제 상황에서는 공론화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도 있음.
- 다음으로 젠더폭력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먼저 ‘우리 사회에서 젠더폭력은 심각한 문제이다’ 항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4%(매우 그렇다: 18.4%+약간 그렇다:57.0%)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앞선 젠더폭력의 체감도 문항과 비교할 때, 젠더폭력이 이전보다 많이 늘고 있다고는 인식하지 않으나 젠더폭력이 갖는 심각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수긍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울산지역에서 젠더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항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46.6%(매우 그렇다: 5.6%+약간 그렇다:41.0%)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것을 고려할 때, 응답자는 울산지역에서의 젠더폭력 체감도를 낮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한편으로는 울산지역을 안전하게 느낀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울산지역 내에 젠더의식 또는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젠더폭력의 발생을 체감하지 못하거나 또는 공론화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이라 볼 여지도 있음.
- 최근에 일어난 미투 운동에 대한 공감에 관해서는, ‘그렇다’는 67.0%(매우 그렇다:8.6%+약간 그렇다:58.4%), ‘그렇지 않다’는 33.0%(전혀 그렇지 않다:6.8%+별로 그렇지 않다:26.2%)로 조사되었음. 그 중 여성의 비율은 76.1%로 높았으나 남성은 58.4%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여성이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에 대한 공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성도 젠더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설문에 대해서는 여성(86.0%)은 물론, 남성도 80.5%로 매우 높은 비율로 긍정하고 있음. 이는 젠더폭력이나 피해자 기준과 같이 객관적인 판단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성들도 높은 비율로 수긍하고 있으나, 젠더폭력의 발생률이나 미투운동과

같이 여성이 피해자로 보여지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전자에 비해 덜 공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아직 성인지 감수성이 제대로 자리잡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한편 '젠더폭력의 피해자에게도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항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6%(매우 그렇다:6.4%+약간 그렇다:65.2%)가 '그렇다'라고 응답함. 이러한 설문문의 응답을 통해서는 여전히 젠더폭력에 있어 가해자를 두둔하는 문화를 엿볼 수 있음. 젠더폭력의 성립은 어디까지나 가해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범죄의 성립판단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검토는 가해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나 지원을 위한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인식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현상은 '성관계 동영상에 유포되었다면, 찍는 것을 동의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은 70.6%(매우 그렇다:12.2% + 약간 그렇다:58.4%)로 비교적 높았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연인이나 부부사이의 스킨십에서 동의를 구하는 것은 어색하다' 항목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67.8%가 '그렇다'(매우 그렇다:6.4%+약간 그렇다:61.4%)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20대의 '그렇다' 응답 비율이 76.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50대 66.1%, 60대 이상 67.8%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라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설문문의 응답을 볼 때, 20대의 경우 높은 연령대에 비해 많은 관련 정보의 습득 등으로 인하여 젠더폭력의 심각성 등과 성인지 감수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나 인식은 좋아지고 있으나, 실제 상황에서는 이러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 어려운 것으로 여겨짐. 이러한 20대의 특성은 젠더폭력의 범위에 대한 인식 설문인 '남녀(이성) 관계에서 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라는 설문에서 '그렇다'라는 응답이 43.8%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그리고 젠더폭력 예방이나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중요한 정보인 '중앙 또는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관련기관을 알고 있다'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다'가 65.2%(전혀 그렇지 않다:18.4%+별로 그렇지 않다:46.8%)로 조사되어 '그렇다' 34.8%(매우 그렇다:0.6%+약간 그렇다:34.2%)에 비해 높은 응답을 보임. 또한 젠더폭력을 경험한 적(34.7%)이 있거나 또는 젠더폭력을 목격한 적(37.4%)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에도 젠더폭력 관련기관에 대한 인식이 낮

은 편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젠더폭력 관련기관 등 젠더폭력 대응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이나 홍보 등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여겨짐.

- 다음으로 젠더폭력 처벌 수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먼저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용인될 수 없으나,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가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남. 반면에 ‘가정폭력’에 대해 ‘용인될 수 없고,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가 81.0%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임. 이와 관련해서는 앞선 설문 등에서 가정폭력이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50대 및 60대 이상에서 가정폭력이지만 상황에 따라 용인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3.3%, 2.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높은 연령층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그 밖에도 스토킹, 불법촬영, 데이트폭력 등과 같은 신종 젠더폭력 유형에 대해서도 대체로 80%를 넘는 응답자가 ‘용인될 수 없고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라고 응답하였음. 특히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이성의 특정부위가 아니라, 전신사진을 몰래 찍는 것은 괜찮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91.6%(전혀 그렇지 않다:67.0% + 별로 그렇지 않다:24.6%)로 매우 높았다는 점, ‘지나가는 여성이 예뻐 보여서 몰래 사진을 찍는 것은 괜찮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90.6%(전혀 그렇지 않다:59.8% + 별로 그렇지 않다:30.8%)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감수성은 높은 것으로 보임. 반면에 디지털 성범죄는 ‘용인될 수 없고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라는 응답이 높긴 했지만, 그 비율로는 79.2%로 타 신종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음. 더하여 타 신종 유형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용인될 수 있다’를 선택한 응답률이 매우 낮았으나,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서는 ‘상황에 따라 용인될 수 있다’를 선택한 응답률이 7.0%를 차지해, 타 유형에 비해 이에 관한 범죄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젠더폭력 유형 중에서 ‘용인될 수 없고,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성매매’가 93.4%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음. 또한 이는 젠더폭력의 범위에 대한 인식 설문 중, “성매매의 경우에는 현행법과 같이 성판매자도 처벌하는 것이 옳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91.8%(매우 그렇다:36.4% + 약간 그렇다:55.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성매매를 하는 성판매자는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이 45.6%(매우 그렇다:7.4% + 약간

그렇다: 38.2%)로 절반을 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검토되어야 함. 즉, 앞선 전문가 설문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성매매는 다른 젠더폭력과 달리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크다는 점이 드러나는 결과이며, 특히 다른 젠더폭력의 예방이나 지원에 대한 교육이나 인식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철저히 성매매에 관한 교육이나 인식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함. 그러나 울산지역의 특성상 성매매는 성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앞선 젠더폭력의 경험이나 목격 여부에 관한 설문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인 ‘성희롱’에 대한 설문에서는 성희롱에 대한 감수성이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즉,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 간에 사소한 성적 농담쯤은 할 수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은 43.4%(매우 그렇다:3.0% + 약간 그렇다:40.4%)로 나타났으며,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있었다고 해도, 이를 공론화해서 문제삼는 건 불편하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이 46.0%(매우 그렇다:1.4% + 약간 그렇다:44.6%)로 나타나 성희롱이 갖는 권력을 바탕으로 한 차별이나 폭력성 등 제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짐. 또한 ‘남자치곤 키가 작다거나, 여자가 너무 뚱뚱하다는 말도 성희롱이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은 56.4%(매우 그렇다:5.6% + 약간 그렇다:50.8%)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남성이나 여성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한 발언 역시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제대로 자리잡혀 있다고는 보기 어려움.
- 다음으로 젠더폭력 예방교육 참여 경험에 대한 설문에서, 참여경험이 ‘있음’이라는 응답은 17.2%로 매우 저조한 비율을 보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참여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남성이 21.0%로 여성(13.2%)보다 높다는 점, 연령별로는 30대가 23.4%로 가장 높다는 점, 직업별로는 사무직(45.2%) 및 전문직(40.0%)의 젠더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자영업(3.9%)이나 가정주부(4.0%)의 참여율은 매우 저조하며, 학생 역시도 7.7%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는 점 등으로 고려할 때 울산지역에서 젠더폭력 예방교육은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대체로 직업교육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 이는 젠더폭력 예방교육의 수강 경로에 대한 설문에서 ‘직장 교육’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79.1%로 나타났다는 점에 비추어서도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음. 그리고 참고로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중 75.6%가 성희롱/성폭력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력예방(5.8%)교육이나 가정폭력(4.7%)교육 등을 이수한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 한편 젠더폭력 예방교육 참여 이후, 인식변화에 대해 살펴본 결과, ‘바뀐’에 해당하는 응답은 91.9%(매우 바뀌었다:20.9% + 약간 바뀌었다:70.9%)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20대의 경우 ‘바뀐’이라는 응답이 100.0%로 나타난 반면, 60세 이상은 66.7%로 타 연령대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6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젠더폭력 예방교육 후, 본인의 인식 전환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참고로, 젠더폭력 예방교육이 젠더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73.6%(매우 그렇다:9.4% + 약간 그렇다:64.2%)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젠더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에 대한 기대도 높은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반면에 향후 젠더폭력 예방교육 수강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는 응답은 40.8%(매우 그렇다:3.6% + 약간 그렇다:37.2%)로 조사되었음. 이러한 설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한 응답자들은 당해 교육의 효과에 대해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실제로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수강 의욕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음. 더하여 울산지역에서 진행된 젠더폭력 관련 사업에 대한 인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젠더폭력 예방교육(6.8%), 젠더의식 강화교육(3.8%) 실시 등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할 때, 젠더폭력 예방교육의 내실도 중요하지만,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수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젠더폭력 관련 유관기관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가정폭력 상담소’가 81.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성폭력 상담소’(70.6%), ‘미혼모(자) 시설’(33.8%), ‘여성의 전화’(32.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다만 가정폭력상담소 및 성폭력 상담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유관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40% 이하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울산지역의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이들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유관기관은 젠더폭력의 예방이나 지원 등과 같은 기본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물론, 이들 기관의 활성화는 곧 젠더폭력에 대한 울산지역의 대응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며, 나아가 이들 기관이 갖는 상징성도 크다고 하겠음.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이 지역 내에 바로 자리 잡고, 또한 울산지역에서 더욱 많은 젠더폭력 피해자가 이들 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마지막으로 울산지역 내에서 진행된 젠더폭력 관련 사업에 대한 인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여름

피서지 현장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에 대한 인지 비율이 40.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불법촬영 근절 옥외광고 시행' 23.8%, '성희롱, 성폭력 등 젠더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22.6%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에 데이트 폭력 근절 현수막 게시(6.2%) 사업이나 젠더폭력 예방교육(6.8%), 젠더의식 강화교육(3.8%) 실시 등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즉,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특정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나 시각적 효과가 높은 사업 등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울산시민의 관심 및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또한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은 젠더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묻는 설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즉, 젠더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정책을 묻는 설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중 27.8%가 'TV/인터넷 등을 활용한 젠더폭력 예방 홍보활동 강화'를 들었으며, 23.2%가 '경찰 순찰 등 방법활동 강화'를, 14.0%가 '주기적인 젠더폭력 예방캠페인의 실시'를 들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이상에서는 젠더폭력에 관한 울산시민 인식조사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시사점에 관해 확인하였으며, 지금까지의 검토 사항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결론 및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V.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본 보고서는 젠더폭력에 대한 울산시민의 감수성을 제고하고,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울산을 구현하기 위해, 젠더폭력의 정의 및 유형에 관한 검토,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발생현황 및 관련 유관기관 상담현황 제시, 젠더폭력 관련 울산시민 인식 조사,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울산지역 젠더폭력 현황 및 특성에 맞춘 예방대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에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2장에서는 젠더폭력에 대한 기본검토로서 젠더폭력의 정의 및 관련법에 따른 젠더폭력의 유형, 울산지역 등 젠더폭력 발생현황,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관련 상담현황 등을 제시하였고, 제3장에서는 울산지역에서 젠더폭력 예방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울산광역시 상담소·시설협의회 소속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발생현황 및 특성, 마련되어야 할 젠더폭력 관련 정책 등에 관해 확인하였음. 그리고 제4장에서는 젠더폭력에 대한 울산시민의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울산시민의 관련 특성, 젠더폭력 발생현황, 젠더폭력 예방교육 수강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음.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를 결론을 제시하고자 함. 결론은 위의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울산광역시의 젠더폭력 관련 특성 및 문제점, 울산광역시의 특성에 맞춘 젠더폭력 예방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의 장애요인, 마지막으로 젠더폭력에 대한 울산시민의 인식 실태에 관한 검토 순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자 함. 그리고 이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울산광역시에서 추진되어야 할 몇 가지 정책과제에 대해 제언하고자 함.

(1) 젠더폭력 위험요인으로서 울산지역의 특성

- 최근 미투 운동 등으로 우리 사회에서 젠더폭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반면, 울산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그렇게 많지 않았음. 그러나 젠더폭력 관련 유관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발생 체감도는 이전보다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젠더폭력 관련 상담건수 및 현황이라 하겠음.

- 이와 같이 체감되는 다른 요인으로는 젠더폭력에 대한 젊은층의 인식이 많이 변화하여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 또는 인터넷 등의 발달로 성매매 유형 등이 더욱 다양화 되었다는 것, 그 밖에 우리 사회의 성평등 의식 및 인권 의식 부족 등과 같은 일반적인 요인도 그 원인이라 하겠으나, 울산지역의 젠더폭력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은 울산지역이 안고있는 지역적 특성에 있다고 하겠음.
- 즉, 울산지역은 한국을 대표하는 공업도시이자 산업도시임. 이에 따라 울산은 타 시·시도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남성이 경제력을 쥐고 있는 가정이 많음. 이에 따라 젠더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가정폭력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여성의 경제적 독립의 어려움 때문에 가정 내 폭력을 견디거나, 남편의 직장을 따라 이주한 여성의 경우에는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해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 나아가 우리 지역에는 회사나 공장 등이 다수 밀집해 있어 업무상 접대문화가 발달되어 있다는 점도 성매매 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임. 뿐만 아니라 남성 위주의 직장 구조는 직장 내 권력관계가 성적차별 등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성희롱의 발생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또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울산시민 인식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울산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젠더폭력의 주된 유형을 성희롱과 가정폭력이라고 전제한다면, 위의 요인이 울산지역의 젠더폭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에 더욱 무게를 실을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젠더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젠더폭력에 대한 강한 제재나 개별적인 대처방안의 강구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울산시민의 인권이나 성평등, 젠더의식의 강화,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라는 아주 기본적인이고 근본적인 정책의 마련일 것임. 그렇다면 이러한 근본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 그 이전에 이러한 울산시민의 인식 변화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 마련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요인에 관해 검토해 보기로 함.

(2)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의 장애요인

- 젠더폭력은 성적 차별 또는 여성이나 남성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하는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

하며, 사람이라면 누구나 젠더폭력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음. 그러한 의미에서 젠더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은 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울산 시민의 성평등 의식이나 불가침 인권, 젠더폭력 등에 대한 감수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 하겠음.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젠더폭력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나 유형도 정립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반시민은 물론 정책마련이나 관련 사업 등의 추진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이 구비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는 점임.

- 예를 들어, 새로운 젠더폭력의 유형에 대하여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 등과 같은 용어가 쉽게 활용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유형은 모두 범죄로 처벌되는 영역이며, 적어도 불법이나 범죄와 같은 용어를 활용하지 않은 채 이러한 용어 등이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면 이들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릴 수 있음.
-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이른바 관계기반범죄에 대한 판례의 태도나 해석의 방향은 우리사회 내에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기 이전 수준의 이해를 담고 있으며, 이는 개개의 범죄별로 그 해석방향 등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짐.
- 그리고 성희롱과 같이 젠더폭력의 범주 안에 있는 행위 유형이면서, 동시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새로운 개념 정립을 통해 일반시민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유형에 대한 폭넓은 범위 설정을 통해 젠더폭력에 대한 일반시민의 인식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와 같이 젠더폭력의 예방을 위한 인식의 전환은 일반시민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를 필요로 하는 구조적인 문제임. 그런데 현재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예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유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의 예산부족, 협력체계 미구축 또는 비활성화, 홍보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나아가 울산지역에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을 담당할 통합지원부서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임. 이러한 점이 울산지역의 특성에 맞춘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을 저해하는 두 번째 장애요인이라 하겠음.
- 결국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울산시민들로 하여금 젠더나 젠더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울산지역에서 젠더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하겠음.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에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 이에 대한 검토에 앞서, 마지막으로 울산시민의 인식조사에서 나타난 젠더폭력에 관한 울산시민의 인식 특성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정책제언에서 이러한 과제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함.

(3) 젠더폭력에 관한 울산시민의 인식 특성

- 첫째, 전문가 자문의견과는 달리 설문조사의 결과, 울산시민의 느끼는 젠더폭력에 대한 체감도는 최근의 미투운동 이전 등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다만, 이는 위에서 제시한 울산지역의 특유한 분위기에 따른 것이라 여겨지며, 동시에 주로 발생하는 젠더폭력 유형이 성희롱 등과 같이 제대로 된 젠더의식을 바탕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사소하게 치부될 수 있는 행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둘째, 우리 사회의 일반적 특성이라고도 하겠으나, 연령이 낮을수록 젠더폭력에 대한 문제의식도 높고, 감수성도 높으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에 대한 감수성은 부족한 상황임.
- 셋째, 위의 연령과 관련하여 높은 연령대에서 가장 문제되는 점은 가정폭력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편임과 동시에 가정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낮아 이를 특별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응답자도 있다는 점임.
- 넷째, 한편 젊은 연령층의 경우에는 인터넷 등을 통한 빠른 정보의 습득에 따라 젠더의식이나 젠더폭력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는 높은 것으로 보이나, 최종 학력별 분류에서 대학교 재학 중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데이트 폭력 목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연인 간 스킨십에서의 동의 문제, 젠더폭력의 발생 체감도나 미투 운동에 대한 공감 등에 대한 항목에서는 아직까지 남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이해와는 실질적인 이해는 아직도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섯째, 젠더폭력 경험 상황 또는 목격 상황 및 가상 상황에서 각각의 대처방법에 대한 설문을 통해 볼 때, 남성과 여성에 대한 무의식적인 편견이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고 있다고 여겨짐. 즉, 실제로는 경찰 등과 같이 공권력의 도움을 받고 싶거나 도움을 요청하고 싶고, 젠더폭력 상황을 공론화하고 싶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남자다움이라는 편견 때문에 쉽사리 이러한 상황을 공론화하기 어려울 수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젠더폭력에 처한 그 자체를 공론화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힘든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여섯째, 젠더폭력의 피해자에게도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다거나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었다면 찍는 것을 동의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설문에 대해 긍정하는 응답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자리잡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젠더폭력 유형 중에서도 이른바 특수한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는 성매매에 관해, 이를 젠더폭력으로 보지 않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반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점 역시도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여겨짐.
- 일곱째, 실제 젠더폭력을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젠더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 경우,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젠더폭력 관련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울산시민의 인지도가 매우 낮았음.
- 여덟째, 성희롱에 관한 여러 설문 결과를 분석해 볼 때, 성희롱을 사소한 문제로 여기거나, 사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등 성희롱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짐.
- 아홉째, 울산지역에서 이루어진 젠더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드물었고, 특히 대부분의 교육 경험이 직장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자영업자나 학생 등은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젠더폭력 예방교육의 효과는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며, 젠더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에도 공감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욕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젠더폭력 예방교육 외에 젠더폭력 예방 관련사업 중에서는 미디어를 이용한 광고나 캠페인 등 집중적이고 시각적인 효과가 큰 사업을 많이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에 대한 호응이 큰 것으로 보임.

2) 정책제언

-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울산광역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한다면, ① 관련 조례의 제정, ② 젠더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 및 활성화, ③ 유관기관 홍보 및 담당자의 처우 개선, ④ 신종 젠더폭력 유형에 대한 적극적 사업추진, ⑤ 유관기관 협력체계 등 구축 및 활성화, ⑥ 실무 담당자의 인식 개선 등을 들 수 있음.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방법	7
3. 기대효과	10

II. 젠더폭력에 관한 기본 검토

1. 정의와 유형	13
(1) 젠더폭력의 정의	13
(2) 젠더폭력의 유형	15
2. 발생현황 및 상담현황	24
(1) 전국 성폭력 범죄 발생현황	24
(2) 울산지역 젠더폭력 발생 및 검거 현황	28
(3) 울산지역 젠더폭력 유관기관 이용현황	58
3. 소결	63

III. 지역전문가 자문 결과 분석

1. 조사 개요	69
2. 조사 결과	70
(1) 울산지역 내 젠더폭력 발생 현황 및 특성	70
(2) 젠더폭력 관련 사업 및 교육 추진 현황	74
(3)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현황 및 필요여부	76
(4) 울산지역 젠더폭력 예방 관련정책 활성화	79
3. 소결	83

IV. 울산시민의 젠더폭력 인식조사 결과 분석

1. 조사 개요	87
(1) 조사 목적	87
(2) 조사 설계	87
(3) 조사 내용	88
(4) 응답자 특성	89
2. 조사 결과	90
(1) 젠더폭력 발생현황	90
(2) 젠더폭력에 관한 인식	100
(3) 젠더폭력 예방교육	134
(4) 젠더폭력 관련 유관기관 인지도 및 정책욕구	142
3. 소결	163

V.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173
(1) 젠더폭력 위험요인으로써 울산지역의 특성	174
(2)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의 장애요인	175
(3) 젠더폭력에 관한 울산시민의 인식 특성	176
2. 정책제언	177

〈참고문헌〉	181
--------------	-----

부록 1. 관련기관 대상 설문지	187
-------------------------	-----

부록 2. 협의회 대상 설문지	188
------------------------	-----

부록 3. 시민 대상 설문지	193
-----------------------	-----

표목차

〈표II-1〉 성폭력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2007년~2016년)	25
〈표II-2〉 성폭력 범죄의 유형별 발생건수 추이(2007년~2016년)	26
〈표II-3〉 강간범죄 발생현황 및 검거현황(2013~2016)	29
〈표II-4〉 유사강간범죄 발생현황 및 검거현황(2013~2016)	34
〈표II-5〉 강제추행 발생현황 및 검거현황(2013~2016)	39
〈표II-6〉 기타 강간·강제추행 관련 범죄 발생현황 및 검거현황(2013~2016)	44
〈표II-7〉 성폭속범죄 발생현황 및 검거현황(2013~2016)	49
〈표II-8〉 관련 특별법 위반 범죄 발생현황 및 검거현황(2013~2016)	53
〈표II-9〉 여성폭력상담소 상담건수(2013~2016)	58
〈표II-10〉 여성폭력상담소 이용 피해자지원내역(2013~2016)	59
〈표II-11〉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이용현황(2013~2016)	60
〈표II-12〉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이용현황(2013~2016)	61
〈표II-13〉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이용현황(2013~2016)	62
〈표III-1〉 조사설계 및 항목	69
〈표IV-1〉 조사설계	87
〈표IV-2〉 조사 내용	88
〈표IV-3〉 응답자 특성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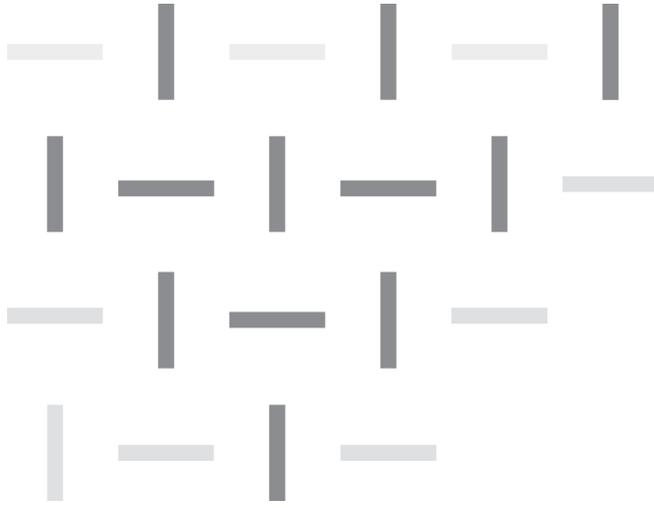
그림목차

〈그림 1〉 젠더폭력 인지 및 경험, 목격 여부	xix
〈그림 2〉 경험/목격한 젠더폭력	xx
〈그림 3〉 젠더폭력 경험/목격 시 대처방법	xx
〈그림 4〉 젠더폭력에 관한 인식	xxi
〈그림 5〉 젠더폭력 처벌 수위에 대한 인식	xxi
〈그림 6〉 젠더폭력의 범위에 대한 인식	xxii
〈그림 7〉 젠더폭력 예방교육 참여경험	xxii
〈그림 8〉 젠더폭력 예방교육 수강 의향	xxiii
〈그림 9〉 울산지역 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인지도 여부	xxiii
〈그림 10〉 울산지역 젠더폭력 사업 인지도 여부	xxiv
〈그림Ⅳ-1〉 젠더폭력 인지 여부	90
〈그림Ⅳ-2〉 최근 젠더폭력 경향 체감도	91
〈그림Ⅳ-3〉 젠더폭력 경험 여부	92
〈그림Ⅳ-4〉 경험한 젠더폭력	93
〈그림Ⅳ-5〉 젠더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94
〈그림Ⅳ-6〉 젠더폭력 목격 여부	95
〈그림Ⅳ-7〉 목격한 젠더폭력	96
〈그림Ⅳ-8〉 젠더폭력 목격 시 대처방법	97
〈그림Ⅳ-9〉 젠더폭력 발생 시 대처방안	98
〈그림Ⅳ-10〉 젠더폭력에 관한 인식(요약)	100
〈그림Ⅳ-11〉 젠더폭력에 관한 인식 - 우리 사회에서 젠더폭력은 심각한 문제이다	101
〈그림Ⅳ-12〉 젠더폭력에 관한 인식 - 울산지역에서 젠더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102
〈그림Ⅳ-13〉 젠더폭력에 관한 인식 - 최근에 일어난 미투 운동에 공감한다	103
〈그림Ⅳ-14〉 젠더폭력에 관한 인식 - 남성도 젠더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104
〈그림Ⅳ-15〉 젠더폭력에 관한 인식 -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성희롱이다	105

〈그림Ⅳ-16〉 젠더폭력에 관한 인식 - 젠더폭력의 피해자에게도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106
〈그림Ⅳ-17〉 젠더폭력에 관한 인식 - 연인이나 부부사이의 스킨십에서 동의를 구하는 것은 어색하다	107
〈그림Ⅳ-18〉 젠더폭력에 관한 인식 - 젠더폭력의 예방을 위해 다양한 교육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108
〈그림Ⅳ-19〉 젠더폭력에 관한 인식 - 중앙 또는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관련기관을 알고 있다	109
〈그림Ⅳ-20〉 젠더폭력에 관한 인식 - 본인 또는 본인 주변에서 젠더폭력이 발생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110
〈그림Ⅳ-21〉 젠더폭력 처벌 수위에 대한 인식	111
〈그림Ⅳ-22〉 젠더폭력 처벌 수위에 대한 인식 - 성희롱	112
〈그림Ⅳ-23〉 젠더폭력 처벌 수위에 대한 인식 - 성폭력	113
〈그림Ⅳ-24〉 젠더폭력 처벌 수위에 대한 인식 - 가정폭력	114
〈그림Ⅳ-25〉 젠더폭력 처벌 수위에 대한 인식 - 성매매	115
〈그림Ⅳ-26〉 젠더폭력 처벌 수위에 대한 인식 - 스토킹	116
〈그림Ⅳ-27〉 젠더폭력 처벌 수위에 대한 인식 - 불법촬영	117
〈그림Ⅳ-28〉 젠더폭력 처벌 수위에 대한 인식 - 데이트폭력	118
〈그림Ⅳ-29〉 젠더폭력 처벌 수위에 대한 인식 - 디지털 성범죄	119
〈그림Ⅳ-30〉 젠더폭력의 범위에 대한 인식(요약)	120
〈그림Ⅳ-31〉 젠더폭력의 범위에 대한 인식 - 성매매의 경우에는 현행법과 같이 성판매자도 처벌하 는 것이 옳다	121
〈그림Ⅳ-32〉 젠더폭력의 범위에 대한 인식 -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성매매를 하는 성판매자는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122
〈그림Ⅳ-33〉 젠더폭력의 범위에 대한 인식 - 남녀(이성) 관계에서 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	123
〈그림Ⅳ-34〉 젠더폭력의 범위에 대한 인식 - 우리나라에도 데이트 폭력 관련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124

〈그림Ⅳ-35〉 젠더폭력의 범위에 대한 인식 - 이성의 특정부위가 아니라, 전신사진을 몰래 찍는 것은 괜찮다	125
〈그림Ⅳ-36〉 젠더폭력의 범위에 대한 인식 - 지나가는 여성이 예뻐 보여서 몰래 사진을 찍는 것은 괜찮다	126
〈그림Ⅳ-37〉 젠더폭력의 범위에 대한 인식 -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 간에 사소한 성적 농담쯤은 할 수 있다	127
〈그림Ⅳ-38〉 젠더폭력의 범위에 대한 인식 -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있었다고 해도, 이를 공론화해서 문제삼는 건 불편하다	128
〈그림Ⅳ-39〉 젠더폭력의 범위에 대한 인식 - 남자치곤 키가 작다거나, 여자가 너무 뚱뚱하다는 말도 성희롱이 된다	129
〈그림Ⅳ-40〉 젠더폭력의 범위에 대한 인식 -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더라도 가정의 중요한 결정은 남편에게 맡겨야 한다	130
〈그림Ⅳ-41〉 젠더폭력의 범위에 대한 인식 - 부부 사이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을 때에는 스킨십을 자제하는 편이 옳다	131
〈그림Ⅳ-42〉 젠더폭력의 범위에 대한 인식 -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었다면, 찍는 것을 동의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132
〈그림Ⅳ-43〉 젠더폭력의 범위에 대한 인식 - 연인이나 부부 사이라면 상대방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찍는 것은 상관없다	133
〈그림Ⅳ-44〉 젠더폭력 예방교육 참여 경험	134
〈그림Ⅳ-45〉 참여한 젠더폭력 예방교육 주제	135
〈그림Ⅳ-46〉 젠더폭력 예방교육 수강 경로	136
〈그림Ⅳ-47〉 젠더폭력 예방교육 후 인식 전환 여부	137
〈그림Ⅳ-48〉 향후 젠더폭력 예방교육 수강 의향	138
〈그림Ⅳ-49〉 젠더폭력 예방교육 시행 필요 주제	139
〈그림Ⅳ-50〉 젠더폭력 예방교육의 젠더폭력 예방 도움정도	140
〈그림Ⅳ-51〉 젠더폭력 예방교육 적절 시기	141
〈그림Ⅳ-52〉 울산지역 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인지여부	142
〈그림Ⅳ-53〉 울산지역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인지여부 - 가정폭력 상담소	143

〈그림Ⅳ-54〉 울산지역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인지여부 - 성폭력 상담소	144
〈그림Ⅳ-55〉 울산지역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인지여부 - 여성긴급전화 1366	145
〈그림Ⅳ-56〉 울산지역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인지여부 - 장애인성폭력상담소	146
〈그림Ⅳ-57〉 울산지역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인지여부 - 해바라기센터	147
〈그림Ⅳ-58〉 울산지역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인지여부 - 여성의 전화	148
〈그림Ⅳ-59〉 울산지역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인지여부 - 미혼모(자) 시설	149
〈그림Ⅳ-60〉 울산지역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인지여부 - 성매매 상담소	150
〈그림Ⅳ-61〉 울산지역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인지여부 - 성매매피해여성 보호시설	151
〈그림Ⅳ-62〉 울산지역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인지여부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52
〈그림Ⅳ-63〉 울산지역 젠더폭력 사업 인지여부	153
〈그림Ⅳ-64〉 울산지역 젠더폭력 사업 인지여부 - 불법촬영 근절 옥외광고 시행	154
〈그림Ⅳ-65〉 울산지역 젠더폭력 사업 인지여부 - 여름 피서지 현장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 ..	155
〈그림Ⅳ-66〉 울산지역 젠더폭력 사업 인지여부 -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운영	156
〈그림Ⅳ-67〉 울산지역 젠더폭력 사업 인지여부 - 주요 교차로 등 데이트폭력 근절 현수막 게시	157
〈그림Ⅳ-68〉 울산지역 젠더폭력 사업 인지여부 - 112 신고 코드에 스토킹 신설	158
〈그림Ⅳ-69〉 울산지역 젠더폭력 사업 인지여부 - 젠더폭력 예방 교육 실시	159
〈그림Ⅳ-70〉 울산지역 젠더폭력 사업 인지여부 - 성희롱, 성폭력 등 젠더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160
〈그림Ⅳ-71〉 울산지역 젠더폭력 사업 인지여부 - 젠더의식 강화교육 실시	161
〈그림Ⅳ-72〉 젠더폭력 예방위해 중요한 정책	162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003
2. 연구 내용 및 방법	005
3. 기대효과	010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사회에서도 그동안 젠더폭력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이나 예방 교육의 의무화 등 많은 제도적인 변화와 함께 사람들의 인식 변화 내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 왔음.
- 다만, 이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는 주로 제도나 정책의 변화가 주를 이루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젠더폭력을 나와는 관련 없는 일로 여기거나, 젠더폭력 예방이나 대응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분위기였다 할 것임.
-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미투 운동 등을 비롯한 다양한 여성 운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젠더폭력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음.
- 여성가족부의 제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대부분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느끼고 있으며, 실제로 여성의 상당수가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참고로,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82.0%(여성 88.8%, 남성 75.3%), 여성의 15.1%가 성추행이나 폭력 또는 위협적 상황을 경험하였다고 답하였음.⁸⁾
-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카메라 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젠더폭력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처가 어려움. 예를 들어, 지난 10년 동안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범죄유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006년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에는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23.9%를 차지하여 10년 동안 약 6.6배 증가하였음.⁹⁾

8) 여성가족부, 제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 2017.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는 최근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젠더폭력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욱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젠더폭력 종합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음.
- 특히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폭력 근절을 제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로 삼고, 중과제로서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다양한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중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젠더폭력에 대한 범정부적 대처는 젠더폭력의 해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와 같은 신속한 대처는 시의적절하다고 여겨짐.
- 다만, 젠더폭력은 아직까지도 그 개념이 반드시 명확하지 않다는 점, 최근에는 젠더폭력의 범주 안에 포섭할 수 있는 새로운 범죄 유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우리 사회에서 매우 오래 자리잡아온 성적 불평등이나 편견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한 대처나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음.
- 특히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여겨져 온 성폭력이나 성매매 이외에도 스토킹, 데이트 폭력,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 등 이른바 젠더폭력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으나, 이는 각 유형별로 불법의 수위가 다른 만큼 젠더폭력에 대한 처벌 일변도의 정책은 더 이상 젠더폭력의 대처 방안으로써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음.
- 나아가 성별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 차별 등을 바탕으로 한 범죄에 있어서는 개별 결과에 대한 엄벌보다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젠더에 대한 제대로 된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젠더폭력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각 지역별로 젠더폭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이나 감수성, 젠더폭력 발생현황이나 피해자 현황, 관련 정책 및 유관기관 현황 등에 관한 검토를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의의가 있음.
-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젠더폭력에 대한 울산시민의 감수성을 제고하고,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울산을 구현하기 위해, 젠더폭력의 정의 및 유형에 관한 검토,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발생현황 및 관련 유관기관 상담현황 제시, 젠더폭력 관련 울산시민 인식 조사,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울산지역 젠더폭력 현황 및 특성에 맞는 예방대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9) 대검찰청, 2016 범죄분석, 2016.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본 연구는 크게 젠더폭력 관련 문헌 및 제도의 검토,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발생 실태 및 유관기관 현황 분석, 관련 전문가 자문 및 분석을 연구의 범위로 하여,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함.
- 먼저 관련 선행연구 및 기타 정책자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검토를 통하여 젠더폭력의 개념 및 유형을 정립하고자 함. 젠더폭력의 개념은 아직 연구자들 사이에 일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그 유형도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 또한 젠더폭력은 단일 범죄유형으로 처벌되는 폭행과도 달라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젠더폭력의 개념 및 유형, 그 범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젠더폭력에 대한 논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차별을 기반으로 한 폭력이라는 정의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그 논의가 더욱 다양해졌음. 특히,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는 젠더폭력이라는 표현보다 “여성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이 더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고, 성적차별로 인한 폭력 또는 젠더기반폭력(GBV : Gender-based viole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
- 다만, 최근에는 성폭력이 오직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성만을 피해자로 상정하는 개념으로 성별을 기반으로 한 폭력을 논해도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음. 특히, 1994년 성폭력 특별법 제정 당시, 성폭력을 sexual violence로 지칭할 것인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의미에서 gender violence로 지칭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음. 그 당시의 결론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의 다수가 여성인 것은 분명하나 남성도 성적인 폭력을 경험할 수 있고, 가정폭력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볼 때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다수는 여성이지만 성별에 무관하게 연령적인 측면에서의 약자인 아동, 노인들에 대한 가정폭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폭력피해자의 범주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sexual violence로 정리되었다고 함.¹⁰⁾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라는 의미보다는 “성

10) 이성은/고은정, 서울시 여성폭력 예방지원체계 구축방안연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010, 11면.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적 차별”을 바탕으로 한 폭력행위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젠더폭력을 정의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한편, 젠더폭력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종래 현행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3분야, 즉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주된 연구대상이 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젠더폭력 내지 여성폭력 유형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음.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서도 온라인 성범죄나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에 관한 대응기반 마련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모색하고 있고, 사업장 등을 비롯한 조직 내 여성폭력 예방 및 대응장치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종래 젠더폭력의 기본 유형으로 이해되어온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와 함께 온라인 성범죄,¹¹⁾ 데이트 폭력, 스토킹, 직장 내 성희롱 등을 모두 본 연구의 연구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 구체적으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경범죄 처벌법」 등 젠더폭력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 관련 법률의 정의 규정 및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젠더폭력의 유형 및 범위를 설정하고자 함. 그 밖에도 젠더폭력 예방대책과 관련한 국·내외의 관련 정책 등도 간단히 검토하고자 함.
- 그리고 지금까지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은 주로 폭력행위에 대한 대처 강화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음. 그러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젠더폭력은 범죄와 비범죄 유형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젠더폭력에 대한 처벌강화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나 관련 예방사업의 확대, 일상생활 환경 내에서의 안전조치 강화, 젠더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서적인 프로그램 마련 등과 같은 예방대책의 마련도 매우 유의미함.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주된 검토대상으로 함.
- 다음으로,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관련 기 통계자료와 유관기관 조사를 통하여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발생실태를 분석하고, 유관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본 연구 내에서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발생 실태 및 유관기관 현황 분석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하나는 문언 그대로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발생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11)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예로 들 수 있음.

-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젠더폭력 내지 여성폭력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으로 대표되어 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제도나 지원기관, 관련 자료나 통계 등은 상당히 구축되어 있음. 그러나 젠더폭력의 일유형으로써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온라인 성범죄나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에 관해서는 개별적인 제도나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임. 이러한 유형의 경우에도 기존의 부부폭력이나 성매매 등과 같이 여성 내지 젠더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에 기반해서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서로 다른 폭력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없고, 젠더폭력 대책의 효율성 강화를 고려한다면 더욱 포괄적인 접근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¹²⁾ 따라서 온라인 성범죄나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더욱 세분화된 젠더폭력 유형에 관해 울산지역에서는 얼마나 파악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 이를 통하여, 젠더폭력 대처방안 마련에 있어서 젠더폭력 유형 및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고, 동시에 새로운 젠더폭력 유형의 대처방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현행 지원체계나 유관기관의 활용 가능성이나 대응기관 및 지원체계의 강화 필요성 등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울산지역 젠더폭력 현황에 맞춘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함.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 젠더폭력 관련 국내·외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정부간행물, 인터넷 자료, 기타 관련 정책 자료 등을 검토·분석하여 본 연구의 토대와 이론적 근거를 제시함.
- 문헌연구를 통하여 젠더폭력의 개념 및 유형을 정립하고, 본 연구주제 관련 연구 동향 및 관련 제도나 정책 등을 파악함.
- 이를 통하여, 본 연구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제도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함.

12) 최유진 외, 2016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2016, 207면 이하 참조.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2) 기 통계 정리

- 젠더폭력 발생현황에 관한 전국 통계 및 울산지역 통계를 바탕으로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발생 실태에 관한 분석을 진행함.
- 이를 위하여, 경찰청의 「범죄통계」 및 울산광역시의 자체 통계 등을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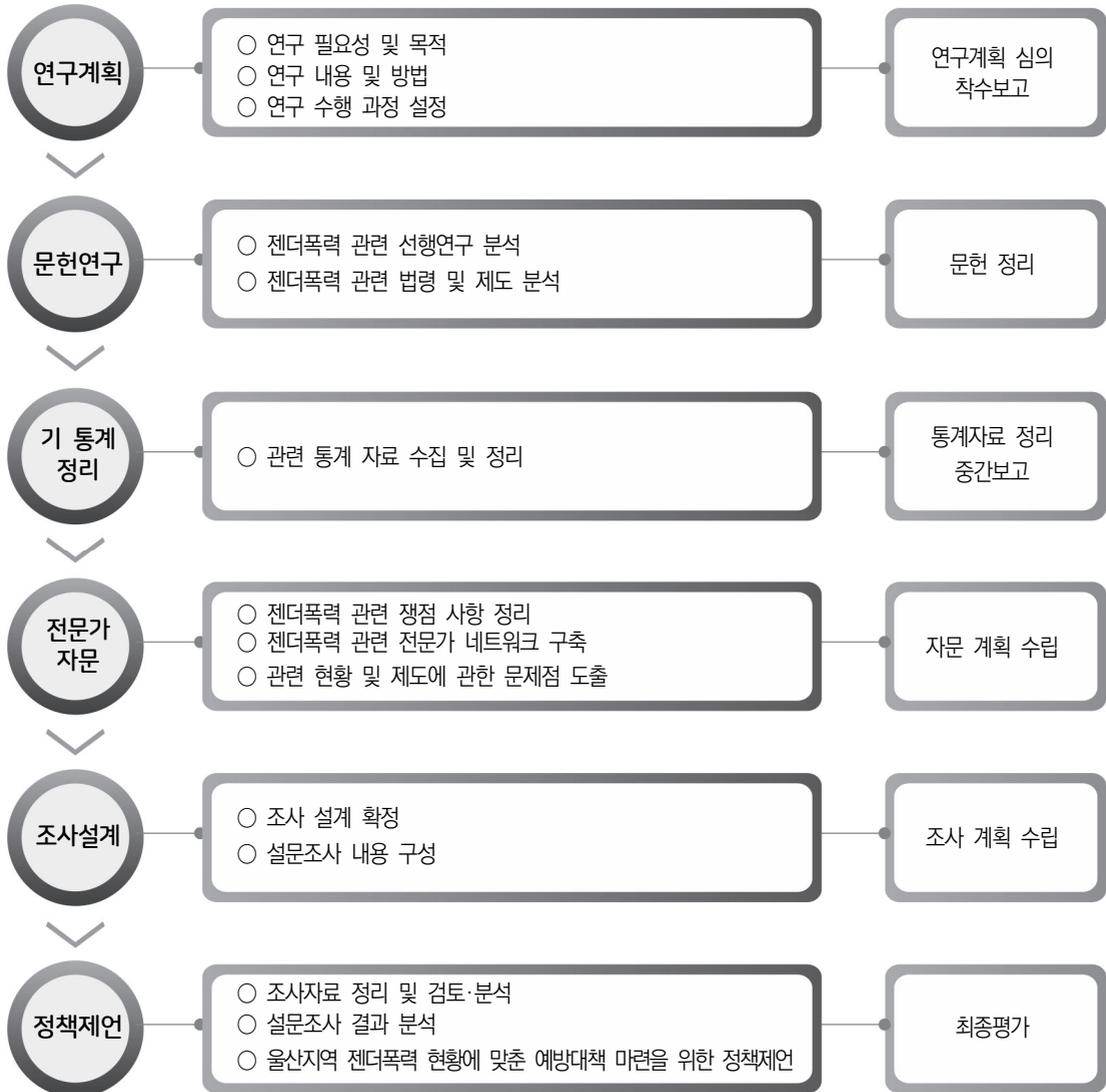
3) 시민 인식조사

- 설문조사는 만 19세 이상 울산광역시 거주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젠더폭력 관련 경험 및 인식, 젠더폭력 예방교육 등 관련 정책 인지도 등을 파악하여 젠더폭력에 대한 울산시민의 인식을 조사하여 향후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4) 전문가 자문

- 젠더폭력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자 함.
- 자문을 통하여,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발생 체감도, 예방사업 진행 현황,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필요성, 기타 의견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발생 현황과 특성,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노력 등에 관해 알아보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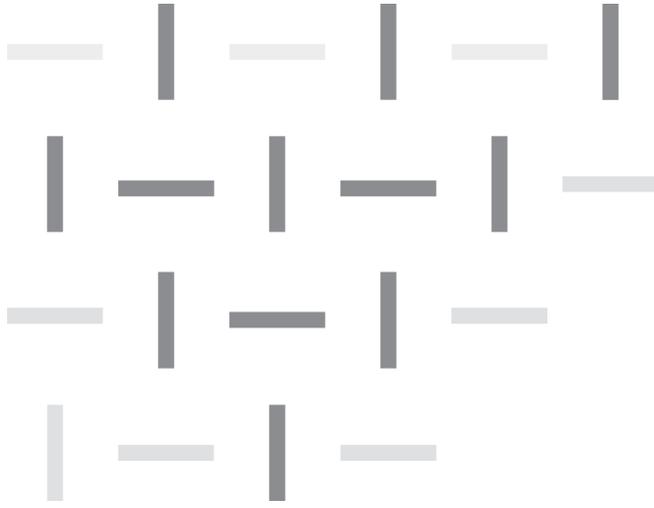
5) 연구 과정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3. 기대 효과

- 젠더폭력의 정의 및 유형, 성립범위 등을 둘러싼 논의를 정리하고, 특히 젠더폭력 예방정책 마련 시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이끌어내어, 젠더폭력 예방정책 마련의 토대를 제시하고자 함.
- 젠더폭력에 관한 울산시민의 인식조사 및 이에 관한 유관기관 전문가 자문을 동시에 진행한 자료로써, 이를 통해 젠더폭력과 관련한 울산광역시 및 울산시민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특성에 맞는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그 밖에 본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협력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향후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함.



II. 젠더폭력에 관한 기본 검토

- | | |
|----------------|-----|
| 1. 정의와 유형 | 013 |
| 2. 발생현황 및 상담현황 | 024 |
| 3. 소결 | 062 |

II 젠더폭력에 관한 기본 검토

1. 정의와 유형

1) 젠더폭력의 정의

- 본 연구를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젠더폭력의 개념 및 유형을 명확히 하는 것임. 젠더폭력의 개념은 아직 연구자들 사이에 일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그 유형도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
- 또한 젠더폭력은 단일 범죄유형으로 처벌되는 폭행과도 달라,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젠더폭력의 개념 및 유형, 그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연혁적으로 검토해 보자면, 먼저 1985년 제3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2000년을 향한 여성발전 전략’에서 처음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가 언급되었음. 그리고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처음으로 ‘여성인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음.¹³⁾
- 그 후, 1993년 12월 12일 제48차 UN총회에서 여성폭력철폐선언(Declaration on Violence against Women)이 채택되었음. 동 선언 제1조에서는 여성폭력을 “공사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혹은 심리적 손상이나 괴로움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성별에 기반한(gender-based) 폭력행위,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협박, 강제, 임의적인 자유 박탈”로 정의하고 있음.¹⁴⁾
- 즉, 젠더폭력에 대한 논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차별을 기반으로 한 폭력이라는 정의

13) 김엘림/윤덕경/박현미, 성폭력·가족폭력 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1999, 5면.

14) 김엘림/윤덕경/박현미, 20세기 여성인권법제사, 한국여성개발원, 2000, 295면.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그 논의가 더욱 다양해졌음. 특히,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는 젠더폭력이라는 표현보다 “여성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이 더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고, 성적차별로 인한 폭력 또는 젠더기반폭력(GBV : Gender-based viole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

- 여성폭력 내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용어와 성적차별에 인한 폭력 내지 젠더기반폭력은 그 의미가 약간 다르다고 하겠음. 전자가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종류의 폭력(Violence against Women)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말 그대로 성적차별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폭력(Gender-based violence)을 의미한다고 함. 다만, 두 개념은 모두 여성을 폭력의 피해자로, 남성은 폭력의 가해자로 상정하는 개념이며, 이는 성인지적 관점(gender sensitive)에서 성차별적인 사회문화적 구조에 의한 폭력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함.¹⁵⁾
- 즉, 이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젠더를 바탕으로 한 폭력은 결국 “여성”을 피해자로 하는 것이어서, 크게 본다면 UN의 여성폭력철폐선언 제1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폭력개념과 다르지 않음.
- 다만, 최근에는 성폭력이 오직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남성도 얼마든지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만을 피해자로 상정하는 개념으로 젠더폭력을 한정해도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1994년 성폭력 특별법 제정 당시, 성폭력을 sexual violence로 지칭할 것인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의미에서 gender violence로 지칭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음. 그 당시의 결론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의 다수가 여성인 것은 분명하나 남성도 성적인 폭력을 경험할 수 있고, 가정폭력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볼 때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다수는 여성이지만 성별에 무관하게 연령적인 측면에서의 약자인 아동, 노인들에 대한 가정폭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폭력피해자의 범주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sexual violence로 정리되었다고 함.¹⁶⁾
- 젠더폭력의 개념에 관해서는 더욱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라는 의미보다는 “성적 차별”을 바탕으로 한 폭력행위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하고자 함.
- 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에 대한 폭력행위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당연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고, 그 처벌규정이 존재한다면 처벌의 강약은 있겠지만 처벌의 유무는 달라질 수

15) 이성은/고은정, 서울시 여성폭력 예방지원체계 구축방안연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010, 11면 이하.

16) 이성은/고은정, 서울시 여성폭력 예방지원체계 구축방안연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010, 11면.

없음. 그러나 “성적 차별”을 바탕으로 한 폭력행위에 관한 논의라면, 주로 여성을 피해자로 하는 행위 유형에 대한 검토가 주를 이루게 되겠지만, 적어도 여성에 대한 성적인 폭력행위와 남성에게 대한 성적인 폭력행위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나아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특정성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폭력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성별의 특성에 따른 대처방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젠더폭력은 젠더를 바탕으로 한 폭력 내지 젠더기반폭력(Gender-based violence)을 토대로 함이 합당하다고 여겨짐.

- 한편, 최근의 논의에서 젠더기반폭력은 오직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님. 이를 테면, 가정폭력, 친밀한 관계 또는 그 외의 남성에게 의한 성폭력,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폭력, 강제결혼(특히 아동의 조혼), 여성할례 등 공적·사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음.¹⁷⁾
- 따라서, 정리하자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젠더폭력의 개념은 성적차별을 바탕으로 한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하며,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을 주로 다루게 될 것이나, 성적인 폭력행위라면 그 대상을 여성에 한정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2) 젠더폭력의 유형

- 젠더폭력의 범위와 유형은 관련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범죄유형과 제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에서 새로운 젠더폭력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는 온라인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성희롱 등을 바탕으로 제시함.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음.

1) 성폭력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성폭력은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음.
-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약취), 유인(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17) 발라즈 호르바트, 젠더기반폭력(Gender-based violence) 근절 및 예방에 관한 UNDP 서울정책센터의 개발경험 공유 파트너십-2017년 서울 담화(Seoul Debates)의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젠더리뷰 제45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44면.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수수)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2) 가정폭력

① 가정폭력의 정의

- 가정폭력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가정폭력행위에 있어서 말해지는 ‘가정’의 개념에 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함.

가. 가정 및 가정구성원의 정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가정 폭력 및 가정구성원에 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음. 동조 제1호에 따르면,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이 때 가정구성원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의됨.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제2호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라. 동거하는 친족

- 동법에 따르면, ‘가정’의 개념은 부부, 사실혼 부부(과거 부부 포함)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계부모 및 적모, 서모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구획되며, 여기에 동거하는 친족이 포함됨. 따라서 동법에서 칭하는 가정의 범위는 법률상 친족 중 직계존비속을 중심으로 하는 단위임.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비판적 견해도 있음.¹⁸⁾

나.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범죄의 정의

-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고, 이와는 별개로 동조 제3호에서는 ‘가정폭력범죄’를 정하고 있음.

18) 즉, 동법의 규율 대상은 부부와 직계존비속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가정의 진정한 의미인 생활공동체를 중심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며, 또한 부부와 직계존비속을 중심으로 가정을 정의한다면 가부장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보수적 가족 모형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으로, 이러한 유형의 가족형태에 부합하지 않는 동거관계 및 이에 파생하는 관계에 대한 공백이 생기게 된다는 것임(양현아, “가정폭력에 대한 비판적 성찰: 젠더폭력 개념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제 20권 1호, 한국가족법학회, 2006, 5면).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제3호

2.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학사)의 죄
 -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카. 위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② 가정폭력의 유형

- 가정폭력은 부부간의 폭력을 중심으로 하나, 그 밖에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역시도 가정폭력의 일 유형으로 볼 수 있음.¹⁹⁾ 이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폭력으로 과거에는 아내를 대상으로 하는 구타와 폭력을 주로 이르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의미가 확장되어 부부폭력 외에도 자녀폭력 및 학대, 노인폭력 및 학대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음. 다만, 본문에서는 부부를 기반으로 한 폭력에 한정해서 소개하고자 함.

19) 이하의 내용은, 조호대, “가정안전을 위한 경찰 역할 강화방안”, 한국사큐리티융합경영학회지 제6권 4호, 한국사큐리티융합경영학회, 2017, 118면.

- 부부폭력은 주체에 따라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폭력과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폭력, 그리고 서로 간에 행사하는 상호폭력으로 나누어 질 수 있고, 이러한 부부폭력의 유형은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경한 폭력, 중한 폭력), 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3) 성매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함.
- 다만, 동법에서는 성매매 행위 이외에도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성매매처벌법 제2조제1항제2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가. 성교행위
 -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① 불법촬영의 개념

○ 불법촬영 또는 도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일”을 의미하고, 이를 형사법적 관점에서 정리하면, 행위로서는 ① 촬영대상자 또는 촬영대상물 관리자의 양해를 얻지 않은 것과, ② 촬영행위가 핵심요소가 됨. 특히 불법촬영 등은 해당 행위 그 자체뿐 아니라 해당 기록물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촬영대상자에게 더욱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음. 특히 최근에는 성적인 목적으로 여성신체의 일부분을 특정하여 촬영하거나 탈의나 입욕 등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여성의 프라이버시 및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음.²⁰⁾

○ 이는 최근 10년간의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를 살펴봐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음. 예를 들어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발생비율은 지난 10년의 기간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성폭력범죄 중 온라인을 이용한 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크게 증가하였음. 구체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지난 2006년에는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 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전체 성폭력범죄 중 23.9%를 차지하는 등 그 발생률이 매우 높음.²¹⁾

②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 배상균, “도촬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 27권 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201면 이하 참조.

21) 김현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제 9권 제 2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7, 4면 이하.

- 또한 불법촬영한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역시도 처벌의 대상이 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 조의7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즉, 권한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시키는 행위는 크게 두 가지 특별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데, 먼저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촬영한 타인의 신체가 음란한 화상 및 영상에 해당될 경우, 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및 제74조에 따라 처벌됨.²²⁾
-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보호법익은 성적 결정의 자유와 성적 신체권임. 성적 신체권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적 부위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고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동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의 사용유무,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③ 동 신체의 촬영행위, ④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라는 구성요건을 필요로 하게 됨.²³⁾

22) 박혜림, 몰래카메라 범죄의 해석과 입법적 개선방안, 법과 정책 제23권 제3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7, 103면.
 23) 김영철, 조현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부위 해당여부, 「법학연구」 제 57권 제 3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155면 이하.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5) 스토킹

-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41호에서는 지속적 괴롭힘을 경범죄로 정의하고 있고, 그 정의는 아래와 같음.
- 지속적 괴롭힘
 -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 참고로 2016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스토킹 피해유형으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함’(65.6%), ‘주거지, 근무지, 학교 등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와 그 지역에 와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켜보거나 서 있음(47.3%)’, ‘전화, 편지, 컴퓨터 통신(SNS 포함) 등을 통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특정한 사진, 그림, 문자 등을 보냄(43.3%)’ 순으로 나타났음.²⁴⁾

6) 성희롱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르면,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와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에 관해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함.
-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같은 행위를 성희롱으로 제시하고 있음.

24) 박선영,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방안, 제4차 가정폭력방지 월례포럼 : 2017 가정폭력 방지정책 토론회, 한국여성진흥원, 2017, 1면 이하 참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표 1

- 육체적 행위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cf)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전화통화 포함) → cf)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컴퓨터통신, 팩스 등 이용하는 경우 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cf)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33호(과다노출)/형법 제245조(공연음란죄)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7) 데이트 폭력

- 이른바 데이트폭력은 아직 법적으로 규정된 개념이 아니며, 수사실무에서는 연인간 폭력 혹은 치정폭력 등의 용어가 사용되기도 함. 일반적으로는 ‘친밀한 관계 혹은 연애편계에 있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데이트 관계에 있는 남녀가 서로 간에 합의 없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파트너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 등으로 정의되고 있음.²⁵⁾
- 다만, 데이트 폭력 행위의 주체를 단지 연인관계에 있는 ‘미혼 남녀’로만 국한하여 보기는 어려움. 학교 내에서의 데이트 폭력, 직장 내 미혼 남녀 간에서도 발생하며, 결혼 후 이혼한 남녀 간 내지 부적절한관계에서의 기혼 남녀 사이에도 발생하는 폭력도 데이트 폭력의 일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의 개념이나 범위를 단적으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음. 따라서 이에 관해 범위의 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음.²⁶⁾

25) 김구슬, 데이트폭력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안, 이화젠더법학 제9권제3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7, 135면.
26) 데이트폭력에 관한 이하의 내용은, 변신원 외, 젠더기반 폭력의 이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7, 182면 이하 참조.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 참고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의 데이트폭력 사건 피의자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데이트폭력사건으로 형사입건 된 사람은 8,367명이었고, 2014년을 제외하면 매년 7,000명이 넘는 피의자가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되고 있다고 함. 또한 지난 5년간 경찰에 형사 입건된 전체범죄자 중 피해자와 애인관계인 경우를 따로 분류한 경찰청 범죄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살해된 총 2,038명 중 가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는 230명으로 약 11%에 이른다(고 함.²⁷⁾)
- 그리고 데이트 폭력은 개인의 사생활 간섭에서부터 욕설, 무시, 스토킹, 위협 등 언어적·정서적 폭력, 뺨때리기, 밀치기 등 신체적 폭력, 강제 키스 등 성폭력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이 자신의 핸드폰이나 이메일 등을 체크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를 의심하는 등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비속어를 남발하고, 비난, 무시, 위협 등의 태도를 보이는 것, 상대를 밀치거나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의 신체적 폭력,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강제로 하거나 완력 또는 강압적인 힘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하려는 등의 연인 간 성폭력,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등의 스토킹 행위 등까지 단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연인관계에 있을 뿐, 일반적으로 젠더폭력행위로 이해되고 있는 모든 유형의 행위가 데이트폭력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질 수 있음.
- 이상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우리 법령 상 젠더폭력의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는 범죄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등을 포함하면 그 범위와 유형은 매우 광범위함. 또한 이러한 젠더폭력 유형은 현행법에서는 형법을 비롯하여, 각각의 개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운 면도 있음.

(2) 발생현황 및 상담현황

1) 전국 성폭력 범죄 발생현황

- 2017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6년 성폭력범죄는 29,357건, 인구 10만명당 56.8건 발생하였음. 성폭력범죄의 발생비는 2007년 29.1건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60.3건으

27) 경찰청 범죄통계 참조.

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가 2016년 소폭 감소하였으나, 성폭력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95.1% 증가하였음.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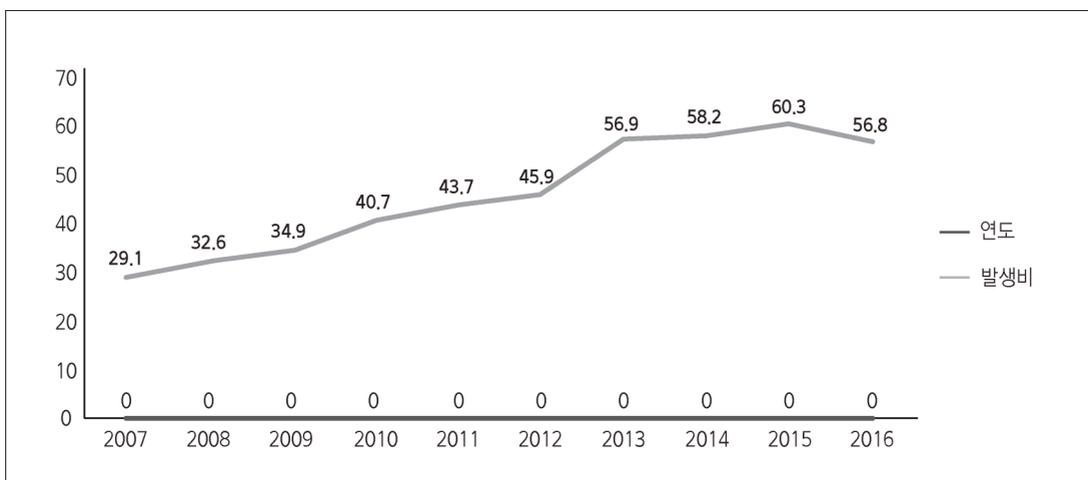
- 지난 10년간 강력범죄(흉악) 중, 살인, 강도, 방화범죄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성폭력범죄는 약 2배 증가하였기 때문에, 강력범죄(흉악) 내에서 성폭력범죄의 증가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표 II-1〉 성폭력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2007년~2016년)

(단위: 건, 발생비, %)

연도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2007	14,344	29.1	-
2008	16,129	32.6	12.0
2009	17,377	34.9	19.9
2010	20,584	40.7	39.9
2011	22,168	43.7	50.2
2012	23,365	45.9	57.7
2013	29,090	56.9	95.5
2014	29,863	58.2	100.0
2015	31,063	60.3	107.2
2016	29,357	56.8	95.1

〈그림 11〉 성폭력범죄의 발생비 추이 (2007년~2016년)



28) 이하의 내용은, 대검찰청, 2017 범죄분석 참조.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 성폭력범죄를 10개의 하위유형으로 세분하여 발생건수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강간은 2007년 18.5%를 보였고, 이후 증가하여 2009년에는 22.6%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그 이후 감소하여 2016년에는 18.4%를 보였음. 이에 비해 강제추행범죄의 구성비는 2007년 37.3%에서 증감을 반복 해오다 2016년에는 48.8%로 최고치를 기록함으로써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강간등 상해/치상범죄는 2007년 11.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에는 2.5%에 불과하였음.
- 성폭력범죄 중 지난 10년간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범죄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임.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2007년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9%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고, 특히 2012년 이후 증가폭이 커져 2015년에는 24.9%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이후 감소하여 2016년에는 17.9%를 보였음.

〈표Ⅱ-2〉 성폭력 범죄의 유형별 발생건수 추이(2007년~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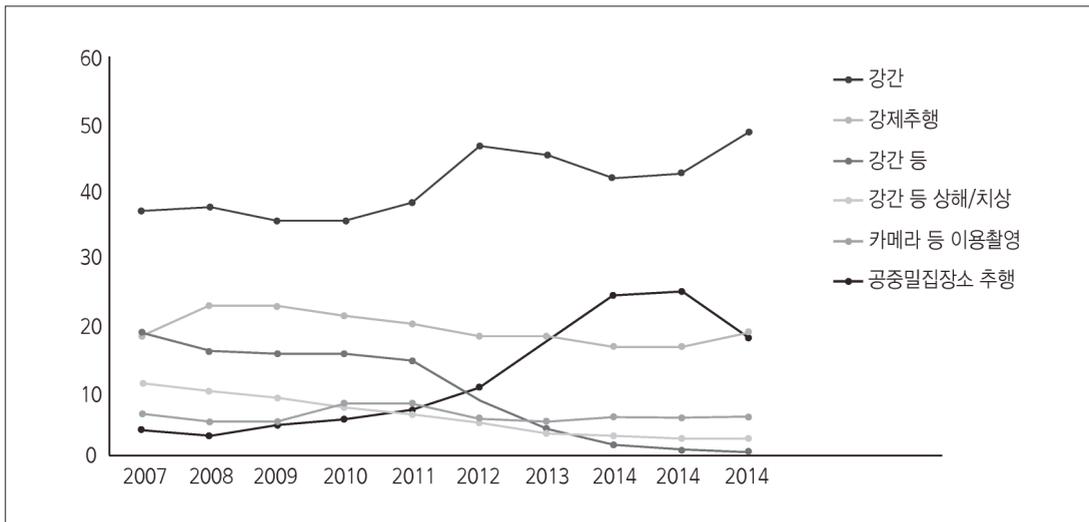
(단위: 건(%))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강간 ²⁹⁾	2,659 (18.5)	3,621 (22.5)	3,923 (22.6)	4,384 (21.3)	4,425 (20.0)	4,349 (18.6)	5,359 (18.4)	5,092 (16.7)	5,276 (17.0)	5,412 (18.4)
강제추행	5,348 (37.3)	6,080 (37.7)	6,178 (35.6)	7,314 (35.5)	8,535 (38.5)	10,949 (46.9)	13,326 (42.7)	12,849 (42.2)	13,266 (42.7)	14,339 (48.8)
강간등 ³⁰⁾	2,600 (18.1)	2,601 (16.1)	2,706 (15.6)	3,234 (15.7)	3,206 (14.5)	1,937 (8.2)	1,186 (4.0)	624 (2.0)	283 (0.9)	192 (0.7)
강간등 살인/치사	12 (0.1)	17 (0.1)	18 (0.1)	9 (0.0)	8 (0.0)	13 (0.1)	22 (0.1)	8 (0.0)	6 (0.0)	8 (0.0)
강간등 상해/치상	1,625 (11.3)	1,625 (10.1)	1,544 (8.9)	1,573 (7.6)	1,483 (6.7)	1,208 (5.2)	1,094 (3.8)	872 (2.9)	849 (2.7)	736 (2.5)
특수강간등	357 (2.5)	368 (2.3)	479 (2.8)	293 (1.4)	285 (1.3)	209 (0.9)	150 (0.5)	123 (0.4)	72 (0.2)	56 (0.2)
카메라 등이용 촬영	564 (3.9)	585 (3.6)	834 (4.8)	1,153 (5.6)	1,565 (7.1)	2,462 (10.5)	4,903 (16.9)	6,735 (24.1)	7,730 (24.9)	5,249 (17.9)

29) 강간에는 간음이 포함되어 있다.

성적 목적의 장소 침입	-	-	-	-	-	-	214 (0.7)	470 (1.5)	543 (1.7)	477 (1.6)
통신 매체 이용 음란	240 (1.7)	378 (2.3)	761 (4.4)	1,031 (5.0)	911 (4.0)	917 (4.0)	1,416 (4.9)	1,254 (4.1)	1,139 (3.7)	1,115 (3.8)
공중 밀집 장소 추행	939 (6.5)	854 (5.3)	934 (5.4)	1,593 (7.7)	1,750 (7.9)	1,332 (5.7)	1,517 (5.2)	1,838 (6.1)	1,901 (6.1)	1,773 (6.0)
계	14,344	16,129	17,377	20,584	22,168	23,365	29,090	29,863	31,063	29,357

〈그림 12〉 성폭력 범죄 주요 유형별 구성비 추이(2007년~2016년)



○ 이에 따라, 최근 성폭력범죄의 급격한 증가는 강간, 강간 등 상해/치상 등과 같은 심각한 유형의 범죄보다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의 보편화로 인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와 추행 범죄가 증가한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리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피해신고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30) 강간 등은 범죄통계 원표상 죄명코드로 강간과 강제추행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 이상의 통계는 우리 사회의 젠더폭력 발생 현황의 일부에 지나지 않음. 그러나 단적으로 주요 성폭력범죄 유형의 발생건수나 구성비만을 놓고 볼 때에도 젠더폭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특히,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성범죄 내지 젠더폭력에 대한 개인적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성별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폭력유형에 대한 대처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2) 울산지역 젠더폭력 발생 및 검거 현황

- 다음으로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관련 발생현황 및 검거 현황에 관해 알아보하고자 함. 이하의 내용은 경찰청범죄통계 중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울산청의 현황이며, 울산지역 젠더폭력 발생현황에 관한 기초자료로써 제시하는 바임.³¹⁾

1) 강간 등 범죄

- 먼저 강간범죄의 발생현황은 4개년 간 120건 내외의 발생건수를 보이고 있고, 유사강간범죄의 경우 대략 10건 이내의 발생건수를 보여 왔으나, 2016년에는 총 16건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다음으로 강제추행의 발생현황은 4개년 간 280~300건 정도 인지되었으며,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의 비율이 높으나, 청소년이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추행도 매년마다 10%를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위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강간·강제추행 관련 범죄의 발생현황은 2013년 이후 많이 감소하여, 2016년 현재 대략 10건 이내의 발생건수를 보이고 있음. 구체적인 통계는 아래와 같음.

31) 이하의 자료는 경찰청범죄통계 중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울산청)'을 참조한 자료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N219&conn_path=I3).

〈표II-3〉 강간범죄 발생현황 및 검거현황(2013~2016)

연도	죄종별	현황							
		발생 건수(건)	검거 건수(건)	검거율 (%)	검거 인원(명)	남자 검거 인원(명)	여자 검거 인원(명)	불상 검거 인원(명)	법인체 (개)
2013	소계	114	106	93.0	113	112	-	1	-
	강간	52	47	90.4	45	45	-	-	-
	강간 (상습)	-	-	-	-	-	-	-	-
	준강간	11	10	90.9	10	10	-	-	-
	준강간 (상습)	-	-	-	-	-	-	-	-
	강간·상해 ·치상	16	15	93.8	17	17	-	-	-
	강간·살인 ·치사	-	-	-	-	-	-	-	-
	미성년자간음 (심신 미약자)	-	-	-	-	-	-	-	-
	업무상 위력에 의한간음	1	1	100.0	1	1	-	-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3	2	66.7	1	1	-	-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간음	4	6	150.0	7	7	-	-	-
	청소년에 대한 강간·간음	16	15	93.8	17	17	-	-	-
	미성년자의 제강간	2	2	100.0	2	2	-	-	-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간음	3	3	100.0	4	3	-	1	-
	특수강간(준)	6	5	83.3	9	9	-	-	-
	주거침입강간	-	-	-	-	-	-	-	-
	특수절도강간	-	-	-	-	-	-	-	-
	특수강도 강간	-	-	-	-	-	-	-	-
	아동학대처벌 범위반 (상습강간· 간음)	-	-	-	-	-	-	-	-
2014	소계	126	129	102.4	160	154	1	5	-
	강간	51	53	103.9	58	57	-	1	-
	강간 (상습)	-	-	-	-	-	-	-	-
	준강간	11	12	109.1	16	16	-	-	-
	준강간 (상습)	-	-	-	-	-	-	-	-
	강간· 상해·치상	10	12	120.0	9	9	-	-	-
	강간· 살인·치사	-	-	-	-	-	-	-	-
	미성년자간음 (심신 미약자)	-	-	-	-	-	-	-	-
	업무상 위력에 의한간음	1	1	100.0	1	1	-	-	-

II. 젠더폭력에 관한 기본 검토 ■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6	5	83.3	7	7	-	-	-
	장애인 에 대한 강간·간음	10	11	110.0	11	10	-	1	-
	청소년 에 대한 강간·간음	21	21	100.0	27	26	1	-	-
	미성년자 의 제강간	2	-	-	-	-	-	-	-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간음	7	7	100.0	15	12	-	3	-
	특수강간(준)	7	7	100.0	16	16	-	-	-
	주거침입강간	-	-	-	-	-	-	-	-
	특수절도강간	-	-	-	-	-	-	-	-
	특수강도 강간	-	-	-	-	-	-	-	-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상습강간 ·간음)	-	-	-	-	-	-	-	-
2015	소계	131	127	96.9	143	142	-	1	-
	강간	54	53	98.1	56	55	-	1	-
	강간(상습)	-	-	-	-	-	-	-	-
	준강간	18	16	88.9	19	19	-	-	-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준강간 (상습)	-	-	-	-	-	-	-	-	-
강간·상해· 차상	10	9	90.0	10	10	-	-	-	
강간·살인· 차사	-	-	-	-	-	-	-	-	
미성년자간음 (심신 미약자)	-	-	-	-	-	-	-	-	
업무상 위력에 의한간음	-	-	-	-	-	-	-	-	
친족 관계에 의한강간	4	4	100.0	4	4	-	-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간음	10	9	90.0	9	9	-	-	-	
청소년에 대한 강간·간음	20	22	110.0	24	24	-	-	-	
미성년자의 제강간	1	1	100.0	2	2	-	-	-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간음	3	3	100.0	2	2	-	-	-	
특수강간(준)	9	9	100.0	17	17	-	-	-	
주거침입강간	2	1	50.0	-	-	-	-	-	
특수절도강간	-	-	-	-	-	-	-	-	
특수강도 강간	-	-	-	-	-	-	-	-	

II. 젠더폭력에 관한 기본 검토 ■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상습강간 ·간음)	-	-	-	-	-	-	-	-
2016	소계	111	114	102.7	133	132	-	1	-
	강간	50	54	108.0	57	57	-	-	-
	강간 (상습)	-	-	-	-	-	-	-	-
	준강간	10	11	110.0	15	15	-	-	-
	준강간 (상습)	-	-	-	-	-	-	-	-
	강간·상해· 치상	5	5	100.0	7	7	-	-	-
	강간·살인· 치사	-	-	-	-	-	-	-	-
	미성년자간음 (심신 미약자)	-	-	-	-	-	-	-	-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	-	-	-	-	-	-	-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1	1	100.0	1	1	-	-	-
	장애인 에 대한 강간·간음	14	13	92.9	19	18	-	1	-
	청소년 에 대한 강간·간음	17	17	100.0	17	17	-	-	-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미성년자의 제강간	-	-	-	-	-	-	-	-	-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간음	5	5	100.0	6	6	-	-	-	-
특수강간(준)	7	6	85.7	9	9	-	-	-	-
주거침입강간	2	2	100.0	2	2	-	-	-	-
특수절도강간	-	-	-	-	-	-	-	-	-
특수강도 강간	-	-	-	-	-	-	-	-	-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상습강간 ·간음)	-	-	-	-	-	-	-	-	-

○ 다음으로 유사강간범죄의 발생현황 및 검거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II-4〉 유사강간범죄 발생현황 및 검거현황(2013~2016)

연도	죄종별	현황							
		발생 건수(건)	검거 건수(건)	검거율 (%)	검거 인원(명)	남자 검거 인원(명)	여자 검거 인원(명)	불상 검거 인원(명)	법인체 (개)
2013	소계	6	7	116.7	6	6	-	-	-
	유사 강간	4	5	125.0	4	4	-	-	-
	유사 강간 (상습)	-	-	-	-	-	-	-	-

II. 젠더폭력에 관한 기본 검토 ■

	준유사 강간	1	1	100.0	1	1	-	-	-
	준유사 강간(상습)	-	-	-	-	-	-	-	-
	유사 강간· 상해·치상	-	-	-	-	-	-	-	-
	유사 강간· 살인·치사	-	-	-	-	-	-	-	-
	미성년자의 제유사 강간	-	-	-	-	-	-	-	-
	유사 성행위	1	1	100.0	1	1	-	-	-
	주거 침입 유사 강간	-	-	-	-	-	-	-	-
	특수 절도 유사 강간	-	-	-	-	-	-	-	-
	특수 강도 유사 강간	-	-	-	-	-	-	-	-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상습 유사 강간)	-	-	-	-	-	-	-	-
2014	소계	7	7	100.0	9	9	-	-	-
	유사 강간	5	5	100.0	7	7	-	-	-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유사강간 (상습)	-	-	-	-	-	-	-	-
	준유사 강간	-	-	-	-	-	-	-	-
	준유사 강간(상습)	-	-	-	-	-	-	-	-
	유사 강간· 상해·치상	-	-	-	-	-	-	-	-
	유사 강간· 살인·치사	-	-	-	-	-	-	-	-
	미성년자의 제유사 강간	-	-	-	-	-	-	-	-
	유사 성행위	2	2	100.0	2	2	-	-	-
	주거 침입 유사 강간	-	-	-	-	-	-	-	-
	특수 절도 유사 강간	-	-	-	-	-	-	-	-
	특수 강도 유사 강간	-	-	-	-	-	-	-	-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상습유사 강간)	-	-	-	-	-	-	-	-
2015	소계	10	10	100.0	15	11	4	-	-
	유사 강간	4	4	100.0	4	4	-	-	-
	유사 강간 (상습)	-	-	-	-	-	-	-	-

II. 젠더폭력에 관한 기본 검토 ■

	준유사 강간	-	-	-	-	-	-	-	-
	준유사 강간 (상습)	-	-	-	-	-	-	-	-
	유사 강간· 상해·치상	3	3	100.0	3	3	-	-	-
	유사 강간· 살인·치사	-	-	-	-	-	-	-	-
	미성년자의 제유사 강간	-	-	-	-	-	-	-	-
	유사 성행위	3	3	100.0	8	4	4	-	-
	주거 침입 유사 강간	-	-	-	-	-	-	-	-
	특수 절도 유사 강간	-	-	-	-	-	-	-	-
	특수 강도 유사 강간	-	-	-	-	-	-	-	-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상습 유사 강간)	-	-	-	-	-	-	-	-
2016	소계	16	15	93.8	18	18	-	-	-
	유사 강간	10	8	80.0	9	9	-	-	-
	유사 강간 (상습)	-	-	-	-	-	-	-	-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준유사 강간	1	2	200.0	2	2	-	-	-
준유사 강간 (상습)	-	-	-	-	-	-	-	-
유사 강간· 상해·차상	1	1	100.0	1	1	-	-	-
유사 강간· 살인·차사	-	-	-	-	-	-	-	-
미성년자의 제유사 강간	1	1	100.0	1	1	-	-	-
유사 성행위	3	3	100.0	5	5	-	-	-
주거 침입 유사 강간	-	-	-	-	-	-	-	-
특수 절도 유사 강간	-	-	-	-	-	-	-	-
특수 강도 유사 강간	-	-	-	-	-	-	-	-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상습 유사 강간)	-	-	-	-	-	-	-	-

○ 다음으로 강제추행의 발생현황 및 검거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II-5〉 강제추행 발생현황 및 검거현황(2013~2016)

연도별	죄종별	현황							
		발생 건수(건)	검거 건수(건)	검거율 (%)	검거 인원(명)	남자 검거 인원(명)	여자 검거 인원(명)	불상 검거 인원(명)	법인체 (개)
2013	소계	285	246	86.3	238	232	2	4	-
	강제 추행	175	144	82.3	136	131	2	3	-
	강제 추행 (상습)	-	-	-	-	-	-	-	-
	준강제 추행	10	10	100.0	11	11	-	-	-
	준강제 추행(상습)	-	-	-	-	-	-	-	-
	강제추행상 해·치상	9	10	111.1	11	11	-	-	-
	강제추행살 인·치사	-	-	-	-	-	-	-	-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추행	11	10	90.9	7	7	-	-	-
	친족관계 에의한 강제추행	12	11	91.7	10	10	-	-	-
	장애인에 대한강제 추행·추행	9	8	88.9	7	7	-	-	-
	청소년에 대한강제 추행·추행	31	26	83.9	28	28	-	-	-
	미성년자추 행(심신미 약자)	-	-	-	-	-	-	-	-
	미성년자의 제강제추행	-	-	-	-	-	-	-	-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추행	17	17	100.0	18	17	-	1	-
	공중밀집 장소에서 의추행	11	9	81.8	10	10	-	-	-
	특수강제 추행(준)	-	1	100.0	-	-	-	-	-
	주거침입 강제추행	-	-	-	-	-	-	-	-
	특수절도 강제추행	-	-	-	-	-	-	-	-
	특수강도 강제추행	-	-	-	-	-	-	-	-
	아동학대처 벌법위반 (상습강제 추행·)	-	-	-	-	-	-	-	-
2014	소계	298	296	99.3	311	297	9	5	-
	강제 추행	166	168	101.2	170	158	9	3	-
	강제 추행 (상습)	-	-	-	-	-	-	-	-
	준강제 추행	7	8	114.3	8	8	-	-	-
	준강제추행 (상습)	-	-	-	-	-	-	-	-
	강제추행상 해·치상	3	3	100.0	5	5	-	-	-
	강제추행살 인·치사	-	-	-	-	-	-	-	-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추행	4	5	125.0	3	3	-	-	-

II. 젠더폭력에 관한 기본 검토 ■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7	6	85.7	6	6	-	-	-
장애인에 대한강제 추행·추행	16	14	87.5	19	17	-	2	-
청소년에 대한강제 추행·추행	39	40	102.6	38	38	-	-	-
미성년자 추행(심신 미약자)	-	-	-	-	-	-	-	-
미성년자의 제강제추행	-	-	-	-	-	-	-	-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추행	37	33	89.2	38	38	-	-	-
공중밀집 장소에서 의추행	16	16	100.0	19	19	-	-	-
특수강제 추행(준)	1	1	100.0	3	3	-	-	-
주거침입 강제추행	2	2	100.0	2	2	-	-	-
특수절도 강제추행	-	-	-	-	-	-	-	-
특수강도 강제추행	-	-	-	-	-	-	-	-
아동학대처 벌법위반 (상습강제 추행·)	-	-	-	-	-	-	-	-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2015	소계	295	289	98.0	298	290	5	3	-
	강제 추행	173	164	94.8	168	164	3	1	-
	강제 추행 (상습)	1	1	100.0	1	1	-	-	-
	준강제 추행	9	9	100.0	7	7	-	-	-
	준강제추행 (상습)	-	-	-	-	-	-	-	-
	강제추행상 해·치상	5	5	100.0	5	5	-	-	-
	강제추행 살인·치사	-	-	-	-	-	-	-	-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추행	11	12	109.1	13	13	-	-	-
	친족관계 에의한 강제추행	7	8	114.3	8	8	-	-	-
	장애인에 대한강제 추행·추행	9	10	111.1	12	12	-	-	-
	청소년에 대한강제 추행·추행	31	31	100.0	30	29	1	-	-
	미성년자 추행(심신 미약자)	-	-	-	-	-	-	-	-
	미성년자의 제강제추행	-	-	-	-	-	-	-	-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추행	28	30	107.1	30	28	1	1	-
	공중밀집 장소에서 의추행	15	13	86.7	16	15	-	1	-

II. 젠더폭력에 관한 기본 검토 ■

	특수강제 추행(준)	2	2	100.0	4	4	-	-	-
	주거침입 강제추행	4	4	100.0	4	4	-	-	-
	특수절도 강제추행	-	-	-	-	-	-	-	-
	특수강도 강제추행	-	-	-	-	-	-	-	-
	아동학대 처벌법위반 (상습강제 추행·)	-	-	-	-	-	-	-	-
	소계	294	291	99.0	335	329	5	1	-
	강제 추행	169	167	98.8	194	189	4	1	-
	강제 추행 (상습)	1	1	100.0	1	1	-	-	-
	준강제 추행	19	21	110.5	21	21	-	-	-
	준강제추행 (상습)	-	-	-	-	-	-	-	-
	강제추행 상해·치상	3	3	100.0	3	3	-	-	-
2016	강제추행 살인·치사	-	-	-	-	-	-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8	8	100.0	10	10	-	-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7	7	100.0	8	8	-	-	-
	장애인에 대한강제 추행·추행	11	10	90.9	13	13	-	-	-
	청소년에 대한강제 추행·추행	38	36	94.7	39	39	-	-	-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미성년자 추행(심신 미약자)	-	-	-	1	1	-	-	-
미성년자의 제강제추행	1	1	100.0	1	1	-	-	-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추행	23	22	95.7	26	26	-	-	-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11	12	109.1	12	11	1	-	-
특수강제 추행(준)	1	1	100.0	3	3	-	-	-
주거침입 강제추행	2	2	100.0	3	3	-	-	-
특수절도 강제추행	-	-	-	-	-	-	-	-
특수강도 강제추행	-	-	-	-	-	-	-	-
아동학대 처벌법위반 (상습강제 추행·)	-	-	-	-	-	-	-	-

○ 다음으로는 강간 및 유사강간, 강제추행 외에 기타 강간·강제추행 관련 범죄의 발생현황 및 검거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Ⅱ-6〉 기타 강간·강제추행 관련 범죄 발생현황 및 검거현황(2013~2016)

연도별	죄종별	현황							
		발생 건수(건)	검거 건수(건)	검거율 (%)	검거 인원(명)	남자 검거 인원(명)	여자 검거 인원(명)	불상 검거 인원(명)	법인체 (개)
2013	소계	45	52	115.6	59	54	4	1	-

II. 젠더폭력에 관한 기본 검토 ■

	강간 등 상해·치상	4	4	100.0	4	4	-	-	-
	강간 등 살인·치사	1	1	100.0	1	1	-	-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	-	-	-	-	-	-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1	1	100.0	-	-	-	-	-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23	22	95.7	31	27	4	-	-
	미성년자의 제강간 등	-	-	-	-	-	-	-	-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1	2	200.0	3	3	-	-	-
	주거침입 강간 등	10	14	140.0	15	14	-	1	-
	특수절도 강간 등	-	2	200.0	1	1	-	-	-
	특수강도 강간 등	5	6	120.0	4	4	-	-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	-	-	-	-	-	-
2014	소계	14	16	114.3	22	18	3	1	-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강간등 상해·치상	1	3	300.0	5	3	2	-	-
	강간등 살인·치사	-	-	-	-	-	-	-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	-	-	-	-	-	-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1	2	200.0	2	1	-	1	-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6	7	116.7	10	9	1	-	-
	미성년자의 제강간 등	-	-	-	-	-	-	-	-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1	-	-	-	-	-	-	-
	주거침입 강간 등	3	3	100.0	3	3	-	-	-
	특수절도 강간 등	-	-	-	-	-	-	-	-
	특수강도 강간 등	2	1	50.0	2	2	-	-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	-	-	-	-	-	-
2015	소계	9	11	122.2	13	12	1	-	-

II. 젠더폭력에 관한 기본 검토 ■

	강간 등 상해·치상	8	8	100.0	7	7	-	-	-
	강간 등 살인·치사	-	-	-	-	-	-	-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	-	-	-	-	-	-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	-	-	-	-	-	-	-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1	1	100.0	2	2	-	-	-
	미성년자의 제강간 등	-	-	-	-	-	-	-	-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	-	-	1	-	1	-	-
	주거침입 강간등	-	1	100.0	2	2	-	-	-
	특수절도 강간 등	-	-	-	-	-	-	-	-
	특수강도 강간 등	-	1	100.0	1	1	-	-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	-	-	-	-	-	-
2016	소계	8	88.9	14	14	-	-	-	-
	강간등 상해·치상	5	100.0	7	7	-	-	-	-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강간등 살인·치사	-	-	-	-	-	-	-	-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	-	-	-	-	-	-	-	-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등	1	50.0	1	1	-	-	-	-	-
청소년에 대한 강간등	2	100.0	6	6	-	-	-	-	-
미성년자의 제강간 등	-	-	-	-	-	-	-	-	-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	-	-	-	-	-	-	-	-
주거침입 강간 등	-	-	-	-	-	-	-	-	-
특수절도 강간 등	-	-	-	-	-	-	-	-	-
특수강도 강간 등	-	-	-	-	-	-	-	-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	-	-	-	-	-	-	-	-

2) 성폭속범죄

○ 성폭속범죄의 발생현황 및 검거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II-7〉 성폭속범죄 발생현황 및 검거현황(2013~2016)

연도별	죄종별	현황							
		발생 건수 (건)	검거 건수 (건)	검거율 (%)	검거 인원 (명)	남자 검거 인원 (명)	여자 검거 인원 (명)	불상 검거 인원 (명)	법인체 (개)
2013	소계	360	299	83.1	351	266	65	20	-
	간통	42	36	85.7	86	39	43	4	-
	혼인빙자간음	-	-	-	-	-	-	-	-
	혼인빙자간음 (위계간음)	-	-	-	-	-	-	-	-
	공연음란	49	35	71.4	34	32	-	2	-
	음행매개	-	-	-	-	-	-	-	-
	음화등반포 (판매, 임대, 전시, 제조)	-	-	-	-	-	-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 (음란물유포)	93	65	69.9	95	73	8	14	-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	72	62	86.1	33	32	1	-	-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통신매체이용음란)	30	25	83.3	20	17	3	-	-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	1	1	100.0	1	1	-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배포등)	57	59	103.5	63	58	5	-	-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법률	16	16	100.0	19	14	5	-	-
2014	소계	331	276	83.4	299	245	38	16	-
	간통	38	30	78.9	72	36	33	3	-
	혼인빙자간음	-	-	-	-	-	-	-	-
	혼인빙자간음 (위계간음)	-	-	-	-	-	-	-	-
	공연음란	67	37	55.2	39	36	-	3	-
	음행매개	-	-	-	-	-	-	-	-
	음화등반포 (판매, 임대, 전시, 제조)	-	-	-	-	-	-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 (음란물유통)	105	76	72.4	90	79	1	10	-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	58	61	105.2	42	40	2	-	-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통신매체이용음란)	35	37	105.7	23	23	-	-	-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	8	8	100.0	6	6	-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배포등)	18	25	138.9	25	25	-	-	-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법률	2	2	100.0	2	-	2	-	-

II. 젠더폭력에 관한 기본 검토 ■

2015	소계	252	207	82.1	224	186	25	13	-
	간통	15	12	80.0	33	15	16	2	-
	혼인빙자간음	-	-	-	1	1	-	-	-
	혼인빙자간음 (위계간음)	-	-	-	-	-	-	-	-
	공연음란	79	70	88.6	60	60	-	-	-
	음행매개	-	-	-	-	-	-	-	-
	음화등반포 (판매, 임대, 전시, 제조)	1	1	100.0	1	1	-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 (음란물유통)	59	33	55.9	45	32	2	11	-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	59	59	100.0	45	43	2	-	-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통신매체이용음란)	21	20	95.2	23	22	1	-	-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	9	9	100.0	9	9	-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배포등)	7	1	14.3	1	1	-	-	-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법률	2	2	100.0	6	2	4	-	-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2016	소계	176	163	92.6	168	163	2	3	-
	간통	-	-	-	-	-	-	-	-
	혼인빙자간음	-	-	-	-	-	-	-	-
	혼인빙자간음 (위계간음)	-	-	-	-	-	-	-	-
	공연음란	56	50	89.3	49	48	-	1	-
	음행매개	-	-	-	-	-	-	-	-
	음화등반포 (판매, 임대, 전시, 제조)	1	1	100.0	1	1	-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 (음란물유포)	21	21	100.0	23	22	1	-	-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	62	62	100.0	69	69	-	-	-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통신매체이용음란)	20	21	105.0	16	16	-	-	-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	7	4	57.1	5	4	-	1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배포등)	7	2	28.6	3	2	-	1	-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법률	2	2	100.0	2	1	1	-	-

3) 관련 특별법 위반 범죄

- 그리고 가정폭력처벌법, 성매매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 젠더폭력 관련 특별법 위반 범죄의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연도별로 발생건수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당해 발생현황에서 특이할 점은 발생건수의 다수를 성매매처벌과 관련된 범죄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건수는 매우 저조하다는 점임.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음.
- 가정폭력처벌법, 성매매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 젠더폭력 관련 특별법 위반 범죄의 발생 현황 및 검거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II-8〉 관련 특별법 위반 범죄 발생현황 및 검거현황(2013~2016)

연도별	죄종별	현황							
		발생 건수 (건)	검거 건수 (건)	검거율 (%)	검거 인원 (명)	남자 검거 인원 (명)	여자 검거 인원 (명)	불상 검거 인원 (명)	법인체 (개)
소계	소계	144	141	98.8	331	214	114	3	-
201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위반	-	-	-	-	-	-	-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	1	1	100.0	1	1	-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 (성매매)	29	29	100.0	52	30	22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 (성매매강요등)	-	-	-	-	-	-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 (성매매광고)	1	1	100.0	3	2	1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	24	24	100.0	100	56	43	1	-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	-	-	-	-	-	-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기타)	31	30	96.8	92	44	46	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기타)	24	23	95.8	26	26	-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등)	-	-	-	-	-	-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매매)	1	1	100.0	1	1	-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	2	2	100.0	20	20	-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 (알선영업행위등)	-	-	-	-	-	-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기타)	31	30	96.8	36	34	2	-	-
2014	소계	223	217	95.6	478	297	179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위반	6	6	100.0	5	5	-	-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	-	-	-	1	1	-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 (성매매)	18	17	94.4	45	19	24	2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 (성매매강요등)	-	-	-	-	-	-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 (성매매광고)	-	-	-	-	-	-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	30	28	93.3	77	34	43	-	-

II. 젠더폭력에 관한 기본 검토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	-	-	-	-	-	-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기타)	98	97	99.0	277	168	109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기타)	63	62	98.4	65	64	1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등)	1	1	100.0	2	-	2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매매)	-	-	-	-	-	-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	2	2	100.0	2	2	-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	-	-	-	-	-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기타)	5	4	80.0	4	4	-	-	-
	소계	166	150	86.0	332	204	124	4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위반	1	1	100.0	-	-	-	-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	-	-	-	-	-	-	-	-
20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 (성매매)	28	25	89.3	63	39	23	1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 (성매매강요등)	-	-	-	-	-	-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 (성매매광고)	1	-	-	-	-	-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	24	22	91.7	90	42	48	-	-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	-	-	-	-	-	-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기타)	39	37	94.9	95	45	47	3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기타)	58	53	91.4	55	55	-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등)	-	-	-	-	-	-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매매)	-	-	-	-	-	-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	3	1	33.3	5	5	-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 (알선영업행위등)	4	4	100.0	17	11	6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기타)	8	7	87.5	7	7	-	-	-
2016	소계	238	225	96.3	757	416	330	11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위반	4	4	100.0	4	4	-	-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	-	-	-	-	-	-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 (성매매)	35	22	62.9	84	35	48	1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 (성매매강요등)	-	1	-	1	-	1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 (성매매광고)	-	-	-	-	-	-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	59	59	100.0	279	128	148	3	-

II. 젠더폭력에 관한 기본 검토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	-	-	-	-	-	-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기타)	73	70	95.9	291	158	127	6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기타)	59	61	103.4	62	62	-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등)	-	-	-	-	-	-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매매)	-	-	-	-	-	-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	4	3	75.0	10	9	-	1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 (알선영업행위등)	3	4	133.3	25	19	6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기타)	1	1	100.0	1	1	-	-	-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3) 울산지역 젠더폭력 유관기관 이용현황

1) 상담건수 및 피해자지원 현황

- 울산통계연보에 따르면,³²⁾ 최근 4개년(2013년 ~ 2016년) 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 상담소를 통해 이루어진 상담건수는 다음과 같음.

〈표 II-9〉 여성폭력상담소 상담건수(2013~2016)

연도별	행정 구역 (구군)별	합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	
		상담소 (개소)	상담 건수 (건)	상담소 (개소)	상담 건수 (건)	상담소 (개소)	상담 건수 (건)	상담소 (개소)	상담 건수 (건)
2013	합계	7	8,152	4	4,309	2	2,131	1	1,712
	중구	1	635	-	-	1	635	-	-
	남구	2	3,286	1	1,574	-	-	1	1,712
	동구	1	708	1	708	-	-	-	-
	북구	2	2,027	2	2,027	-	-	-	-
	울주군	1	1,496	-	-	1	1,496	-	-
2014	합계	6	9,673	3	3,520	3	4,412	1	1,741
	중구	1	687	-	-	1	687	-	-
	남구	2	4,090	-	-	1	2,349	1	1,741
	동구	1	1,107	1	1,107	-	-	-	-
	북구	2	2,413	2	2,413	-	-	-	-
	울주군	1	1,376	-	-	1	1,376	-	-
2015	합계	7	10,697	3	3,259	3	5,552	1	1,886
	중구	1	717	-	-	1	717	-	-
	남구	2	4,076	-	-	1	2,190	1	1,886
	동구	1	1,124	1	1,124	-	-	-	-
	북구	2	2,135	2	2,135	-	-	-	-
	울주군	1	2,645	-	-	1	2,645	-	-
2016	합계	7	10,116	3	3,286	3	4,939	1	1,891
	중구	1	1,133	3	-	1	1,133	-	-
	남구	2	4,207	-	-	1	2,316	1	1,891
	동구	1	1,164	1	1,164	-	-	-	-
	북구	2	2,122	2	2,122	-	-	-	-
	울주군	1	1,490	-	-	1	1,490	-	-

32) 울산통계연보는 울산광역시청 홈페이지(<http://www.ulsan.go.kr/stat/gnrstatsanlrpt>)를 참조함.

○ 그리고 여성폭력상담소를 이용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II-10〉 여성폭력상담소 이용 피해자지원내역(2013~2016)

연도별	행정 구역 (구군)별	피해자지원내역(건)					
		소계	심리· 정서적 지원	수사 · 법적지원	의료 지원	시설 입소 연계	기타
2013	합계	5,681	1,929	1,467	116	204	1,965
	중구	635	42	19	2	-	572
	남구	3,286	951	981	15	136	1,203
	동구	416	276	75	2	20	43
	북구	359	252	26	4	4	73
	울주군	985	408	366	93	44	74
2014	합계	4,516	2,628	1,031	195	176	486
	중구	59	43	14	-	-	2
	남구	1,901	1,147	510	52	84	108
	동구	659	421	118	3	15	102
	북구	521	319	64	2	6	130
	울주군	1,376	698	325	138	71	144
2015	합계	7,652	3,806	1,281	265	197	2,103
	중구	190	119	48	23	-	-
	남구	4,071	1,537	647	75	140	1,672
	동구	966	573	81	8	14	290
	북구	665	534	37	-	7	87
	울주군	1,760	1,043	468	159	36	54
2016	합계	7,303	4,195	599	169	71	2,269
	중구	451	402	4	1	-	44
	남구	4,188	1,527	194	70	12	1,507
	동구	845	570	34	5	5	412
	북구	1,026	785	34	-	8	199
	울주군	1,490	911	333	93	46	107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2) 여성복지시설 이용현황

- 울산통계연보에 따라,³³⁾ 최근 4개년(2013년 ~ 2016년) 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등 여성복지시설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이용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II-11〉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이용현황(2013~2016)

연도별	행정 구역 (구군)별	시설수 (개소)	입소자 (명)	퇴소자 (명)	연말현재 생활인원(명)
2013	합계	1	39	39	12
	중구	1	39	39	12
	남구	-	-	-	-
	동구	-	-	-	-
	북구	-	-	-	-
	울주군	-	-	-	-
2014	합계	1	45	49	8
	중구	1	45	49	8
	남구	-	-	-	-
	동구	-	-	-	-
	북구	-	-	-	-
	울주군	-	-	-	-
2015	합계	1	44	33	11
	중구	-	-	-	-
	남구	-	-	-	-
	동구	-	-	-	-
	북구	1	44	33	11
	울주군	-	-	-	-
2016	합계	1	37	33	4
	중구	-	-	-	-
	남구	-	-	-	-
	동구	-	-	-	-
	북구	1	37	33	4
	울주군	-	-	-	-

33) 울산통계연보는 울산광역시청 홈페이지(<http://www.ulsan.go.kr/stat/gnrstatsanlrpt>)를 참조함.

○ 다음으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이용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II-12〉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이용현황(2013~2016)

연도별	행정 구역 (구군)별	시설수 (개소)	입소자 (명)	퇴소자 (명)	연말현재 생활인원(명)
2013	합계	1	22	18	12
	중구	1	22	18	12
	남구	-	-	-	-
	동구	-	-	-	-
	북구	-	-	-	-
	울주군	-	-	-	-
2014	합계	1	8	10	10
	중구	-	-	-	-
	남구	-	-	-	-
	동구	-	-	-	-
	북구	1	8	10	10
	울주군	-	-	-	-
2015	합계	1	29	17	12
	중구	-	-	-	-
	남구	-	-	-	-
	동구	-	-	-	-
	북구	1	29	17	12
	울주군	-	-	-	-
2016	합계	1	14	4	10
	중구	-	-	-	-
	남구	-	-	-	-
	동구	-	-	-	-
	북구	1	14	4	10
	울주군	-	-	-	-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 마지막으로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이용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11-13〉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이용현황(2013~2016)

연도별	행정 구역 (구군)별	시설수 (개소)	입소자 (명)	퇴소자 (명)	연말현재 생활인원(명)
2013	합계	1	12	12	9
	중구	-	-	-	-
	남구	1	12	12	9
	동구	-	-	-	-
	북구	-	-	-	-
	울주군	-	-	-	-
2014	합계	1	11	10	10
	중구	-	-	-	-
	남구	1	11	10	10
	동구	-	-	-	-
	북구	-	-	-	-
	울주군	-	-	-	-
2015	합계	1	15	10	5
	중구	-	-	-	-
	남구	-	-	-	-
	동구	-	-	-	-
	북구	1	15	10	5
	울주군	-	-	-	-
2016	합계	1	15	8	7
	중구	-	-	-	-
	남구	-	-	-	-
	동구	-	-	-	-
	북구	1	15	8	7
	울주군	-	-	-	-

3. 소결

- 이상에서는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젠더폭력의 정의 및 유형을 정리하였으며, 젠더폭력의 발생현황과 관련 상담 및 지원 현황 등은 울산지역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제시하였음.
- 이상의 내용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바는 먼저, 젠더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젠더폭력에 대한 울산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하고, 이러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젠더폭력의 정의 및 유형 등이 좀 더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임.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젠더폭력의 정의를 “성적차별을 바탕으로 한 모든 폭력행위”라고 폭넓게 제시하고 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젠더폭력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덧붙이자면 젠더폭력의 근저에는 성적 차별 외에도 평등의식의 결여나 낮은 인권감수성 등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음. 이른바 젠더폭력은 다양한 관계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권력이나 권위를 바탕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기본적인 인권이나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평등의식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면 대부분의 젠더폭력은 해소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젠더폭력의 예방은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나 교육에서부터가 아니라 사람이나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 평등의식과 같은 기본적인 의식 변화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함.
- 그리고 젠더폭력에 대한 감수성의 제고나 의식의 변화는 일반시민뿐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는 제도나 정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젠더폭력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우리 사회에서 젠더폭력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졌고, 젠더폭력의 유형이 더욱 세분화되었으며, 그에 대한 처벌 등 대처를 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고, 유익한 것이라 여겨짐.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대처가 젠더폭력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현황 등을 바탕으로 한 단편적인 대처이거나 개별사례에 대한 제재 정도로 치우치고 있는 것은 아쉬움이 있음.
- 예를 들어, 성희롱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인식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과 같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과는 다르며, 그러한 인식의 차이는 간단하게는 범죄의 성립 내지 형사처벌의 유무라고 여겨짐. 그런데 성희롱에 대한 관련 법규는 이러한 차이를 담고 있지 못하다고 여겨짐. 즉,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서는 성희롱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사회통념상 성희롱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형사법 등을 통한 처벌에 이르지 않는 수위의 행위부터 성희롱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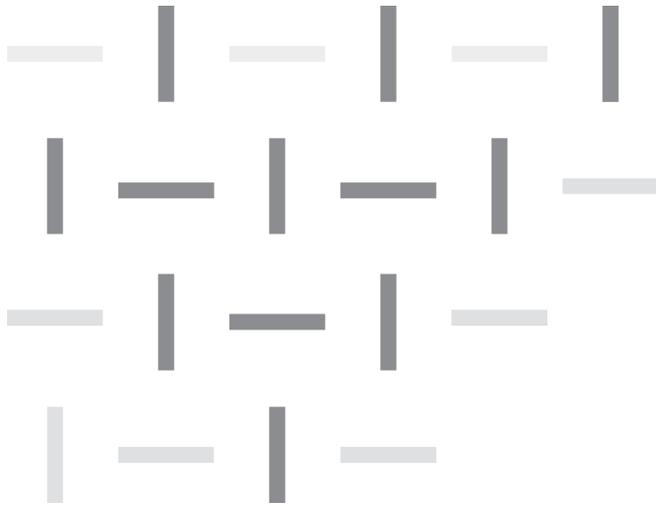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함은 물론 강제추행 등과 같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수위의 행위까지를 함께 제시하고 있음으로써 오히려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낮출 우려가 있음.

-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도입되었으나,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판례는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노출의 정도,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동죄의 성립을 판단하고 있음. 이에 따라 판례는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신체 부위를 집중해서 촬영한 경우에는 대체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고 있으나,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는 전신 모습을 촬영한 경우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는 아니라고 하여 처벌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음.³⁴⁾ 그러나 현재와 같이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촬영물의 경우, 편집을 통하여 얼마든지 특정 신체를 부각시킬 수 있고, 촬영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특정부위가 찍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 성적 욕망을 품고 촬영을 진행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될 수 있음. 즉, 촬영을 당한 피해자의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본인의 성적 욕망을 위해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점이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피해자 본인의 신체가 타인에 의해 촬영이 되었다는 사실로 수치심을 느낀다면, 동죄는 인정되어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해석 방식은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의 원인이 있다는 편견을 낳을 우려가 있고, 동죄의 입법목적이나 보호법익을 고려할 때에도 합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적용은 성적 평등이나 젠더폭력에 대한 감수성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라 여겨짐.
- 이상의 상황을 고려할 때에도 단지 젠더폭력의 유형을 세분화한다거나, 그에 따른 개별적인 접근방식을 고려하는 것만으로는 젠더폭력의 예방이나 방지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젠더의 식이나 성평등, 인권교육 등과 같이 젠더폭력에 대한 울산시민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기초 교육과 젠더폭력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명확한 제시를 할 수 있는 젠더폭력 예방 교육 등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교육은 일반시민은 물론 젠더폭력 관련 정책 담당자나 실무 담당자의 평등의식 및 폭력에 대한 감수성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함.

34) 서울중앙지법 2013. 11. 22. 선고 2013고합885 판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발생현황 및 상담현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울산지역에서도 꾸준히 젠더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젠더폭력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비해 젠더폭력으로 인지되는 건수는 매우 소수임. 이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젠더폭력 중에는 형사처벌을 정하지 않고 있는 유형도 있다는 점과 젠더폭력에 대한 형사적 제재나 처벌은 최후의 수단일 뿐이라는 점에 비추어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음.
- 다른 한편으로는 그 만큼 형사처벌만으로는 젠더폭력의 예방이나 제재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고, 나아가 이는 젠더폭력이 어떠한 범죄피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이후에만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의 일반예방 수준의 효과 이외에 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따라서 젠더폭력에 대한 처벌과는 달리 예방대책은 매우 근본적인 수준의 정책으로부터 시작하여,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임.
- 이상의 점을 염두에 두고, 이하에서는 젠더폭력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울산지역 젠더폭력 관련 전문가의 자문의견에 대한 검토·분석을 진행하고자 함.



Ⅲ. 지역전문가 자문 결과분석

1. 조사 개요	069
2. 조사 결과	070
3. 소결	083

Ⅲ 지역전문가 자문 결과분석

1. 조사 개요

- 본 조사는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발생현황 및 제반여건의 특성에 맞는 예방대책 마련과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되었음.
- 이를 위하여, 주로 울산지역에서 젠더폭력 예방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전문가로 하여, 지역사회 내의 젠더폭력 관련 인식 및 정책 현황, 관련 사업 현황 등을 비롯한 현황 파악과 정책수요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음.

〈표Ⅲ-1〉 조사설계 및 항목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폭력 예방사업 수행기관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행정 분야 - 예방교육 분야 · 울산시 상담소·시설협의회 소속 기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상담소 2개소 - 전화상담기관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통합상담소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 성폭력 상담소 - 피해자지원담당기관 등
조사방법	· 서면에 의한 의견 청취(서면조사)
조사기간	· 2018. 10. 8. ~ 2018. 10. 26.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항 목 ³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기관 및 작성자 소개 · 지역사회 내 젠더폭력 관련 인식 및 정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발생 체감도 - 젠더폭력 발생현황에 있어서 울산지역 특성 · 관련 서비스 및 교육 추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폭력 예방 사업 현황 - 젠더폭력 예방 교육 현황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현황 및 필요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협력체계 구축 필요여부 - 지역 협력체계의 역할 · 울산지역 젠더폭력 예방 정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지역 젠더폭력 예방 정책 현황 - 울산지역에 필요한 젠더폭력 예방 정책 - 울산 또는 중앙정부의 젠더폭력 예방 정책에 관한 의견
--------------------	--

2. 조사 결과

(1)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발생 현황 및 특성

1)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발생 체감도

- 최근 2년(2017년~2018년) 사이,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경향 및 체감도를 묻는 설문에 대해,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과거보다 매우 증가하고 있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3명임. 즉, 응답자의 대부분이 최근 들어 울산지역에서 젠더폭력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이 체감하는 이유로는, ① 이전에 비해 문의 전화 및 상담 건수가 늘어났다는 점을 제시 하였음. 구체적으로는 “가정폭력 상담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언론 보도 등에서는 이러한 변화 양상이 드러나지 않으나, 주변을 통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는 점차 늘고 있음. 특히

35) 본 항목은 울산시 상담소·시설협의회 소속 기관장 8명에 대해 요청 드린 항목이며, 젠더폭력 예방사업 수행기관 전문가에 대한 항목은 아님. 이에 아래의 조사에서 단답식 응답의 경우에는 총원 8명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혀둠.

이들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개적으로 사건화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 또한 이에 대해서는 ② 미투 운동이나 유명한 성폭력 사건 등과 같이 사회적 이슈에 따른 변화라는 점도 제시하였음. 즉, “2018년 미투 운동이나 정치인 성폭력 사건 등을 통해서 언론에서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이슈를 많이 다루고 있어, 일반시민의 젠더 감수성이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예전에는 젠더기반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아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젊은 층들이 SNS, 인터넷 상에서 자신의 성적 가치관에 대해 토론하는 장 등도 많이 마련되어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변화들이 그동안 은폐되어 왔던 폭력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비단 울산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도 제시하고 있음. 즉, “성평등 인식이 개선되고, 교육으로 인해 대등한 남녀관계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고와 태도가 과거보다 더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음.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여론조성과 자기주장을 표현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연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보니 젠더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현상은 울산지역 한 곳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그러한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 다만, ③ 울산 시민의 젠더 감수성 향상 속도나 수준은 다른 지역에 비해 미약한 편이며, 이는 울산지역의 특성에 기인한다는 견해도 있었음. 즉, “울산이 전통적으로 중공업이나 화학 등 남성중심형 경제적 기반에 의해 발전되고 확장된 도시이기 때문에, 타지역에 비해 모든 분야에서 남성중심형 사회의식이 강한 편이고, 젠더폭력에 대한 의식조차도 경제적 권력 편중에 따라 여성들이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지역”이었다고 하면서, “국가정책에 따른 법률 개정이나 미디어의 영향 등을 시민들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타지역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약한 편”이라고 응답하였음.
- 또한, 이에 따라 ④ 예전에는 젠더폭력이라 하면 주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을 떠올렸으나, 최근에는 성희롱이나 데이트폭력 등과 같이 더욱 세분화된 젠더폭력에 대한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있었음. 즉, “상담 건수 중,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력 등 젠더폭력피해 상담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특히 이는 미투 운동의 영향권 밖에 있는 듯한 분위기의 울산의 경우에도 동일함. 성폭력, 성희롱과 함께 데이트폭력에 대한 상담건수도 눈에 띄게 늘어났음”이라는 응답이 있었으며, 그 밖에도 “젠더폭력은 디지털 성범죄, 혐오 등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형태로 증가하고 있고, 그 심각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여성혐오, 불법촬영, 디지털성범죄, 성상품화 등은 앞으로 더욱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라는 답변도 있었음.

- 특히, ⑤ 성매매의 경우에는 인터넷의 발달이 주된 증가원인으로 지적되었음. 즉, “사회와 환경의 변화로 성매매 시장이 기존의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으로 변화되면서, 실제로 눈에 띄는 성매매 업소 등을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워졌지만, 이전보다 더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면서, “울산지역에서 일반인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 홍보 캠페인이나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수준은 여전히 미미한 상태”라는 문제점을 제시하였음.
- 한편, ⑥ 이러한 지역의 분위기 변화를 젠더폭력 그 자체에 대한 인식 변화나 요인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요인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음. 즉, “경제적 요인이나, 문화적 요인, 가정 환경적 요인, 개인의 정서적 요인” 등 다양한 측면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관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특히 “성평등하지 못한 가정이 주는 환경적 요인과 개인의 감정조절, 타인에 대한 배려심 부족 등에 기반한 공격 성향”이 젠더폭력의 증가 요인이라는 응답도 있었음.

2) 젠더폭력 발생현황에 있어서 지역적 특성

- 울산지역에서 젠더폭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울산지역의 특징이나 특성을 묻는 설문에 대해, 가장 큰 특징으로는 울산지역이 남성중심의 공업지역이라는 점이 제시되었음. 그리고 그러한 특성에 따라 형성된 가부장적 가족문화나 이주 부부가족 등의 가족 형태, 성평등 인식에 대한 남녀 간의 견해 차 등이 울산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젠더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특히 “울산이 남성중심의 공업지역”이라는 특성은 젠더폭력의 발생 및 증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대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지적되고 있음.
- 먼저, ① “울산지역은 자동차나 조선소 등, 여성보다는 남성 위주의 일이 더 많다 보니, 그 속에서 소수의 여성들이 불평등에 노출되어도 주장할 수가 없고,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경험해도 참는 경향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이라는 견해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특성은 우선 직장 내 젠더폭력의 발생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음.
- 또한, “울산은 산업단지 밀집지역으로 접대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음. 울산시민의 성비는 비슷

- 하나 20~30대의 젊은 층 성비는 남성이 매우 높은 편이고, 성매매와 관련된 접대문화는 아직도 공공연" 하다는 응답도 있었음. 특히, 이러한 남성 중심의 산업구조가 만들어 낸 접대문화는 성매매의 발생 및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즉, "울산의 경우는 공장이 주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바이어들이나 근로자들, 외부인 등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임. 그러다 보니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회식, 접대문화가 널리 성행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삼산동을 중심으로 한 구역 전체가 대규모의 유흥주점과 모텔, 원룸촌으로 형성되어 술 접대 이후 2차 성매매까지 완벽하게 윈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는 지역적 구조를 갖추고 있었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울산지역에도 경제 불황이 이어지면서 많은 업소들이 문을 닫았지만, 큰 유흥주점들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저렴한 마사지 업소나 오피스텔 성매매, SNS 채팅어플을 통한 조건만남의 형식의 성매매도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임.
- 그리고 이는 가정 내 폭력의 원인으로도 지적되고 있음. 즉, "울산지역이 남성 중심의 대기업이 다수이다 보니, 여성들의 경우에는 취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질 좋은 일자리를 갖기는 더욱 어려움. 그에 따라 여성들은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 폭력피해에 노출되어 있어도 그 피해를 외부로 알리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 또한 이에 따라 여성은 지역 내에서의 인간 관계도 협소하여, 피해를 외부에 알리는 것 자체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또한 이로 인하여, 정확한 발생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음.
 - 다음으로, 지역대학의 부족도 울산지역의 특성으로 지적되었음. 즉, "울산지역에는 대학의 비율이 너무 낮고, 전공 역시도 인문과 사회분야보다는 공과대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사회문제에 대한 젊은 층의 인식이 서울이나 경기지역과는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보임. 실 예로 성평등을 주장하는 대학생들이 젠더의 기본개념이 부족하고, 남녀 대학생 수가 비슷해져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음. 또한, 학내 여학생회를 폐지하고 총학생회 산하 여(如)학국을 신설하는 등 평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학내의 성폭력, 데이트폭력, 불법촬영 등의 문제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학생회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개입하거나 예방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서울과 경기지역의 대학 내 미투 운동에 학생회가 함께 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점도 제시되었음.
 - 그 밖에도, 울산지역의 이러한 특성에 따라 "울산지역에는 타지역에서 이주한 부부가족 중심의 가족형태가 많아, 시부모와 며느리 관계에 의한 폭력 등 보다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해지는 폭력이나 직장 내 폭력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응답도 있었으며, 최근에는 이혼을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할 때에도 40대 이전의 부모는 자녀 양육을 하지 않으려는 싸우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함. 이는 사회에 팽배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적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울산지역에 한정된 특성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성평등 관념에 대한 남녀 사이의 괴리나 갈등과 더불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젠더폭력의 주요한 특징으로써 검토를 요한다는 응답이 있었음.

(2) 젠더폭력 관련 사업 및 교육 추진 현황

1) 젠더폭력 예방사업 현황

- 울산 상담소·시설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젠더폭력 예방사업이 있는가 라는 설문에 대하여, “있음”이라고 답한 기관은 7곳이고, “없음”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곳임.
- 먼저, “없음”이라고 응답한 기관의 사유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라는 특성에 따른 것임. 즉, 동 기관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써 비공개 시설이기 때문에, 기관의 이름을 걸고 공개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없음. 본 시설의 위치 등이 노출될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기 위해 본 시설로 찾아올 우려가 있음. 따라서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이와 같은 예방을 하지 않을 뿐이고, 개인자격 또는 협의회 회원으로서는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 다음으로 “있음”이라고 응답한 기관에서는 크게 젠더폭력 예방 캠페인과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구체적으로는 각 기관의 사업목적에 따라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음.
- 먼저 젠더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추진 시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울산광역시에서 협력해야 할 사항을 묻는 설문에 대하여 ①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이를 위한 홍보, ②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제시되었음.
- 특히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견해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시하였음. 예를 들어, 울산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성인지적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존재임을 인식시키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확장시킴으로써 성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형성하며 성역할 고정관념의 문제점을 이해함으로써, 건전한 이성교제를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며,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주요한 목적을 갖는 교육임.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인간존중이라는 측면과 폭력예방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안고 있어서 1회성 교육으로는 실질적으로 동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 따라서 동일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4회기 정도의 연속교육으로 계획하고, 성인지적 교육과 폭력 예방 교육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울산지역의 어린이들이 보다 바른 인식을 갖게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게 된다면, 동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시간 확보 등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그리고 현행 젠더폭력 예방교육의 규모 변경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즉,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방교육이 대규모 집체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생 각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교육의 효과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며, 따라서 지자체 공무원이나 학생 대상 교육 차원에서부터 이와 같은 대규모 교육을 지양하고, 소규모 활동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종래의 대규모 교육에서 소규모 활동 교육으로 그 규모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그 밖에도 시민들의 젠더의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이나 이와 관련된 시민축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한편, 울산지역 및 인근지역 등에서 젠더폭력 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 등이 추진되었음. 먼저 경찰행정분야에서는 젠더폭력 예방을 위하여 올 한해,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가정폭력 대응을 위한 캠페인,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 운영, 여성범죄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안전 실태점검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음.
- 그리고 예방교육 분야 전문기관에서는 현재 젠더폭력예방 전문강사 양성과정, 찾아가는 젠더폭력예방교육, 공공기관 성폭력(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 젠더폭력 전문강사 양성과정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3)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현황 및 필요여부

1) 유관기관 협력체계 필요여부

- 젠더폭력 예방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내에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설문에 대해, “매우 필요함”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명, “필요함”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명, “전혀 필요하지 않음”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1명 순으로 나타났다.
- 먼저 유관기관 협력체계가 “매우 필요함”이라고 답한 응답자 4인의 의견을 살펴보면, ① 젠더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구조적 문제임. 더하여 울산지역은 남성중심의 문화가 공고히 자리 잡은 지역이어서, 지역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 매우 어려움. 따라서 이러한 인식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교육이 매우 필요하나, 한 기관의 노력으로는 이러한 변화를 꾀할 수 없음. 따라서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함께 연대할 때에만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리고 ② 젠더폭력 예방교육은 젠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교육의 내용 역시도 젠더폭력 그 자체 뿐 아니라 젠더의식을 비롯하여, 젠더폭력, 젠더폭력에 대한 대처방안, 가해자 교육 등으로 보다 넓은 범위의 교육이 진행되어야 함. 현 시점에서 그러한 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의 협력이 필요함.
- ③ 또한 이러한 연대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체계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수준의 체계도 필요할 것임. 즉, 울산광역시 뿐 아니라 구·군이 주도가 되는 젠더폭력 예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면 훨씬 촘촘하고 빠짐없는 교육 여건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와 같은 단체를 활성화하고, 이들 단체가 정례회의를 통하여 교육여건, 강사, 교육내용 등을 지역에 맞게 채택하여 교육을 운영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리고 위와 유사한 의견으로, ④ 울산의 경우 전문강사풀이 많지 않고, 기관별 강사 파악이나 독립적인 운영 자체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업무를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협력체계가 꼭 필요하며, 특히 공공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다음으로 “필요함”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의견을 살펴보면, 우선 “필요함”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교육 대상 및 기회의 확대, 의무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특히, 젠더폭력 예방에 대한 인식 변화와 실효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모든 기관이 솔선

수범해야 하고, 주체의식을 가지고 캠페인 등의 활동에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등 울산지역의 모든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임.

- 반면에, 울산지역의 유관기관 협력체계는 “전혀 필요하지 않음”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는 젠더폭력 예방사업의 필요성에는 동조하나, 이러한 사업추진이 협력체계가 없어서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이미 협력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된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음.

2) 유관기관 협력체계의 역할

- 젠더폭력 예방 등에 관한 지역 협력체계는 주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 라는 유관기관 협력체계의 역할을 묻는 설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총 7개의 역할 예시를 제시하였음. ① 각 참여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교환, ②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③ 각 참여기관에 대한 업무협조 요청, ④ 관련 예방·홍보·대민교육 전략 협의, ⑤ 여성폭력 감소를 위한 연계 대응방안 협의, ⑥ 각 참여기관의 역할분담, ⑦ 기타 등임.
- 이에 대하여, 1순위와 2순위를 나누어 설문한 결과, “④ 관련 예방·홍보·대민교육 전략 협의”를 1순위 역할로 선택한 응답자가 7명, “⑤ 여성폭력 감소를 위한 연계 대응방안 협의”를 1순위 역할로 선택한 응답자가 1명임. 그리고 2순위에 관해서는 견해가 나뉘었는데, “③ 각 참여기관에 대한 업무협조 요청”, “⑤ 여성폭력 감소를 위한 연계 대응방안 협의”, “⑥ 각 참여기관의 역할분담”을 각각 2명의 응답자가 2순위 역할로 선택하였고, “②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④ 관련 예방·홍보·대민교육 전략 협의”를 각각 1명의 응답자가 2순위 역할로 선택하였음.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설문〉

2. 젠더폭력 예방 등에 관한 지역 협력체계는 주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 중, 우선순위 별로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내용	1순위	2순위
(1) 각 참여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교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input type="checkbox"/>	■ 1명
(3) 각 참여기관에 대한 업무협조 요청	<input type="checkbox"/>	■ 2명
(4) 관련 예방·홍보·대민교육 전략 협의	■ 7명	■ 1명
(5) 여성폭력 감소를 위한 연계 대응방안 협의	■ 1명	■ 2명
(6) 각 참여기관의 역할분담	<input type="checkbox"/>	■ 2명
(7)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위의 설문결과에 비추어,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예방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가 담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로 젠더폭력 관련 예방, 홍보, 대민교육 전략 협의를 들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생각하건대, 이는 비단 관련 협력체계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젠더폭력 예방을 위해 울산지역에서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 여겨짐.
- 즉, 위의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여부를 묻는 설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응답자들은 현재 울산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젠더폭력 예방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역할분담이나 업무협조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울산지역 주민 및 기관의 인식 변화를 이끌 만큼의 젠더폭력 예방사업이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 따라서 현 상황에 비추어, 울산지역에서 젠더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울산시민과 울산지역 기관, 기업체 등의 인식변화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정책 홍보가 부족한 만큼 더 많은 홍보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4) 울산지역 젠더폭력 예방 관련정책 활성화

1) 울산지역 젠더폭력 예방정책 현황

○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예방정책 현황과 관련하여 아래의 설문을 제시하였음.

〈설문〉					
1. 울산지역에서 젠더폭력 예방과 관련한 아래의 정책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① ~ ④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렇게 선택한 이유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예방 대책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	적정하다	많다	매우 많다
① 젠더폭력 관련 대시민 인식개선 제고 및 신고체계 확립	① 5명	② 3명	③	④	⑤
② 지역사회 중심의 젠더폭력 예방 교육 활성화	① 5명	② 2명	③ 1명	④	⑤
③ 인터넷, 알코올, 약물 등 유해 환경 개선과 연계한 통합정책	① 4명	② 3명	③ 1명	④	⑤
④ 실효성 있는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① 1명	② 5명	③ 2명	④	⑤

- 이에 대하여 위의 4문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울산지역에 젠더폭력 예방정책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매우 부족하다” 또는 “부족하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다수를 차지하였음. 먼저 “① 젠더폭력 관련 대시민 인식개선 제고 및 신고체계”는 “매우 부족하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5명, “부족하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3명으로 모든 응답자가 이에 관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답변하였음.
- 다음으로 “② 지역사회 중심의 젠더폭력 예방교육”에 관해서는 “매우 부족하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5명, “부족하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2명, “적정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1명임.
- “③ 인터넷, 알코올, 약물 등 유해 환경 개선과 연계한 통합정책”에 관해서는 “매우 부족하다” 4명, “부족하다” 3명, “적정하다” 1명으로 나타났음.
- 마지막으로 “④ 실효성 있는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책과 관련해서는 앞의 다른 문항과는 달리 “매우 부족하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1명이었으며, “부족하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5명, “적정하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2명으로 나타났음.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2) 울산지역에 필요한 젠더폭력 예방정책

- 울산지역의 젠더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도입 또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묻는 문항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차원의 여성폭력 예방관련 조례 제정”과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울산광역시의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2순위로 든 의견 중에서는 “여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에 대한 시비확대”를 선택한 응답자가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순위로 선택한 의견 중에서는 “일반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설문〉

2. 울산지역 내에서 젠더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이 도입 또는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에 따라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내용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울산광역시 차원의 여성폭력 예방관련 조례 제정	3	1	
②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울산광역시의 중·장기적 계획 수립	3	1	
③ 여성폭력관련 관계 부처 간의 협력체계 구축		1	
④ 지방정부 차원의 서비스 연계·조정·통합을 위한 조정체계 구축			
⑤ 통합적인 정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1
⑥ 서비스 연계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평가			
⑦ 여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에 대한 시비지원 확대	1	4	1
⑧ 현재 구축되어 있는 관련 협력체계의 활성화 지원			
⑨ 여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예산 지원 확대		1	2
⑩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⑪ 여성폭력 예방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인력 POOL 형성			
⑫ 각 분야 관련 종사자에 대한 전문적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실시			
⑬ 일반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캠페인	1		4
⑭ 기타()			

3) 정부 및 지자체의 젠더폭력 예방정책에 관한 의견 청취

- 울산광역시 또는 중앙정부의 젠더폭력 예방정책에 관한 자유 의견을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음.
- 먼저, 가정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강력한 접근금지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음. 즉, “가정폭력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 신청을 해도 가해자가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떠나야 하는 사례가 많음. 따라서 좀 더 강력한 접근금지 위반에 대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또한 “가정폭력 피해 신고 상황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묻게 되는데, 이로 인해 가해자가 보복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묻지 않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답이 있었음. 그 밖에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의한 폭력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 다수의 교육이자 동시에 지역 현황에 맞는 폭력예방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음.
- 다음으로 가정폭력을 담당하는 타 기관에서도 생애 주기상 이른 시기부터의 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음. 즉, “젠더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성평등 교육이 꼭 필요함. 현재 초등학교의 단계부터 다양한 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으나, 그 교육의 중심에 성평등교육이 있어야 함. 또한 일회성의 교육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반복적이고 연계적인 일상 교육을 통하여 젠더의식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음.
- 그리고 젠더폭력예방을 위한 예산 부족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함과 함께, 기업 내에 젠더폭력 예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교육 이수를 위한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이와 같은 정책의 필요성은 성매매 예방 및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되었음. 즉, 성매매의 영역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더욱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른 시기부터의 예방 교육을 통해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며, 단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성매매의 예방이나 지원에 대한 실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 또한 젠더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에 관한 의견도 있었는데, 젠더폭력의 정의나 그 범주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하여 젠더폭력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임. 즉, “무엇이 젠더폭력인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만 자신의 행동이 폭력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 조심하고 대처하는 것보다 가해행동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특히 “울산광역시는 남성 위주의 사업장이 많고, 수입 면에서도 타 지역보다 남녀차이가 큼. 또한 여성이 가장이 되었을 때에 일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젠더폭력이 이루어져도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피해자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가해자의 변화만이 해결방안임을 드러내고 있음.
- 나아가 젠더폭력 예방기관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로 인하여 젠더폭력 예방 및 지원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해내기 어렵다는 점도 울산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제시되었음. 이에 따라, 젠더폭력 예방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전문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제시한 의견이 있었음.
 - 한편, 울산지역에서 젠더폭력 예방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를 총괄하는 통합지원 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즉, 젠더폭력에 대한 원활한 대처를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에서 지원하는 제지·격리·상담 외에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서 돕는 경제적 지원이 함께 해야 근본적이 예방과 해결이 가능한데, 현재 이러한 업무를 여러 부서가 나누어 담당하고 있고, 이에 따라 타부서 업무에 대한 이해부족이 업무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임. 예를 들어, “아동이면서 발달장애를 가진 여성에 대한 가족 내의 지속적인 성폭력이 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들이 한 공간에 계속 살고 있다면, 이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복지인구정책과), 발달장애이지원센터(노인장애인복지과),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여성가족청소년과), 경제적 지원부서(복지인구정책과)의 개입이 필요하나, 실제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 사건을 최초로 알게 된 경찰이나 기관이 본인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타 기관이나 부서와 연계하여 해결을 하게 됨. 이에 따라 여러 지원기관이나 분야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연계할 수 있는 전문 부서의 지정이 필요하며, 피해자 및 지원 대상자를 처음 접할 가능성이 높은 경찰이나 지원기관 실무 담당자에게는 타 부서의 이해를 높일 교육 기회를 마련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젠더폭력의 예방에서부터 피해처리까지의 과정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인프라 구축 및 원활한 역할 담당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서는 젠더폭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관은 물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이 근본적으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까지를 포함해야 하며, 그 밖에도 울산경찰청, 교육청, 소방청, 관련 기관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구축 및 회의 정례화 등 통합적, 구조적 대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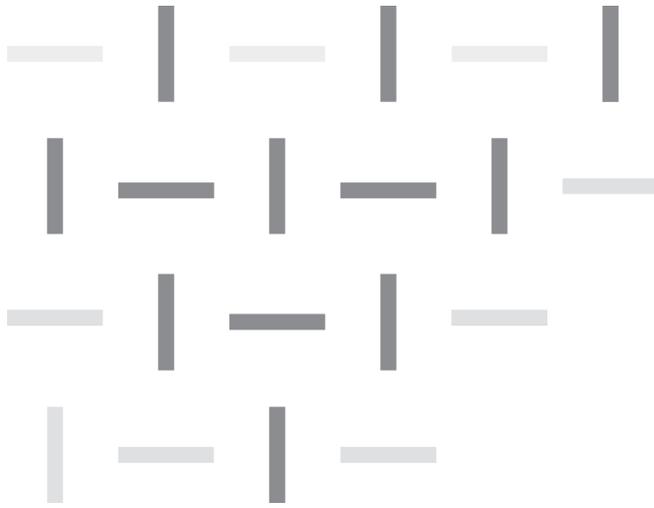
3. 소결

- 이상의 전문가 자문의견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음.
-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발생 체감도에 대해서 모든 응답자가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다’(5명) 또는 ‘과거보다 매우 증가하고 있다’(3명)를 선택하였음.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이유로는 단적으로 이전보다 상담건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제시하였음. 실제로 이는 앞선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유관 기관 상담건수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13년 여성폭력상담소 상담건수가 8,152건이었던 것이 2014년부터는 10,000건을 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리고 이와 같이 체감되는 다른 요인으로는 이전과는 달리 젠더폭력에 대한 젊은 층들의 인식이 많이 변화하였다는 점, 젠더폭력이 더욱 다양화되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인식되고 있다는 점, 인터넷 등의 발달로 성매매는 더욱 교묘하게 발달하고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으며, 그 밖에도 성평등하지 못한 사회 환경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심 부족이나 공격성 등과 같은 간접요인도 제시되었음.
- 다음으로 지역적 특성으로는 대표적으로 ‘남성중심의 공업지역, 산업도시’라는 울산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젠더폭력의 특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었음. 즉, 울산은 남성중심의 공업지역으로써 가부장적인 문화가 발달해 있고, 여성이 전업주부이며 남성이 경제력을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아 특히 가정폭력 등과 같은 가정 내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여성이 홀로서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를 공론화하는 것을 두려워 하거나 또는 남편의 직장을 따라 이주한 경우도 많아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해도 요청할 네트워크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울산지역에는 회사나 공장 등이 다수 밀집해 있어 업무상 접대문화가 발달되어 있다는 점이 성매매의 활성화 원인으로도 지적되고 있음. 그 밖에 이러한 현상은 대학문화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울산지역에는 지역대학이 극소수이며, 동시에 공대 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유사한 분위기가 젊은 층 사이에도 존재한다는 지적임.
- 다음으로 젠더폭력 예방사업 진행 현황과 관련해서는 크게 젠더폭력 예방 캠페인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학교폭력 등에 대한 예방교육이며, 사업 진행 시의 어려움으로는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홍보의 어려움, 관련 예산 부족 등이 지적되었음.
- 다음으로 유관기관 협력체계 필요여부에 대해서는 대체로 매우 필요하다는 입장(5명)이 많았음.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며, 필요함(2명)이 다음으로 많았으며, 전혀 필요하지 않음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1명 있었음. 우선 매우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젠더폭력은 사회구조적 문제이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므로 지역주민 전반의 인식 전환을 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의 협력체계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는 입장임. 특히 협력체계는 유관기관 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등 각계각층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주로 지적되었음. 또한 지자체 수준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면 더욱 촘촘한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으며, 전문강사풀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강사 모집이나 구성 등에서도 협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었음. 한편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에서는 협력체계가 이미 존재하며, 협력체계의 부재가 문제가 아니라 인력 부족 등 현실적 여건의 어려움에 따라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활동 시, 이러한 협력체계는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라는 설문에 대해 가장 우선순위로 제시된 것은 ‘관련 예방·홍보·대민교육 전략협의’로 나타났음.
- 다음으로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예방정책 현황을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젠더폭력 관련 대시민 인식개선 제고 및 신고체계’나 ‘지역사회 중심의 젠더폭력 예방교육’ 등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그리고 울산지역의 젠더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도입 또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차원의 여성폭력 예방관련 조례 제정”과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울산광역시의 중·장기 계획 수립”를 1순위로 드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밖에 2순위와 3순위로는 “여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에 대한 시비확대” 및 “일반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마지막으로 젠더폭력 예방정책에 관한 자유의견을 묻는 문항에 대해,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금지 강화방안 모색, 젠더폭력 감소를 위한 생애주기별 성평등 교육 실시, 관련 조례제정 및 홍보 강화, 젠더폭력의 개념 및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는 교육 필요, 예방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 젠더폭력 예방정책을 총괄하는 통합지원 부서 마련, 젠더폭력 예방 관련 인프라 및 거버넌스 구축 등이 제시되었음.
- 이상의 전문가 의견을 염두에 두고, 다음으로는 젠더폭력에 관한 울산시민의 인식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그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고자 함.



IV. 울산시민의 젠더폭력 인식조사 결과 분석

1. 조사 개요	087
2. 조사 결과	090
3. 소결	163

Ⅳ 울산시민의 젠더폭력 인식조사 결과 분석

1.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울산광역시 시민의 젠더폭력 관련 경험 및 인식, 유관기관 및 정책에 대한 인지도 등을 파악하여, 향후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2) 조사 설계

〈표Ⅳ-1〉 조사설계

구 분	조사설계
조사 대상	만 19세 이상 울산광역시 거주 시민
유효 표본	500표본
조사 방법	일대일 개별면접조사
조사 기간	2018년 11월 3일 ~ 11월 16일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3) 조사 내용

〈표Ⅳ-2〉 조사 내용

구분	조사 내용
젠더폭력 발생현황	젠더폭력 인지 여부
	최근 젠더폭력 경향 체감도
	젠더폭력 경험 여부
	경험한 젠더폭력
	젠더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젠더폭력 목격 여부
	목격한 젠더폭력
	젠더폭력 목격 시 대처방법
	젠더폭력 발생 시 대처방안
젠더폭력에 관한 인식	젠더폭력에 관한 인식
	젠더폭력 처벌 수위에 대한 인식
	젠더폭력의 범위에 대한 인식
젠더폭력 예방교육	젠더폭력 예방교육 참여 경험
	참여한 젠더폭력 예방교육 주제
	젠더폭력 예방교육 수강 경로
	젠더폭력 예방교육 후 인식 전환 여부
	향후 젠더폭력 예방교육 수강 의향
	젠더폭력 예방교육 시행 필요 주제
	젠더폭력 예방교육의 젠더폭력 예방 도움정도
	젠더폭력 예방교육 적절 시기
젠더폭력 관련 유관기관 인지도 및 정책육구	울산지역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인지도
	울산지역 젠더폭력 사업 인지도
	젠더폭력 예방위해 중요한 정책

(4) 응답자 특성

〈표IV-3〉 응답자 특성

		사례수	비율(%)
전 체		(500)	100.0
성별	여성	(243)	48.6
	남성	(257)	51.4
연령	20대	(89)	17.8
	30대	(94)	18.8
	40대	(109)	21.8
	50대	(121)	24.2
	60세 이상	(87)	17.4
거주지	중구	(102)	20.4
	남구	(145)	29.0
	동구	(70)	14.0
	북구	(87)	17.4
	울주군	(96)	19.2
혼인상태	미혼	(135)	27.0
	기혼	(355)	71.0
	이혼/별거/사별	(10)	2.0
최종학력	고졸 이하	(287)	57.4
	대학교 재학	(41)	8.2
	대학교 졸업	(172)	34.4
직업	관리직	(3)	0.6
	전문직	(5)	1.0
	사무직	(84)	16.8
	영업직	(20)	4.0
	생산/기술직	(61)	12.2
	판매/서비스직	(113)	22.6
	기능직	(38)	7.6
	자영업	(76)	15.2
	공무원/교원	(4)	0.8
	농/임/축산/어업	(2)	0.4
	비영리단체/기관	(1)	0.2
	학생	(39)	7.8
	무직	(29)	5.8
	가정주부	(25)	5.0

2.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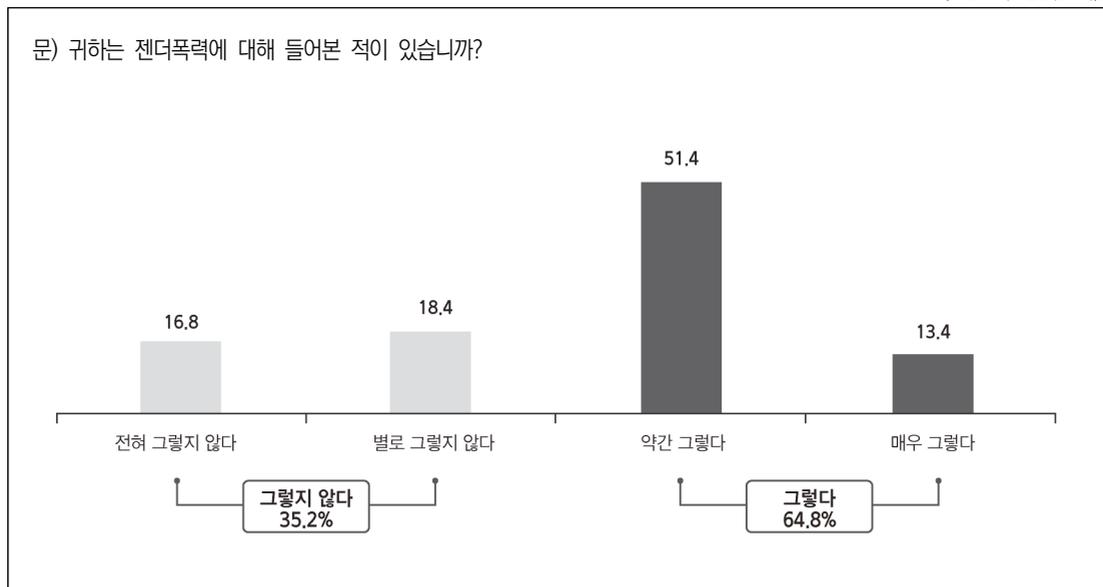
(1) 젠더폭력 발생현황

1) 젠더폭력 인지 여부

- 젠더폭력 인지여부를 살펴본 결과,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64.8%(그렇다:13.4%+약간 그렇다: 51.4%), 인지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35.2%(전혀 그렇지 않다:16.8%+별로 그렇지 않다:18.4%)로 조사되었음.

〈그림Ⅳ-1〉 젠더폭력 인지 여부

(n=5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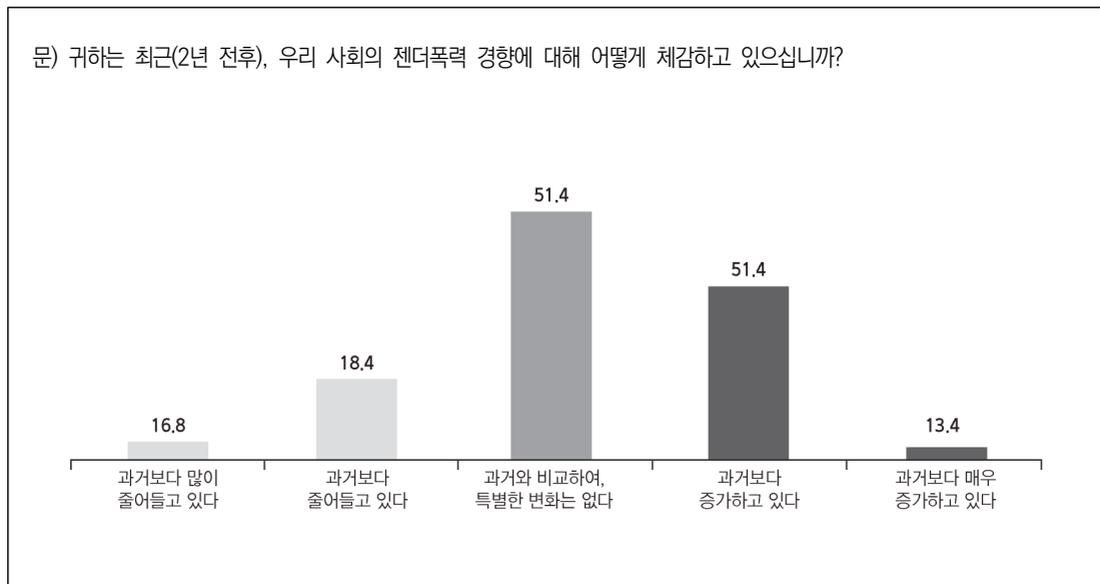
- 성별로는 여성(64.8%)이 남성(62.6%)에 비해 젠더폭력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으나, 매우 근소한 차이를 보임.
-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젠더폭력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20대가 85.4%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인지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미혼의 인지율이 83.0%로 기혼(58.0%) 대비 높게 나타남.

2) 최근 젠더폭력 경향 체감도

- 최근 우리 사회의 젠더폭력 경향에 대해,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다는 응답은 35.2%(과거보다 매우 증가하고 있다:2.4%+과거보다 증가하고 있다:32.8%), ‘감소’하고 있다는 응답은 18.0%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다:3.0%+과거보다 줄어들고 있다:15.0%)로 조사되었음.

〈그림Ⅳ-2〉 최근 젠더폭력 경향 체감도

(n=500, 단위: %)



-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다는 응답은 여성이 41.2%로 남성(29.6%) 대비 높게 나타났음.
-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에서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다는 응답이 30%를 상회하였고, 특히 30대의 경우에는 39.4%가 종합적으로 볼 때 과거보다 젠더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거주지별로 보면, 울주군의 경우 과거보다 ‘감소’하고 있다는 응답이 42.7%로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동구의 경우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다는 응답이 44.3%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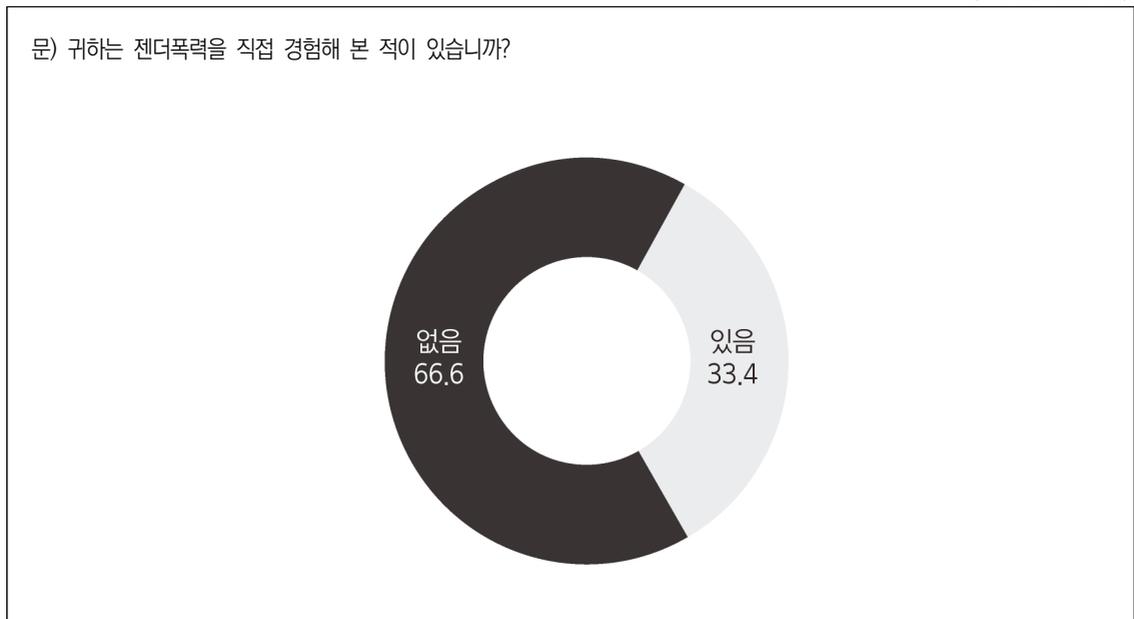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3) 젠더폭력 경험 여부

○ 젠더폭력을 경험해본 경험에 대해 응답자의 33.4%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Ⅳ-3〉 젠더폭력 경험 여부

(n=500, 단위: %)



- 성별 분석 결과, 여성의 경험율은 44.0%로 남성(23.3%)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의 경험율이 40.4%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젠더폭력 경험율이 30%를 상회함.
- 거주지별로는, 북구(43.7%), 동구(41.4%), 남구(29.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인 경우가 38.5%, 기혼인 경우가 31.5%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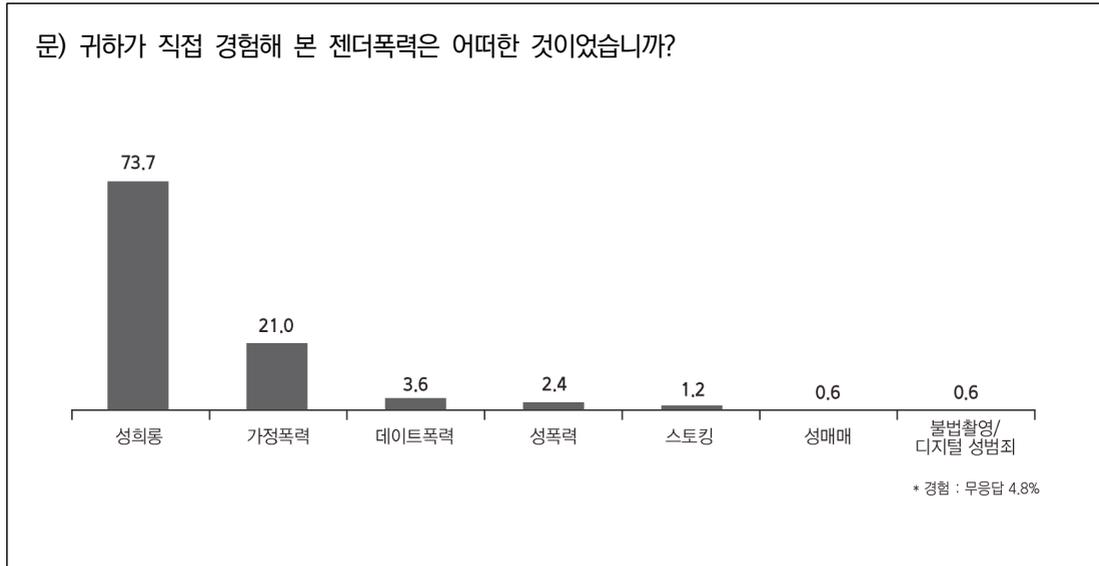
4) 경험한 젠더폭력

○ 젠더폭력을 직접 경험한 167명을 대상으로, 경험한 젠더폭력을 조사한 결과 ‘성희롱’이 73.7%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그 다음으로 ‘가정폭력’이 21.0%, ‘데이트폭력’이 3.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성희롱과 가정폭력이 응답자가 경험한 젠더폭력의 90% 이상의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Ⅳ-4〉 경험한 젠더폭력

(n=167, 단위: %)



- 경험한 젠더폭력을 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성은 성희롱이 73.7%, 가정폭력이 17.8%로 나타났고, 남성은 성희롱이 70.0%, 가정폭력이 26.7%로 나타났음. ‘가정폭력’에 대한 응답은 남성이 26.7%로 여성(17.8%) 대비 높았음. 다만, 이는 젠더폭력 경험 유무를 묻는 질문에서 젠더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남성(n=60)에 비해, 여성(n=107)이 더 많았기 때문이고, 남성에 대한 가정폭력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연령대별 분석 결과, ‘성희롱’에 대한 응답은 20대가 84.4%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응답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반면 60세 이상의 경우 ‘가정폭력’에 대한 응답이 64.0%로 타 연령대 대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 살펴보면, ‘불법촬영/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응답은 무직이 12.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리고 응답수가 높은 판매/서비스직(90.9%)에서 성희롱의 경험비율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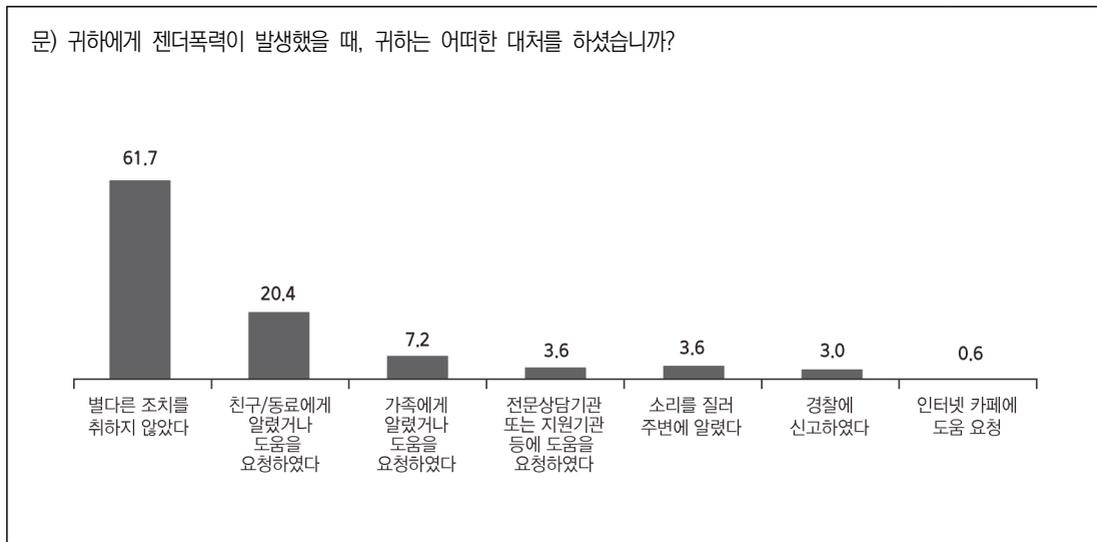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5) 젠더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 젠더폭력을 경험한 응답자(n=167)는 젠더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으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61.7%)를 주로 꼽음.
- 그 다음으로 ‘친구/동료에게 알렸거나 도움을 요청하였다’ 20.4%, ‘가족에게 알렸거나 도움을 요청하였다’ 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Ⅳ-5〉 젠더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n=16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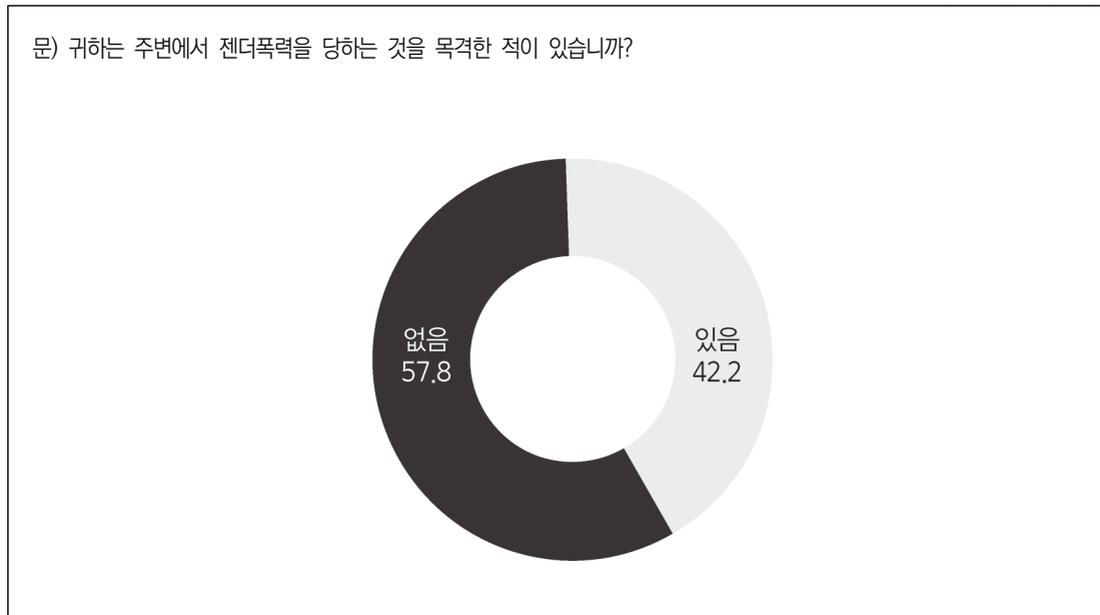
- 젠더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해 성별로 살펴보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를 선택한 비율은 여성(57.0%)에 비해 남성(70.0%)이 더 높았음. 여성의 경우에는 ‘친구/동료’(22.4%), ‘가족에게 알렸거나 도움을 요청’(8.4%)한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반면 ‘경찰에 신고하였다’ 응답 비율은 여성(0.9%)에 비해 남성(6.7%)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최종 학력별 분석 결과, ‘친구/동료에게 알렸거나 도움을 요청하였다’에 대한 응답 비율은 고졸 이하가 12.6%로 대학교 재학(27.3%), 대학교 졸업(29.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6) 젠더폭력 목격 여부

- 주변에서 젠더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에 대해 응답자의 42.2%가 '있음'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본인이 젠더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률(33.4%)보다 높은 수치임.

〈그림Ⅳ-6〉 젠더폭력 목격 여부

(n=500, 단위: %.)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목격 경험 비율이 46.1%로 남성(38.5%) 대비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연령대별로 젠더폭력 목격 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20대가 52.8%로 가장 높은 반면 60세 이상의 경우 37.9%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거주지별로는 중구의 목격 경험 비율이 56.9%로 가장 높았으며, 울주군(44.8%)이 그 뒤를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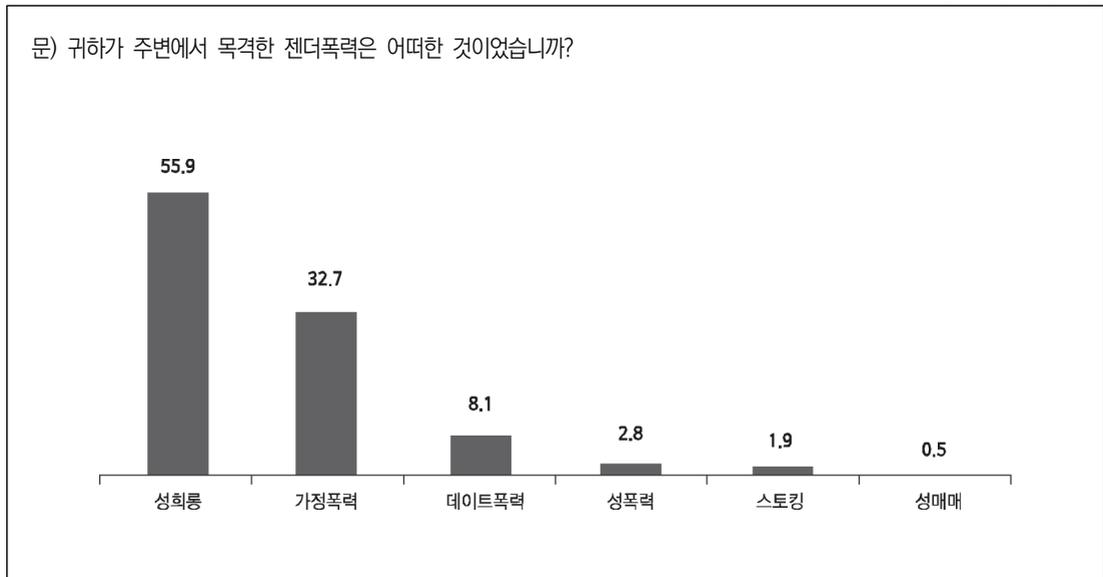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7) 목격한 젠더폭력

○ 주변에서 젠더폭력 당한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n=211)의 55.9%는 ‘성희롱’을 주로 목격한 것으로 조사됨.

〈그림Ⅳ-7〉 목격한 젠더폭력

(n=21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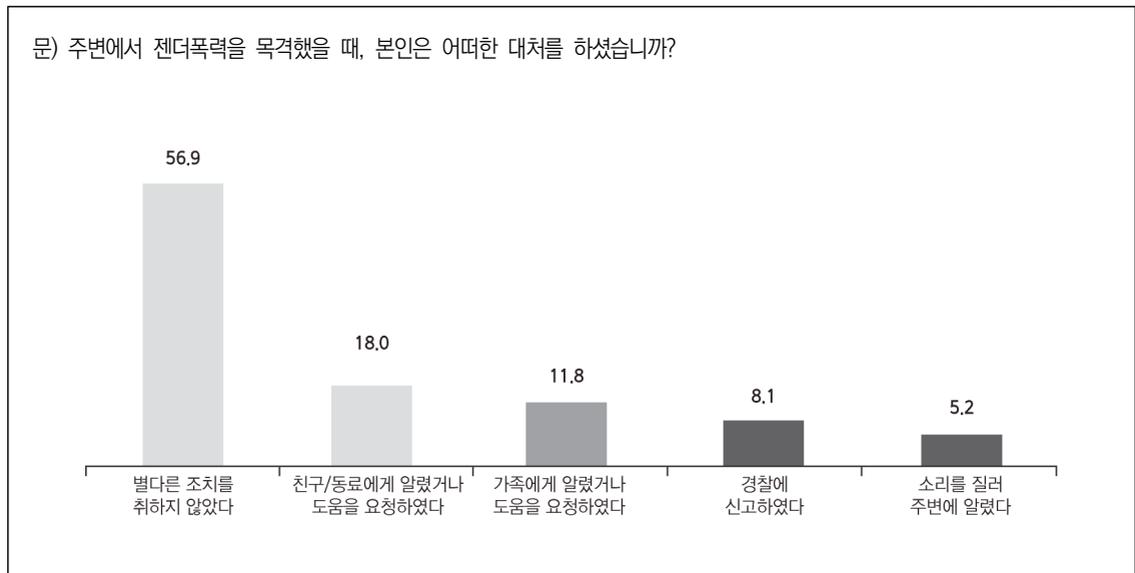
-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20대와 30대의 경우 ‘성희롱’에 대한 응답 비율이 7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나, 50대 이상과 60세 이상의 경우 ‘가정폭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률이 각각 50%를 넘었음 (50대 51.3%, 60대 63.6%).
-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중구의 경우 ‘가정폭력’ 응답 비율이 43.1%로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최종 학력별로 보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응답은 대학교 재학이 26.7%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8) 젠더폭력 목격 시 대처방법

- 젠더폭력을 목격한 응답자(n=211)의 목격 시 대처방법으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56.9%)을 주로 꼽음.
- 그 다음으로 ‘친구/동료에게 알렸거나 도움을 요청하였다’ 18.0%, ‘가족에게 알렸거나 도움을 요청하였다’ 1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Ⅳ-8〉 젠더폭력 목격 시 대처방법

(n=211, 단위: %.)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경찰에 신고하였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소리를 질러 주변에 알렸다’고 응답한 비율도 모든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60세 이상에서 10%를 넘는 비율(15.2%)을 보였음.
- 즉, 전 연령대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를 선택한 비율이 모두 50%를 넘었으며, 20~30대에서는 친구나 동료,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한 비율이 높았고, 경찰이나 주변의 도움이 요청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거주지별로 보면, ‘친구/동료에게 알렸거나 도움을 요청하였다’에 대한 응답은 중구가 24.1%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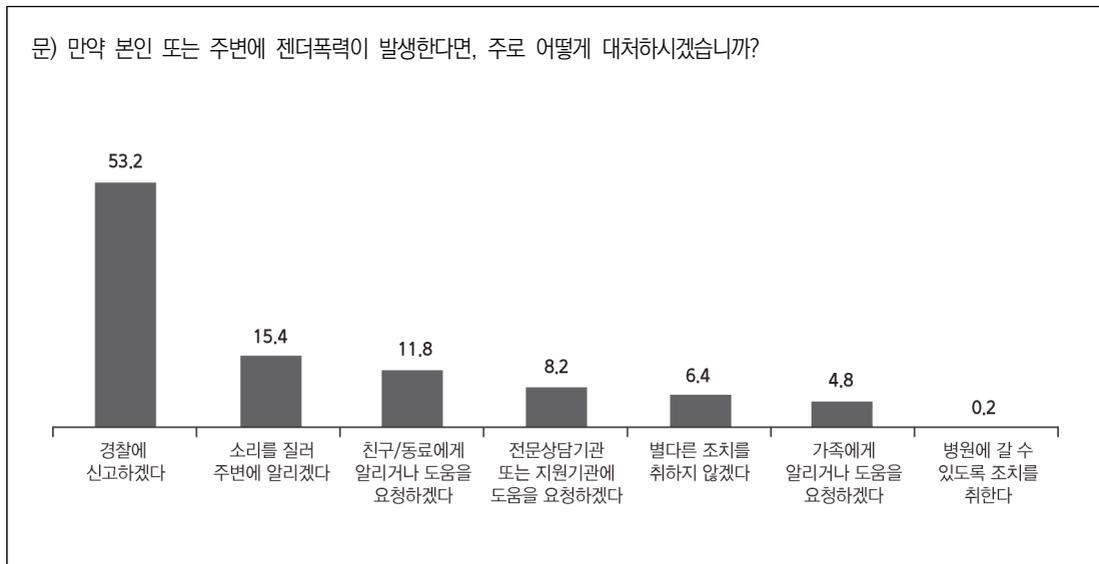
- 젠더폭력 경험여부별로 보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에 대한 응답은 경험자가 49.5%로 비경험자(64.2%) 대비 낮게 나타남.

9) 젠더폭력 발생 시 대처방안

- 만약 본인 또는 주변에서 젠더폭력이 발생할 경우 대처방안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53.2%를 주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소리를 질러 주변에 알리겠다'가 15.4%로 그 뒤를 따름.

〈그림Ⅳ-9〉 젠더폭력 발생 시 대처방안

(n=500, 단위: %.)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가 58.4%로 남성(48.2%) 대비 높았으며, 남성의 경우 '전문상담기관/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가 10.9%로 여성(5.3%) 대비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 분석 결과, '소리를 질러 주변에 알리겠다'에 대한 응답은 30대(21.3%)에서, '친구/동료에게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겠다'에 대한 응답은 20대(21.3%)에서 가장 높음.
-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실제로 젠더폭력을 경험하였거나 젠더폭력을 목격한 때에는 주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를 선택한 응답률이 상당히 높았으나, 향후 젠더폭력이 발생하거나 목격

한다면 어떠한 대처를 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소리를 질러 주변에 알려줬다'를 비롯해 다양한 대처방안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응답의 차이는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는데, 우선 이전 경험 및 목격 상황에서 본인의 대처방식에 대한 반성이나 후회에 따른 것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전보다 젠더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더욱 느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라 여겨짐. 그리고 그 밖에도 가정상으로는 젠더폭력의 경험이나 목격 상황을 외부에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이와 같이 공론화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응답률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음.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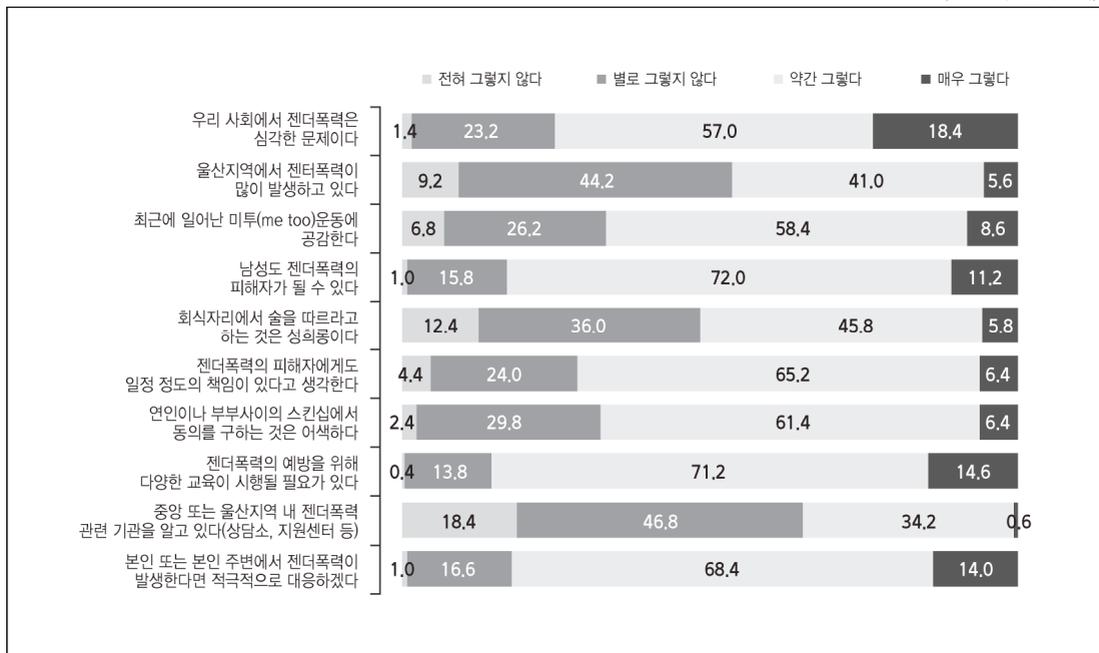
(2) 젠더폭력에 관한 인식

1) 젠더폭력에 관한 인식

- 젠더폭력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젠더폭력의 예방을 위해 다양한 교육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이 85.8%(매우 그렇다:14.6%+약간 그렇다:71.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중양 또는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관련기관을 알고 있다(상담소, 지원센터 등)'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은 34.8%(매우 그렇다:0.6%+약간 그렇다:34.2%)로 타 항목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울산지역에서 젠더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에 대해서는 긍정 응답 비율(46.6% 매우 그렇다:5.6%+약간 그렇다:41.0%)보다 부정 응답 비율(53.4%, 전혀 그렇지 않다:9.2%+별로 그렇지 않다:44.2%)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Ⅳ-10〉 젠더폭력에 관한 인식(요약)

(n=5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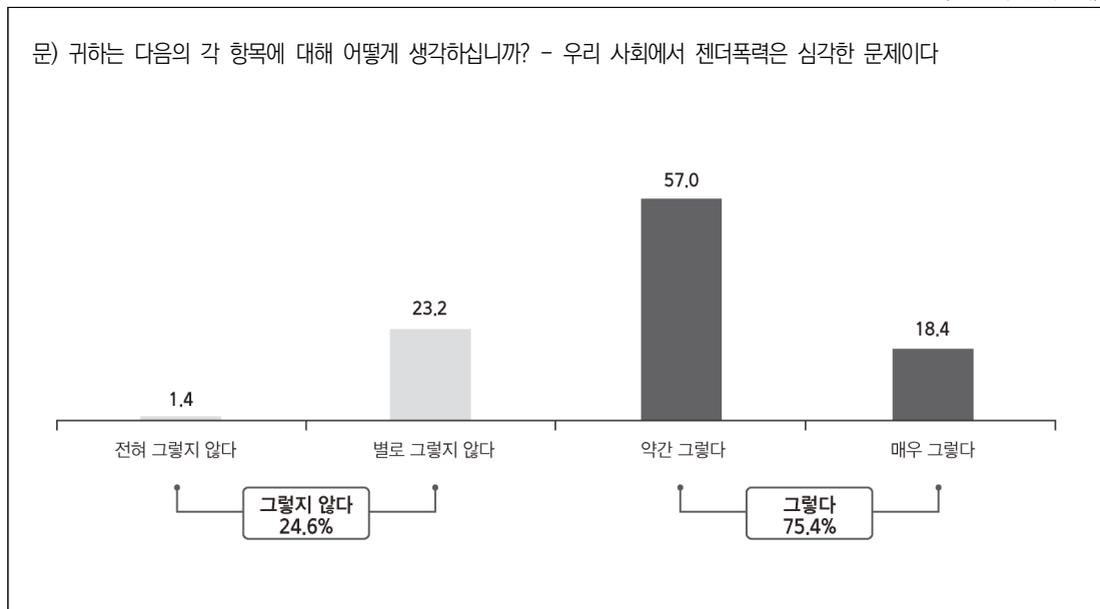


① 우리 사회에서 젠더폭력은 심각한 문제이다

- ‘우리 사회에서 젠더폭력은 심각한 문제이다’ 항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4%(매우 그렇다: 18.4%+약간 그렇다:57.0%)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으나,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남성(72%)에 비해 여성(79%)이 약간 더 젠더폭력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Ⅳ-11〉 젠더폭력에 관한 인식 - 우리 사회에서 젠더폭력은 심각한 문제이다

(n=500, 단위: %)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그렇다’에 대한 응답 비율은 30대가 83.%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의 경우 69.0%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젠더폭력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70%를 상회하고 있음.
- 거주지별로는 중구(88.2%), 울주군(84.4%), 동구(77.1%)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젠더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응답자의 경우 ‘그렇다’에 대한 응답 비율(각각 77.2%, 86.7%)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 대비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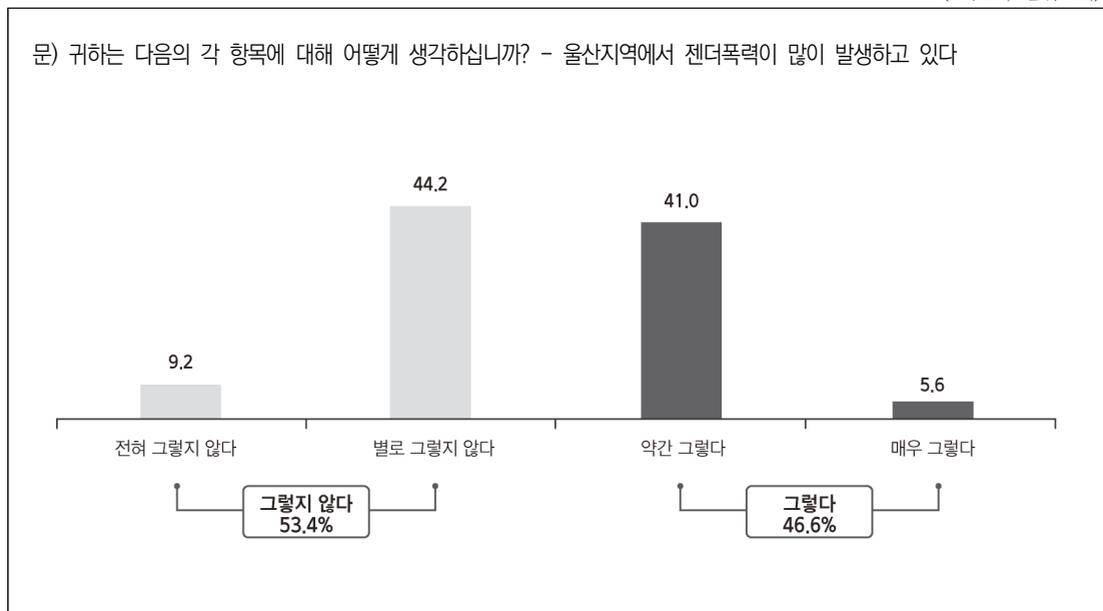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② 울산지역에서 젠더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울산지역에서 젠더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항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46.6%(매우 그렇다: 5.6%+약간 그렇다:41.0%)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Ⅳ-10〉 젠더폭력에 관한 인식 - 울산지역에서 젠더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n=5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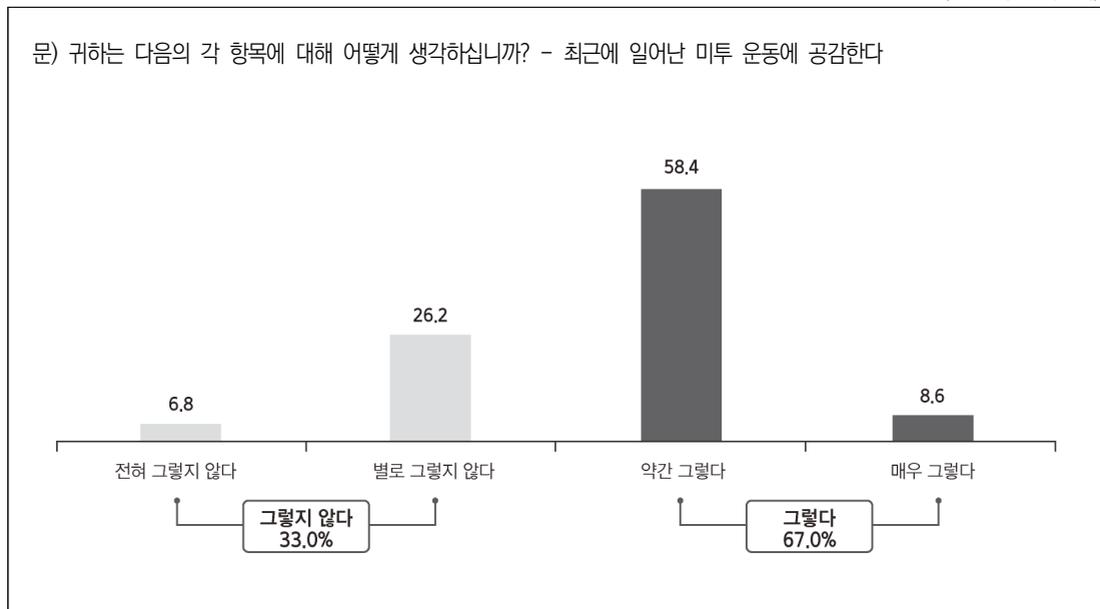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그렇다’ 응답 비율이 51.9%로 남성(41.6%)에 비해 높았음.
- 거주지별로 살펴본 결과, 중구의 ‘그렇다’ 응답 비율이 60.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남구의 경우 36.6%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최종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44.3%, 대학교 재학이 46.3%, 대학교 졸업이 50.6%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울산지역의 젠더폭력을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젠더폭력 인지여부별로는, 인지자의 ‘그렇다’ 응답 비율이 56.8%로 비인지자(27.8%)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젠더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의 경우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음.

③ 최근에 일어난 미투(#MeToo) 운동에 공감한다

- ‘최근에 일어난 미투 운동에 공감한다’ 항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67.0%(매우 그렇다:8.6%+약간 그렇다:58.4%), ‘그렇지 않다’는 33.0%(전혀 그렇지 않다:6.8%+별로 그렇지 않다:26.2%)로 조사됨.

〈그림Ⅳ-13〉 젠더폭력에 관한 인식 - 최근에 일어난 미투 운동에 공감한다

(n=500, 단위: %)



- 미투 운동에 대한 공감 정도를 성별로 살펴보면, 긍정 응답률은 여성이 76.1%로 남성(58.4%)에 비해 높음.
-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그렇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구체적으로는 20대 및 30대에서는 ‘그렇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78%를 상회하였고, 40대에서는 66.1%, 50대 59.5%, 60대 54.0%로 나타남.
- 혼인 상태별로는, 미혼자의 미투운동 공감 정도 긍정 응답률이 80.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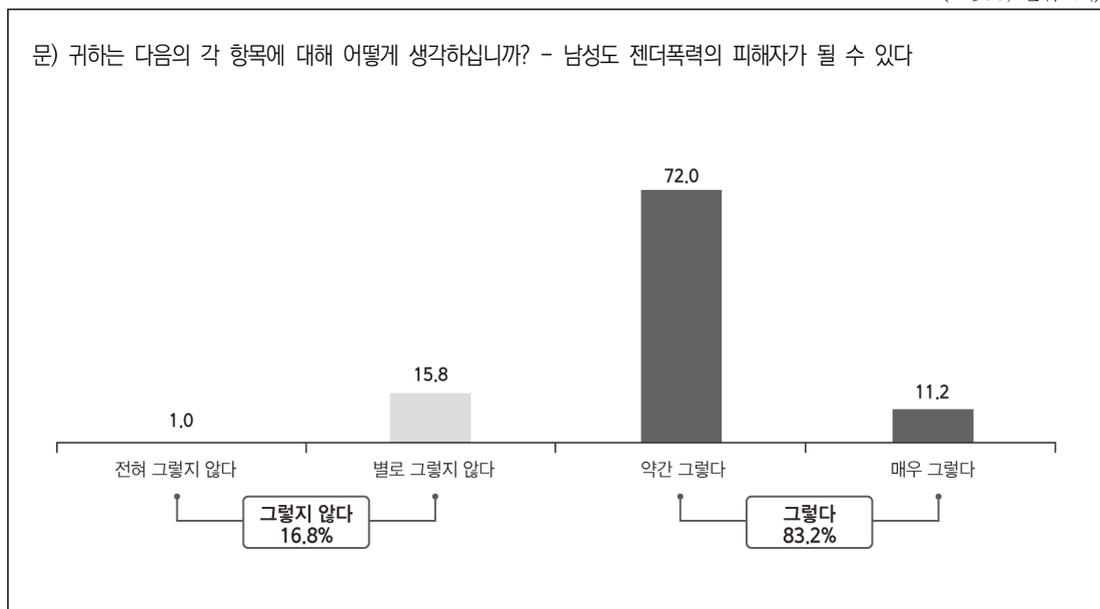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④ 남성도 젠더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남성도 젠더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2%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11.2%+약간 그렇다:72.0%)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Ⅳ-14〉 젠더폭력에 관한 인식 - 남성도 젠더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n=5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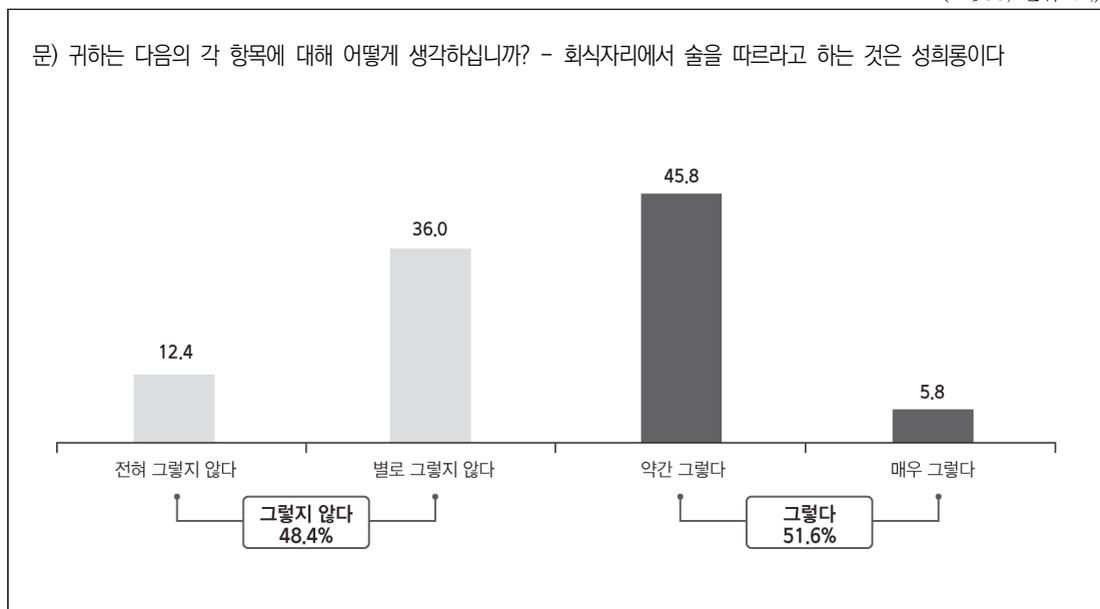
- 성별로 살펴본 결과, ‘그렇다’에 대한 응답 비율은 여성이 86.0%로 남성(80.5%)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그렇다’에 대한 응답 비율은 20대와 30대가 각각 91.0%, 92.6%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⑤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성희롱이다

○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성희롱이다’ 항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51.6%(매우 그렇다:5.8%+약간 그렇다:45.8%), ‘그렇지 않다’는 48.4%(전혀 그렇지 않다:12.4%+별로 그렇지 않다:36.0%)로 조사됨

〈그림Ⅳ-15〉 젠더폭력에 관한 인식 -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성희롱이다

(n=500, 단위: %)



- 성별에 따른 동의 정도를 살펴보면, 여성이 57.2%로 남성(46.3%)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그렇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20대 57.3%, 60세 이상 44.8%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최종 학력별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고졸 이하 46.3%, 대학교 재학 53.7%, 대학교 졸업 59.9%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하는 것을 성희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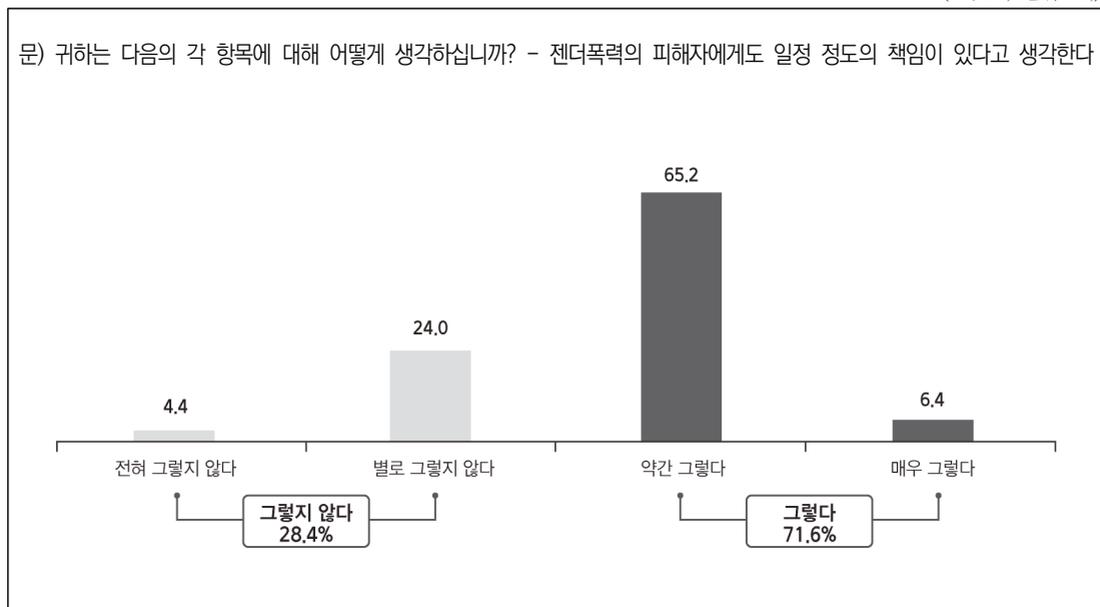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⑥ 젠더폭력의 피해자에게도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 ‘젠더폭력의 피해자에게도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항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6%(매우 그렇다:6.4%+약간 그렇다:65.2%)가 ‘그렇다’라고 응답함.

〈그림Ⅳ-16〉 젠더폭력에 관한 인식 - 젠더폭력의 피해자에게도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n=500, 단위: %.)



○ 성별로 살펴보면, ‘그렇다’ 응답 비율은 여성 72.0%, 남성 71.2%로 조사되어 성별에 따른 큰 차이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혼인 상태별로는 기혼자의 긍정 응답율이 73.8%로 미혼(66.7%) 대비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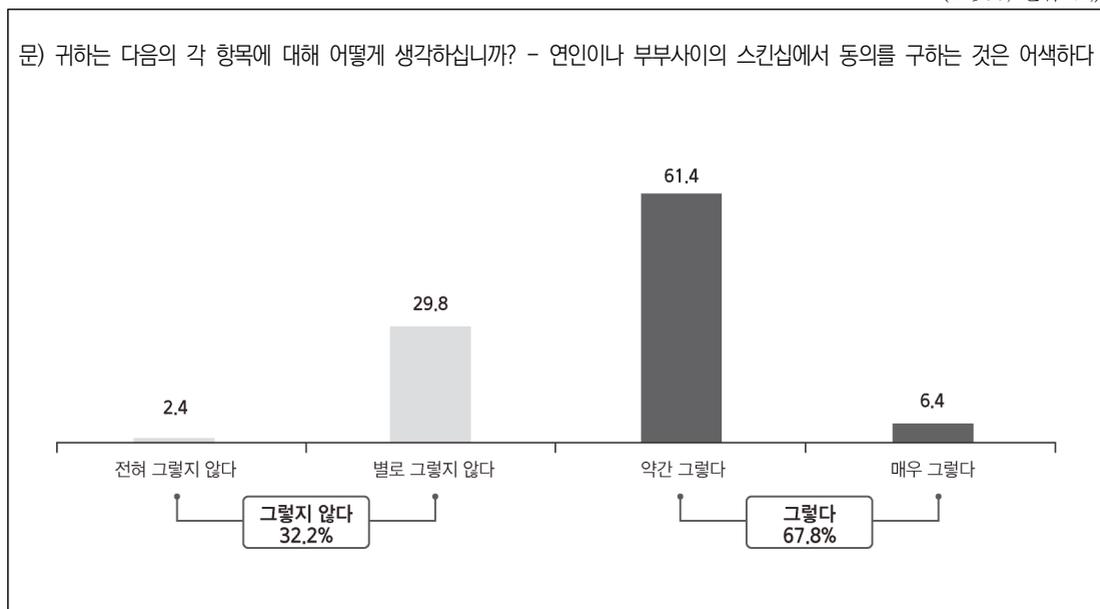
○ 젠더폭력 경험여부별로 살펴보면, 경험자의 긍정 응답율이 66.5%로 비경험자(74.2%) 대비 낮게 나타남.

⑦ 연인이나 부부사이의 스킨십에서 동의를 구하는 것은 어색하다

- ‘연인이나 부부사이의 스킨십에서 동의를 구하는 것은 어색하다’ 항목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67.8%가 ‘그렇다’(매우 그렇다:6.4%+약간 그렇다:61.4%)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Ⅳ-17〉 젠더폭력에 관한 인식 - 연인이나 부부사이의 스킨십에서 동의를 구하는 것은 어색하다

(n=500, 단위: %.)



-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20대의 ‘그렇다’ 응답 비율이 76.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50대 66.1%, 60대 이상 67.8%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라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혼인 상태별로 살펴보면, 기혼자의 경우 ‘그렇다’ 응답 비율이 69.9%로 미혼자(61.5%) 대비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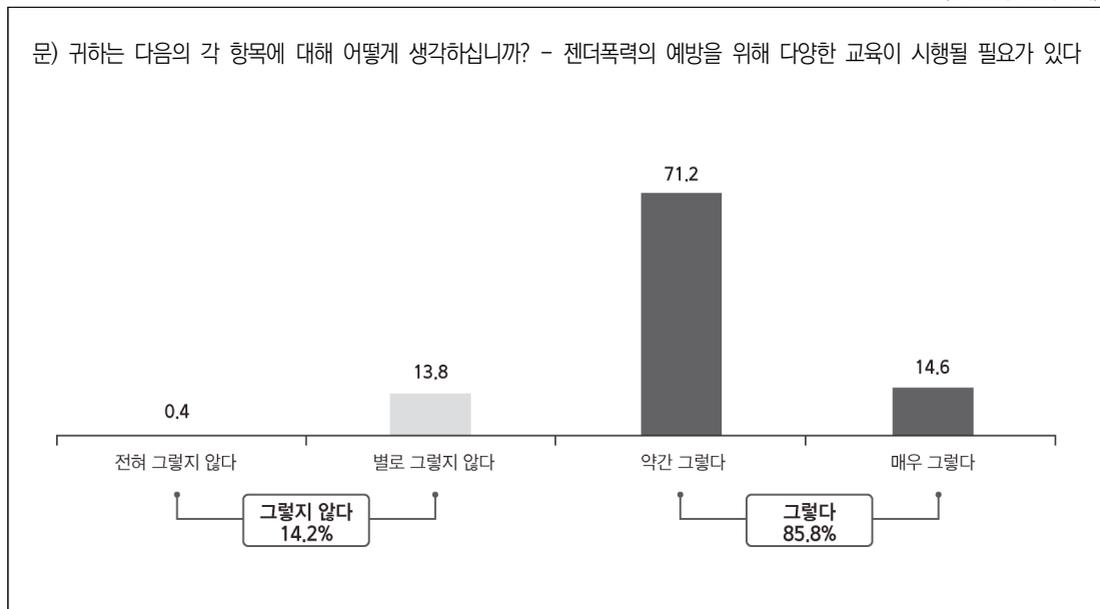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⑧ 젠더폭력의 예방을 위해 다양한 교육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 ‘젠더폭력의 예방을 위해 다양한 교육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항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85.8%(매우 그렇다:14.6%+약간 그렇다:71.2%)의 응답자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Ⅳ-18〉 젠더폭력에 관한 인식 - 젠더폭력의 예방을 위해 다양한 교육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n=5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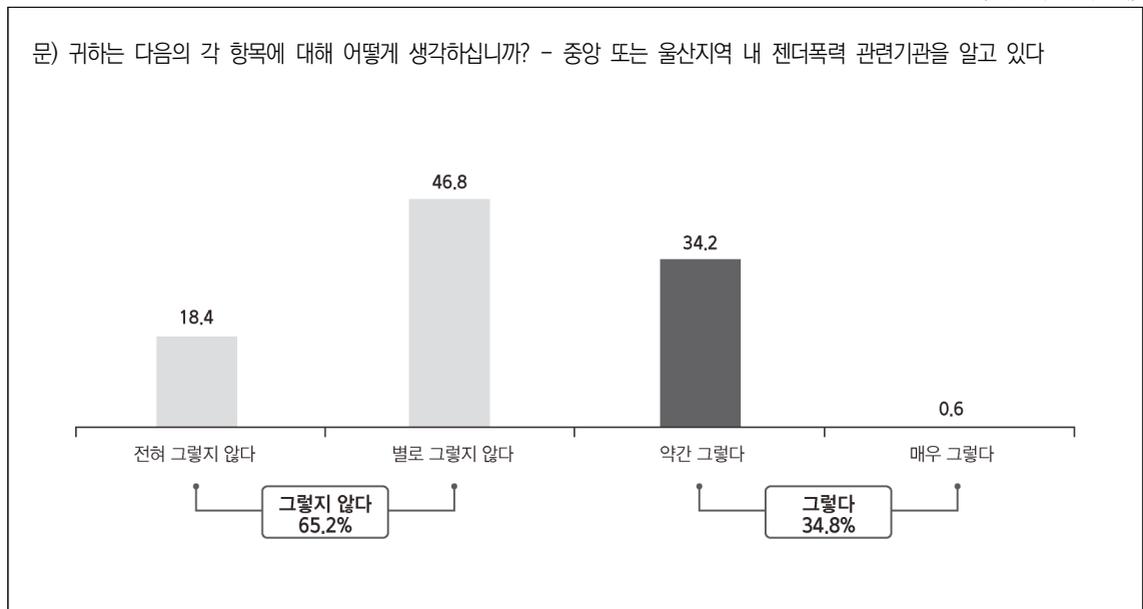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긍정 비율이 87.2%로 남성(84.4%)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50대의 ‘그렇다’ 응답 비율이 80.2%로 타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거주지별로는 울주군의 긍정 비율이 90.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동구(88.6%), 중구(8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혼인 상태별로는 미혼자(88.9%)의 경우가 기혼자(84.5%)에 비해 젠더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남.

⑨ 중앙 또는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관련기관을 알고 있다

- ‘중앙 또는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관련기관을 알고 있다’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다’가 65.2%(전혀 그렇지 않다:18.4%+별로 그렇지 않다:46.8%)로 조사되어 ‘그렇다’ 34.8% (매우 그렇다:0.6%+약간 그렇다:34.2%)에 비해 높은 응답을 보임.

〈그림Ⅳ-19〉 젠더폭력에 관한 인식 - 중앙 또는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관련기관을 알고 있다

(n=500, 단위: %)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의 ‘그렇다’ 응답 비율이 28.7%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50대(32.2%)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임.
- 거주지별로 보면, ‘그렇다’ 응답 비율은 동구(44.3%), 중구(39.2%), 북구(3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또한 젠더폭력을 경험한 적(34.7%)이 있거나 또는 젠더폭력을 목격한 적(37.4%)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에도 젠더폭력 관련기관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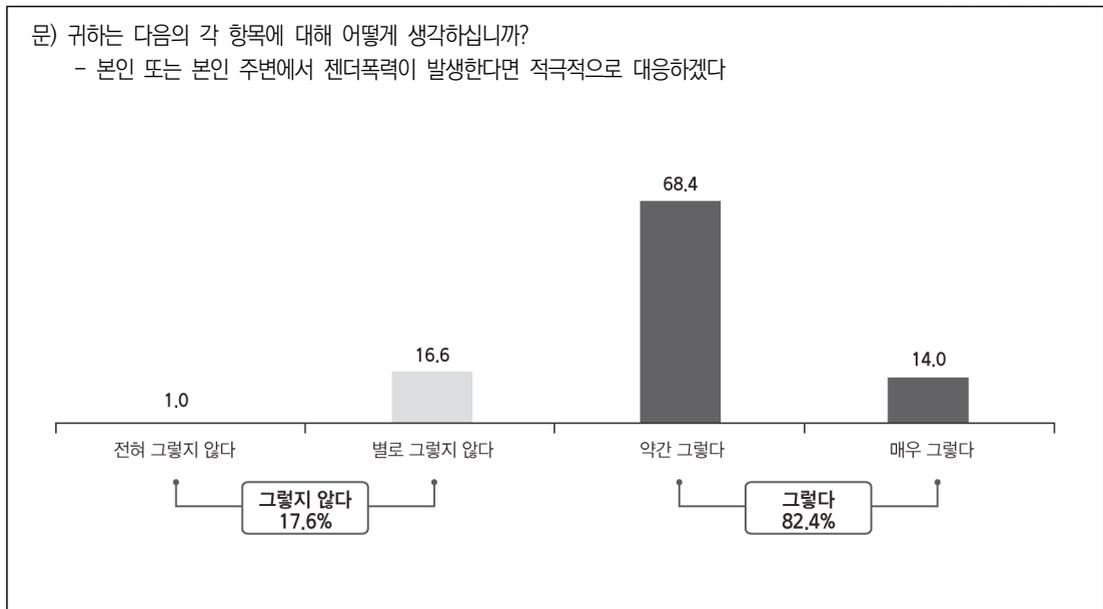
⑩ 본인 또는 본인 주변에서 젠더폭력이 발생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 ‘본인 또는 본인 주변에서 젠더폭력이 발생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항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82.4%(매우 그렇다:14.0%+약간 그렇다:68.4%)로 조사됨.

〈그림Ⅳ-20〉 젠더폭력에 관한 인식

- 본인 또는 본인 주변에서 젠더폭력이 발생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n=500, 단위: %)



○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여성의 긍정 응답 비율이 86.4%로 남성(78.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의 긍정 응답 비율이 92.1%로 가장 높은 반면 50대가 72.7%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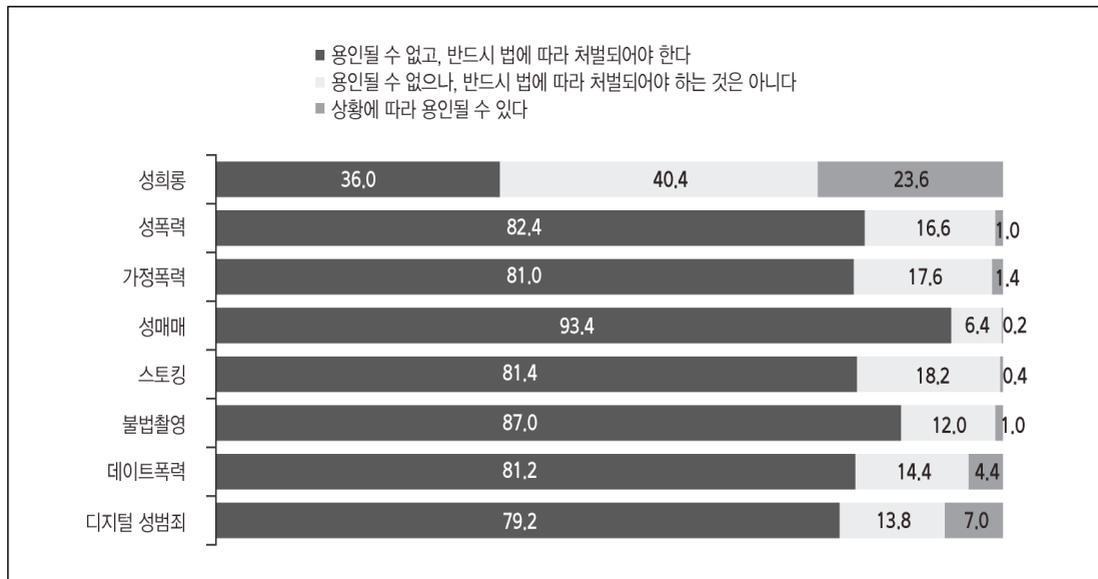
○ 거주지별로는 ‘그렇다’ 응답 비율이 울주군과 중구에서 90%의 높은 응답을 보임.

2) 젠더폭력 처벌 수위에 대한 인식

- 각 젠더폭력 범죄 유형별 처벌 수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용인될 수 없고,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성매매’가 93.4%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음.
- 반면 ‘상황에 따라 용인될 수 있다’는 응답은 ‘성희롱’이 23.6%로 타 항목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Ⅳ-21〉 젠더폭력 처벌 수위에 대한 인식

(n=5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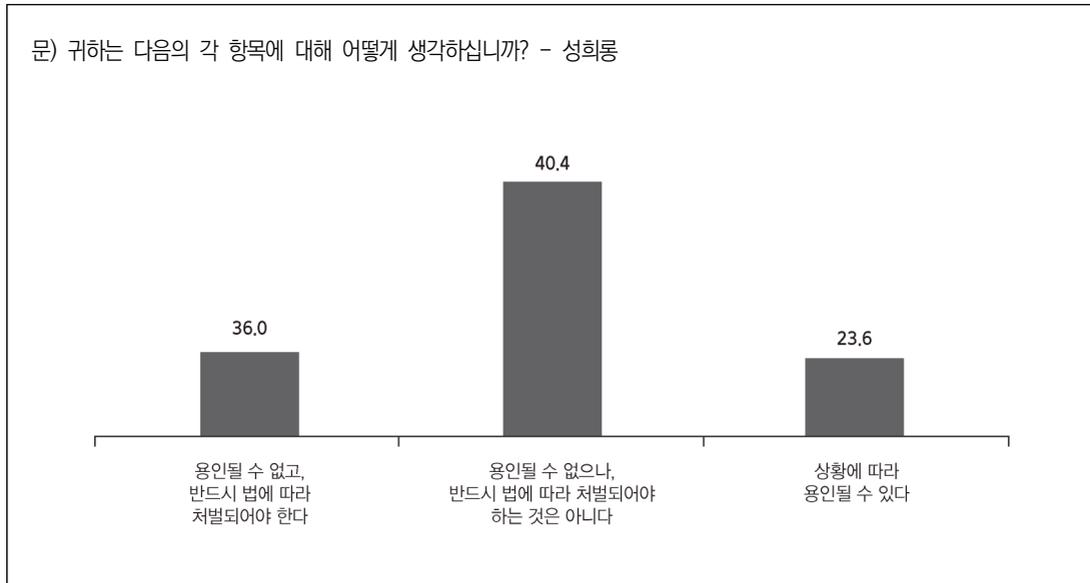
① 성희롱

-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용인될 수 없으나,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가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그림Ⅳ-22〉 젠더폭력 처벌 수위에 대한 인식 - 성희롱

(n=5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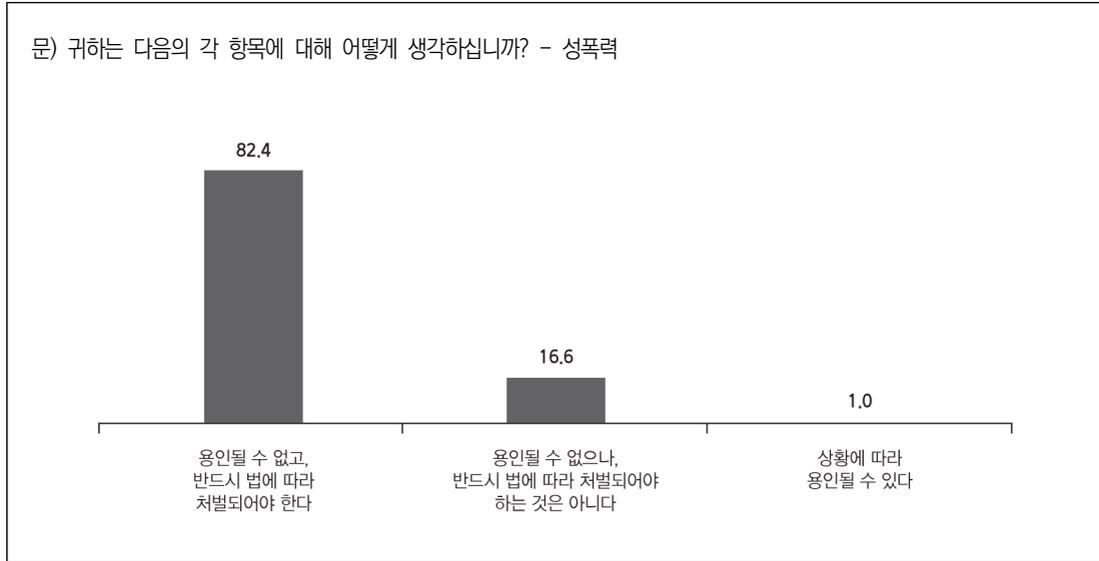
- 성별로 살펴보면 ‘용인될 수 없고,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에 대한 응답은 여성이 40.3%로 남성(31.9%) 대비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 보면, ‘상황에 따라 용인될 수 있다’에 대한 응답은 60세 이상이 26.4%로 타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직업별로는 ‘용인될 수 없으나,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가 대학교 졸업에서 45.9%로 타 학력층 대비 비교적 높게 나타남.

② 성폭력

- ‘성폭력’에 대한 처벌 인식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82.4%가 ‘용인될 수 없고,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그림Ⅳ-23〉 젠더폭력 처벌 수위에 대한 인식 - 성폭력

(n=500, 단위: %)



- 연령대별로는 ‘용인될 수 없으나,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가 50대에서 22.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최종 학력별로 살펴보면 ‘용인될 수 없고,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에 대한 응답은 대학교 재학 응답자가 95.1%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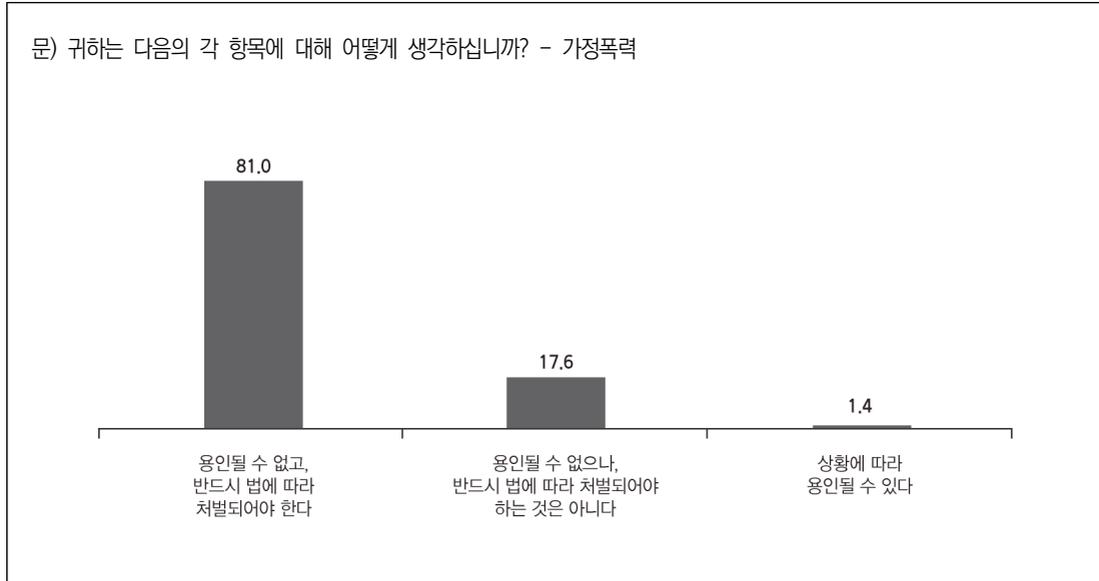
③ 가정폭력

- ‘가정폭력’에 대해 ‘용인될 수 없고,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가 81.0%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임.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그림Ⅳ-24〉 젠더폭력 처벌 수위에 대한 인식 - 가정폭력

(n=5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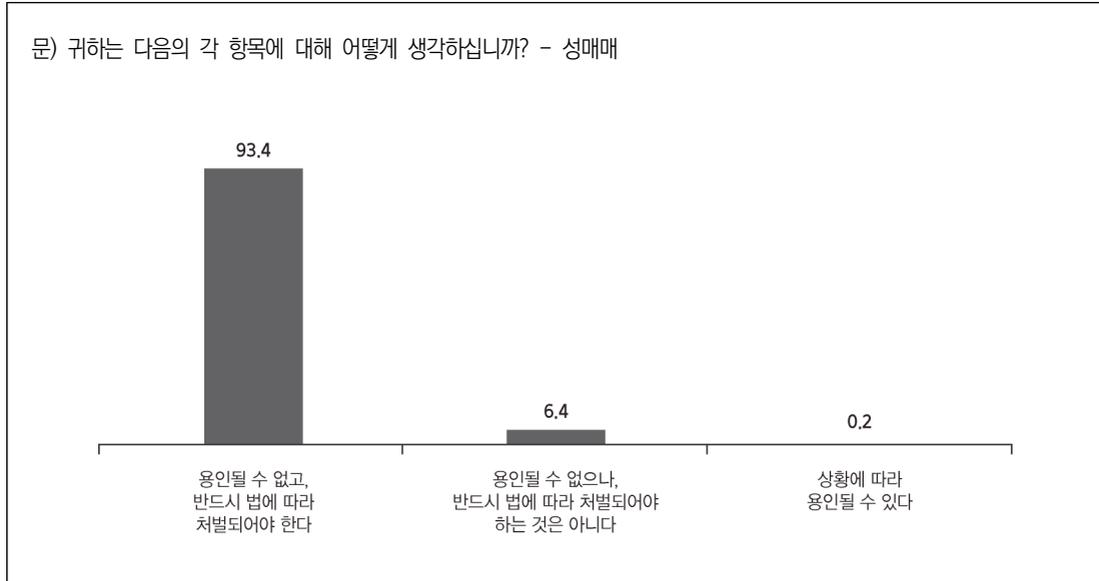
- 연령대별로 보면, ‘용인될 수 없고,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에 대한 응답은 20대가 93.3%로 가장 높음. 또한 50대 및 60대 이상에서는 가정폭력이지만 상황에 따라 용인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3.3%, 2.3%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연령대와는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거주지별로는 ‘용인될 수 없으나,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에 대한 응답은 남구에서 35.2%로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혼인 상태별로는 ‘용인될 수 없으나,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에 대한 응답이 기혼자가 20.3%로 미혼(11.1%) 대비 높은 것으로 조사됨.

④ 성매매

- ‘성매매’의 처벌 수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용인될 수 없고,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가 9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Ⅳ-25〉 젠더폭력 처벌 수위에 대한 인식 - 성매매

(n=500, 단위: %)



- 연령대별 분석 결과, ‘용인될 수 없고,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에 대한 응답은 20대에서 10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반면 40대의 경우 ‘용인될 수 없으나,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에 대한 응답이 11.9%로 타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용인될 수 없으나,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에 대한 응답은 울주군이 17.7%로 타 지역 대비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그리고 기혼자의 경우(7.3%)가 미혼자(3.0%)에 비해 ‘용인될 수 없으나,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를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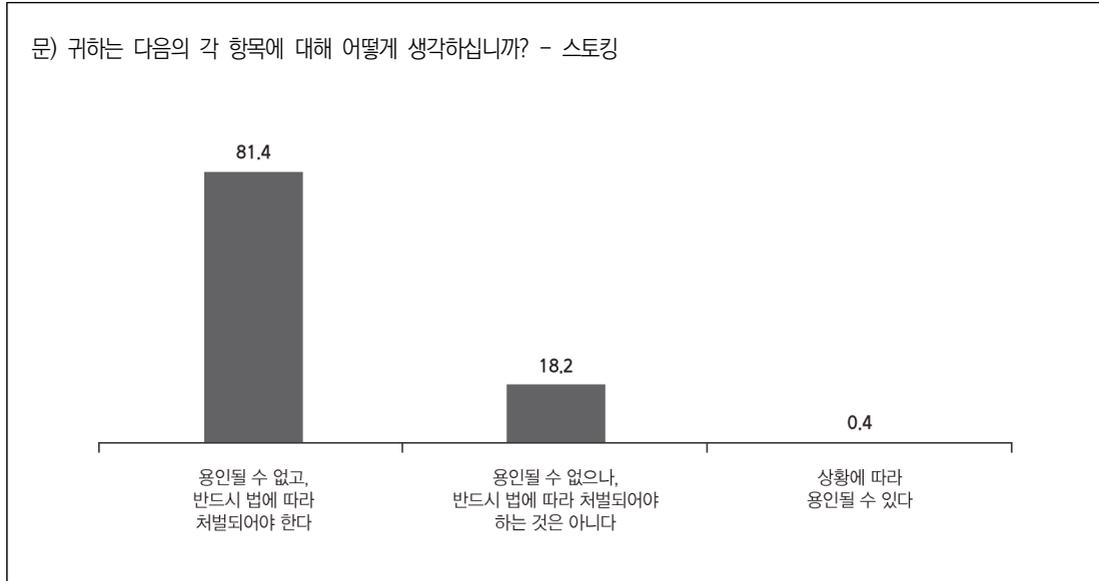
⑤ 스토킹

- ‘스토킹’에 대한 처벌 인식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81.4%가 ‘용인될 수 없고,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그림Ⅳ-26〉 젠더폭력 처벌 수위에 대한 인식 - 스토킹

(n=5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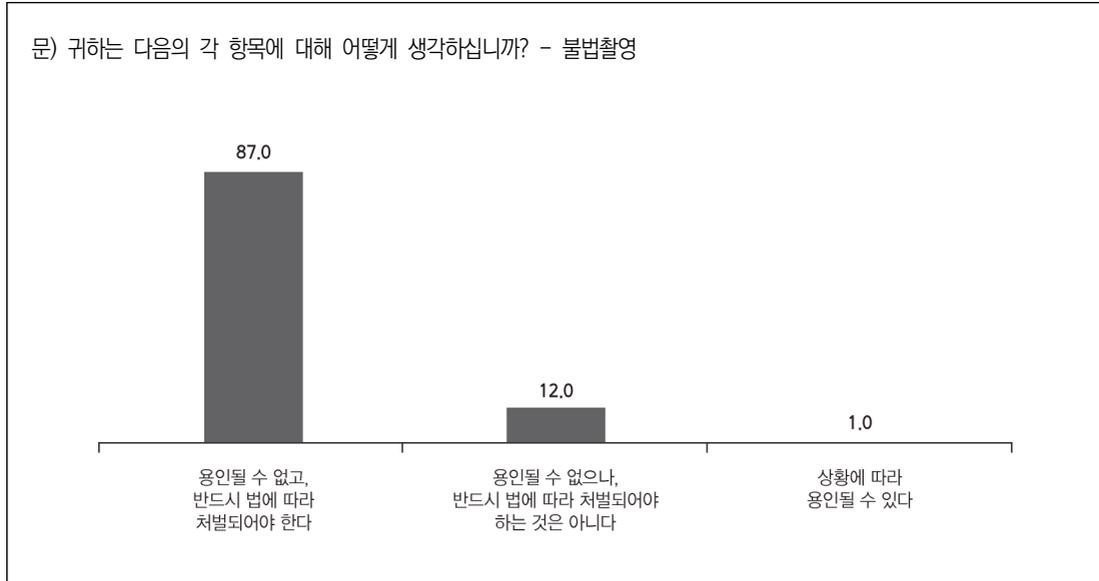
-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용인될 수 없고,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에 대한 응답 비율은 여성이 86.4%로 남성(76.7%)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용인될 수 없고,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응답 비율은 20대와 30대가 각 86.5%, 86.2%로 높게 나타난 반면, 50대는 74.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최종 학력별로는 ‘용인될 수 없으나,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응답 비율은 대학교 졸업에서 20.3%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⑥ 불법촬영

- ‘불법촬영’의 처벌 수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용인될 수 없고,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가 87.0%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Ⅳ-27〉 젠더폭력 처벌 수위에 대한 인식 - 불법촬영

(n=500, 단위: %)



- 성별로 살펴보면 ‘용인될 수 없고,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에 대한 응답은 여성이 90.1%로 남성(84.0%) 대비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용인될 수 없고,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응답 비율은 60세 이상이 90.8%로 높게 나타난 반면, 50대는 82.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최종 학력별로는 ‘상황에 따라 용인될 수 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대학교 재학에서 2.4%로 타 집단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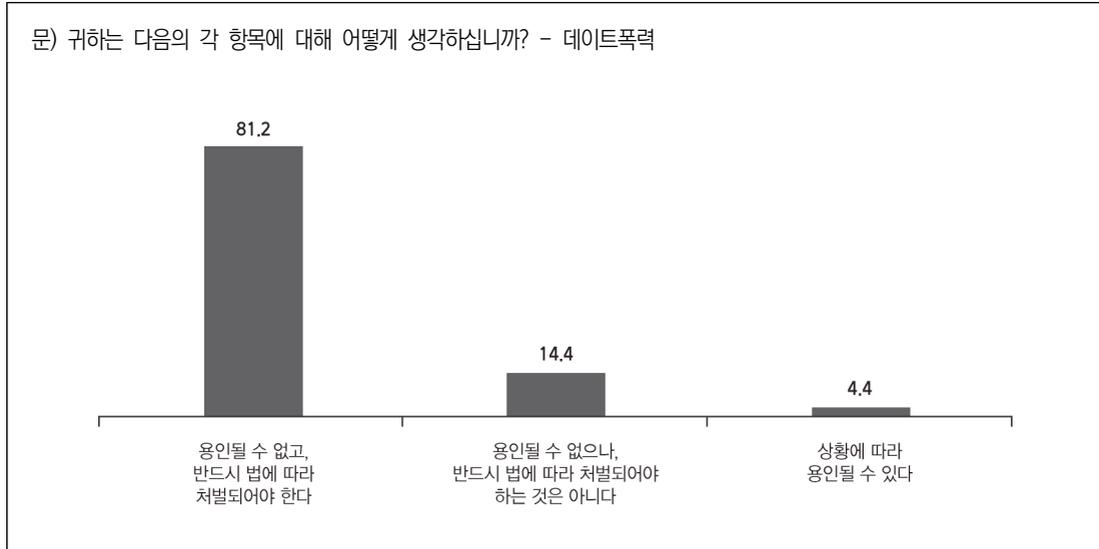
⑦ 데이트폭력

- ‘데이트폭력’의 처벌 수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용인될 수 없고,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가 81.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그림Ⅳ-28〉 젠더폭력 처벌 수위에 대한 인식 - 데이트폭력

(n=5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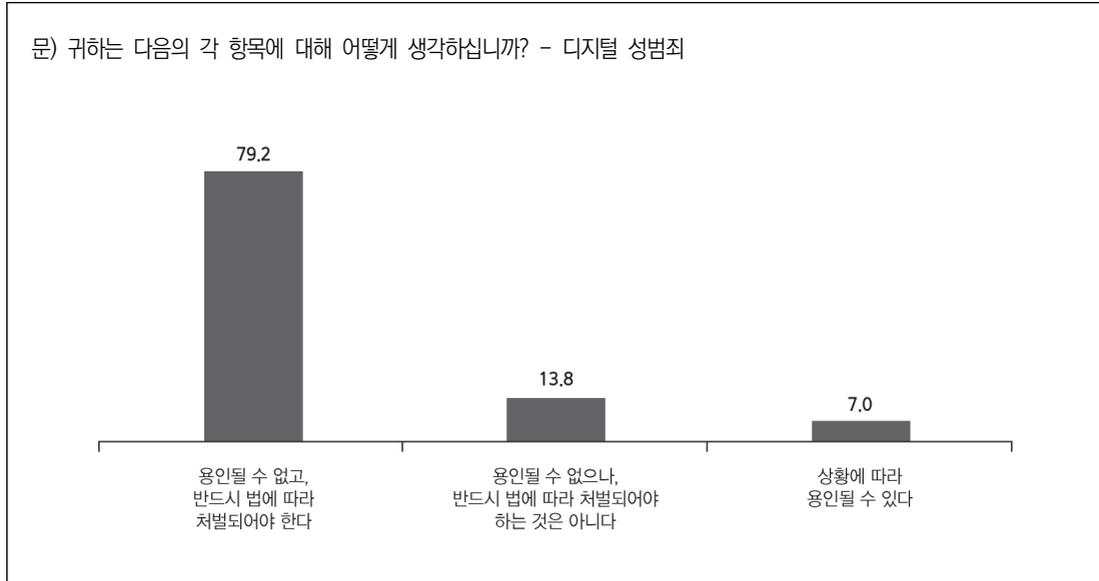
- 성별로 살펴보면 ‘용인될 수 없고,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에 대한 응답은 여성이 84.0%로 남성(78.6%) 대비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용인될 수 없고,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응답 비율은 20대가 92.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50대는 70.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거주지별로 살펴본 결과, ‘용인될 수 없으나,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응답 비율이 남구(24.8%)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그리고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교 재학의 경우에 ‘데이트폭력은 용인될 수 없고,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90.2%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⑧ 디지털 성범죄

-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수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용인될 수 없고,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가 79.2%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다른 젠더폭력 유형에 비해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임.

〈그림Ⅳ-29〉 젠더폭력 처벌 수위에 대한 인식 - 디지털 성범죄

(n=500, 단위: %)



- 성별로 살펴보면 ‘용인될 수 없고,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에 대한 응답은 여성이 81.1%로 남성(77.4%) 대비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용인될 수 없고,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응답 비율은 20대가 9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혼인 상태별로 살펴보면 ‘용인될 수 없고,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에 대한 응답은 미혼이 85.2%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됨.

3) 젠더폭력의 범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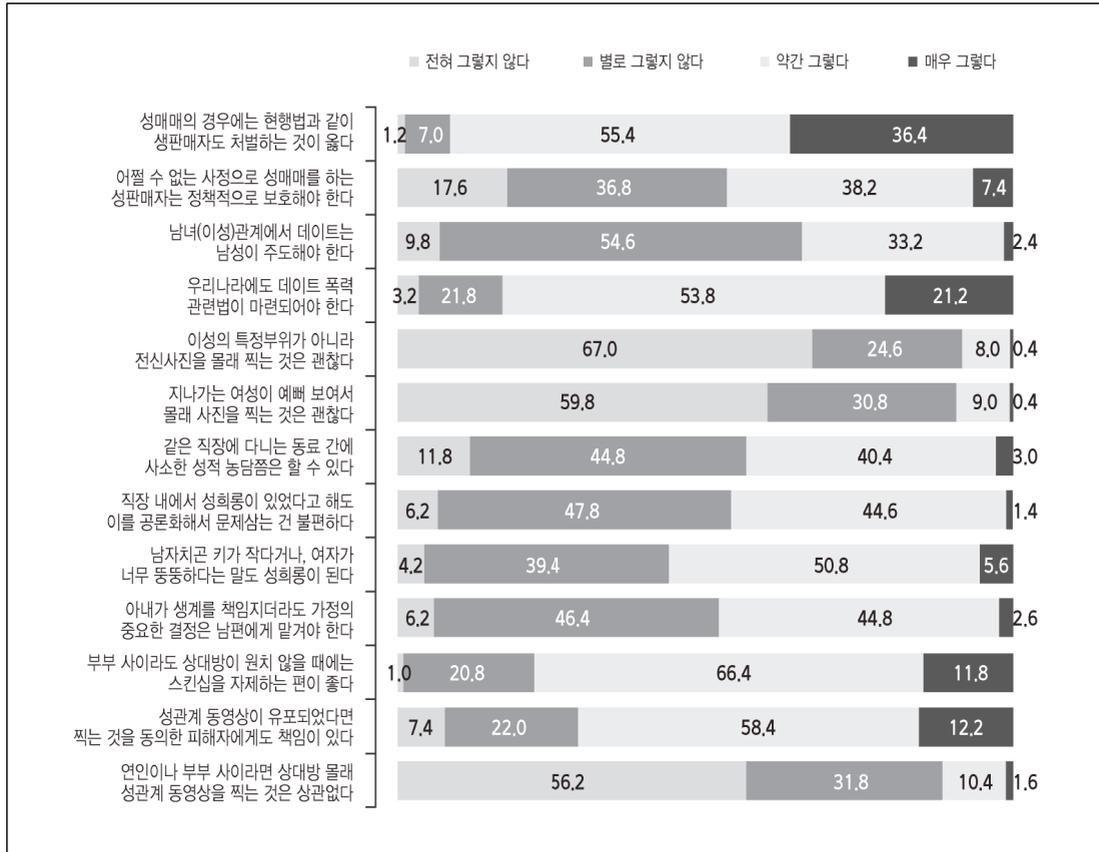
- 젠더폭력의 범위와 관련하여 인식정도를 살펴본 결과 ‘이성의 특정부위가 아니라 전신사진을 몰래 찍는 것은 괜찮다’와 ‘지나가는 여성이 예뻐 보여서 몰래 사진을 찍는 것은 괜찮다’라는 의견과 같이 사진 촬영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의견이 거의 동일화 되고 있었음.
-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성매매를 하는 성판매자는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한다’와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더라도 가정의 중요한 결정은 남편에게 맡겨야한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라면 상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대방 몰래 성관계 동영상 찍는 것은 상관없다'와 같이 상대방의 인정에 호소하는 의견 또는 부부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경우 의견이 일치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임.

〈그림Ⅳ-30〉 젠더폭력의 범위에 대한 인식(요약)

(n=5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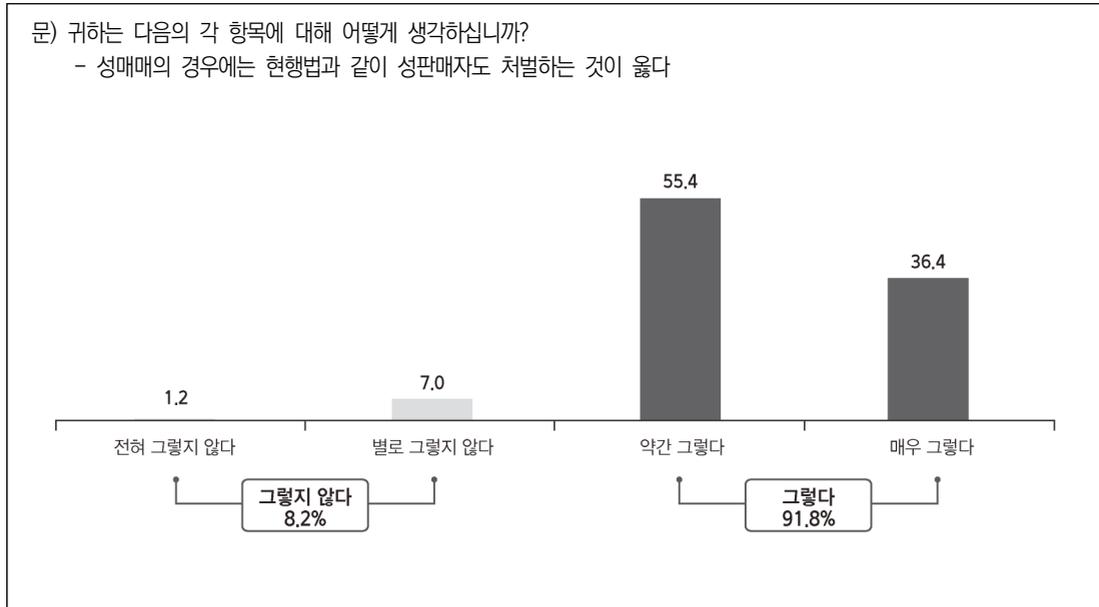
① 성매매의 경우에는 현행법과 같이 성판매자도 처벌하는 것이 옳다

○ '성매매의 경우에는 현행법과 같이 성판매자도 처벌하는 것이 옳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이 91.8%(매우 그렇다:36.4% + 약간 그렇다:55.4%)로 조사되었음.

〈그림Ⅳ-31〉 젠더폭력의 범위에 대한 인식

- 성매매의 경우에는 현행법과 같이 성판매자도 처벌하는 것이 옳다

(n=500, 단위: %)



- 성별로 살펴본 결과, ‘그렇다’에 대한 응답은 여성이 93.0%로 남성(90.7%)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그렇다’라는 응답은 60세 이상이 97.7%로 가장 높은 반면, 30대는 85.1%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②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성매매를 하는 성판매자는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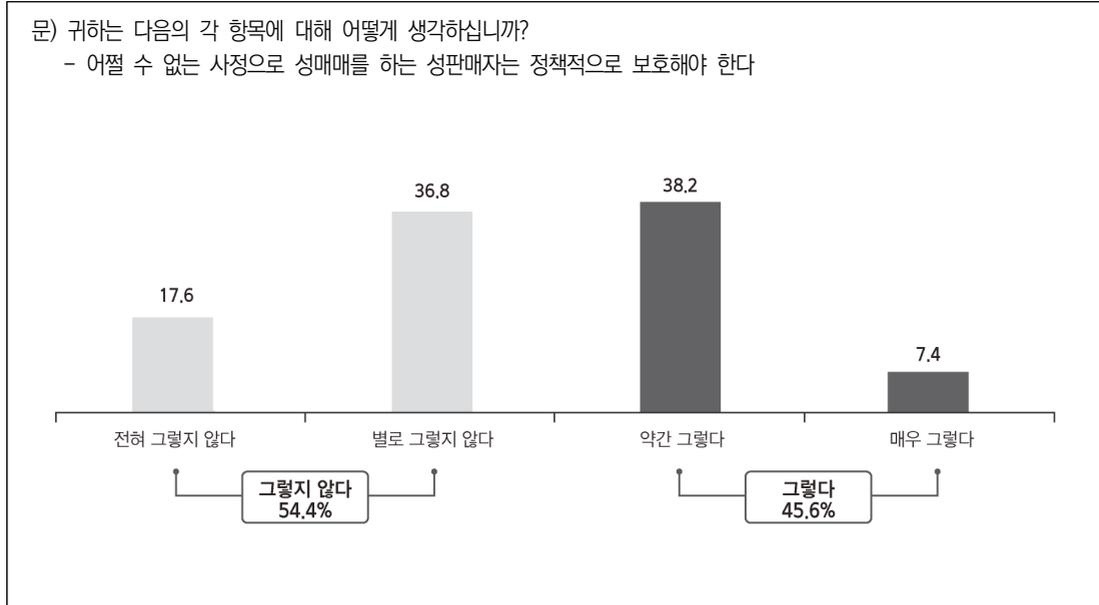
-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성매매를 하는 성판매자는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이 45.6%(매우 그렇다:7.4% + 약간 그렇다: 38.2%)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54.4%(전혀 그렇지 않다:17.6% + 별로 그렇지 않다:36.8%)로 조사되었음.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그림Ⅳ-32〉 젠더폭력의 범위에 대한 인식

-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성매매를 하는 성판매자는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n=5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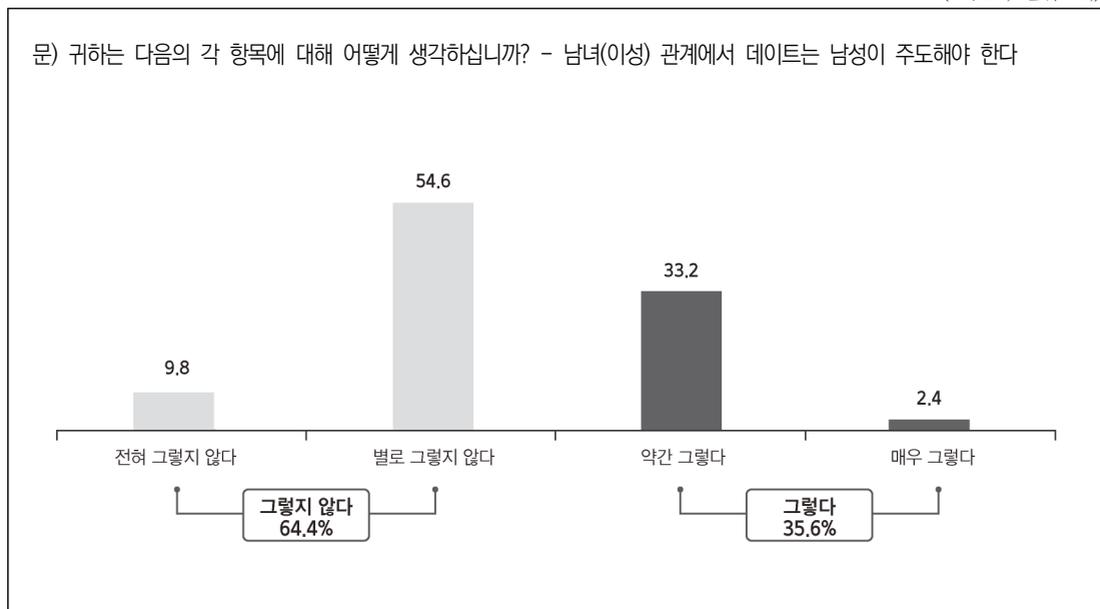
- 성별로 살펴본 결과, '그렇다'는 의견은 남성이 49.4%로 여성(41.6%)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그렇다'라는 응답은 50대가 49.6%로 가장 높았으며 30대는 40.4%로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파악됨.
-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교 재학의 경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9.3%로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젠더폭력 경험여부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그렇다'라는 의견은 비경험자들이 48.0%로 경험자(40.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③ 남녀(이성) 관계에서 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

- ‘남녀(이성) 관계에서 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라는 의견은 35.6%(매우 그렇다:2.4% + 약간 그렇다: 33.2%)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64.4%(전혀 그렇지 않다:9.8% + 별로 그렇지 않다:54.6%)로 조사되었음.

〈그림Ⅳ-33〉 젠더폭력의 범위에 대한 인식 - 남녀(이성) 관계에서 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

(n=500, 단위: %.)



-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그렇다’라는 응답은 남성이 37.4%로 여성(33.7%)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그렇다’라는 응답이 47.1%로 가장 높은 반면, 30대에서는 22.3%로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한편 20대의 경우에도 ‘그렇다’라는 응답이 43.8%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음.
- 젠더폭력 인지여부에 따라서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인지자가 37.0%로 비인지자(33.0%)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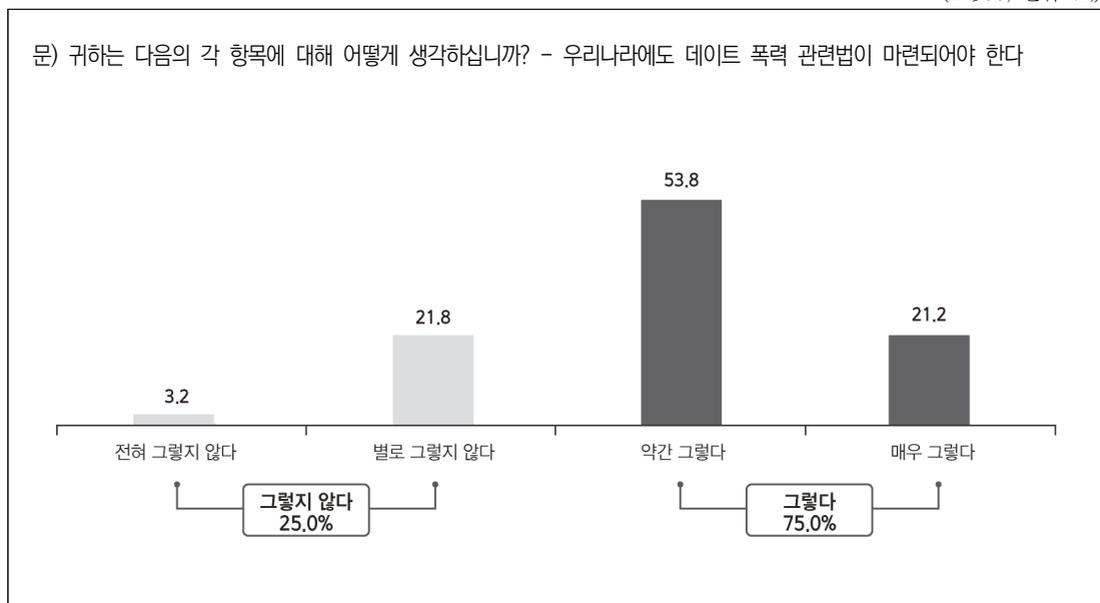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④ 우리나라에도 데이트 폭력 관련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에도 데이트 폭력 관련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이 75.0%(매우 그렇다:21.2% + 약간 그렇다:53.8%)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5.0%(전혀 그렇지 않다:3.2% + 별로 그렇지 않다:21.8%)로 조사되었음.

〈그림Ⅳ-34〉 젠더폭력의 범위에 대한 인식 - 우리나라에도 데이트 폭력 관련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n=500, 단위: %)



-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그렇다’라는 응답은 여성이 77.8%로 남성(72.4%)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그렇다’라는 응답은 30대가 83.0%로 가장 높았으며 50대가 66.1%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동구(85.7%)와 중구(85.3%), 울주군(84.4%)에서 ‘그렇다’는 의견이 비교적 높은 반면에 남구(63.4%)와 북구(63.2%)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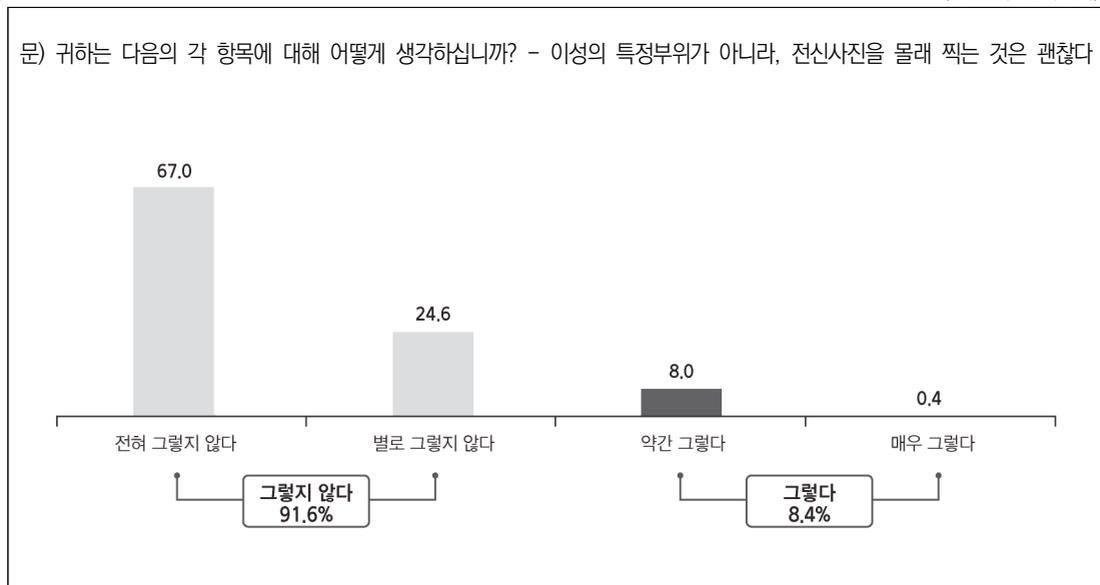
⑤ 이성의 특정부위가 아니라, 전신사진을 몰래 찍는 것은 괜찮다

○ ‘이성의 특정부위가 아니라, 전신사진을 몰래 찍는 것은 괜찮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라는 의견은 8.4%(매우 그렇다:0.4% + 약간 그렇다:8.0%)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91.6%(전혀 그렇지 않다:67.0% + 별로 그렇지 않다:24.6%)로 조사되었음.

〈그림Ⅳ-35〉 젠더폭력의 범위에 대한 인식

- 이성의 특정부위가 아니라, 전신사진을 몰래 찍는 것은 괜찮다

(n=500, 단위: %.)



- 성별로 살펴본 결과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은 여성이 93.4%로 남성(89.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90%이상으로 나타났지만 30대의 경우 88.3%로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지역별로는 북구의 경우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77.0%로 타 지역과 차이를 보임.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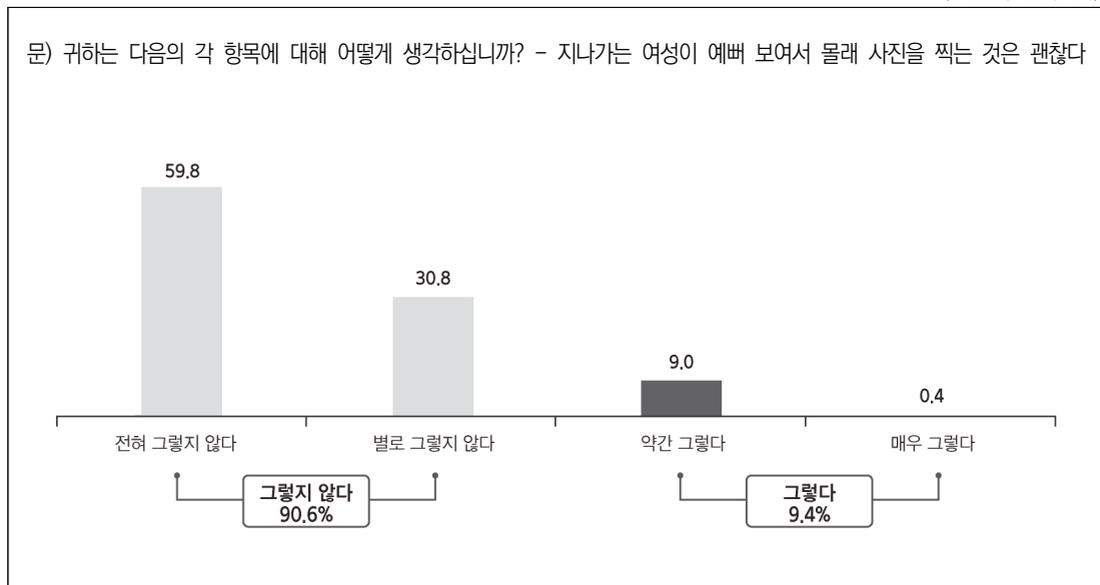
⑥ 지나가는 여성이 예뻐 보여서 몰래 사진을 찍는 것은 괜찮다

○ ‘지나가는 여성이 예뻐 보여서 몰래 사진을 찍는 것은 괜찮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라는 의견이 9.4%(매우 그렇다:0.4% + 약간 그렇다:9.0%)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90.6%(전혀 그렇지 않다:59.8% + 별로 그렇지 않다:30.8%)로 조사되었음.

〈그림Ⅳ-36〉 젠더폭력의 범위에 대한 인식

- 지나가는 여성이 예뻐 보여서 몰래 사진을 찍는 것은 괜찮다

(n=500, 단위: %)



○ 성별로 살펴본 결과,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은 여성이 94.2%로 남성(87.2%)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거의 모든 연령에서 90% 이상의 비율로 나타났으나, 20대에서는 88.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거주지별로 살펴보았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은 동구에서 97.1%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북구에서는 80.5%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젠더폭력 경험여부에 따라서 살펴본 결과,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경험자가 92.8%로 비경험자(89.5%)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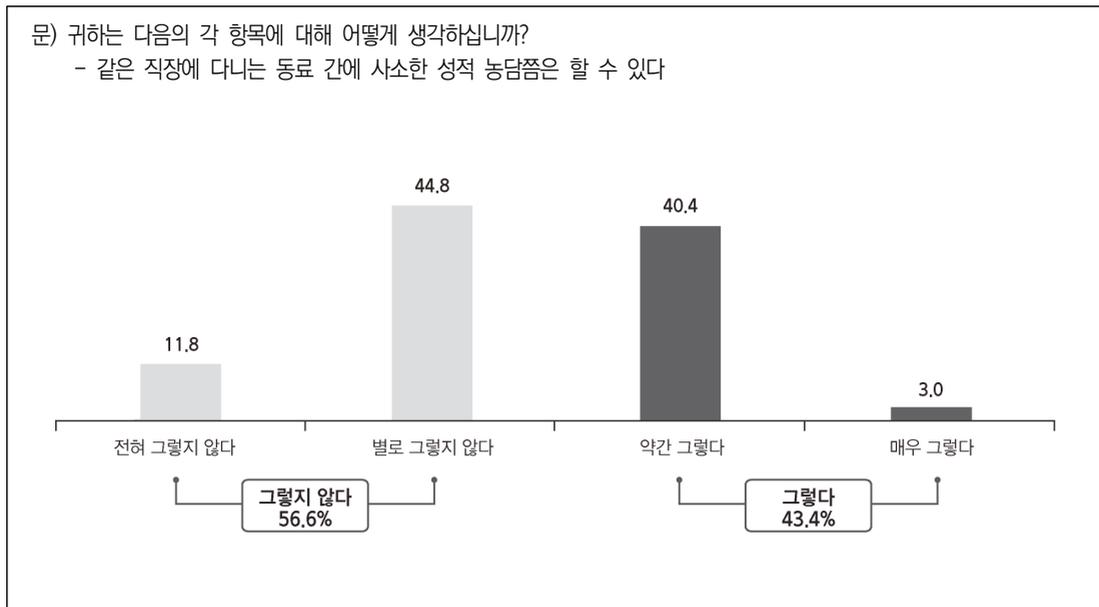
⑦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 간에 사소한 성적 농담쯤은 할 수 있다

○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 간에 사소한 성적 농담쯤은 할 수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은 43.4%(매우 그렇다:3.0% + 약간 그렇다:40.4%)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56.6%(전혀 그렇지 않다:11.8% + 별로 그렇지 않다:44.8%)로 조사되었음.

〈그림Ⅳ-37〉 젠더폭력의 범위에 대한 인식

-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 간에 사소한 성적 농담쯤은 할 수 있다

(n=500, 단위: %)



○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그렇지 않다’에 대한 응답은 여성이 61.3%로 남성(52.1%)와 차이를 보였음.

○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20대의 경우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70.8%로 가장 높은 반면, 60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세 이상에서는 44.8%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30대(54.3%), 40대(55.0%), 50대(57.9%)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50% 중반 정도로 나타났음.

○ 거주지별로 살펴보았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울주군이 76.0%로 가장 높은 반면, 북구에서는 44.8%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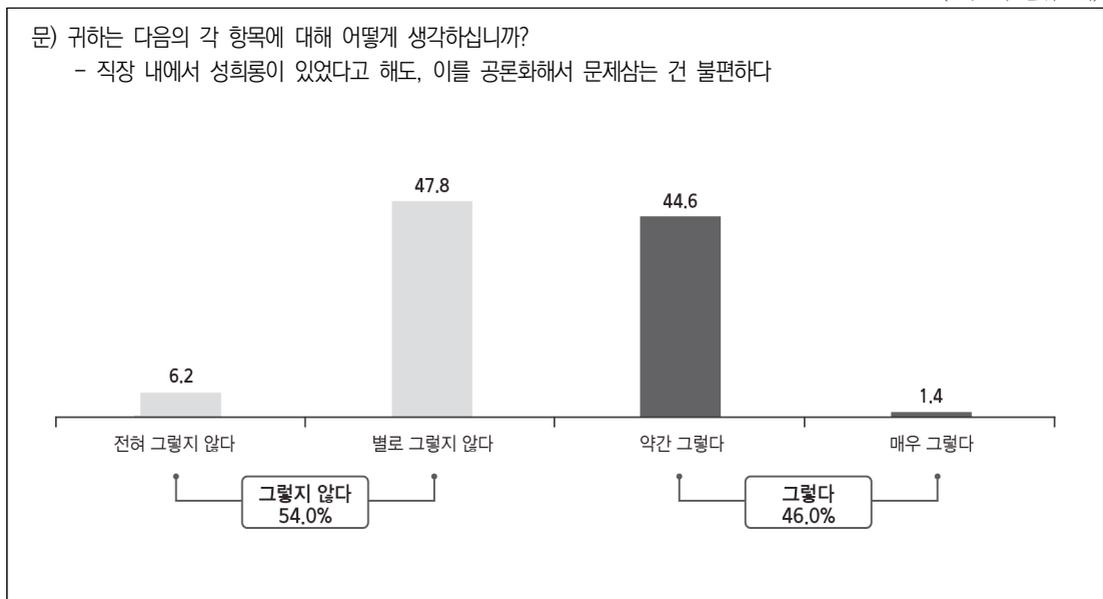
⑧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있었다고 해도, 이를 공론화해서 문제 삼는 건 불편하다

○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있었다고 해도, 이를 공론화해서 문제삼는 건 불편하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이 46.0%(매우 그렇다:1.4% + 약간 그렇다:44.6%)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54.0%(전혀 그렇지 않다:6.2% + 별로 그렇지 않다:47.8%)로 조사되었음.

〈그림Ⅳ-38〉 젠더폭력의 범위에 대한 인식

-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있었다고 해도, 이를 공론화해서 문제삼는 건 불편하다

(n=500, 단위: %.)



○ 성별로 살펴본 결과, ‘그렇다’라는 응답은 남성이 47.9%로 여성(44.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살펴보았을 때, ‘그렇다’에 대한 응답은 40대가 60.6%로 가장 높은 반면, 20대(34.8%)와 30대(34.0%)와 같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는 비교적 낮게 나타남.
- 혼인 상태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미혼(34.8%)에 비해, 기혼(51.0%)의 경우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그렇다’라는 응답은 남구에서 53.8%로 가장 높았으며, 울주군에서 30.2%로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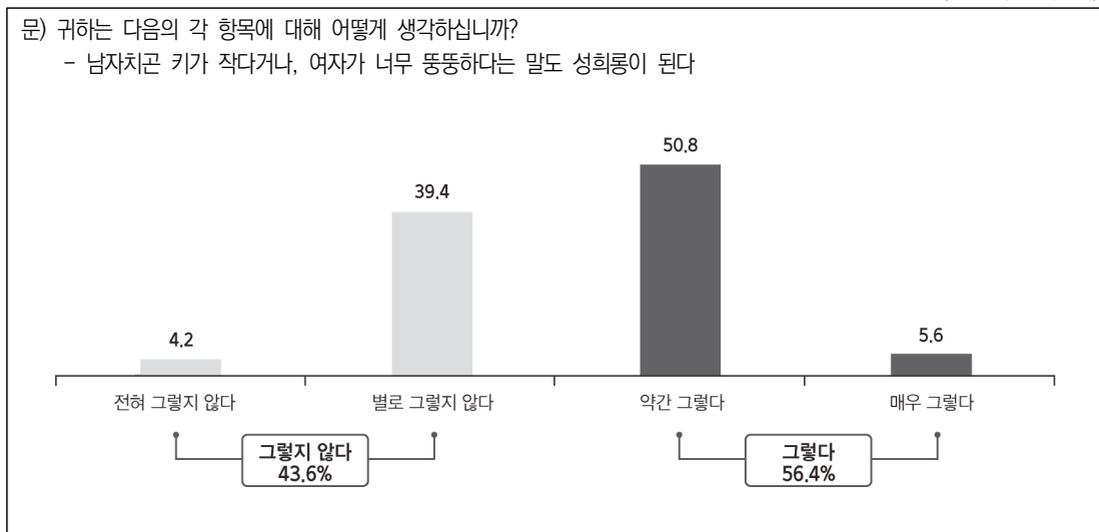
⑨ 남자치곤 키가 작다거나, 여자가 너무 뚱뚱하다는 말도 성희롱이 된다

- ‘남자치곤 키가 작다거나, 여자가 너무 뚱뚱하다는 말도 성희롱이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은 56.4%(매우 그렇다:5.6% + 약간 그렇다:50.8%)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3.6%(전혀 그렇지 않다:4.2% + 별로 그렇지 않다:39.4%)로 조사되었음.

〈그림Ⅳ-39〉 젠더폭력의 범위에 대한 인식

- 남자치곤 키가 작다거나, 여자가 너무 뚱뚱하다는 말도 성희롱이 된다

(n=500, 단위: %)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 성별로 살펴본 결과, ‘그렇다’라는 응답은 남성이 58.0%로 여성(54.7%)보다 높음.
-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그렇다’에 대한 응답은 30대가 67.0%로 가장 높았으며 50대가 50.4%로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수준을 보임.
- 거주지별로 차이점을 살펴본 결과, ‘그렇다’라는 응답이 남구에서 66.2%로 가장 높은 반면, 동구에서는 41.4%로 차이를 보임.
- 젠더폭력 목격여부에 따라서 살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은 목격경험이 있는 집단이 61.1%로 그렇지 않은 집단(52.9%)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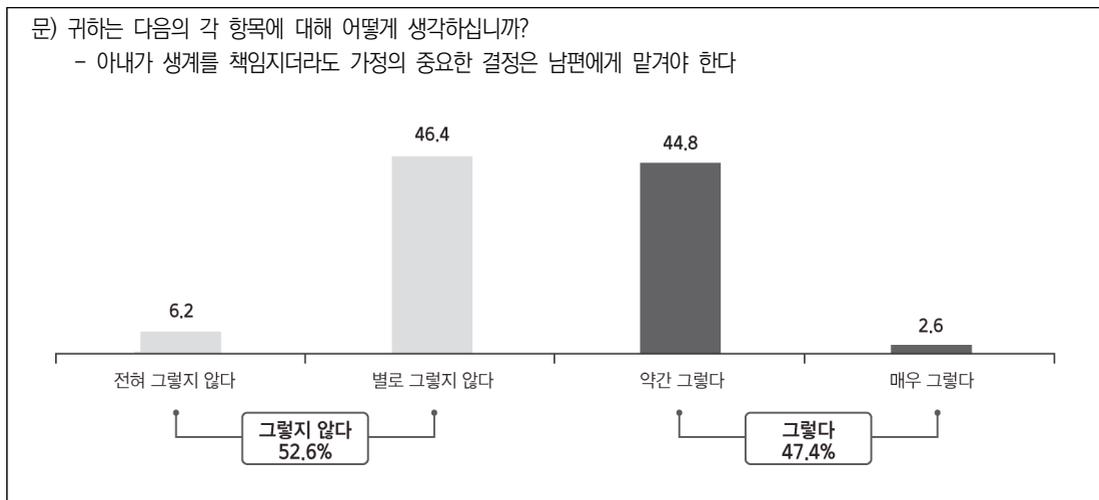
⑩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더라도 가정의 중요한 결정은 남편에게 맡겨야 한다

-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더라도 가정의 중요한 결정은 남편에게 맡겨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은 47.4%(매우 그렇다:2.6% + 약간 그렇다:44.8%)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52.6%(전혀 그렇지 않다:6.2% + 별로 그렇지 않다:46.4%)로 조사되었음.

〈그림Ⅳ-40〉 젠더폭력의 범위에 대한 인식

-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더라도 가정의 중요한 결정은 남편에게 맡겨야 한다

(n=500, 단위: %.)



- 성별로 살펴본 결과, ‘그렇다’는 의견은 남성이 52.5%로 여성(42.0%)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연령대별로 살펴보았을 때, ‘그렇다’라는 응답은 50대가 54.5%로 가장 높은 반면, 20대는 39.3%로 타 연령대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혼인 상태별로 살펴본 결과, 기혼자가 50.4%로 미혼자(40.0%)와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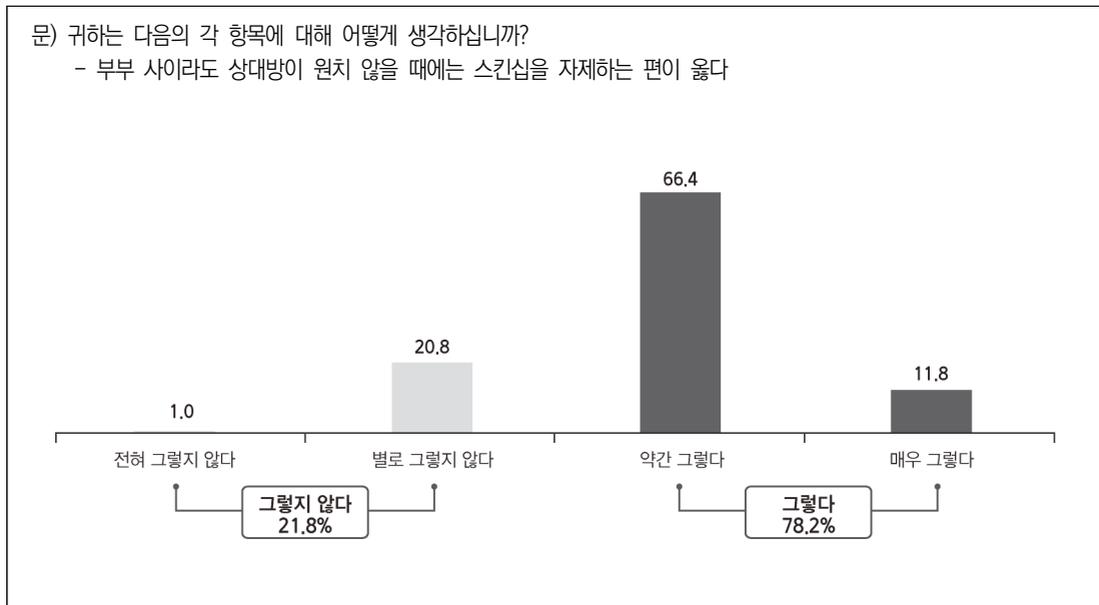
⑪ 부부 사이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을 때에는 스킨십을 자제하는 편이 옳다

- ‘부부 사이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을 때에는 스킨십을 자제하는 편이 옳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은 78.2%(매우 그렇다:11.8% + 약간 그렇다:66.4%)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1.8%(전혀 그렇지 않다:1.0% + 별로 그렇지 않다:20.8%)로 조사되었음.

〈그림Ⅳ-41〉 젠더폭력의 범위에 대한 인식

- 부부 사이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을 때에는 스킨십을 자제하는 편이 옳다

(n=500, 단위: %)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그렇다’는 의견은 여성이 80.7%로 남성(75.9%)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그렇다’라는 의견이 83.0%로 가장 높은 반면, 40대에서는 70.6%로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젠더폭력 인지여부에 따라서는 ‘그렇다’라는 의견이 인지자가 80.6%, 비인지자가 73.9%로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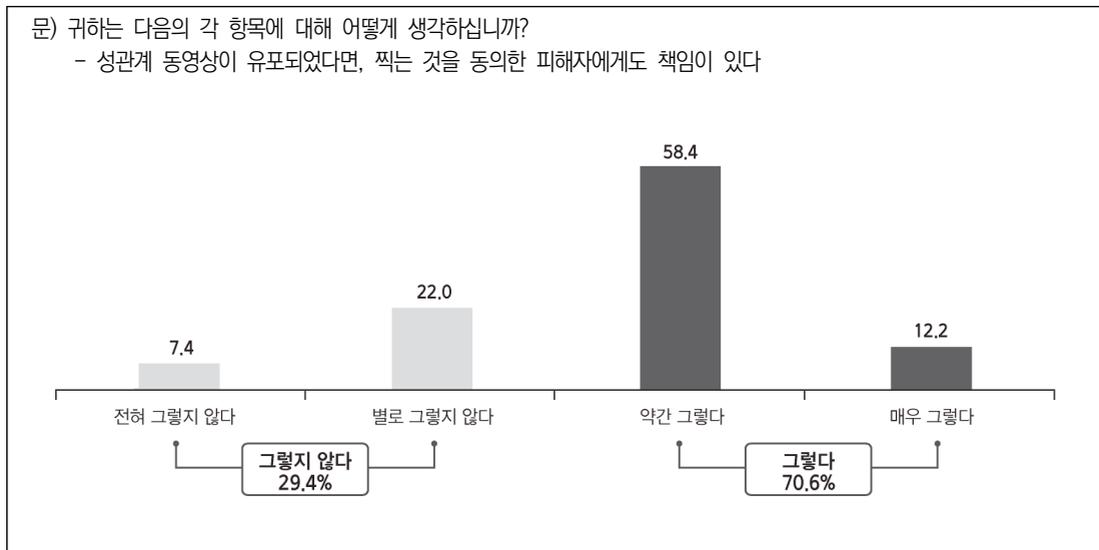
⑫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었다면, 찍는 것에 동의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었다면, 찍는 것을 동의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은 70.6%(매우 그렇다:12.2% + 약간 그렇다:58.4%)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9.4%(전혀 그렇지 않다:7.4% + 별로 그렇지 않다:22.0%)로 조사되었음.

〈그림Ⅳ-42〉 젠더폭력의 범위에 대한 인식

-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었다면, 찍는 것을 동의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n=500, 단위: %)



- 성별로 살펴본 결과, ‘그렇다’라는 응답은 남성이 71.6%로 여성(69.5%)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그렇다’라는 응답이 79.3%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20대에서는 62.9%로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혼인상태별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그렇다’에 대한 응답은 기혼자가 72.7%로 미혼자(64.4%)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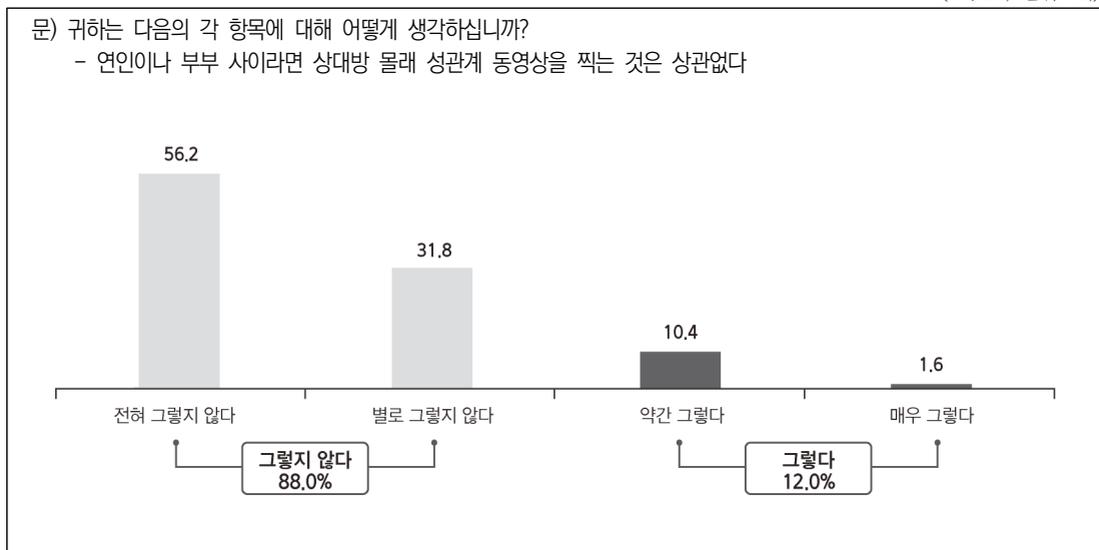
⑬ 연인이나 부부 사이라면 상대방 몰래 성관계 동영상 찍는 것은 상관없다

- ‘연인이나 부부 사이라면 상대방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찍는 것은 상관없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은 12.0%(매우 그렇다:1.6% + 약간 그렇다:10.4%)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88.0%(전혀 그렇지 않다:56.2% + 별로 그렇지 않다:31.8%)로 조사되었음.

〈그림Ⅳ-43〉 젠더폭력의 범위에 대한 인식

- 연인이나 부부 사이라면 상대방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찍는 것은 상관없다

(n=500, 단위: %)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 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그렇다'라는 응답은 남성이 14.8%로 여성(9.1%)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그렇다'라는 의견이 18.4%로 가장 높은 반면, 30대에서는 8.5%로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파악됨.
- 혼인상태별로 살펴본 결과, '그렇다'는 의견은 기혼자의 경우 12.7%로 미혼자(8.9%)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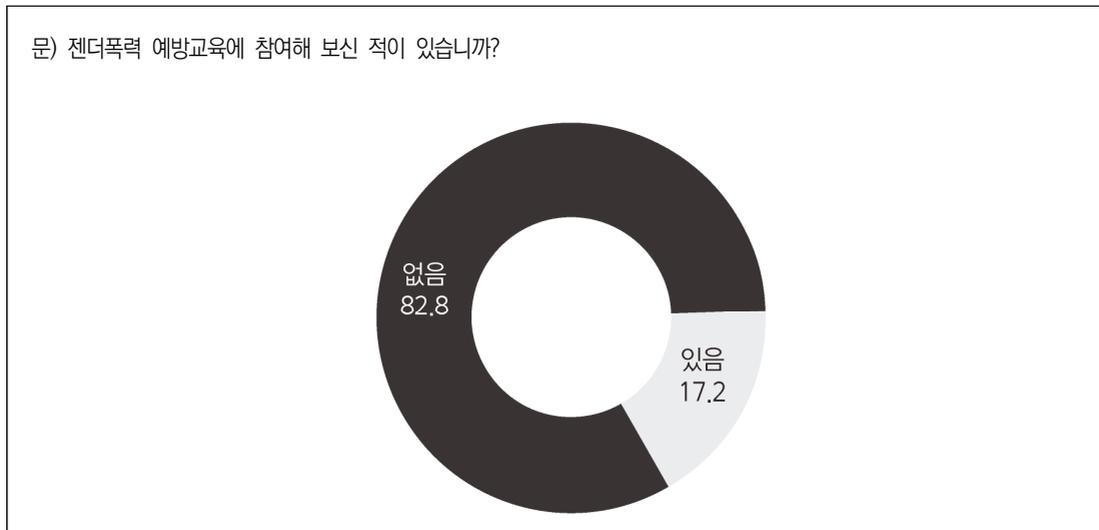
(3) 젠더폭력 예방교육

1) 젠더폭력 예방교육 참여 경험

- 젠더폭력 예방교육 참여여부를 살펴본 결과, 참여경험이 '있음'이라는 응답은 17.2%로 조사되었음.

〈그림Ⅳ-44〉 젠더폭력 예방교육 참여 경험

(n=5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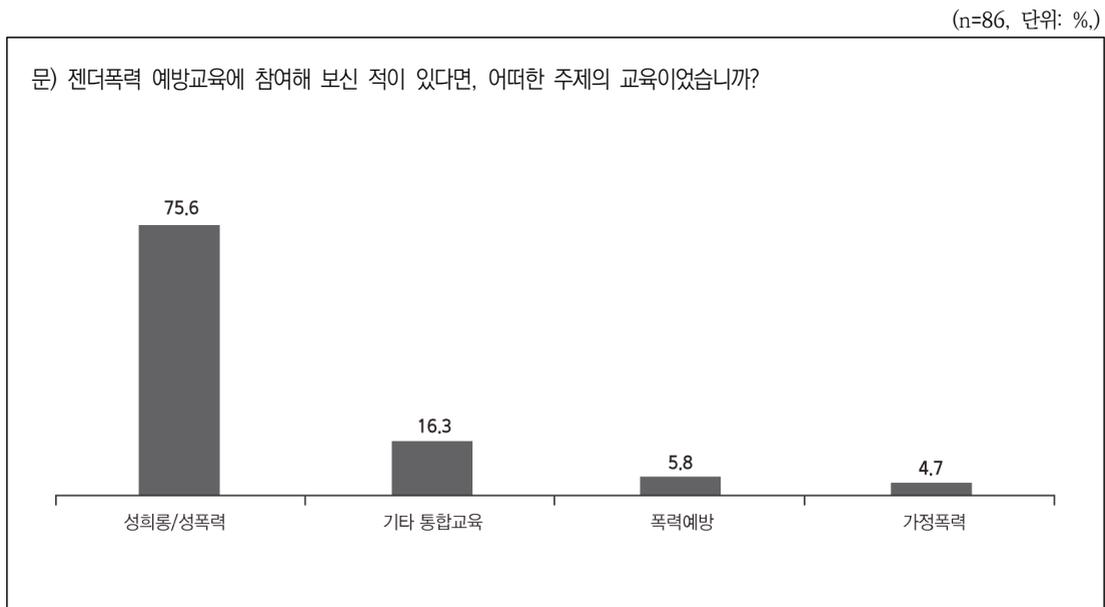
-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참여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남성이 21.0%로 여성(13.2%)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교육 참여경험 '있음'이라는 응답은 30대가 23.4%로 가장 높은 반면, 60세 이상은 3.4%로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별로 살펴보았을 때, 교육 참여경험 '있음'이라는 응답은 남구가 23.4%로 가장 높은 반면, 북구는 9.2%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직업별로는 사무직(45.2%) 및 전문직(40.0%)의 젠더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자영업(3.9%)이나 가정주부(4.0%)의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학생 역시도 7.7%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음.

2) 참여한 젠더폭력 예방교육 주제

- 참여한 젠더폭력 예방교육 주제를 살펴본 결과, '성희롱/성폭력'이 75.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타 통합교육'(16.3%) > '폭력예방'(5.8%) > '가정폭력'(4.7%) 순으로 조사되었음.

〈그림Ⅳ-45〉 참여한 젠더폭력 예방교육 주제



- 성별로 살펴본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응답은 남성이 79.6%로 여성(68.8%)보다 높았으며 '기타 통합교육'은 여성이 25.0%로 남성(11.1%)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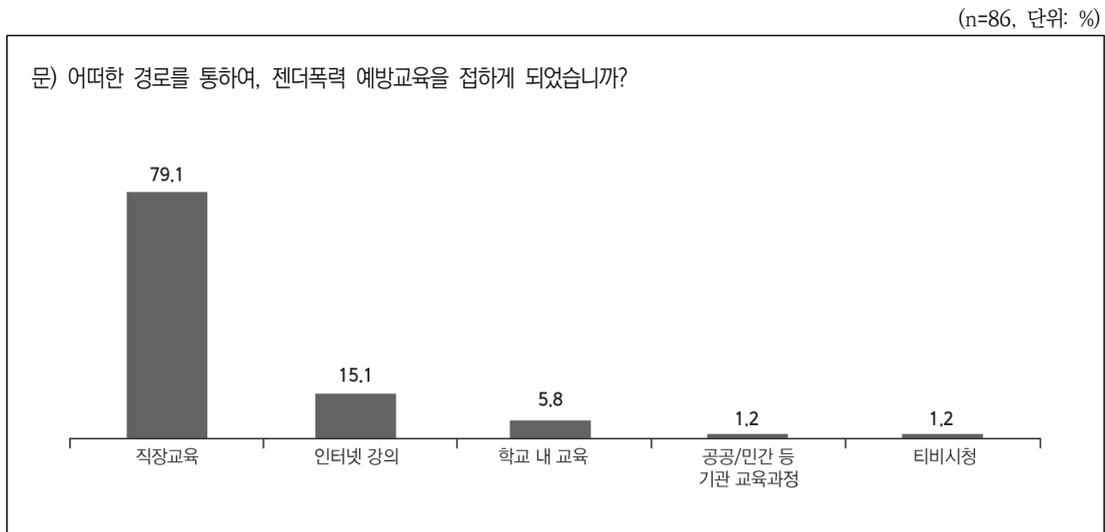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 연령대별 특징을 살펴보았을 때, '성희롱/성폭력'이라는 응답은 50대가 88.5%로 가장 높았으며, '가정폭력'이라는 응답은 60세 이상이 66.7%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거주지별로 살펴본 결과, '기타 통합교육'에 대한 응답은 중구에서 40.9%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가정폭력'이라는 응답은 동구에서 16.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3) 젠더폭력 예방교육 수강 경로

- 젠더폭력 예방교육의 수강 경로를 살펴본 결과, '직장교육'이라는 응답이 79.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터넷 강의'(15.1%) > '학교내 교육'(5.8%) > '공공/민간 등 기관 교육과정'(1.2%) = '티비시청'(1.2%) 순으로 조사되었음.

〈그림Ⅳ-46〉 젠더폭력 예방교육 수강 경로



-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직장교육'이라는 응답은 남성이 81.5%로 여성(75.0%)보다 높았으며, '인터넷 강의'라는 응답은 여성이 15.6%로 남성(14.8%)보다 조금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직장교육'에 대한 응답은 50대가 88.5%로 가장 높았으며, 40대의 경우 '인터넷 강의'라는 응답이 29.4%로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그리고 20대의 경우에는 직장교육 외에 '학교내 교육'(26.7%)을 통해서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접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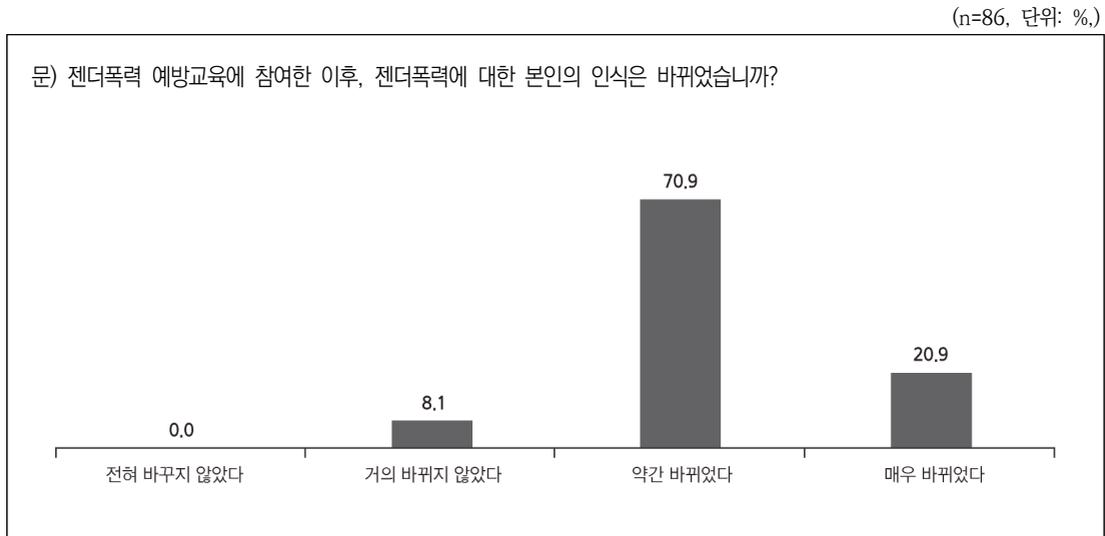
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거주지별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북구의 경우 ‘직장교육’이 100.0%로 가장 높았으며, ‘인터넷 강의’에 대한 응답은 남구에서 29.4%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4) 젠더폭력 예방교육 후 인식 전환 여부

- 젠더폭력 예방교육 참여 이후, 인식변화에 대해 살펴본 결과, ‘바뀐’에 해당하는 응답은 91.9% (매우 바뀌었다:20.9% + 약간 바뀌었다:70.9%)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Ⅳ-47〉 젠더폭력 예방교육 후 인식 전환 여부



-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바뀐’이라는 응답은 여성이 93.8%로 남성(90.7%)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20대의 경우 ‘바뀐’이라는 응답이 100.0%로 나타난 반면, 60세 이상은 66.7%로 타 연령대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6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젠더폭력 예방교육 후, 본인의 인식 전환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울주군의 경우 ‘바뀐’에 해당하는 응답이 100.0%로 나타난 반면, 북구는 62.5%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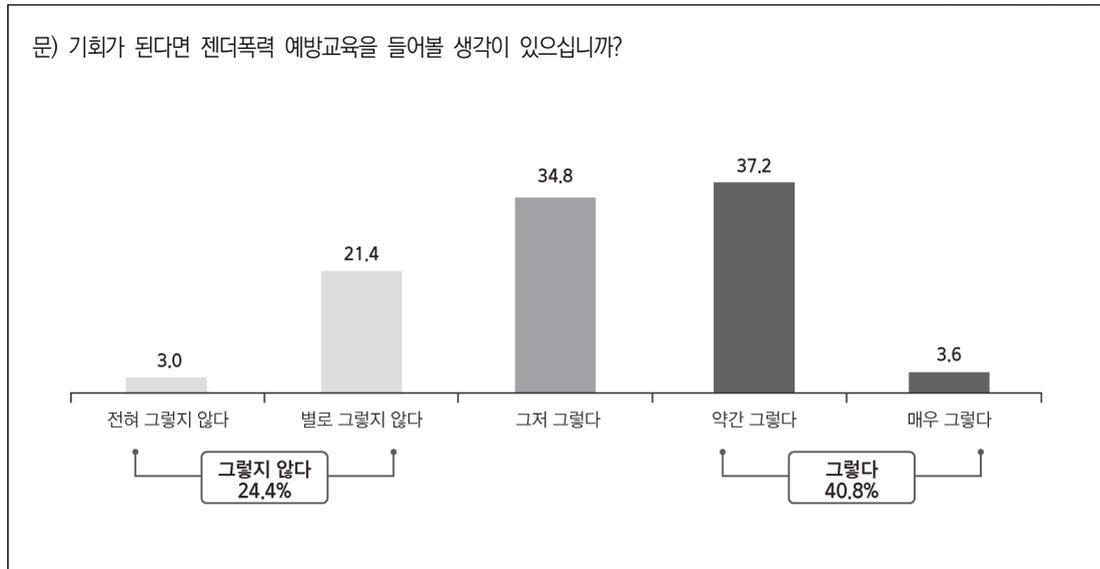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5) 향후 젠더폭력 예방교육 수강 의향

○ 한편, 향후 젠더폭력 예방교육 수강 의향을 살펴본 결과, ‘그렇다’라는 응답은 40.8%(매우 그렇다:3.6% + 약간 그렇다:37.2%)로 조사되었음.

〈그림Ⅳ-48〉 향후 젠더폭력 예방교육 수강 의향

(n=500, 단위: %)



○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그렇다’라는 응답은 여성이 45.3%로 남성(36.6%)과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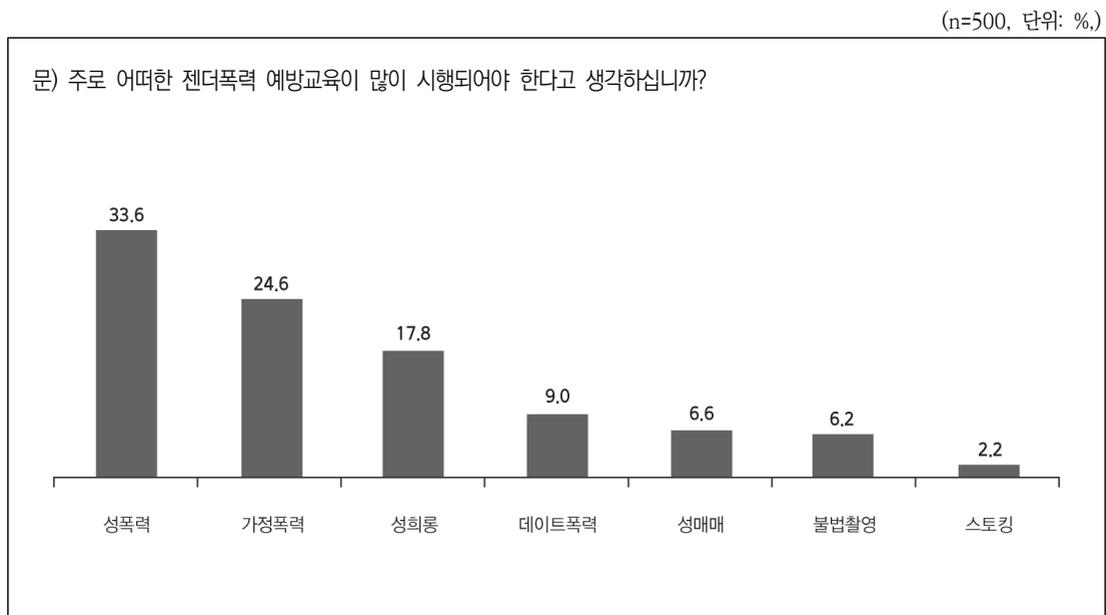
○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그렇다’에 대한 응답은 30대(44.7%), 40대(46.8%), 50대(45.5%)에서 비교적 높은 반면 60세 이상은 26.4%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거주지별로 살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은 울주군에서 56.3%로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반면, 북구는 29.9%로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됨.

6) 젠더폭력 예방교육 시행 필요 주제

- 젠더폭력 예방교육에 주로 시행되어야 할 주제에 대해 살펴본 결과, '성폭력'이 33.6%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가정폭력'이 24.6%, '성희롱'이 17.8%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그림Ⅳ-49〉 젠더폭력 예방교육 시행 필요 주제



-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성의 경우 '성희롱'에 대한 응답이 20.6%로 남성(15.2%)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20대와 30대의 경우 '성폭력'에 대한 요구가 높은 반면에, 40대의 경우 '성희롱'에 대한 응답이 24.8%, 50대의 경우 '성매매'(13.2%)에 대한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별로 살펴본 결과, '성폭력'에 대한 응답은 북구에서 51.7%로 높았으며, '가정폭력'에 대한 응답은 동구(34.3%), '성희롱'에 대한 응답은 중구(37.3%)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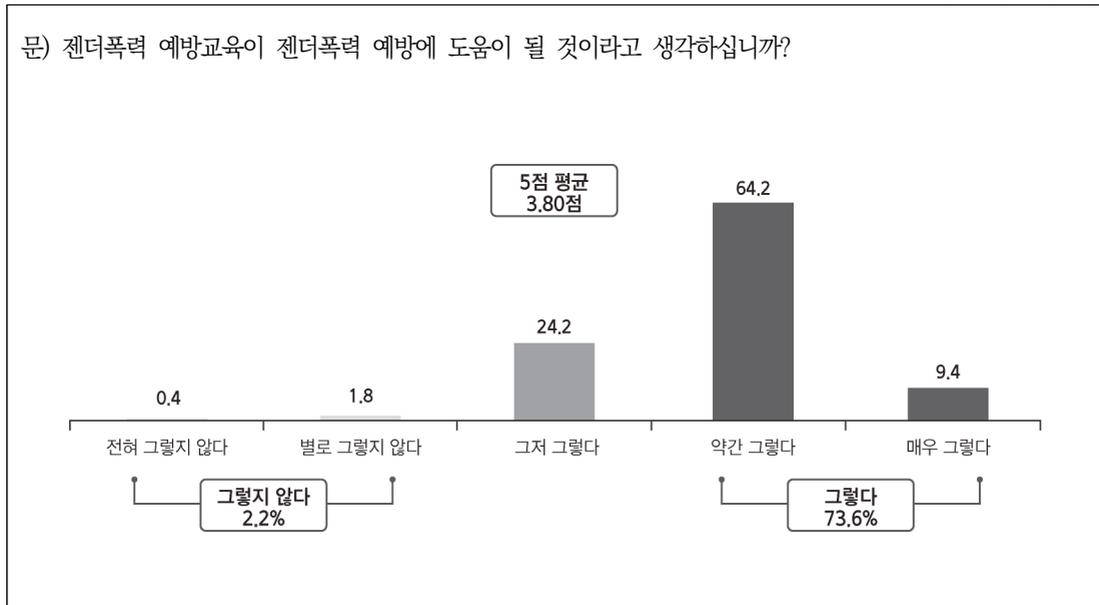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7) 젠더폭력 예방교육의 젠더폭력 예방 도움정도

○ 젠더폭력 예방교육이 젠더폭력 예방 도움정도를 살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73.6%(매우 그렇다:9.4% + 약간 그렇다:64.2%)로 조사되었음.

<그림Ⅳ-50> 젠더폭력 예방교육의 젠더폭력 예방 도움정도

(n=500, 단위: %)



○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은 여성이 79.8%로 남성(67.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살펴보았을 때, ‘그렇다’라는 응답은 30대가 77.7%로 가장 높은 반면, 60세 이상은 66.7%로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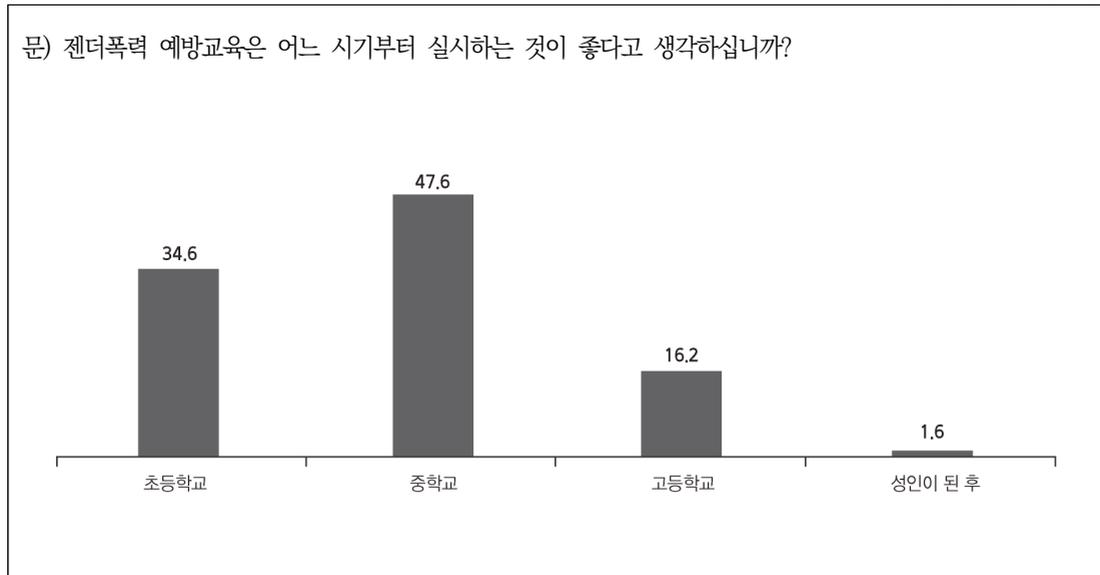
○ 거주지별로 살펴보았을 때, ‘그렇다’에 대한 응답은 동구에서 81.4%로 가장 높은 반면 남구에 사는 71.0%로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됨.

8) 젠더폭력 예방교육 적절 시기

- 젠더폭력 예방교육 시기에 대해 살펴본 결과, '중학교'가 47.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초등학교'가 34.6%, 고등학교 16.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Ⅳ-51〉 젠더폭력 예방교육 적절 시기

(n=500, 단위: %)



-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중학교'라는 응답은 남성이 50.2%로 여성(44.9%)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라는 응답은 20대가 40.4%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라는 응답은 40대에서 57.8%로 타 연령대와 차이를 보임.
- 거주지별로는 남구에서 '초등학교'(9.7%)보다는 '중학교'(47.6%)와 '고등학교'(40.0%)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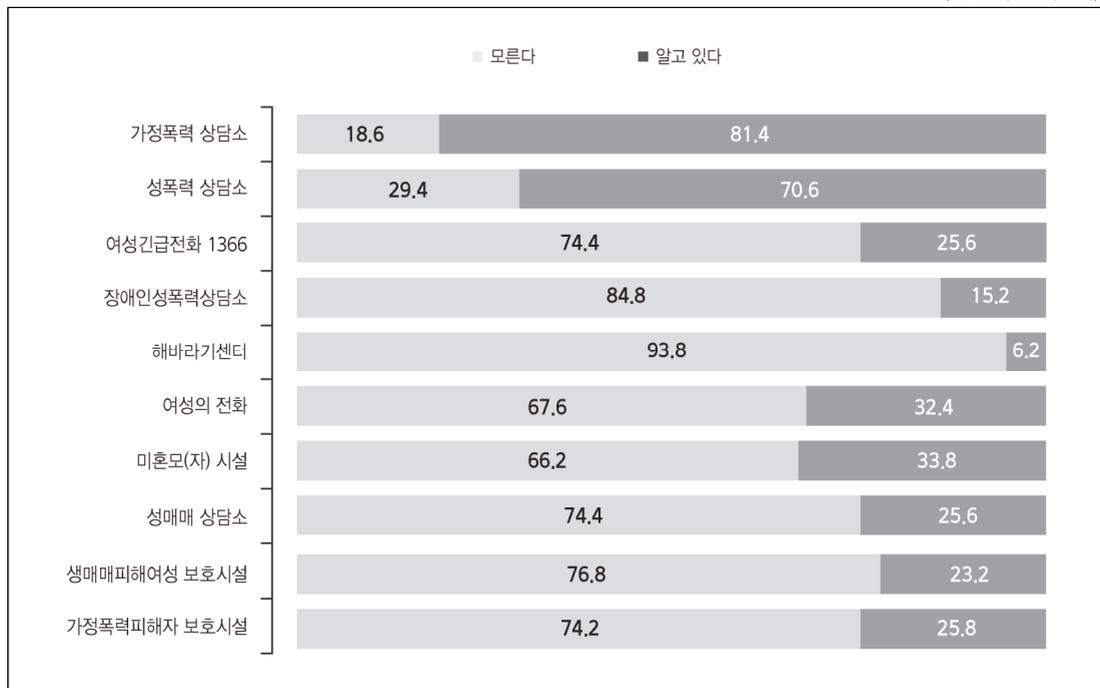
(4) 젠더폭력 관련 유관기관 인지도 및 정책욕구

1) 울산지역의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인지여부

-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관련 유관기관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가정폭력 상담소’가 81.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성폭력 상담소’(70.6%), ‘미혼모(자) 시설’(33.8%), ‘여성의 전화’(32.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해바라기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6.2%로 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인지율을 보임.

〈그림Ⅳ-52〉 울산지역 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인지여부

(n=5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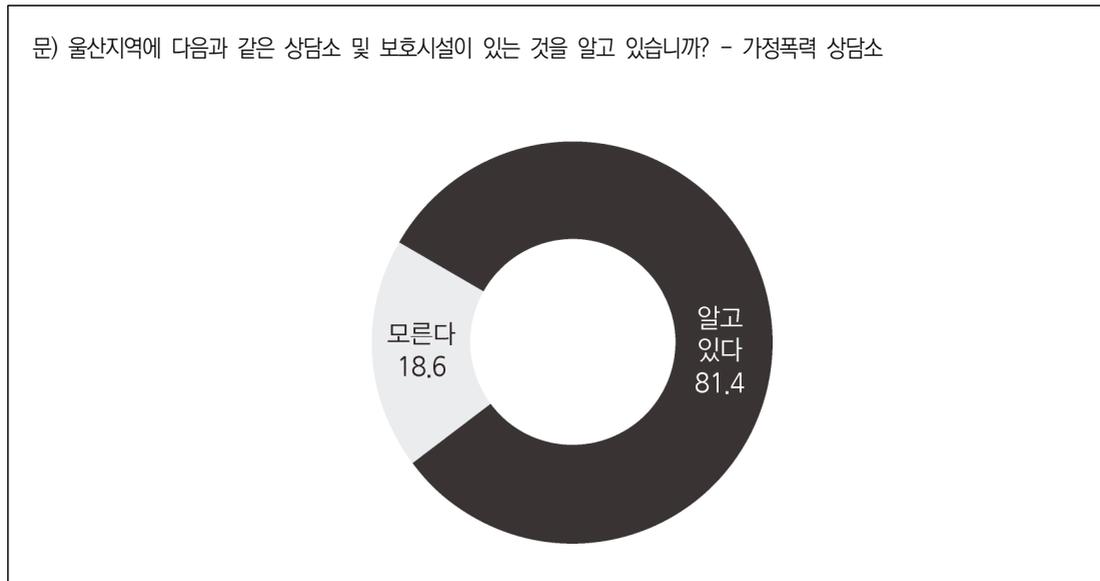


① 가정폭력 상담소

○ 가정폭력 상담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81.4%, ‘모른다’는 18.6%로 조사되었음.

〈그림Ⅳ-53〉 울산지역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인지여부 - 가정폭력 상담소

(n=500, 단위: %)



-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남성이 84.8%로 여성(77.8%)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연령대별로 살펴보았을 때, ‘알고 있다’는 응답은 50대가 87.6%로 가장 높은 반면, 40대(75.2%)와 20대(77.5%)는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혼인별로는 기혼자(83.1%)가 미혼자(78.5%)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정폭력 상담소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별로는 남구에서 ‘알고 있다’는 응답이 95.9%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울주군(64.6%)과 북구(65.5%)는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낮은 인지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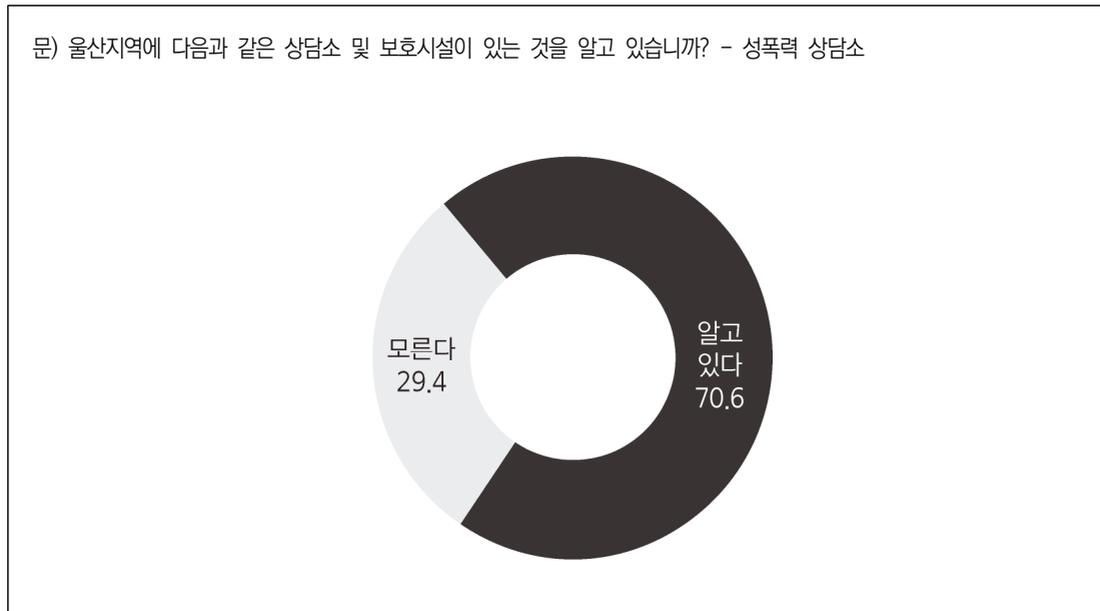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② 성폭력 상담소

○ 성폭력 상담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70.6%, ‘모른다’는 29.4%로 조사되었음.

〈그림Ⅳ-54〉 울산지역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인지여부 - 성폭력 상담소

(n=5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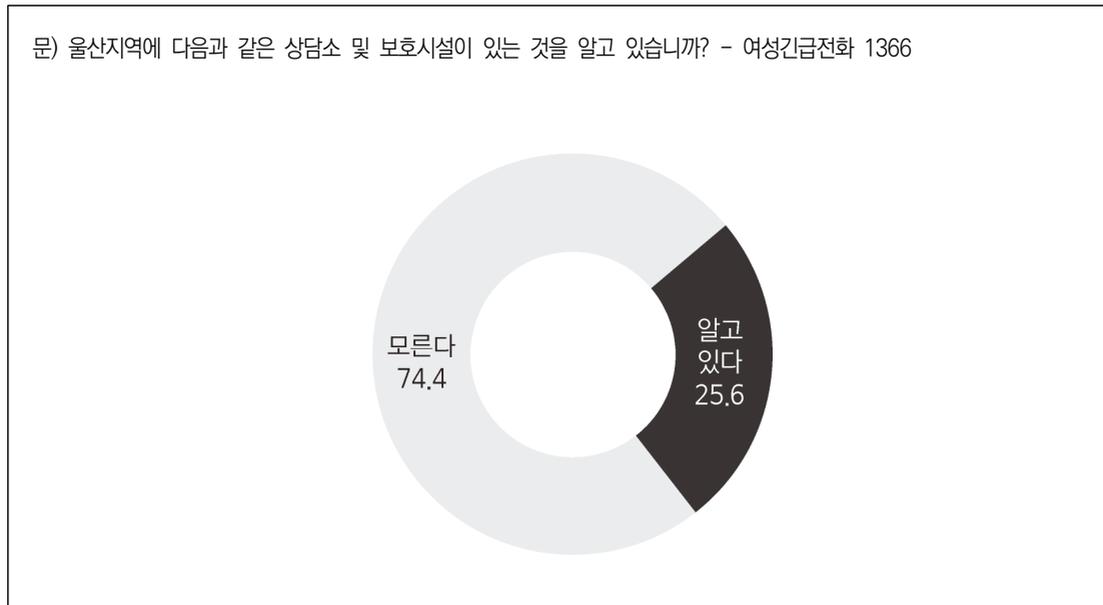
- 성별로 살펴본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남성이 73.9%로 여성(67.1%)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 됨.
-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알고 있다’는 응답은 30대가 75.5%로 가장 높은 반면, 40대가 65.1%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거주지별로는 남구에서 ‘알고 있다’는 응답이 89.0%로 가장 높은 반면, 울주군에서는 53.1%로 나타나 거주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③ 여성긴급전화 1366

○ 여성긴급전화 1366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25.6%, ‘모른다’는 74.4%로 조사되었음.

〈그림Ⅳ-55〉 울산지역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인지여부 - 여성긴급전화 1366

(n=500, 단위: %)



- 성별로 살펴본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여성이 32.1%로 남성(19.5%)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알고 있다’는 응답이 40.4%로 가장 높은 반면 30대의 경우 17.0%, 60세 이상이 16.1%로 비교적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됨.
- 거주지별로 살펴본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북구에서 12.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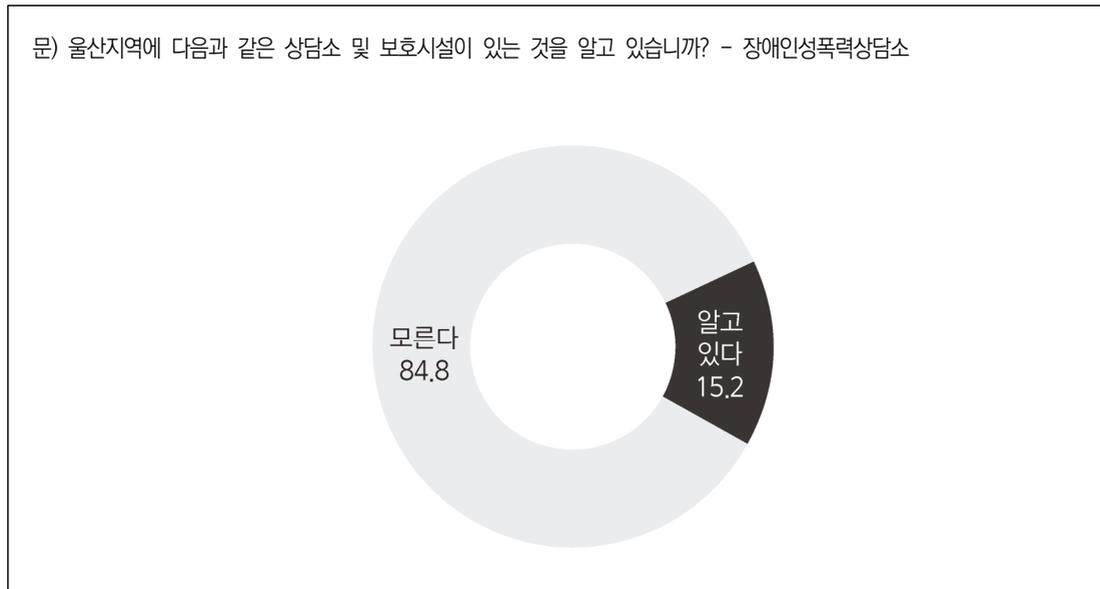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④ 장애인성폭력상담소

○ 장애인 성폭력상담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15.2%, ‘모른다’는 84.8%로 조사되었음.

〈그림Ⅳ-56〉 울산지역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인지여부 - 장애인성폭력상담소

(n=500, 단위: %)



- 성별로 살펴본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여성이 17.7%로 남성(12.8%)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연령대별로 살펴보았을 때, ‘알고 있다’는 응답은 30대에서 22.3%로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가 11.2%, 40대가 11.9%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별로는 ‘알고 있다’라는 응답이 중구에서 5.9%, 울주군에서 3.1%로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인지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됨.

⑤ 해바라기 센터

- 해바라기 센터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6.2%, ‘모른다’는 93.8%로 조사되어 응답자의 상당수는 해바라기센터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Ⅳ-57〉 울산지역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인지여부 - 해바라기센터

(n=500, 단위: %)



- 성별에 따른 인지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남성:5.8%, 여성:6.6%).
- 연령대별로는 ‘알고 있다’라는 응답이 30대에서 11.7%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60세 이상의 경우 1.1%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거주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동구에서 10.0%로 지역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북구에서는 1.1%로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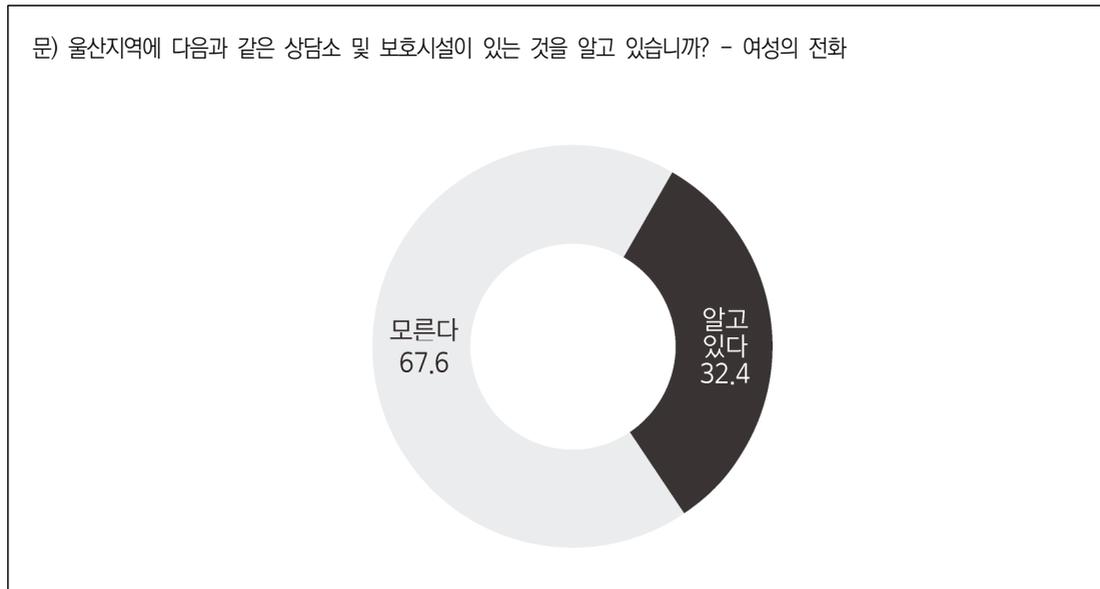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⑥ 여성의 전화

○ 여성의 전화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32.4%, ‘모른다’는 67.6%로 조사되었음.

〈그림Ⅳ-58〉 울산지역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인지여부 - 여성의 전화

(n=5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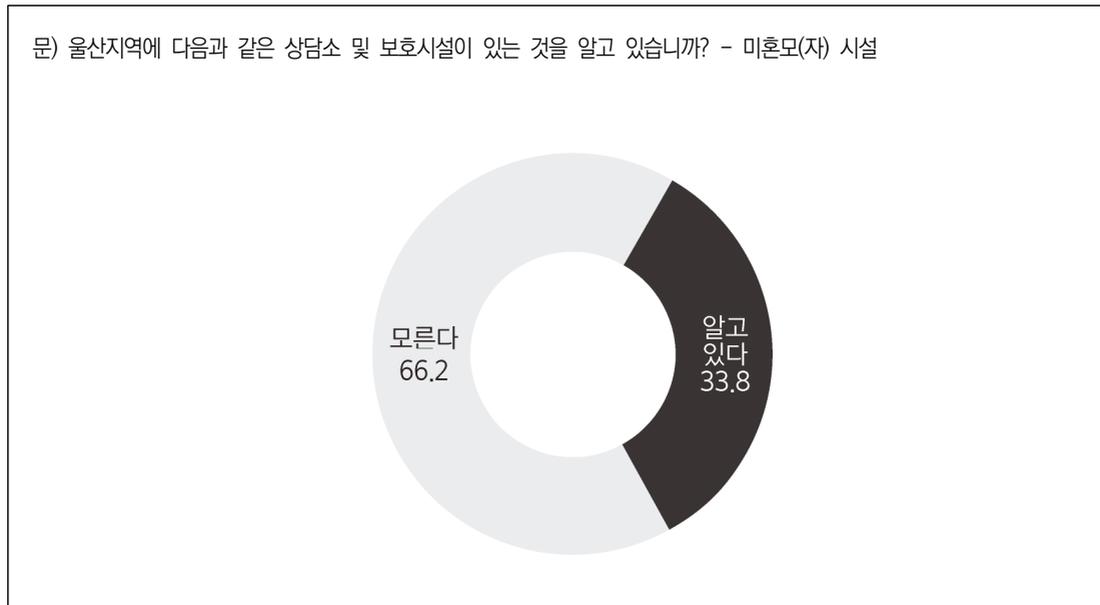
-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남성:32.3%, 여성:32.5%).
-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30대가 36.2%로 가장 높은 반면, 40대는 25.7%로 타 연령대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음.
- 거주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남구에서 49.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북구의 경우 13.8%로 지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됨.

⑦ 미혼모(자) 시설

○ 미혼모(자) 시설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33.8%, ‘모른다’는 66.2%로 조사되었음.

〈그림Ⅳ-59〉 울산지역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인지여부 - 미혼모(자) 시설

(n=500, 단위: %)



-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여성이 36.6%로 남성(31.1%)과 차이를 보임.
-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20대에서 44.9%로 가장 높은 반면, 60세 이상은 26.4%로 타 연령대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거주지별로 살펴보았을 때, ‘알고 있다’는 응답은 동구가 48.6%, 남구가 47.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중구는 13.7%로 거주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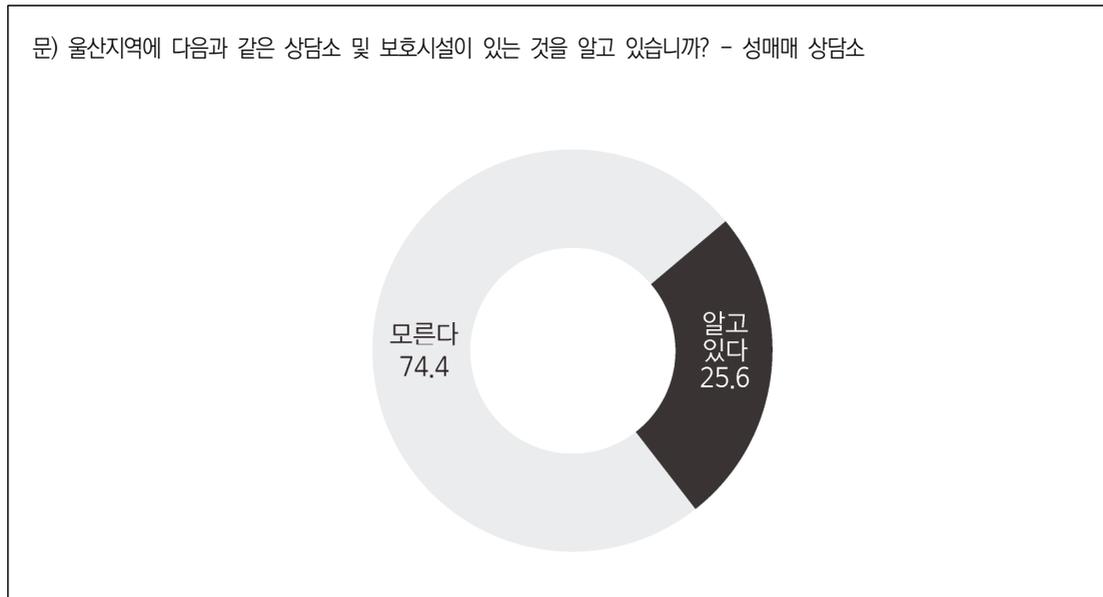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⑧ 성매매 상담소

○ 성매매 상담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25.6%, '모른다'는 74.4%로 조사되었음.

〈그림Ⅳ-60〉 울산지역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인지여부 - 성매매 상담소

(n=5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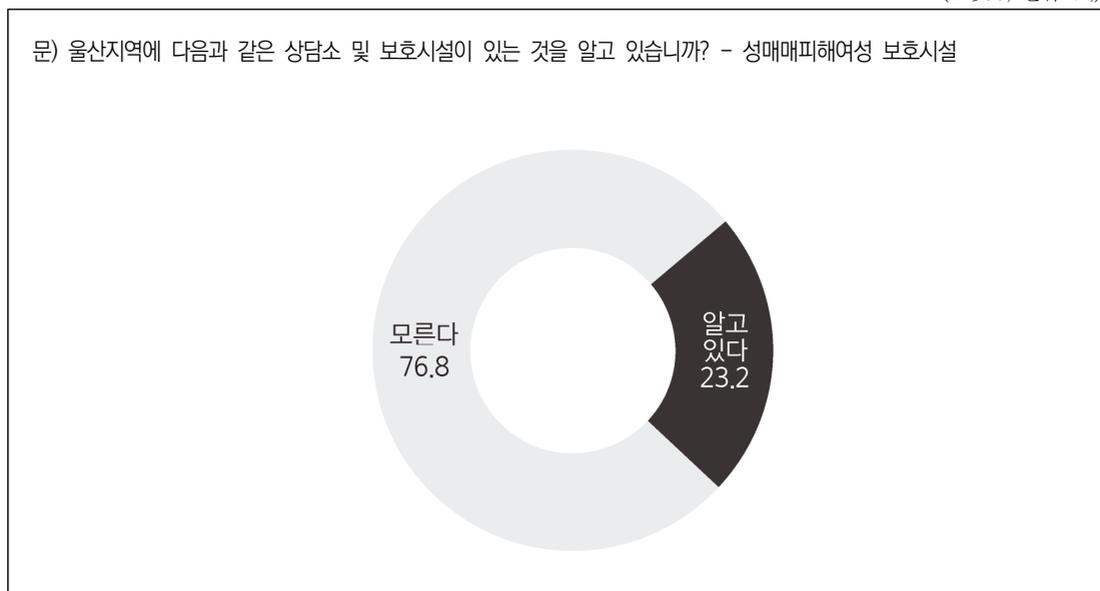
- 성별에 따른 인지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남성:26.5%, 여성:24.7%).
-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50대가 31.4%로 가장 높은 반면, 40대는 19.3%로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보임.
- 거주지별로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동구에서 41.4%로 가장 높은 반면, 울주군에서는 14.6%, 중구에서 16.7%로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⑨ 성매매피해여성 보호시설

- 성매매피해여성 보호시설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23.2%, ‘모른다’는 76.8%로 조사되었음.

〈그림Ⅳ-61〉 울산지역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인지여부 - 성매매피해여성 보호시설

(n=500, 단위: %.)



-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남성:24.1%, 여성:22.2%).
- 연령대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30대가 31.9%로 가장 높았으며 50대가 16.5%로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거주지별로 살펴보았을 때, ‘알고 있다’는 응답은 동구가 35.7%로 가장 높은 반면, 울주군은 11.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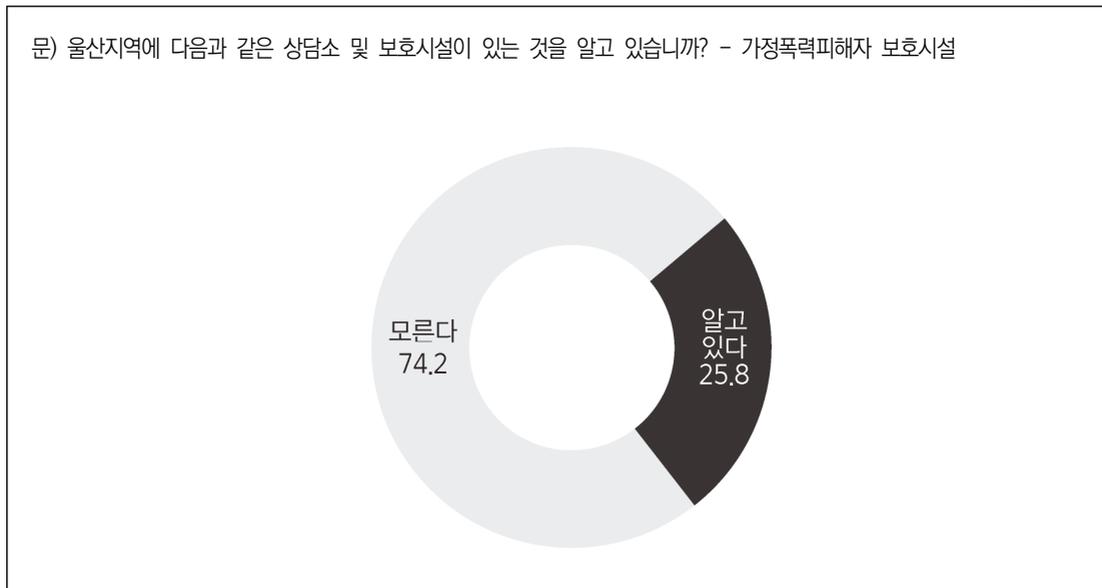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⑩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25.8%, ‘모른다’는 74.2%로 조사되었음.

〈그림Ⅳ-62〉 울산지역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인지여부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n=5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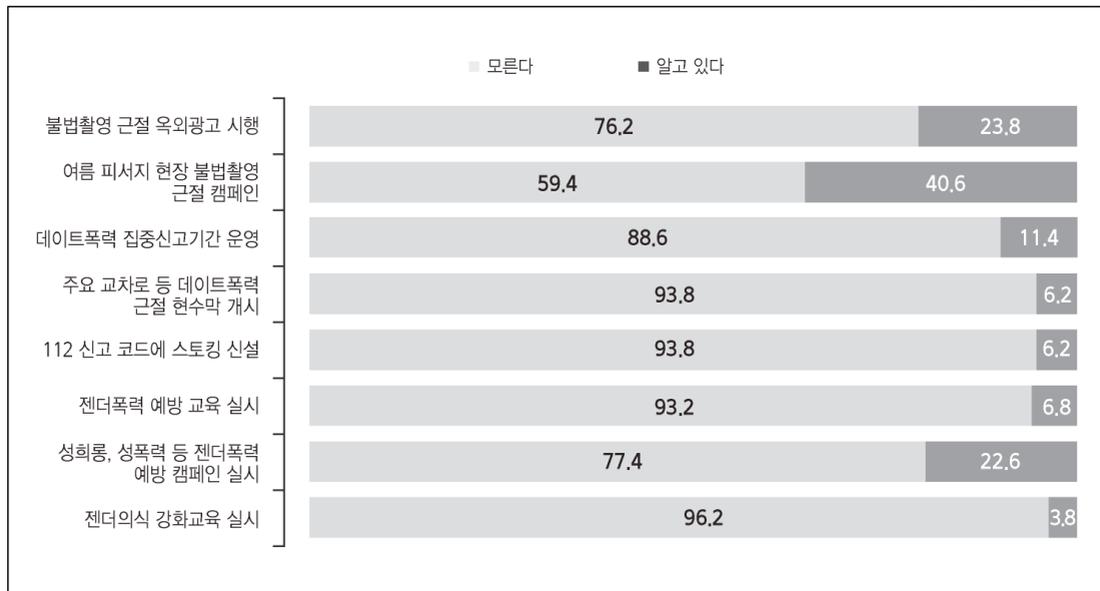
-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남성:26.8%, 여성:24.7%).
-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30대에서 35.1%로 가장 높았으며, 50대에서는 19.0%로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임.
- 거주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동구에서 5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구(11.8%)와 울주군(16.7%)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2) 울산지역 젠더폭력 사업 인지여부

○ 울산지역에서 진행된 젠더폭력 관련 사업에 대한 인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여름 피서지 현장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에 대한 인지 비율이 40.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불법촬영 근절 옥외광고 시행’ 23.8%, ‘성희롱, 성폭력 등 젠더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22.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Ⅳ-63〉 울산지역 젠더폭력 사업 인지여부

(n=5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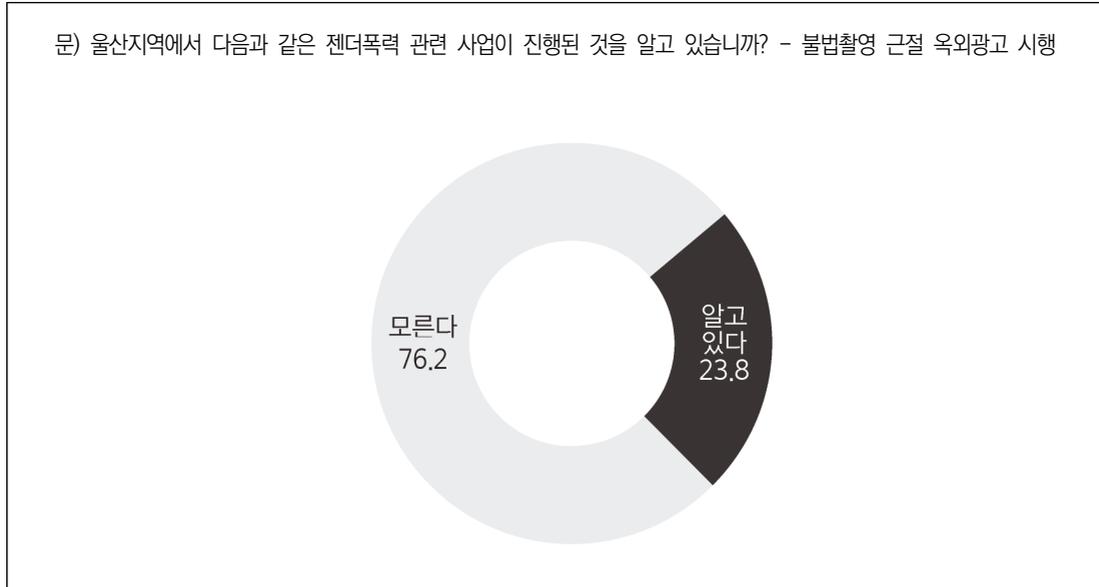
① 불법촬영 근절 옥외광고 시행

○ 울산지역에서 진행된 사업인 ‘불법촬영 근절 옥외광고 시행’에 대한 인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3.8%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그림Ⅳ-64〉 울산지역 젠더폭력 사업 인지여부 - 불법촬영 근절 옥외광고 시행

(n=5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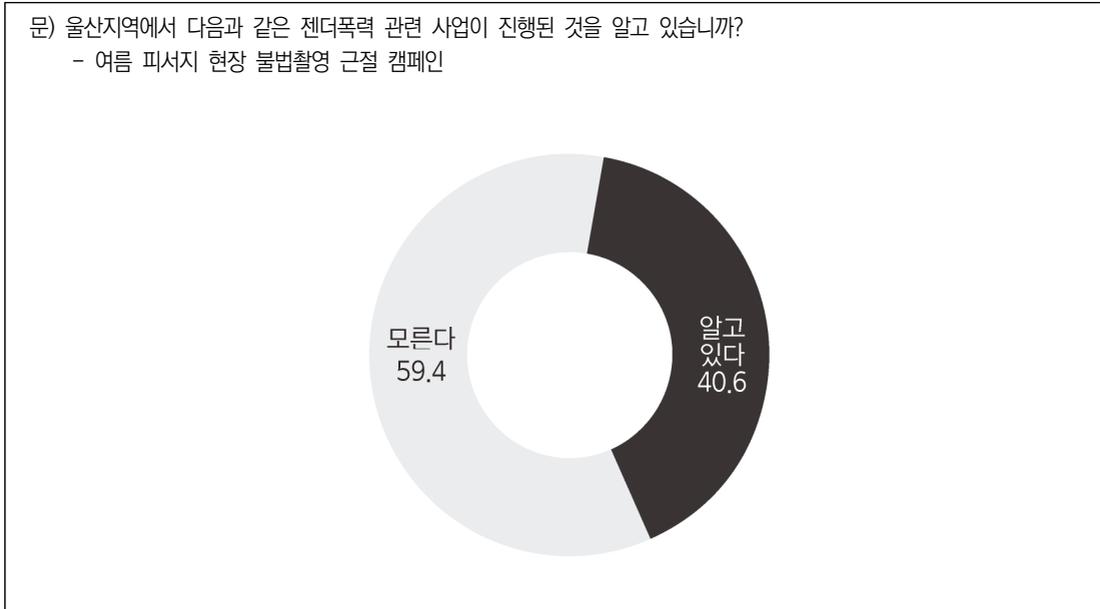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인지 비율이 25.7%로 여성(21.8%) 대비 높음.
-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20대가 32.6%로 가장 높은 반면, 60세 이상은 16.1%로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거주지별로 살펴본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동구가 35.7%로 가장 높았으며, 북구의 경우 11.5%로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임.

② 여름 피서지 현장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

- '여름 피서지 현장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에 대한 인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6%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Ⅳ-65〉 울산지역 젠더폭력 사업 인지여부 - 여름 피서지 현장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

(n=500, 단위: %)



-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남성이 44.0%로 여성(37.0%)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연령대별로 살펴보았을 때, ‘알고 있다’는 응답은 20대에서 51.7%로 가장 높은 반면, 60세 이상은 21.8%로 연령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별로 살펴본 결과 ‘알고 있다’라는 응답이 남구에서 51.7%로 가장 높은 반면, 울주군에서는 28.1%로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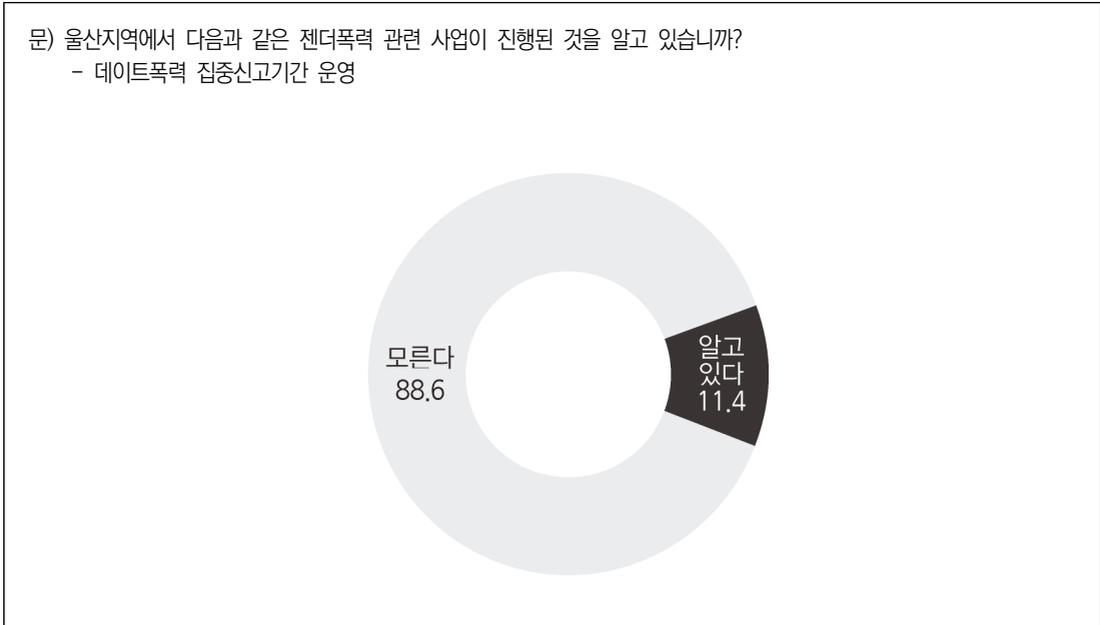
③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운영

-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운영’에 대한 인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불과 응답자의 11.4%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그림Ⅳ-66〉 울산지역 젠더폭력 사업 인지여부 -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운영

(n=5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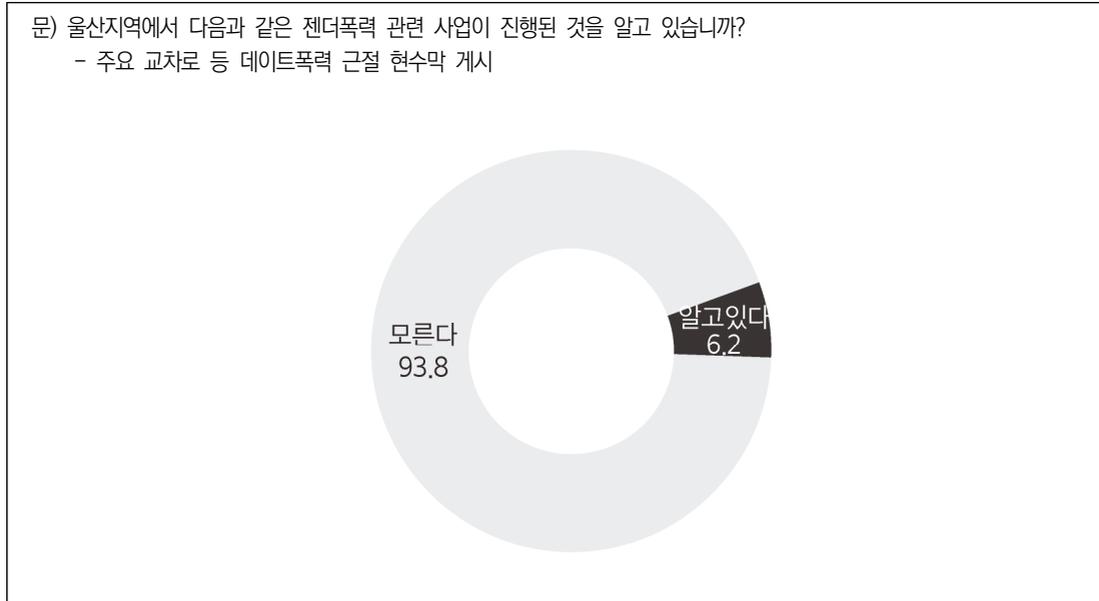
- 성별로 살펴본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여성이 14.0%로 남성(8.9%)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연령대별로 살펴보았을 때, '알고 있다'라는 응답은 40대가 1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이 10.3%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거주지역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중구와 동구에서 각각 18.6%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하지만 북구(2.3%)와 남구(5.5%)는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됨.

④ 주요 교차로 등 데이트폭력 근절 현수막 게시

- '주요 교차로 등 데이트 폭력 근절 현수막 게시'에 대한 인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단 6.2%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Ⅳ-67〉 울산지역 젠더폭력 사업 인지여부 - 주요 교차로 등 데이트폭력 근절 현수막 게시

(n=500, 단위: %)



-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여성:6.6%, 남성:5.8%).
-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30대가 9.6%로 타 연령대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40대의 경우 불과 1.8%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거주지별로 살펴본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동구에서 11.4%로 가장 높았으며 북구의 경우 1.1%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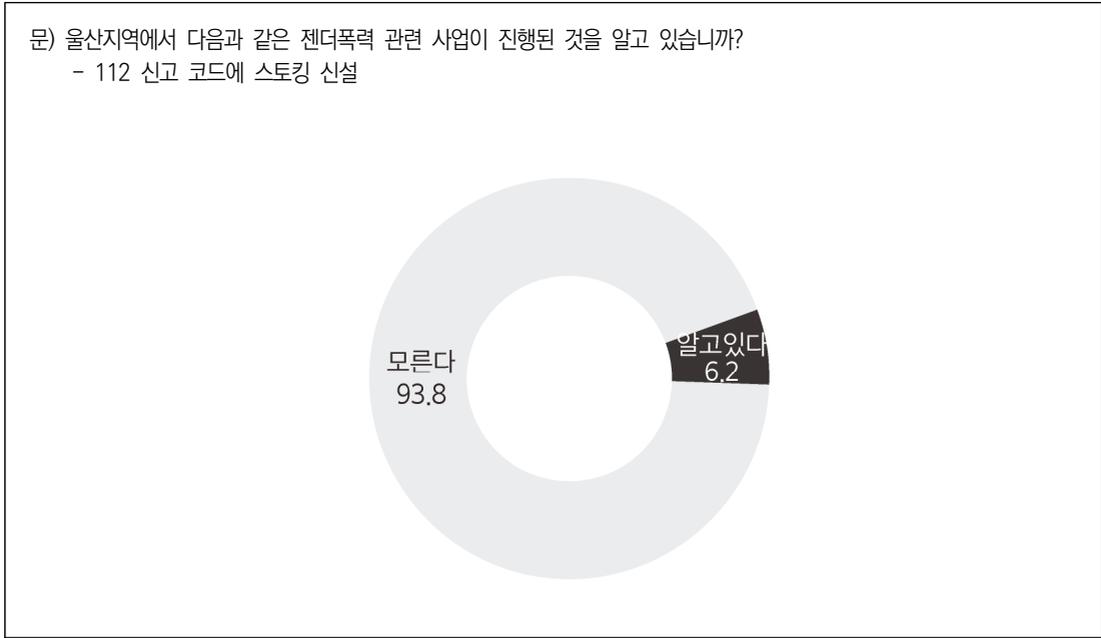
⑤ 112 신고 코드에 스토킹 신설

- '112 신고 코드에 스토킹 신설'에 대한 인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그림Ⅳ-68〉 울산지역 젠더폭력 사업 인지여부 - 112 신고 코드에 스토킹 신설

(n=500, 단위: %)



-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여성:7.0%, 남성:5.4%).
- 연령대별로 인지여부를 살펴본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20대가 12.4%로 가장 높은 반면, 40대는 1.8%로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거주지별로 살펴본 결과, '알고 있다'에 대한 응답은 중구가 9.8%로 가장 높으며, 북구가 2.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⑥ 젠더폭력 예방교육 실시

- '젠더폭력 예방 교육 실시'에 대한 인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Ⅳ-69〉 울산지역 젠더폭력 사업 인지여부 - 젠더폭력 예방 교육 실시

(n=500, 단위: %.)



-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여성:6.2%, 남성:7.4%).
- 연령대별로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알고 있다’는 응답은 20대가 10.1%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60세 이상의 경우 1.1%로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울주군이 11.5%로 가장 높았으며 북구의 경우 2.3%로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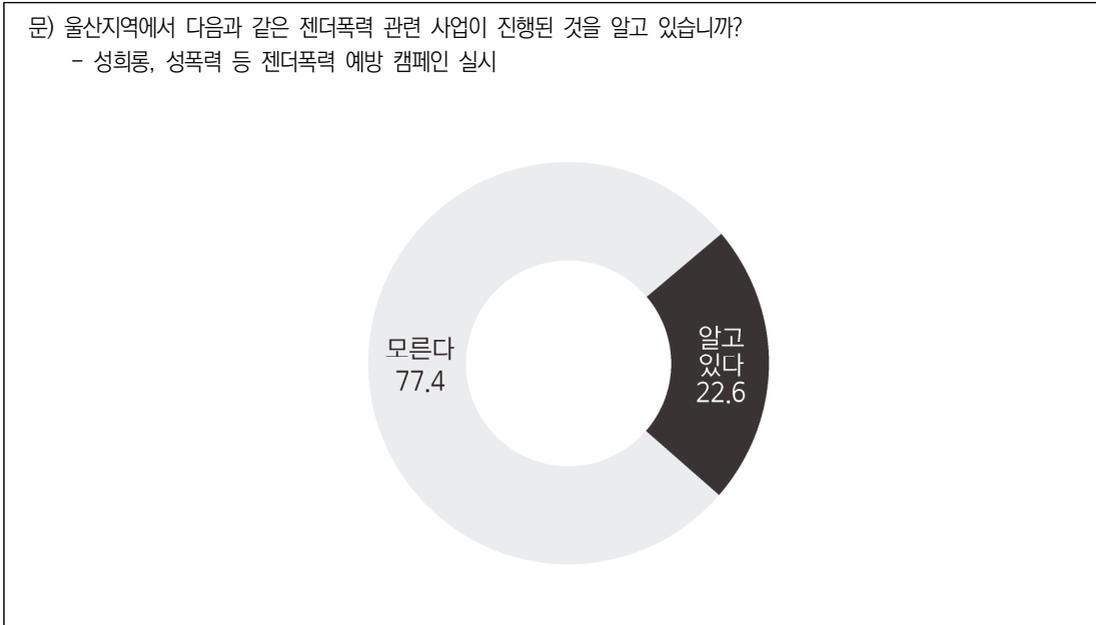
⑦ 성희롱, 성폭력 등 젠더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 ‘성희롱, 성폭력 등 젠더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에 대한 인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2.6%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그림Ⅳ-70〉 울산지역 젠더폭력 사업 인지여부 - 성희롱, 성폭력 등 젠더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n=5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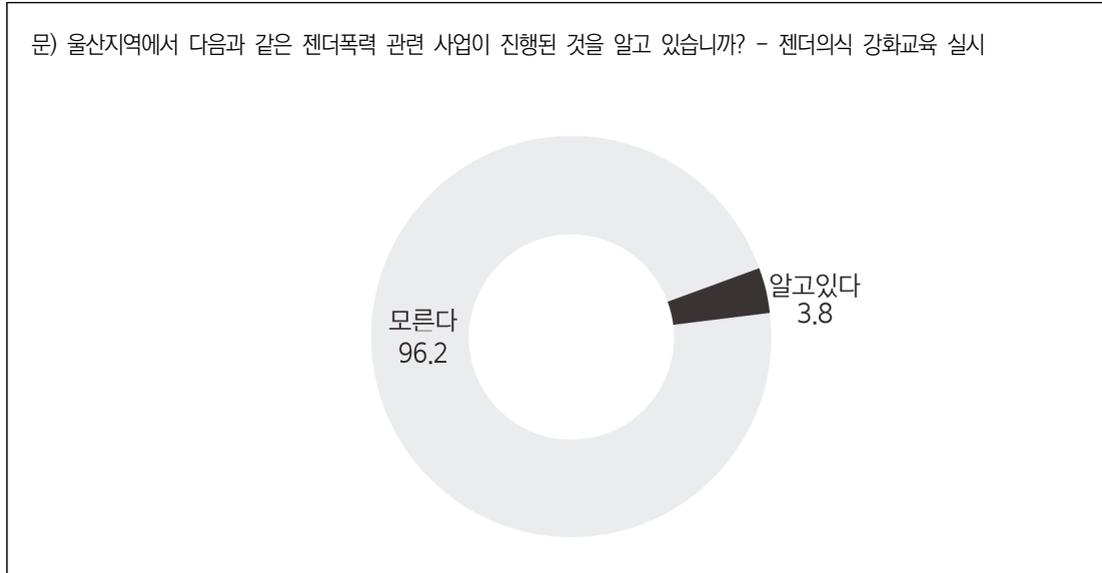
- 성별에 따른 인지여부를 살펴본 결과, 여성이 21.4%로 남성(23.7%)에 비해 조금 낮은 것으로 파악됨.
-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30대가 31.9%로 가장 높은 반면, 50대(19.8%)와 60세 이상(18.4%)의 중장년층의 경우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거주지별로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북구(43.7%)와 동구(42.9%)가 비교적 높았으며 중구(5.9%)와 울주군(6.3%)은 타 지역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수준이었음.

⑧ 젠더의식 강화교육 실시

- ‘젠더의식 강화교육 실시’에 대한 인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8%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Ⅳ-71〉 울산지역 젠더폭력 사업 인지여부 - 젠더의식 강화교육 실시

(n=500, 단위: %)



-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여성:4.5%, 남성 3.1%).
- 연령대별로도 큰 차이는 없었으며 30대가 7.4%로 타 연령대에 비해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보임.
-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알고 있다'에 대한 응답은 동구가 8.6%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북구의 경우 응답자 87명 모두가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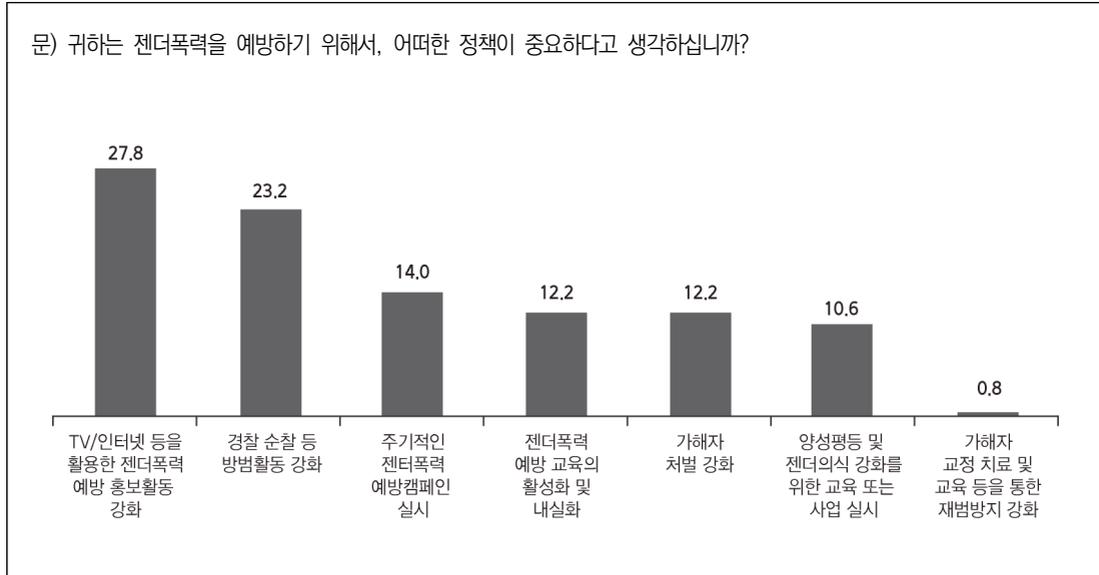
3) 젠더폭력 예방 위해 필요한 정책

- 젠더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 'TV/인터넷 등을 활용한 젠더폭력 예방 홍보 활동 강화'가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그림Ⅳ-72〉 젠더폭력 예방위해 중요한 정책

(n=500, 단위: %)



- 그 다음으로 ‘경찰 순찰 등 방법활동 강화’ 23.2%, ‘주기적인 젠더폭력 예방캠페인 실시’ 14.0% 등의 순임.
- 연령대별 분석 결과, ‘경찰 순찰 등 방법활동 강화’에 대한 응답은 60세 이상이 29.9%로 타 연령층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젠더폭력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주기적인 젠더폭력 예방캠페인 실시’(16.4%)에 대한 응답이 비인지 응답자 대비 높게 나타남.
- 젠더폭력 경험이 있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TV/인터넷 등을 활용한 젠더폭력 예방 홍보 활동 강화’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소결

- 이상의 설문 결과를 정리·분석하자면 다음과 같음. 먼저 젠더폭력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64.8%였으며, 특히 20대 및 미혼의 인지율이 높았음. 이는 젊은 층의 젠더폭력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리고 최근 젠더폭력 경향 체감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다’(35.2%)라는 응답이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다’(18.0%)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나, ‘과거와 비교하여 특별한 변화는 없다’(46.8%)고 느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음. 이러한 응답을 통하여 울산시민의 젠더폭력에 대한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젠더폭력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3.4%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여성의 경험율은 44.0%로 남성(23.3%)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응답자가 경험한 젠더폭력의 경험율은 ‘성희롱’이 7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희롱과 가정폭력(21.0%)을 경험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90% 이상을 차지하였음. 특히 성희롱에 대한 응답은 20대가 84.4%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는 성희롱의 실제 경험 유무와도 관계가 있겠으나, 연령이 낮을수록 성희롱에 대한 감수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음. 한편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가정폭력’을 경험한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음. 특히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가정폭력’을 경험하였다고 답한 응답자가 64.0%에 이르러 상당히 높은 비율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 밖에도 응답자 중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90.9%가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여, 당해 직종의 성희롱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젠더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7%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하였고, 특히 여성(57.0%)에 비해 남성(70.0%)의 비율이 더 높았음. 대신 남성의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응답이 6.7%로 여성(0.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남성이나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 여겨짐. 즉, 여성과 남성이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을 고려할 때, 남성은 이러한 문제에 크게 대응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큰 일이 아닌 한 참고 넘겨야 한다거나, 여성이 젠더폭력을 겪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므로 경찰 등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된다는 식의 편견이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임.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 그리고 타인의 젠더폭력 상황을 목격한 경우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경험하였다는 응답(33.4%)보다 높은 42.2%로 나타났음. 이 경우에도 여성의 목격 비율(46.1%)이 남성(38.5%)보다 높았으며, 20대가 52.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목격 경험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본인의 경험에 대한 응답과 동일하게 ‘성희롱’(55.9%)이었으나, 그 비율은 본인의 경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오히려 목격한 젠더폭력 중에는 가정폭력도 32.7%로 상당히 높았으며, 데이트폭력도 8.1%에 달했음. 특히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률은 50대 51.3%, 60대 63.6%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였음. 이는 상술한 젠더폭력 경험 비율과 함께 고려할 때, 울산지역의 가정폭력 발생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수치라 할 수 있음. 또한 대학교 재학 중의 학생 중 ‘데이트 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26.7%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냈음. 이는 젊은 층의 성의식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언론 등을 통해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도 높고, 성인지 감수성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으나 제대로 된 성평등 의식이 자리 잡지 않아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지는 데이트 폭력 등은 여전히 상당한 수치를 보이는 것이라 여겨짐.
- 주변에서 젠더폭력을 목격했을 때의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본인이 젠더폭력을 경험했을 때보다는 비율이 낮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56.9%)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음. 또한 만약 본인 또는 주변에 젠더폭력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설문에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응답이 53.2%로 가장 높았음. 젠더폭력의 대처방안에 대한 세 가지 설문을 두고 다음과 같은 분석도 가능함. 즉, 이러한 응답의 차이는 이전 상황에서의 본인의 대처방식에 대한 반성이나 후회에 따른 것이거나, 이전 경험에 의해 젠더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더욱 느끼게 된 경우, 또는 가상으로는 젠더폭력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 옳다고는 느끼나, 실제 상황에서는 공론화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도 있음.
- 다음으로 젠더폭력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먼저 ‘우리 사회에서 젠더폭력은 심각한 문제이다’ 항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4%(매우 그렇다: 18.4%+약간 그렇다:57.0%)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앞선 젠더폭력의 체감도 문항과 비교할 때, 젠더폭력이 이전보다 많이 늘고 있다고는 인식하지 않으나 젠더폭력이 갖는 심각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수긍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울산지역에서 젠더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항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46.6%(매우 그렇다: 5.6%+약간 그렇다:41.0%)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것을 고려할 때, 응답

자는 울산지역에서의 젠더폭력 체감도를 낮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한편으로는 울산지역을 안전하게 느낀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울산지역 내에 젠더의식 또는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젠더폭력의 발생을 체감하지 못하거나 또는 공론화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이라 볼 여지도 있음.

- 최근에 일어난 미투 운동에 대한 공감에 관해서는, ‘그렇다’는 67.0%(매우 그렇다:8.6%+약간 그렇다:58.4%), ‘그렇지 않다’는 33.0%(전혀 그렇지 않다:6.8%+별로 그렇지 않다:26.2%)로 조사되었음. 그 중 여성의 비율은 76.1%로 높았으나 남성은 58.4%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여성이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에 대한 공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에 ‘남성도 젠더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설문에 대해서는 여성(86.0%)은 물론, 남성도 80.5%로 매우 높은 비율로 긍정하고 있음. 이는 젠더폭력이나 피해자 기준과 같이 객관적인 판단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성들도 높은 비율로 수긍하고 있으나, 젠더폭력의 발생률이나 미투운동과 같이 여성이 피해자로 보여지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전자에 비해 덜 공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아직 성인지 감수성이 제대로 자리잡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한편 ‘젠더폭력의 피해자에게도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항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6%(매우 그렇다:6.4%+약간 그렇다:65.2%)가 ‘그렇다’라고 응답함. 이러한 설문의 응답을 통해서는 여전히 젠더폭력에 있어 가해자를 두둔하는 문화를 엿볼 수 있음. 젠더폭력의 성립은 어디까지나 가해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범죄의 성립판단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검토는 가해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나 지원을 위한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인식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현상은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었다면, 찍는 것을 동의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은 70.6%(매우 그렇다:12.2% + 약간 그렇다:58.4%)로 비교적 높았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연인이나 부부사이의 스킨십에서 동의를 구하는 것은 어색하다’ 항목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67.8%가 ‘그렇다’(매우 그렇다:6.4%+약간 그렇다:61.4%)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20대의 ‘그렇다’ 응답 비율이 76.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50대 66.1%, 60대 이상 67.8%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라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설문의 응답을 볼 때, 20대의 경우 높은 연령대에 비해 많은 관련 정보의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습득 등으로 인하여 젠더폭력의 심각성 등과 성인지 감수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나 인식은 좋아지고 있으나, 실제 상황에서는 이러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 어려운 것으로 여겨짐. 이러한 20대의 특성은 젠더폭력의 범위에 대한 인식 설문인 '남녀(이성) 관계에서 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라는 설문에서 '그렇다'라는 응답이 43.8%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그리고 젠더폭력 예방이나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중요한 정보인 '중앙 또는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관련기관을 알고 있다'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다'가 65.2%(전혀 그렇지 않다:18.4%+별로 그렇지 않다:46.8%)로 조사되어 '그렇다' 34.8%(매우 그렇다:0.6%+약간 그렇다:34.2%)에 비해 높은 응답을 보임. 또한 젠더폭력을 경험한 적(34.7%)이 있거나 또는 젠더폭력을 목격한 적(37.4%)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에도 젠더폭력 관련기관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젠더폭력 관련기관 등 젠더폭력 대응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이나 홍보 등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여겨짐.
- 다음으로 젠더폭력 처벌 수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먼저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용인될 수 없으나,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가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남. 반면에 '가정폭력'에 대해 '용인될 수 없고,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가 81.0%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임. 이와 관련해서는 앞선 설문 등에서 가정폭력이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50대 및 60대 이상에서 가정폭력이지만 상황에 따라 용인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3.3%, 2.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높은 연령층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그 밖에도 스토킹, 불법촬영, 데이트폭력 등과 같은 신종 젠더폭력 유형에 대해서도 대체로 80%를 넘는 응답자가 '용인될 수 없고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라고 응답하였음. 특히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이성의 특정부위가 아니라, 전신사진을 몰래 찍는 것은 괜찮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91.6%(전혀 그렇지 않다:67.0% + 별로 그렇지 않다:24.6%)로 매우 높았다는 점, '지나가는 여성이 예뻐 보여서 몰래 사진을 찍는 것은 괜찮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90.6%(전혀 그렇지 않다:59.8% + 별로 그렇지 않다:30.8%)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감수성은 높은 것으로 보임. 반면에 디지털 성범죄는 '용인될 수 없고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라는 응답이 높긴 했지만, 그 비율로는 79.2%로 타 신종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음. 더하여

타 신중 유형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용인될 수 있다’를 선택한 응답률이 매우 낮았으나,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서는 ‘상황에 따라 용인될 수 있다’를 선택한 응답률이 7.0%를 차지해, 타 유형에 비해 이에 관한 범죄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젠더폭력 유형 중에서 ‘용인될 수 없고,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성매매’가 93.4%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음. 또한 이는 젠더폭력의 범위에 대한 인식 설문 중, “성매매의 경우에는 현행법과 같이 성판매자도 처벌하는 것이 옳다”라는 설문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91.8%(매우 그렇다:36.4% + 약간 그렇다:55.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성매매를 하는 성판매자는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이 45.6%(매우 그렇다:7.4% + 약간 그렇다: 38.2%)로 절반을 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검토되어야 함. 즉, 앞선 전문가 설문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성매매는 다른 젠더폭력과 달리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크다는 점이 드러나는 결과이며, 특히 다른 젠더폭력의 예방이나 지원에 대한 교육이나 인식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철저히 성매매에 관한 교육이나 인식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함. 그러나 울산지역의 특성상 성매매는 성행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앞선 젠더폭력의 경험이나 목격 여부에 관한 설문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인 ‘성희롱’에 대한 설문에서는 성희롱에 대한 감수성이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즉,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 간에 사소한 성적 농담쯤은 할 수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은 43.4%(매우 그렇다:3.0% + 약간 그렇다:40.4%)로 나타났으며,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있었다고 해도, 이를 공론화해서 문제삼는 건 불편하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이 46.0%(매우 그렇다:1.4% + 약간 그렇다:44.6%)로 나타나 성희롱이 갖는 권력을 바탕으로 한 차별이나 폭력성 등 제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짐. 또한 ‘남자치곤 키가 작다거나, 여자가 너무 뚱뚱하다는 말도 성희롱이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은 56.4%(매우 그렇다:5.6% + 약간 그렇다:50.8%)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남성이나 여성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한 발언 역시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제대로 자리잡혀 있다고는 보기 어려움.
- 다음으로 젠더폭력 예방교육 참여 경험에 대한 설문에서, 참여경험이 ‘있음’이라는 응답은 17.2%로 매우 저조한 비율을 보였음.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참여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남성이 21.0%로 여성(13.2%)보다 높다는 점, 연령별로는 30대가 23.4%로 가장 높다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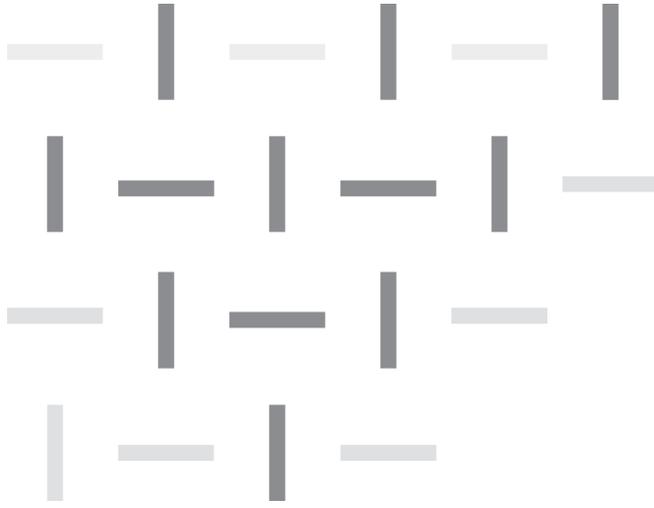
는 점, 직업별로는 사무직(45.2%) 및 전문직(40.0%)의 젠더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자영업(3.9%)이나 가정주부(4.0%)의 참여율은 매우 저조하며, 학생 역시도 7.7%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는 점 등으로 고려할 때 울산지역에서 젠더폭력 예방교육은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대체로 직업교육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 이는 젠더폭력 예방교육의 수강 경로에 대한 설문에서 ‘직장 교육’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79.1%로 나타났다는 점에 비추어서도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음. 그리고 참고로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중 75.6%가 성희롱/성폭력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력에 방(5.8%)교육이나 가정폭력(4.7%)교육 등을 이수한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한편 젠더폭력 예방교육 참여 이후, 인식변화에 대해 살펴본 결과, ‘바뀐’에 해당하는 응답은 91.9%(매우 바뀌었다:20.9% + 약간 바뀌었다:70.9%)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20대의 경우 ‘바뀐’이라는 응답이 100.0%로 나타난 반면, 60세 이상은 66.7%로 타 연령대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6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젠더폭력 예방교육 후, 본인의 인식 전환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참고로, 젠더폭력 예방교육이 젠더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73.6%(매우 그렇다:9.4% + 약간 그렇다:64.2%)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젠더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에 대한 기대도 높은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반면에 향후 젠더폭력 예방교육 수강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는 응답은 40.8%(매우 그렇다:3.6% + 약간 그렇다:37.2%)로 조사되었음. 이러한 설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한 응답자들은 당해 교육의 효과에 대해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실제로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수강 의욕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음. 더하여 울산지역에서 진행된 젠더폭력 관련 사업에 대한 인지도부를 조사한 결과, 젠더폭력 예방교육(6.8%), 젠더의식 강화교육(3.8%) 실시 등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할 때, 젠더폭력 예방교육의 내실도 중요하지만,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수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젠더폭력 관련 유관기관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가정폭력 상담소’가 81.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성폭력 상담소’(70.6%), ‘미혼모(자) 시설’(33.8%), ‘여성의 전화’(32.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다만 가정폭력상담소 및 성폭력 상담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유관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40% 이하

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울산지역의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이들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유관기관은 젠더폭력의 예방이나 지원 등과 같은 기본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물론, 이들 기관의 활성화는 곧 젠더폭력에 대한 울산지역의 대응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며, 나아가 이들 기관이 갖는 상징성도 크다고 하겠음.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이 지역에서 바로 자리 잡고, 또한 울산지역에서 더욱 많은 젠더폭력 피해자가 이들 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마지막으로 울산지역에서 진행된 젠더폭력 관련 사업에 대한 인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여름 피서지 현장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에 대한 인지 비율이 40.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불법촬영 근절 옥외광고 시행’ 23.8%, ‘성희롱, 성폭력 등 젠더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22.6%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에 데이트 폭력 근절 현수막 게시(6.2%) 사업이나 젠더폭력 예방교육(6.8%), 젠더의식 강화교육(3.8%) 실시 등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즉,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특정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나 시각적 효과가 높은 사업 등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울산시민의 관심 및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또한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은 젠더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묻는 설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즉, 젠더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정책을 묻는 설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중 27.8%가 ‘TV/인터넷 등을 활용한 젠더폭력 예방 홍보활동 강화’를 들었으며, 23.2%가 ‘경찰 순찰 등 방법활동 강화’를, 14.0%가 ‘주기적인 젠더폭력 예방캠페인의 실시’를 들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이상에서는 젠더폭력에 관한 울산시민 인식조사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시사점에 관해 확인하였으며, 지금까지의 검토 사항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결론 및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V.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173
2. 정책제언	177
참고문헌	181

V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본 보고서는 젠더폭력에 대한 울산시민의 감수성을 제고하고,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울산을 구현하기 위해, 젠더폭력의 정의 및 유형에 관한 검토,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발생현황 및 관련 유관기관 상담현황 제시, 젠더폭력 관련 울산시민 인식 조사,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울산지역 젠더폭력 현황 및 특성에 맞춘 예방대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에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2장에서는 젠더폭력에 대한 기본검토로서 젠더폭력의 정의 및 관련법에 따른 젠더폭력의 유형, 울산지역 등 젠더폭력 발생현황,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관련 상담현황 등을 제시하였고, 제3장에서는 울산지역에서 젠더폭력 예방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울산광역시 상담소·시설협의회 소속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발생현황 및 특성, 마련되어야 할 젠더폭력 관련 정책 등에 관해 확인하였음. 그리고 제4장에서는 젠더폭력에 대한 울산시민의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울산시민의 관련 특성, 젠더폭력 발생현황, 젠더폭력 예방교육 수강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음. 결론은 위의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울산광역시의 젠더폭력 관련 특성 및 문제점, 울산광역시의 특성에 맞춘 젠더폭력 예방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의 장애요인, 마지막으로 젠더폭력에 대한 울산시민의 인식 실태에 관한 검토 순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자 함. 그리고 이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울산광역시에서 추진되어야 할 몇 가지 정책과제에 대해 제언하고자 함.

(1) 젠더폭력 위험요인으로써 울산지역의 특성

- 최근 미투 운동 등으로 우리 사회에서 젠더폭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반면, 울산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그렇게 많지 않았음. 그러나 젠더폭력 관련 유관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발생 체감도는 이전보다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젠더폭력 관련 상담건수 및 현황이라 하겠음.
- 이와 같이 체감되는 다른 요인으로는 젠더폭력에 대한 젊은층의 인식이 많이 변화하여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 또는 인터넷 등의 발달로 성매매 유형 등이 더욱 다양화 되었다는 것, 그 밖에 우리 사회의 성평등 의식 및 인권 의식 부족 등과 같은 일반적인 요인도 그 원인이라 하겠으나, 울산지역의 젠더폭력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은 울산지역이 안고 있는 지역적 특성에 있다고 하겠음.
- 즉, 울산지역은 한국을 대표하는 공업도시이자 산업도시임. 이에 따라 울산은 타 시·도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남성이 경제력을 쥐고 있는 가정이 많음. 이에 따라 젠더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가정폭력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여성의 경제적 독립의 어려움 때문에 가정 내 폭력을 견디거나, 남편의 직장을 따라 이주한 여성의 경우에는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해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 나아가 울산지역에는 회사나 공장 등이 다수 밀집해 있어 업무상 접대문화가 발달되어 있다는 점도 성매매 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임. 뿐만 아니라 남성 위주의 직장 구조는 직장 내 권력관계가 성적차별 등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성희롱의 발생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또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울산시민 인식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울산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젠더폭력의 주된 유형을 성희롱과 가정폭력이라고 전제한다면, 위의 요인이 울산지역의 젠더폭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에 더욱 무게를 실을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젠더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젠더폭력에 대한 강한 제재나 개별적인 대처방안의 강구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울산시민의 인권이나 성평등, 젠더의식의 강화,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라는 아주 기본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정책의 마련일 것임. 그렇다면 이러한 근본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 그 이전에 이러한 울산시민의 인식 변화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 마련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요인에 관해 검토해 보기로 함.

(2)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의 장애요인

- 젠더폭력은 성적 차별 또는 여성이나 남성에게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하는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하여, 사람이라면 누구나 젠더폭력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음. 그러한 의미에서 젠더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은 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울산 시민의 성평등 의식이나 불가침 인권, 젠더폭력 등에 대한 감수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 하겠음.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젠더폭력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나 유형도 정립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반시민은 물론 정책마련이나 관련 사업 등의 추진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이 구비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는 점임.
- 예를 들어, 새로운 젠더폭력의 유형에 대하여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 등과 같은 용어가 쉽게 활용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유형은 모두 범죄로 처벌되는 영역이며, 적어도 불법이나 범죄와 같은 용어를 활용하지 않은 채 이러한 용어 등이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면 이들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릴 수 있음.
-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이른바 관계기반범죄에 대한 판례의 태도나 해석의 방향은 우리사회 내에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기 이전 수준의 이해를 담고 있으며, 이는 개개의 범죄별로 그 해석방향 등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짐.
- 그리고 성희롱과 같이 젠더폭력의 범주 안에 있는 행위 유형이면서, 동시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새로운 개념 정립을 통해 일반시민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유형에 대한 폭넓은 범위 설정을 통해 젠더폭력에 대한 일반시민의 인식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와 같이 젠더폭력의 예방을 위한 인식의 전환은 일반시민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를 필요로 하는 구조적인 문제임. 그런데 현재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예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유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의 예산부족, 협력체계 미구축 또는 비활성화, 홍보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나아가 울산지역에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을 담당하는 통합지원부서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임. 이러한 점이 울산지역의 특성에 맞춘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을 저해하는 두 번째 장애요인이라 하겠음.
- 결국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울산시민들로 하여금 젠더나 젠더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울산지역에서 젠더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하겠음. 그렇다면 이러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에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 이에 대한 검토에 앞서, 마지막으로 울산시민의 인식조사에서 나타난 젠더폭력에 관한 울산시민의 인식 특성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정책제언에서 이러한 과제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함.

(3) 젠더폭력에 관한 울산시민의 인식 특성

- 첫째, 전문가 자문의견과는 달리 설문조사의 결과, 울산시민의 느끼는 젠더폭력에 대한 체감도는 최근의 미투 운동 이전 등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다만, 이는 위에서 제시한 울산지역의 특유한 분위기에 따른 것이라 여겨지며, 동시에 주로 발생하는 젠더폭력 유형이 성희롱 등과 같이 제대로 된 젠더의식을 바탕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사소하게 치부될 수 있는 행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둘째, 우리 사회의 일반적 특성이라고도 하겠으나, 연령이 낮을수록 젠더폭력에 대한 문제의식도 높고, 감수성도 높으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에 대한 감수성은 부족한 상황임.
- 셋째, 위의 연령과 관련하여 높은 연령대에서 가장 문제되는 점은 가정폭력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편임과 동시에 가정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낮아 이를 특별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응답자도 있다는 점임.
- 넷째, 한편 젊은 연령층의 경우에는 인터넷 등을 통한 빠른 정보의 습득에 따라 젠더의식이나 젠더폭력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는 높은 것으로 보이나, 최종 학력별 분류에서 대학교 재학 중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데이트 폭력 목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연인 간 스킨십에서의 동의 문제, 젠더폭력의 발생 체감도나 미투 운동에 대한 공감 등에 대한 항목에서는 아직까지 남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이해와는 실질적인 이해는 아직도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섯째, 젠더폭력 경험 상황 또는 목격 상황 및 가상 상황에서 각각의 대처방법에 대한 설문을 통해 볼 때, 남성과 여성에 대한 무의식적인 편견이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고 있다고 여겨짐. 즉, 실제로는 경찰 등과 같이 공권력의 도움을 받고 싶거나 도움을 요청하고 싶고, 젠더폭력 상황을 공론화하고 싶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남자다움이라는 편견 때문에 쉽사리 이러한 상황을 공론화하기 어려울 수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젠더폭력에 처한 그 자체를 공론화

-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힘든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여섯째, 젠더폭력의 피해자에게도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다거나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었다면 찍는 것을 동의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설문에 대해 긍정하는 응답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자리잡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젠더폭력 유형 중에서도 이른바 특수한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는 성매매에 관해, 이를 젠더폭력으로 보지 않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반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점 역시도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여겨짐.
 - 일곱째, 실제 젠더폭력을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젠더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 경우,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젠더폭력 관련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울산시민의 인지도가 매우 낮았음.
 - 여덟째, 성희롱에 관한 여러 설문 결과를 분석해 볼 때, 성희롱을 사소한 문제로 여기거나, 사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등 성희롱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짐.
 - 아홉째, 울산지역에서 이루어진 젠더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드물었고, 특히 대부분의 교육 경험이 직장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자영업자나 학생 등은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젠더폭력 예방교육의 효과는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며, 젠더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에도 공감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욕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젠더폭력 예방교육 외에 젠더폭력 예방 관련사업 중에서는 미디어를 이용한 광고나 캠페인 등 집중적이고 시각적인 효과가 큰 사업을 많이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에 대한 호응이 큰 것으로 보임.

2. 정책제언

-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울산광역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한다면, ① 관련 조례의 제·개정, ② 젠더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 및 활성화, ③ 유관기관 홍보 및 담당자의 처우 개선, ④ 신종 젠더폭력 유형에 대한 적극적 사업추진, ⑤ 유관기관 협력체계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등 구축 및 활성화, ⑥실무 담당자의 인식 개선 등을 들 수 있음.

- 첫째, 젠더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차원의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함.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젠더폭력 예방의 문제는 울산시민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울산지역에서 젠더폭력에 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을 원칙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함. 현재 울산광역시의 관련 조례로는 「울산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당해 목적을 위한 조례를 두고 있는 곳도 있음. 동 조례에서는 아동·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협력체계의 구축, 실태 통계자료 관리, 예방교육, 캠페인 등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등에 관해 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젠더폭력 관련 기본조례로 하거나 일부개정을 통해 활용하는 방식도 의의가 있음. 그러나 한편으로는 동 조례가 가정폭력방지법 등을 바탕으로 하여, 대상을 여성과 아동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 다양한 사업에 대한 제시는 하고 있으나 이를 원활하게 이끌 수 있는 시행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 성희롱 등과 같이 울산지역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젠더폭력 유형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 협력체계나 보호체계에 관한 제시는 있으나 당해 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나 지원 등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젠더폭력에 대한 엄중한 대응의지 및 시행계획 등이 담겨있는 선언적인 조례의 제정이나, 위의 조례의 전부개정 등을 통한 구체화 등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음. 이러한 필요에 따라 관련 조례의 제정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함.
- 둘째, 울산시민의 인식을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젠더폭력 등 관련 예방교육의 내실화 및 활성화임. 이를 위해서는 검토되어야 할 것이 많은데, 우선적으로 울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방교육 전문강사의 수가 많지 않다는 점, 그리고 직장교육이나 학교 내 교육 이외에 젠더폭력 예방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동시에 직장교육 역시도 타 지역에 비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이 문제됨. 따라서 지역 내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또는 역량강화 과정의 신설 등이 필요하고, 민관 협력 등을 통해 직장이나 일반인에 대한 보다 폭넓은 예방교육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만 젠더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일반시민의 수강욕구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 수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젠더폭력 예방교육의 세부 과정이나 내용과 관련해서는 인권교육, 젠더의식 교육 등과 같은 기본적인 교육과정부터 시작하여,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 변화, 실제 사

- 례에 있어서 젠더의식 제고 교육, 성희롱이나 성매매 등 특정 젠더폭력 유형에 대한 인식 전환 과정, 연령별 특성 맞춤형 예방교육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교육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예방사업 유관기관의 홍보 및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본문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예방대책의 마련에 있어서 유관기관이 갖는 의미나 역할은 매우 클 수밖에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대한 울산시민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편이며, 개별 기관의 예산이나 처우도 열악한 현실임. 이에 유관기관에서 당해 기관을 효율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젠더폭력 예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함.
 - 넷째, 이른바 신종 젠더폭력 유형에 대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물론 현재에도 불법촬영이나 불법동영상 단속 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특히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대체로 신종 유형에 대한 불법 인식이 높으나,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러한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감식장비 구입 및 정기적인 점검 진행이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단 등을 구성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앞서 제시한 모든 정책과제는 기본적인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체계를 갖춘 전문가 및 실무자 집단이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여 업무를 추진하되, 그 업무는 지속적이고 발전적으로 진행되어야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즉, 본 보고서에서는 젠더폭력 예방대책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실제로 젠더폭력에의 대응은 예방, 제재, 지원이 하나의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할 것임. 그런데 문제는 예방, 제재, 지원 중 예방대책 하나만을 놓고 볼 때에도 담당해야 할 업무는 매우 많고, 그 분야는 서로 상이함.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부터 제대로 구축하거나, 또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해야만 함. 예를 들어, 젠더폭력 예방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토대가 되는 조례의 제·개정에서 시작하여, 정기적인 시행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고, 예방사업의 토대가 되는 예방교육, 캠페인 등과 같은 문화확산 사업, 실무기관 홍보는 물론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차기 사업추진을 위한 현황 및 정책연구 등 다양한 업무가 추진되어야 하며, 각각의 영역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면 관련 업무는 더욱 세분화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울산광역시청, 경찰청, 교육청 등 공공기관은 물론, 토대를 마련할 여성정책기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관, 예방사업을 진행하고 현황을 제시할 젠더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기관,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피해자지원기관, 예방교육을 담당할 전문교육기관, 관련 분야의 학계 등 전문가나 교육강사 등이 함께 울산지역의 젠더폭력 예방대책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분업화하여 당해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마지막으로 이러한 젠더폭력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정책 및 실무 담당자의 인식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여겨짐. 본문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에도 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을 제안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관계자의 올바른 인식이 갖추어지지 않는 한, 제대로 된 정책의 실현이나 사업의 추진은 있을 수 없음. 또한 이상과 같은 장기간에 걸친 구조적 변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은 각계각층의 협력과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공공 및 유관기관, 관련 전문가, 학계, 울산시민 등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문헌

- 곽영길/임유석/송상욱, 스토킹의 특징에 관한 연구- 미국·일본·한국의 스토킹 현황을 중심으로 -, 한국범죄심리연구 제7권 제3호, 한국범죄심리학회, 2011.
- 김구슬, 데이트폭력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안, 이화젠더법학 제9권제3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7, 135면.
- 김상운, 경찰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0권 제4호, 한국치안행정학회, 2014.
- 김엘림/윤덕경/박현미, 20세기 여성인권법제사, 한국여성개발원, 2000.
- 김엘림/윤덕경/박현미, 성폭력·가족폭력 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1999.
- 김용화, 성매매 근절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대안 : 성구매자 처벌 및 교육을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45권 제3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김윤영/김정규,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 폭력피해 방지를 위한 경찰활동 방안 : 제주지역을 표본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0권 제3호, 한국치안행정학회, 2013.
- 김잔디, 스토킹 행위의 특징과 대응 방안, 치안정책연구 제29권 제3호, 치안정책연구소, 2015.
- 김청하, 스토킹 규제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상의 ‘지속적 괴롭힘’ 조항에 관한 검토,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제9권 제4호, 한국재난정보학회, 2013.
- 김태명,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 김해경/박찬혁/정의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효율적 대처방안, 사회과학연구 제22권 제3호,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5.
- 김혜경/구차순, 성매매피해여성의 탈성매매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9호, 한국콘텐츠학회, 2017.
- 김혜정,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의 재검토, 조선대 법학논총 제20권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 김혜정, 유럽의 가정폭력범죄 대응정책에 관한 검토, 피해자학 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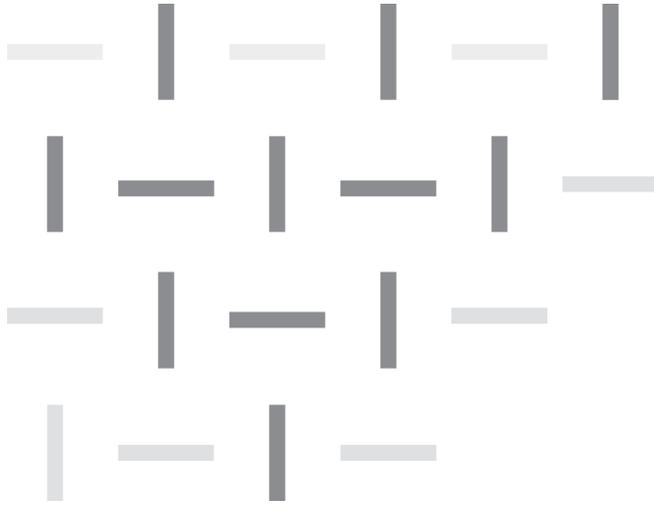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 류병관, 데이트폭력에 있어 피해자 보호방안 : 미국의 데이트폭력 방지대책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2권 제3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류화진, 개정형법상 성폭력 범죄에 관하여, 법학논고 제42권,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 박선영,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방안, 제4차 가정폭력방지 월례포럼 : 2017 가정폭력 방지정책 토론회, 한국여성진흥원, 2017.
- 박선영/윤덕경/박복순/이성은/한지영,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 법제정비연구(1)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법제정비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 박소현, 가정폭력규제입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의정논총 제8권 제2호, 한국의정연구회, 2013.
- 박우현/최응렬,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예방법의 제정방안 : 제20대 국회의원법안 검토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제31권 제1호, 치안정책연구소, 2017.
- 박찬걸, 최근의 성매매피해자 개념 확대 논의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 박현정, 데이트폭력의 위험요소와 대책에 관한 고찰, 조선대 법학논총 제22권 제2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 박현정/정순형, 데이트폭력범죄에 대한 독자적 형사제재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 인문사회 21 제8권 제3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 성홍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1권 제3호, 한독사회과학회, 2011.
- 오세연/곽영길, 데이트폭력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제13권 제5호, 한국경찰학회, 2011.
- 윤덕경/이미정/천재영/차인순/윤정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 윤상민, 데이트폭력에 대응하는 입법적 대책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 제16권 제4호, 한국법학회, 2016.
- 이건호, 스토킹 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과 그 한계 : 스토킹 행위의 유형화와 법률적 대응방법의 다양화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16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4.

- 이미경, 성폭력 피해자 권리 관점에서 본 성폭력 방지 대책, 젠더리뷰 제26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 이범석, 성매매특별법의 성과와 성매매방지 및 지원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제50권, 한국교정복지학회, 2017.
- 이성용/심희섭, 스토킹에 대한 경찰법적 고찰, 경찰법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경찰법학회, 2015.
- 이성은/고은정, 서울시 여성폭력 예방지원체계 구축방안연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0.
- 이성은/고은정, 서울시 여성폭력 예방지원체계 구축방안연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010.
- 이원상, 스토킹 처벌규정 도입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 이유정, 여성폭력과 사법, 저스티스 제146권 제3호, 한국법학원, 2015.
- 이창무, 일본과 한국의 스토킹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법연구 제14권 제2호,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2014.
- 장미혜, 호주의 여성폭력 예방정책, 젠더리뷰 제23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 장복희, 국제법상 여성의 지위와 인권 : 차별금지와 여성폭력철폐를 중심으로, 연세법학연구 제15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5.
- 장응혁, 스토킹범죄의 정의에 관한 연구 - 독일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 연세법학연구 제27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 전소영/이수정/정민지, 가정폭력범죄 효율적인 사법처리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4호, 한국경찰연구학회, 2017.
- 전종철/심혜선/신선아,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및 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 :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34권 제3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 정도희, 스토킹의 개념과 처벌에 관한 몇 가지 제언, 법과 정책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7.
- 정현미, 성매매방지정책의 검토와 성매매처벌법의 개정방향, 법학논집 제18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 정현미, 여성폭력 관련 입법정책의 문제점, 이화젠더법학 제7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5.
- 조영숙,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과제- 법과 제도를 넘어 이행과 지원의 강화로-, 경남발전 제94권, 경남발전연구원, 2008.
- 조의행, 영국의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한 가정폭력 정보공개제도, 외국법제정보 2016, 한국법제연구원, 2016.
- 최유진 외, 2016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2016.
- 한성훈, 데이트폭력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5권 제4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 홍선영/조한나, 여성폭력 관련시설 여건분석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16.



부록

부록 1. 관련기관 대상 설문지	187
부록 2. 협의회 대상 설문지	188
부록 3. 시민 대상 설문지	193

울산여성가족개발원 기본연구과제 자문의견서

소 속 :

성 명 :

과제명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Q1. 귀 청(기관)에서는 젠더폭력 예방 등과 관련하여 추진한 사업(캠페인/교육 등)이 있으십니까?

Q2. 젠더폭력의 예방을 위해, 향후 어떠한 내용 또는 대상에 대한 사업이 더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Q3. 젠더폭력 예방 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울산광역시가 노력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울산광역시의 젠더폭력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의견(제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 자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울산여성가족개발원 기본연구과제 자문의견서

소 속 :

성 명 :

□ 과제명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울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2018년 기본연구과제인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발생현황 및 제반여건의 특성에 맞는 예방대책 마련과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작성자님의 의견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래의 항목에 관해 자유롭게 작성하여서 보내주시면 되고, 향후 작성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하의 작성칸은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 소속기관 소개 및 본인 소개

울산지역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등 대 여성 악성범죄의 피해자분들에 대한 지원, 관련 범죄의 예방 및 대처를 위해 애써주시는 유관기관의 기관장님을 전문가로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구체적인 질의에 앞서, 소속기관의 소개 및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강사정보에 따르면 현재 기관장님들께서도 각 분야의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소속기관 소개와 함께 본인소개도 부탁드립니다.

1. 소속기관 소개 : 설립목적, 기본현황, 주요사업 등
2. 본인 소개 : 강의분야 및 경력, 주교육대상 등

소속기관 및 본인소개

■ 지역사회 내 젠더폭력 관련 현황

1. 최근 2년(2017~2018년) 사이, 울산지역의 젠더폭력의 경향에 대해 어떻게 체감하고 있으십니까? 본 보고서의 젠더폭력의 유형 안에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불법촬영 및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성희롱, 데이트폭력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인의 전문분야 내지 업무분야(예를 들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의 ① ~ ■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렇게 선택한 이유에 대해 작성해 주십시오.

(선택)

<input type="checkbox"/> ①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②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③ 과거의 변화 없다. <input type="checkbox"/> ④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⑤ 과거보다 매우 증가하고 있다.

(이유)

2. 업무 수행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젠더폭력 발생현황에 있어서 울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특성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 유관기관 관련 서비스 및 교육 현황

1. 귀하가 속해있는 시설에서는 젠더폭력 예방 또는 젠더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① 있음

■ 없음

1-1. 위의 1.에서 “① 있음”이라고 답하신 분만 아래의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 있다면 어떠한 사업을 추진 중이신가요? 구체적으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 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울산광역시에서 협력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관해 작성해 주십시오.

1-2. 위의 1.에서 “■ 없음”이라고 답하신 분만 아래의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없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향후 젠더폭력 예방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진다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2. 개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관련 교육의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예를 들어,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양성평등 등)의 관련 교육 현황에 관해 소개해 주십시오.

- 울산지역 내에서 이러한 교육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떠한 내용 또는 대상에 대한 교육이 더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방 교육 등의 활성화를 위해 울산광역시와 협력이 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등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현황 및 필요여부**

1. 젠더폭력 예방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내에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 선택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매우 필요함 ② 필요함 ③ 필요하지 않음 ④ 전혀 필요하지 않음

<이유>

2. 젠더폭력 예방 등에 관한 지역 협력체계는 주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 중, 우선순위 별로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1순위	2순위
(1) 각 참여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교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각 참여기관에 대한 업무협조 요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관련 예방·홍보·대민교육 전략 협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여성폭력 감소를 위한 연계 대응방안 협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각 참여기관의 역할분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울산지역 젠더폭력 예방 관련 정책 활성화**

1. 울산지역 내에서 젠더폭력 예방과 관련한 아래의 정책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① ~ ④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렇게 선택한 이유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부록 3. 시민 대상 설문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ID				
----	--	--	--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시민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울산여성가족개발원입니다.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은 여성·가족 관련 정책을 연구·개발하는 울산광역시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본 원에서는 2018년 기본연구과제인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하여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과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본 보고서에서 정의하는 젠더폭력은 성적차별이나 편견을 바탕으로 한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하며,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불법촬영,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설문지에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울산여성가족개발원

■ 주 관 기 관 :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 책임 연구자 :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배미란 연구위원

일반적 특성

SQ1.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세 이상
SQ2.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SQ3. 거주지역	① 중구 ② 남구 ③ 동구 ④ 북구 ⑤ 울주군
SQ4. 혼인상태	① 미혼 ② 기혼 ③ 동거(사실혼) ④ 이혼/별거/사별 ⑤ 기타()
SQ5. 최종학력	① 고졸 이하 ② 대학교 재학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재학(석/박사) ⑤ 1대학원 졸업(석/박사)
SQ6. 직업	① 관리직 ② 전문직 ③ 사무직 ④ 영업직 ⑤ 생산/기술직 ⑥ 판매/서비스직 ⑦ 기능직 ⑧ 자영업 ⑨ 공무원/교원 ⑩ 농/임/축산/어업 ⑪ 비영리단체/기관 ⑫ 학생 ⑬ 무직 ⑭ 기타()

A4-1. 귀하가 주변에서 목격한 젠더폭력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 ① 성희롱
- ② 성폭력
- ③ 가정폭력
- ④ 성매매
- ⑤ 스토킹
- ⑥ 불법촬영/디지털 성범죄
- ⑦ 데이트폭력
- ⑧ 기타()

A4-2. 주변에서 젠더폭력을 목격했을 때, 본인은 어떠한 대처를 하셨습니까?

- 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② 가족에게 알렸거나 도움을 요청하였다.
- ③ 친구 또는 동료에게 알렸거나 도움을 요청하였다.
- ④ 전문상담기관 또는 지원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⑤ 경찰에 신고하였다.
- ⑥ 소리를 질러 주변에 알렸다.
- ⑦ 병원에 갔다.
- ⑧ 기타()

A5. 만약 본인 또는 주변에 젠더폭력이 발생한다면, 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 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
- ② 가족에게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겠다.
- ③ 친구 또는 동료에게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겠다.
- ④ 전문상담기관 또는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겠다.
- ⑤ 경찰에 신고하겠다.
- ⑥ 소리를 질러 주변에 알리겠다.
- ⑦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 ⑧ 기타()

B. 젠더폭력에 관한 인식

B1.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1) 우리 사회에서 젠더폭력은 심각한 문제이다.	①	②	③	④
<input type="checkbox"/> (2) 울산지역에서 젠더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input type="checkbox"/> (3) 최근에 일어난 미투(me too) 운동에 공감한다.	①	②	③	④
<input type="checkbox"/> (4) 남성도 젠더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input type="checkbox"/> (5)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성희롱이다.	①	②	③	④
<input type="checkbox"/> (6) 젠더폭력의 피해자에게도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input type="checkbox"/> (7) 연인이나 부부사이의 스킨십에서 동의를 구하는 것은 어색하다.	①	②	③	④
<input type="checkbox"/> (8) 젠더폭력의 예방을 위해 다양한 교육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input type="checkbox"/> (9) 중앙 또는 울산지역 내 젠더폭력 관련기관을 알고 있다(상담소, 지원센터 등).	①	②	③	④
<input type="checkbox"/> (10) 본인 또는 본인 주변에서 젠더폭력이 발생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①	②	③	④

B2.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용인될 수 없고,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용인될 수 없으나,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용인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1) 성희롱	①	②	③
<input type="checkbox"/> (2) 성폭력	①	②	③
<input type="checkbox"/> (3) 가정폭력	①	②	③
<input type="checkbox"/> (4) 성매매	①	②	③
<input type="checkbox"/> (5) 스토킹	①	②	③
<input type="checkbox"/> (6) 불법촬영	①	②	③
<input type="checkbox"/> (7) 데이트폭력	①	②	③
<input type="checkbox"/> (8) 디지털 성범죄	①	②	③

C1-3. 젠더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한 이후, 젠더폭력에 대한 본인의 인식은 바뀌었습니까?

- ① 전혀 바뀌지 않았다. ② 거의 바뀌지 않았다. ③ 약간 바뀌었다. ④ 매우 바뀌었다.

C2. 기회가 된다면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들어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C3. 주로 어떠한 젠더폭력 예방교육이 많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성희롱 | <input type="checkbox"/> ⑤ 스토킹 |
| <input type="checkbox"/> ② 성폭력 | <input type="checkbox"/> ⑥ 불법촬영 |
| <input type="checkbox"/> ③ 가정폭력 | <input type="checkbox"/> ⑦ 데이트폭력 |
| <input type="checkbox"/> ④ 성매매 | <input type="checkbox"/> ⑧ 응답거부 |

C4. 젠더폭력 예방교육이 젠더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C5. 젠더폭력 예방교육은 어느 시기부터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초등학생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성인이 된 후 ⑤ 별로 필요하지 않음

D. 젠더폭력 관련 유관기관 인지도 및 정책욕구

D1. 울산지역 내에 다음과 같은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항목	알고 있다.	모른다.
<input type="checkbox"/> (1) 가정폭력 상담소	①	②
<input type="checkbox"/> (2) 성폭력 상담소	①	②
<input type="checkbox"/> (3) 여성긴급전화 1366	①	②
<input type="checkbox"/> (4) 장애인성폭력상담소	①	②
<input type="checkbox"/> (5) 해바라기센터	①	②
<input type="checkbox"/> (6) 여성의 전화	①	②
<input type="checkbox"/> (7) 미혼모(자) 시설	①	②
<input type="checkbox"/> (8) 성매매 상담소	①	②
<input type="checkbox"/> (9) 성매매피해여성 보호시설	①	②
<input type="checkbox"/> (10)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①	②

D2. 울산지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젠더폭력 관련 사업이 진행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항목	알고 있다.	모른다.
<input type="checkbox"/> (1) 불법촬영 근절 옥외광고 시행	①	②
<input type="checkbox"/> (2) 여름 피서지 현장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	①	②
<input type="checkbox"/> (3)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운영	①	②
<input type="checkbox"/> (4) 주요 교차로 등 데이트폭력 근절 현수막 게시	①	②
<input type="checkbox"/> (5) 112 신고 코드에 스토킹 신설	①	②
<input type="checkbox"/> (6) 젠더폭력 예방 교육 실시	①	②
<input type="checkbox"/> (7) 성희롱, 성폭력 등 젠더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①	②
<input type="checkbox"/> (8) 젠더의식 강화교육 실시	①	②

D3. 귀하는 젠더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젠더폭력 예방교육의 활성화 및 내실화
- ② 경찰 순찰 등 방범활동 강화
- ③ TV/인터넷 등을 활용한 젠더폭력예방 홍보활동 강화
- ④ 주기적인 젠더폭력 예방캠페인 실시
- ⑤ 양성평등 및 젠더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또는 사업 실시
- ⑥ 가해자 처벌 강화
- ⑦ 가해자 교정 치료 및 교육 등을 통한 재범방지 강화
- ⑧ 기타()

◎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발행인 : 이미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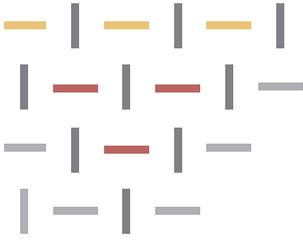
발행일 : 2018년 12월 30일

발행처 :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주소 _ (44717)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20번길 24

전화 _ (052) 276-8553

팩스 _ (052) 276-8556



UWFDI 연구보고서 2018-03

울산광역시 젠더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evention of Gender Violence in Ulsan Metropolitan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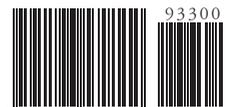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ULSAN WOMEN & FAMILY DEVELOPMENT INSTITUTE

본 자료의 저작권은 울산여성가족개발원에 있으며 무단도용 및 전재를 불허합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20번길 24

T 052-276-8553 F 052-276-8556 www.uwfdi.re.kr

비매품/무료



9 791196 579104 93300
ISBN 979-11-965791-0-4